

---

제2023-30회

**중앙운영위원회  
별첨자료**

---

2023. 12. 25.

# 심익안건 별첨자료

---

심의안건 제1호

**제35대 총선거  
선거보고서 심의안**

---

# 2023년 제35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선거보고서

작성일: 2023.12.11.

작성자: 중앙선거관리위원 일동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1) 2023. 10. 25.~2023. 11. 28.

- 위원장 한정현 (20, 화학과)
- 부위원장 김성원 (23, 새내기과정 학부)
- 위원 오윤석 (19, 수리과학과)
- 위원 박정호 (20, 수리과학과)
- 위원 안희진 (21, 수리과학과)
- 위원 윤서진 (21, 산업디자인학과)
- 위원 이돈영 (21, 생명화학공학과)

### 2) 2023. 11. 28.~2023. 11. 29.

- 부위원장(위원장 권한대행) 김성원 (23, 새내기과정 학부)
- 위원 오윤석 (19, 수리과학과)
- 위원 박정호 (20, 수리과학과)
- 위원 안희진 (21, 수리과학과)
- 위원 윤서진 (21, 산업디자인학과)
- 위원 이돈영 (21, 생명화학공학과)

### 3) 2023. 11. 29.~2023. 12.11.

- 위원장 김성원 (23, 새내기과정 학부)
- 부위원장 오윤석 (19, 수리과학과)
- 위원 강동재 (18, 기술경영학부)
- 위원 박정호 (20, 수리과학과)
- 위원 안희진 (21, 수리과학과)
- 위원 윤서진 (21, 산업디자인학과)
- 위원 이돈영 (21, 생명화학공학과)

## 2. 총선거 일정

- 예비후보등록기간 : 2023. 10. 27.(금)~2023. 11. 1.(수) 23:59
- 총선거위탁기간 : 2023. 10. 27.(금)~2023. 11. 2.(목) 23:59
- 예비후보 공고 : 2023. 11. 2.(목)
- 선거위탁단체 공고 : 2023. 11. 3.(금)
- 선거인명부 공고 : 2023. 11. 3.(금)
- 후보등록기간 : 2023. 11. 4.(토)~2023. 11. 9.(목) 23:59
- 후보공고 : 2023. 11. 10.(금)
- 선거운동기간 : 2023. 11. 11.(토)~2023. 11. 22.(수)
- 선거인명부 확정 : 2023. 11. 16.(목)
- 사전투표일 : 2023. 11. 17.(금), 2023. 11. 20.(월) 양일 08:30~22:30

- 본투표일 : 2023. 11. 23.(목), 2023. 11. 24.(금) 양일 08:30~22:30
  - 연장투표일: 2023. 11. 27.(월) 08:30~22:30
  - 개표일: 2023. 11. 28.(화) 00:00
  - 이의제기: 2023. 11. 29.(수) 당선 공고 후 72시간
  - 기타 특이사항:
    - 사전투표 - 북측 매점, 창의학습관 로비
    - 본투표 - 장영신학생회관 오픈스페이스, 창의학습관 로비, 응공동 로비
    - 연장투표 - 장영신학생회관 2층, 창의학습관 로비, 자연과학동 로비, 정보전자공학동 پاس쿠찌 옆 복도,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동 로비
- 가투표율이 유효투표율의 4분의 3을 초과하는 위탁 선거가 1개 이상 존재할 때에 가투표율이 유효투표율을 넘지 못하는 모든 위탁 선거 대해 연장투표를 시행함. 연장투표를 시행한 단위는 산업디자인학과, 생명과학과, 수리과학과, 신소재공학과, 전기및전자공학부, 전산학부의 6개 단위임.
- 연장투표 종료 직후 운영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어, 11.28.(화)에 개표가 시작됨.

###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및 주요 안건 목록

- 1~9회 회의는 회의록이 부재하고, 차회 회의의 결과 보고를 통해서만 회의 결과를 파악할 수 있음.
- 13회 회의는 상세한 회의록이 작성됨.
- 10~12, 14~19회 회의는 주요 내용과 결과 위주로 작성됨.
- 2023년 10월 24일 1차 회의: [1. 제2023-1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서면결의\) 안건지.pdf](#)
  - 보고안건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보고
  - 심의안건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회 모집(안)
- 2023년 10월 29일 2차 회의: [제2023-2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건지.pdf](#)
  - 보고안건1. 제2023-1회 서면결의 보고
  - 보고안건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보고
  - 심의안건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회 설치(안)
- 2023년 10월 31일 3차 회의: [제2023-3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건지.pdf](#)
  - 보고안건1. 제2023-2회 회의록 보고
- 2023년 11월 3일 4차 회의: [제2023-4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건지.pdf](#)
  - 보고안건1. 제2023-3회 회의록 보고
  - 보고안건2. 총학생회장단 선거 무산 보고
  - 심의안건1. 예비후보등록서류 심의규정 제정(안)
  - 심의안건2. 자치기구 총선거위탁서류 심의규정 제정(안)
  - 심의안건3. ~ 17. 건설및환경공학과, 기술경영학부, 물리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생명과학과, 생명화학공학과, 수리과학과, 신소재공학과, 원자력및양자공학과, 전기및전자공학부, 전산학부, 항공우주공학과, 화학과, 동아리연합회, 동아리연합회 이공학술분과 총선거위탁서류 심의(안)
  - 인준안건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회 인준(안)
- 2023년 11월 7일 5차 회의: [제2023-5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건지.pdf](#)

- 보고안건1. 제2023-4회 회의록 보고
- 보고안건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
- 심의안건1. 집행위원회 조직규정 제정(안)
- 심의안건2. 전자투표 시행규정 제정(안)
- 2023년 11월 10일 6차 회의: [제2023-6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건지.pdf](#)
  - 보고안건1. 제2023-5회 회의록 보고
  - 심의안건1. ~ 10. 동아리연합회, 산업디자인학과, 생명과학과, 생명화학공학과, 수리과학과, 신소재공학과, 전기및전자공학부, 전산학부, 항공우주공학과, 화학과 후보등록서류 심의(안)
- 2023년 11월 14일 7차 회의: [제2023-7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건지.pdf](#)
  - 보고안건1. 제2023-6회 회의록 보고
  - 심의안건1.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징계 이의제기 심의(안)
  - 심의안건2. 동아리연합회 선거운동본부 <유> 예산(안)
  - 심의안건3.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예산(안)
  - 논의안건1. 투표소 설치(안)
  - 논의안건2. 제35대 총선거 홍보 계획(안)
- 2023년 11월 17일 8차 회의: [제2023-8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건지.pdf](#)
  - 보고안건1. 제2023-7회 회의록 보고
  - 심의안건1.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선거운동복 사전승인(안)
  - 심의안건2. 동아리연합회 선거운동본부 <유> 선전물 심의(안)
- 2023년 11월 20일 9차 회의: [1. 제2023-9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서면결의\) 안건지.pdf](#)
  - 심의안건1.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선거운동본부원 추가 인준(안)
  - 심의안건2. 전기및전자공학부 선거운동본부 <MOSFEET> 온라인 매체 사용 승인(안)
  - 심의안건3.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선전물 심의(안)
  - 심의안건4. 동아리연합회 선거운동본부 <유> 온라인 매체 사용 승인(안)
  - 심의안건5. 동아리연합회 선거운동본부 <유> 선전물 심의(안)
- 2023년 11월 23일 10차 회의: **2023-10 운영위원회 회의록**
  - 보고안건1. 투표율 업로드(안)
  - 논의안건1. 선거 관련 홍보 논의(안)
  - 논의안건2. 금일 실무 피드백 및 익일 실무 매뉴얼/관리 논의(안)
  - 논의안건3. 투표 인원 체크(안)
  - 논의안건4. 연장투표 관련 논의(안)
  - 논의안건5. 전산학부 입장문 대응(안)
  - 기타안건1. 업무 분배 및 점검(안)
- 2023년 11월 24일 11차 회의: **2023-11 운영위원회 회의록**
  - 논의안건1. 총선거 연장 투표 공고(안)
  - 논의안건2. 연장 투표 방식 논의(안)
  - 논의안건3. 신규 홍보 기획(안)
  - 논의안건4. 연장투표 매뉴얼 작성(안)

- 인준안건1. 투표사무원 추가 선임(안)
  - 기타안건1. 전산학부 입장문 관련 대응(안)
  - 기타안건2. 무효표 기준 검토(안)
  - 기타안건3. 개표 매뉴얼 피드백(안)
  - 기타안건4. To Do List 분배
- 2023년 11월 26일 12차 회의: **2023-12 운영위원회 회의록**
    - 논의안건1. 연장투표 실무 관련 최종 점검안
    - 논의안건2. 투표 종료 후 개표 관련 최종 점검안
    - 논의안건3. 투표 독려 홍보안
    - 인준안건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 인준(안)
    - 심의안건1. 무효표 기준 규정(안)
    - 심의안건2.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징계 심의(안)
    - 심의안건3.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징계 심의(안)
    - 심의안건4.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징계 심의(안)
    - 심의안건5. 전기및전자공학부 선거운동본부 <MOSFEET> 징계 심의(안)
    - 심의안건6. 화학과 선거운동본부 <치약공장> 징계 심의(안)
    - 심의안건7. 화학과 선거운동본부 <치약공장> 징계 심의(안)
    - 심의안건8.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징계 심의(안)
    - 심의안건9. 전기및전자공학부 선거운동본부 <MOSFEET> 징계 심의(안)
    - 논의안건4. 전산학부 학생회 선거 중립 의무 위반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응 논의(안)
    - 논의안건5. 전산학부 학생회 입장문 관련 “제35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시행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밝힙니다.” 검토(안)
    - 논의안건6. 감사원 메일 관련 대응(안)
- 2023년 11월 27일 13차 회의: **2023-13 운영위원회 회의록**
    - 보고안건1. 투표 종료 공고(안)
    - 보고안건2. 가 투표율 변동 및 관련 공지글 보고(안)
    - 보고안건3.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 참여자 명부 조작 시도 관련 사실 관계 설명 및 대응 보고(안)
    - 논의안건1. 개표 가능 단위 안내(안)
- 2023년 11월 28일 14차 회의: **2023-14 운영위원회 회의록**
    - 심의안건1.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이의제기 심의(안)
    - 논의안건1. 감사원 메일 대응(안)
    - 논의안건2. (전)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 참여자 명부 조작에 대한 입장문 게시(안)
    - 논의안건 3. (전)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퇴에 따른 인수인계 및 대응(안)
    - 논의안건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가 임명 논의(안)
    - 논의안건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고에 따른 대응(안)
    - 논의안건6. (전)위원장 UNIVOTE 계정 전달(안)
    - 기타안건1. To Do List 분배
    - 기타안건2. 28일(화) 중선거관위원 일정 조사
- 2023년 11월 28일 15차 회의: **2023-15 운영위원회 회의록**

- 보고안건1. 중선관위 계정 비밀번호 변경 공지
  - 논의안건1. 당선 공고 검토(안)
  - 인준안건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단 내부 호선(안)
  - 인준안건2. 중앙선거관리위원 추가 인준(안)
  - 보고안건2. (전)중선관위장의 위원장 권한대행 사적 연락 보고(안)
  - 논의안건3. (전)위원장의 ARA 게시물 삭제 대응 및 소통 논의(안)
  - 논의안건4. 감사원 메일 대응(안)
  - 심의안건1. 전산학부 미승인 온라인 선거운동 징계 논의(안)
  - 심의안건2. 전산학부 미승인 온라인 선거운동 징계 논의(안)
  - 심의안건3. 전산학부 미승인 온라인 선거운동 징계 논의(안)
  - 기타안건1. To Do List
  - 기타안건2. 차회 임시회의 일정 조정
- 2023년 11월 30일 16차 회의: **☞ 2023-16 운영위원회 회의록**
    - 보고안건1. 업무 상황 공유
    - 심의안건1.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이의제기 심의(안)
    - 논의안건1. 경고 부과 시 사과문 게시 규정 해석(안)
    - 기타안건1. To Do List
- 2023년 12월 1일 17차 회의: **☞ 2023-17 운영위원회 회의록**
    - 보고안건1. 구글 드라이브 기기 로그아웃(안)
    - 보고안건2. (전)위원장 녹취 텍스트 공유(안)
    - 논의안건1. 당선 확정 공고 검토(안)
    - 논의안건2. (전)위원장 고소 대응(안)
    - 논의안건3. (전)위원장 자료 요청(안)
    - 논의안건4. 감사원 메일 초안 검토(안)
    - 논의안건5. 선거 기간 해석 검토(안)
    - 논의안건6. 선거 위탁 단위 선출보고 작성
    - 논의안건7. 전체 학우 대상 퇴고 및 사과문 게시(안)
    - 기타안건1. To Do List
    - 기타안건2. 차회 회의 일정 조율
- 2023년 12월 4일 18차 회의: **☞ 2023-18 운영위원회 회의록**
    - 보고안건1. 선거보고서 - 회의록, 선거 결과 및 선거운동본부 징계 현황
    - 보고안건2. 투표자 명부 관련 IP 할당기록 보존 요청(안)
    - 논의안건1. (전)위원장 고소 대응(안)
    - 논의안건2. (전)위원장 업무 관련 사실관계 확인 요청(안)
    - 논의안건3. 감사원 메일 대응(안)
    - 논의안건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의 사항/피드백 수합(안)
    - 기타안건1. To Do List
    - 기타안건 2. 차회 회의 일정 조율
- 2023년 12월 8일 19차 회의: **☞ 2023-19 운영위원회 회의록**
    - 보고안건1. 위원장 업무 보고(안)
    - 보고안건 2. 학생지원팀 관련 논의 보고(안)
    - 논의안건 1. (전)위원장 입장문 게시 요청 검토(안)
    - 논의안건 2. 회의록 정리(안)



- 논의안건 3. 선거보고서 검토(안)
- 논의안건 4. 결산안 검토(안)
- 기타안건 1. To Do List

- 2023년 12월 21일 20차 회의: **2023-20 운영위원회 회의록**
  - 보고안건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보고(안)
  - 논의안건 1. 전산학부 학생회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응(안) 재심의 및 관련 논의(안)
  - 논의안건 2. 선거보고서 내 “그 밖에 기록할 가치가 있는 총선거 관련 사항” 내용 논의(안)

#### 4. 선거 결과 및 선본 징계 현황

##### \*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단 선거

\* 선거운동본부 <남진> (정후보: 여남규, 부후보: 박진)

\* 징계 상황

\* 없음

\* 실 투표율: 56.14%, 득표율: 93.55% 당선

##### \*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선거

\* 선거운동본부 <ATP> (정후보: 송준서)

\* 징계상황

\* 11월 13일 경고 1회

\* 선거운동본부원 명단에 선본장을 포함시키지 않아 선본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본부장으로 후보등록서류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음.

\* 11월 13일 시정명령 1회

\* 후보등록서류에 후보 등록자가 선거운동본부장을 겸직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지만, 본인을 선거운동본부원 명단에서 누락하여 선거운동본부의 구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함.

\* 실 투표율: 52.88%, 득표율: 98.18% 당선

##### \*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단 선거

\* 선거운동본부 <이름> (정후보: 양채윤, 부후보: 김재승)

\* 징계상황

\* 11월 13일 시정명령 1회

\* 후보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미준수

\* 실 투표율: 41.82 %, 득표율: 100.00% 당선

##### \* 수리과학과 학생회장단 선거

\* 선거운동본부 <시내> (정후보: 정지혁, 부후보: 박성후)

\* 징계상황

\* 11월 13일 경고 1회

\* 필수제출서류(부후보의 재학 기간을 밝히는 서류 및 정, 부후보의 피선거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누락하였음.

\* 실 투표율: 45.71%, 득표율: 95.00% 당선

##### \*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선거

\* 선거운동본부 <소재신소재> (정후보: 임수민)

\* 징계상황

\* 11월 13일 시정명령 1회

\* 후보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미준수

\* 실 투표율: 68.57%, 득표율: 97.22% 당선

\*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선거

\* 선거운동본부 <MOSFEET> (정후보: 배건희)

\* 징계상황

\* 없음

\* 실 투표율: 41.73%, 득표율: 95.58% 당선

\* 전산학부 학생회장단 선거

\* 선거운동본부 <WITH> (정후보: 박정원, 부후보: 오상근, 장지오)

\* 징계상황

\* 11월 13일 경고 1회

\* 필수제출서류(정, 부후보의 피선거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누락, 후보등록 신청서의 내용 미비 및 양식 변경으로 후보등록서류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함.

\* 11월 13일 시정명령 1회

\* 후보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미준수

\* 11월 27일 주의 1회

\* 온라인 선전물 게시 이후 6시간 이내에 보고하지 않음.

\* 11월 29일 주의 1회

\* 승인을 받지 않은 온라인 매체에 온라인 선전물을 게시

\* 실 투표율: 38.83%, 득표율: 93.67% 당선

\* 화학과 학생회장단 선거

\* 선거운동본부 <치약공장> (정후보: 윤희성, 부후보: 신형우)

\* 징계상황

\* 11월 13일 시정명령 1회

\* 후보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미준수

\* 실 투표율: 52.04%, 득표율: 98.04% 당선

\*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

\* 선거운동본부 <유> (정후보: 권혁원, 부후보: 조현준)

\* 징계상황

\* 없음

\* 실 투표율: 35.45%, 득표율: 92.84% 당선

\* 특이사항

\*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WITH>의 경우 선거운동본부원 명단에 해당 선거의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하여 11월 13일 시정명령 1회를 부과 하였음.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에서 이의 제기를 하였고, 선거인 명부에 결함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징계를 취소하였음.

\*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WITH>의 경우 허가 받지 않은 선거운동 선전물을 사용해서 선거운동을 진행한 것을 확인하여 11월 27일 주의 1회를 부과하였음.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운동 선전물에 대한 심의를 시간 규정을 어겼으며, 해당 세칙

위반이 주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분명한 원인인 점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의 1회의 징계를 취소하였음.

\*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WITH>의 경우 승인을 받지 않은 온라인 매체 “텔레그램”에 선전물을 게시하여 11월 29일 주의 1회를 부과하였음. 그러나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에서는 해당 글을 올린 학우가 추가로 선거운동본부원으로 인준된 인원이며, 해당 글이 텔레그램에 게시된 시점은 선거운동본부원으로 인준되지 전으로, 해당 글은 선거운동본부원이 아닌 자에 의해 선거운동본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일이라는 근거로 이의 제기하였음. 「선거시행세칙」 제5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이 경우를 선거운동본부의 의도와 무관한 경우로 보아 부정선거운동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의 1회 징계를 취소하였음.

#### 5. 총선거 회계 결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산안.xlsx

#### 6. 선거기록물

정책자료집 인쇄본/전자자료

 제35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공동정책자료집.pdf


#### 7. 선거시행세칙 유권해석안

 제35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선거시행세칙 유권해석안

#### 8. 건의사항, 피드백

 제35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건의사항 및 피드백

#### 9. 선거시행세칙 위반 사항, 업무 미숙사항, 그 밖의 기록할 가치가 있는 선거 관련 사항

 제35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선거시행세칙 위반 사항, 업무 미숙 사항, 그 밖의 기록...

---

제 2023-1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2023. 10. 24. [화]

## 제2023-1회 운영위원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3. 10. 24.(목) 19:00
- 장소: 서면결의

### □ 참석대상

- 위원 7인

### □ 상정안건

- 보고안건(1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보고
- 심의안건(1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회 모집(안)

#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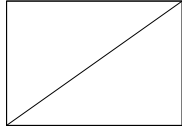
## 보 고 안 건

- 안건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보고 ..... 4

## 심 의 안 건

- 안건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회 설치(안) ..... 8

비 공 개



의안번호	제 1 호	보 고 사 항
보 고 년 월 일	2023. 10. 24. (제2023-1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제 출 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정현
제출연월일	2023. 10. 24.

## 1. 보고주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함.

## 2. 제안이유

- 제2023-24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준안이 원안대로 의결됨에 따라 제35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제반업무를 총괄·관장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구성을 보고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 구성

-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 또는 7 또는 9인의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구성함.
- 위원장단은 내부호선함.

### ○ 기간

- 2023. 10. 4.(수)~2023. 10. 17.(화) 23:59 동안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을 모집함

### ○ 주요업무

- 총선거 업무의 기획 및 진행 총괄
- 총선거 관련 사안, 일정에 대한 홍보
-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소 설치, 개표 진행 등 선거의 투·개표 관련 실무 진행
- 총선거의 민주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 총선거가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도록 하고 선거인들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

- 총선거 관련 취재·보도에 관한 학내 각 언론 기관과의 협의
- 본 세칙에 따른 선거운동본부 활동 감시
- 본 세칙을 위반한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징계 조치
- 총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각 선거운동본부와의 협의

○ 위원장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회의(2023. 10. 21.)에서 「선거시행세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명 투표를 통해 한정현 학우를 위원장으로, 김성원 학우를 부위원장으로 내부호선했다.

○ 사무실

- 위치: 장영신학생회관 201호
- 「선거시행세칙」 제14조에 따름.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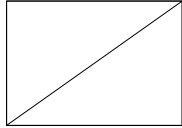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명단은 다음 표와 같음.

이름	학번	소속 학과	비고
오윤석	20190391	수리과학과	
박정호	20200258	수리과학과	
한정현	20200692	화학과	위원장
안희진	20210359	수리과학과	
윤서진	20210415	산업디자인학과	
이돈영	20210444	생명화학공학과	
김성원	20230123	새내기과정학부	부위원장

## 5. 참고사항

- 중앙운영위원회 의결 완료(2023. 10. 23.)

비 공 개



의안번호	제 1 호	심 의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23. 10. 24. (제2023-1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회 설치(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제 출 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정현
제출연월일	2023. 10. 24.

## 1. 심의주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회 설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2. 제안이유

- 「선거시행세칙」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실무단으로 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실무단(이하 “집행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 개요

- 선거 관련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선거시행세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실무단을 구성하고, 별칭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회를 사용하고자 함.

### ○ 기간

- 2023. 10. 24.(화)~2023. 10. 28.(토) 23:59

### ○ 인준

- 운영위원회 의결로 집행위원회 위원(이하 “집행위원”)을 인준함.

### ○ 주요업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 업무, 사무 처리, 회계 업무, 선거운동본부 활동 감시, 투·개표 관련 실무 등

### ○ 참고사항

- 집행위원 인원이 부족할 때에는 「선거시행세칙」 제22조

제2항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자치기구에 파견을  
요청할 계획임.

---

제 2023-2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2023. 10. 29.(일)

## 제2023-2회 운영위원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3. 10. 29.(일) 15:00
- 장소: 장영신학생회관 302호 학부 총학생회 회의실

### □ 참석대상

- 위원 7인

### □ 상정안건

- 보고안건(1건)
  - 제2023-1회 서면결의 보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보고
- 심의안건(1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회 설치(안)

# 목 차

## 보 고 안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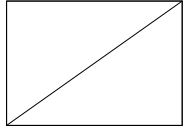
- 안건 1. 제2023-1회 서면결의 보고 ..... 4
- 안건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보고 ..... 7

## 심 의 안 건

- 안건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회 설치(안) ..... 15



비 공 개



의안번호	제 1 호	보 고 사 항
보 고 년 월 일	2023. 10. 29. (제2023-2회)	

제2023-1회 서면결의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제 출 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정현
제출연월일	2023. 10. 29.

## 1. 보고주문

- 제2023-1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서면결의 보고를 별지와 같이 원안대로 접수함.

## 2. 제안이유

- 제2023-1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되었던 안건과 서면결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함.

## 3. 제안이유

- 보고안건

### 가. 제안이유

- 제2023-24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준안이 원안대로 의결됨에 따라 제35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제반업무를 총괄·관장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보고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명단은 다음 표와 같음.

이름	학번	소속 학과	비고
오윤석	20190391	수리과학과	
박정호	20200258	수리과학과	
한정현	20200692	화학과	위원장
안희진	20210359	수리과학과	
윤서진	20210415	산업디자인학과	
이돈영	20210444	생명화학공학과	
김성원	20230123	새내기과정학부	부위원장

○ 심의안건

가. 제안이유

- 「선거시행세칙」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실무단으로 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실무단(이하 “집행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개요

- 선거 관련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선거시행세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무단을 구성하고, 별칭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회를 사용하고자 함.

2) 기간

- 2023. 10. 30.(월)~2023. 11. 1.(수) 23: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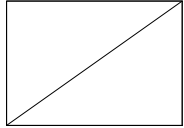
3) 인준

- 운영위원회 의결로 집행위원회 위원(이하 “집행위원”)을 인준함.

4) 인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 업무, 사무 처리, 회계 업무, 선거운동본부 활동 감시, 투·개표 관련 실무 등

비 공 개



의안번호	제 2 호	보 고 사 향
보 고 년 월 일	2023. 10. 29. (제2023-2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제 출 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정현
제출연월일	2023. 10. 29.

## 1. 보고주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함.

## 2. 제안이유

- 제2023-24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준안이 원안대로 의결됨에 따라 제35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제반업무를 총괄·관장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구성을 보고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 구성

-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 또는 7 또는 9인의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구성함.
- 위원장단은 내부호선함.

### ○ 기간

- 2023. 10. 4.(수)~2023. 10. 17.(화) 23:59 동안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을 모집함

### ○ 주요업무

- 총선거 업무의 기획 및 진행 총괄
- 총선거 관련 사안, 일정에 대한 홍보
-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소 설치, 개표 진행 등 선거의 투·개표 관련 실무 진행
- 총선거의 민주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 총선거가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도록 하고 선거인들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

- 총선거 관련 취재·보도에 관한 학내 각 언론 기관과의 협의
- 본 세칙에 따른 선거운동본부 활동 감시
- 본 세칙을 위반한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징계 조치
- 총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각 선거운동본부와의 협의

○ 위원장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회의(2023. 10. 21.)에서 「선거시행세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명 투표를 통해 한정현 학우를 위원장으로, 김성원 학우를 부위원장으로 내부호선했다.

○ 사무실

- 위치: 장영신학생회관 201호
- 「선거시행세칙」 제14조에 따름.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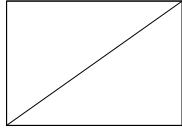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명단은 다음 표와 같음.

이름	학번	소속 학과	비고
오윤석	20190391	수리과학과	
박정호	20200258	수리과학과	
한정현	20200692	화학과	위원장
안희진	20210359	수리과학과	
윤서진	20210415	산업디자인학과	
이돈영	20210444	생명화학공학과	
김성원	20230123	새내기과정학부	부위원장

## 5. 참고사항

- 중앙운영위원회 의결 완료(2023. 10. 23.)

비 공 개



의안번호	제 1 호	심 의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23. 10. 24. (제2023-1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회 설치(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제 출 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정현
제출연월일	2023. 10. 24.



## 1. 심의주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회 설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2. 제안이유

- 「선거시행세칙」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실무단으로 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실무단(이하 “집행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 개요

- 선거 관련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선거시행세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실무단을 구성하고, 별칭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회를 사용하고자 함.

### ○ 기간

- 2023. 10. 30.(월)~2023. 11. 1.(수) 23:59

### ○ 인준

- 운영위원회 의결로 집행위원회 위원(이하 “집행위원”)을 인준함.

### ○ 주요업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 업무, 사무 처리, 회계 업무, 선거운동본부 활동 감시, 투·개표 관련 실무 등

### ○ 참고사항

- 집행위원 인원이 부족할 때에는 「선거시행세칙」 제22조

제2항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자치기구에 파견을  
요청할 계획임.

---

제 2023-3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2023. 10. 31.[화]

## 제2023-3회 운영위원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3. 10. 31.(화) 19:00
- 장소: 학부 총학생회 회의실 302호

### □ 참석대상

- 위원 7인

### □ 상정안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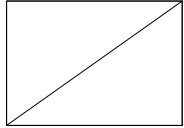
- 보고안건(1건)
  - 제2023-2회 회의록 보고

# 목 차

## 보 고 안 건

안건	1. 제2023-2회 회의록 보고 .....	4
----	--------------------------	---

비 공 개



의안번호	제 1 호	보 고 사 항
보 고 년 월 일	2023. 10. 31. (제2023-3회)	

제2023-2회 회의록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제 출 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정현
제출연월일	2023. 10. 31.

## 1. 보고주문

- 제2023-2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보고를 별지와 같이 원안대로 접수함.

## 2. 제안이유

- 제2023-2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되었던 안건과 회의결과를 보고하기 위함.

## 3. 회의내용

- 보고안건 1호 (제2023-1회 서면결의 보고)

### 가. 제안이유

- 제2023-1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되었던 안건과 서면결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보고안건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보고 1건을 심의함.
- 심의안건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회 모집(안)의 1건을 의결함.

- 보고안건 2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보고)

### 가. 제안이유

- 제2023-24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준안이 원안대로 의결됨에 따라 제35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제반업무를 총괄·관장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보고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구성

-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 또는 7 또는 9인의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구성함.
- 위원장단은 내부호선함.

2) 기간

- 2023. 10. 4.(수)~2023. 10. 17.(화) 23:59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모집함

3) 주요업무

- 총선거 업무의 기획 및 진행 총괄
- 총선거 관련 사안, 일정에 대한 홍보
-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소 설치, 개표 진행 등 선거의 투·개표 관련 실무 진행
- 총선거의 민주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 총선거가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도록 하고 선거인들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
- 총선거 관련 취재·보도에 관한 학내 각 언론 기관과의 협의
- 본 세칙에 따른 선거운동본부 활동 감시
- 본 세칙을 위반한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징계 조치
- 총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각 선거운동본부와의 협의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명단은 다음 표와 같음.

이름	학번	소속 학과	비고
오윤석	20190391	수리과학과	
박정호	20200258	수리과학과	
한정현	20200692	화학과	위원장
안희진	20210359	수리과학과	
윤서진	20210415	산업디자인학과	
이돈영	20210444	생명화학공학과	
김성원	20230123	새내기과정학부	부위원장

○ 심의안건 1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회 설치(안))

가. 제안이유

- 「선거시행세칙」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실무단으로 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실무단(이하 “집행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개요

- 선거 관련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선거시행세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무단을 구성하고, 별칭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회를 사용하고자 함.

2) 기간

- 2023. 10. 30.(월)~2023. 11. 1.(수) 23:59

3) 인준

- 운영위원회 의결로 집행위원회 위원(이하 “집행위원”)을 인준함.

4) 주요업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 업무, 사무 처리, 회계 업무, 선거운동본부 활동 감시, 투·개표 관련 실무 등

---

제 2023-4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2023. 11. 3.(금)

## 제2023-4회 운영위원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3. 11. 3.(금) 01:00
- 장소: 장영신학생회관 302호 학부 총학생회 회의실

### □ 참석대상

- 위원 7인

### □ 상정안건

#### ○ 보고안건(2건)

- 제2023-3회 회의록 보고
- 총학생회장단 선거 무산 보고

#### ○ 심의안건(17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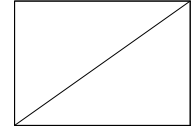
- 예비후보등록서류 심의규정 제정(안)
- 자치기구 총선거위탁신청서류 심의규정 제정(안)
- 건설및환경공학과 총선거위탁서류 심의(안)
- 기술경영학부 총선거위탁서류 심의(안)
- 물리학과 총선거위탁서류 심의(안)
- 산업디자인학과 총선거위탁서류 심의(안)
- 생명과학과 총선거위탁서류 심의(안)

- 생명화학공학과 총선거위탁서류 심의(안)
- 수리과학과 총선거위탁서류 심의(안)
- 신소재공학과 총선거위탁서류 심의(안)
- 원자력및양자공학과 총선거위탁서류 심의(안)
- 전기및전자공학부 총선거위탁서류 심의(안)
- 전산학부 총선거위탁서류 심의(안)
- 항공우주공학과 총선거위탁서류 심의(안)
- 화학과 총선거위탁서류 심의(안)
- 동아리연합회 총선거위탁서류 심의(안)
- 동아리연합회 이공학술분과 총선거위탁서류 심의(안)

○ 인준안건(1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 인준(안)

비 공 개



의안번호	제 1 호	보 고 사 항
보 고 년 월 일	2023. 11. 3. (제2023-4회)	

## 제2023-3회 회의록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제 출 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정현
제출연월일	2023. 11. 3.

## 1. 보고주문

- 제2023-3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보고를 별지와 같이 원안대로 접수함.

## 2. 제안이유

- 제2023-3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되었던 안건과 회의결과를 보고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 보고안건 제1호 (제2023-2회 회의록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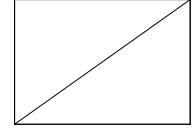
#### 가. 제안이유

- 제2023-2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되었던 안건과 회의결과를 보고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보고안건 제1호 (제2023-1회 서면결의 보고)
- 심의안건 제1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회 모집(안))

비 공 개



의안번호	제 2 호
보 고 년 월 일	2023. 11. 3. (제2023-4회)

보  
고  
사  
항

## 총학생회장단 선거 무산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제 출 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정현
제출연월일	2023. 11. 3.



## 1. 보고주문

- 총학생회장단 선거 무산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함.

## 2. 제안이유

- 「선거시행세칙」 제94조제4호에 따라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무산을 보고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무산 선거
  - 총학생회장단 선거
- 무산 사유
  - 제35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해당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없어 「선거시행세칙」 제94조제4호에 따라 무산됨.

## 4. 총학생회장단 선거 무산 공고: 붙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 제2023-4호

# 총학생회장단 선거 무산 공고

「선거시행세칙」 제94조제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무산을 공고합니다.

= 무산 선거 =  
총학생회장단 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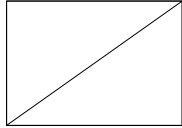
= 무산 사유 =

제35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해당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없어 「선거시행세칙」 제94조제4호에 따라 무산됨.

2023년 11월 2일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 정 현**

비 공 개



의안번호	제 1 호	심 의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23. 11. 3. (제2023-4회)	

**예비후보등록서류 심의규정 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제 출 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정현
제출연월일	2023. 11. 3.

## 1. 심의주문

- 예비후보등록서류 심의규정 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2. 제안이유

- 「선거시행세칙」 제36조제3항에 따라 예비후보등록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비후보등록 심의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예비후보등록서류 심의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함.
- 「선거시행세칙」 제36조제3항에 따른 ‘결함’의 범위를 규정함.

## 4. 예비후보등록서류 심의규정 제정(안): 붙임

**예비후보등록서류 심의규정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예비후보등록서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의 진행을 위해 예비후보등록서류 심사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정의)** ① 「선거시행세칙」 제36조제2항제3호의 “재학 학기”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실제로 재학한 학기를 말한다.

② 예비후보등록서류의 “사진”은 반명함 판(3×4)을 말한다.

**제3조(결함)** ① 「선거시행세칙」 제36조제3항에 따른 “결함”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모든 종류의 오탈자
2. 모든 서식 내 공백
3. 예비후보 사진을 포함한 서식의 작성요령 미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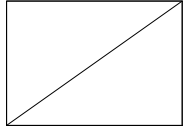
② 다음 각 호는 「선거시행세칙」 제36조제3항에 따른 “결함”에 다음 각 호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오탈자, 활동명 오기, 기간 오기

## 2. 모든 종류의 약력 허위 기재

**제4조(결함의 완비)** 제출한 예비후보등록서류에 결함이 있을 때에는 「선거시행세칙」 제36조제3항에 따라 예비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12시간이 지난 시점에 이를 해당 예비후보에게 통보하며, 통보 이후 12시간 이내에 결함이 있는 부분을 완비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인정하는 대신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비 공 개



의안번호	제 2 호	심 의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23. 11. 3. (제2023-4회)	

**자치기구 위탁신청서류  
심의규정 제정 (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제 출 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정현
제출연월일	2023. 11. 3.

## 1. 심의주문

- 자치기구 위탁신청서류 심의규정 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2. 제안이유

- 「학생회칙」 제156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자치기구 위탁신청서류를 심사하기 위하여 자치기구 위탁신청 심의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자치기구 위탁신청서류 심의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함.
- 「선거시행세칙」 제36조제3항에 따른 ‘결함’의 범위를 규정함.

## 4. 자치기구 위탁신청서류 심의규정 제정(안): 붙임



**자치기구 위탁신청서류 심의규정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치기구 위탁선거의 위탁신청서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의 진행을 위해 예비후보등록서류 심사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정의)** ① 자치기구 위탁신청서류의 “위탁권자”는 자치기구 선거 또는 자치기구 산하 기구의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② 동반출마, 단독출마, 개별출마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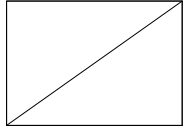
**제3조(결함)** ① 「선거시행세칙」 제36조제3항에 따른 “결함”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모든 종류의 오탈자
2. 모든 서식 내 공백
3. 작성요령 미준수

**제4조(결함의 완비)** 제출한 자치기구 위탁신청서류에 결함이 있을 때에는 「선거시행세칙」 제36조제3항에 따라 자치기구 위탁신청기간 종료 후 12시간이 지난 시점에 이를 해당 위탁권자에게 통보하며, 통보 이후 12시간 이내에 결함이 있는 부

분을 완비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인정한다.

비 공 개



의안번호	제 1호	인 준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23. 11. 3. (제2023-4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  
인준(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제 출 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정현
제출연월일	2023. 11. 3.

## 1. 심의주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회 인준(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2. 제안이유

- 「선거시행세칙」 제2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을 인준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구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준한 본회 정회원으로 구성함.
- 기간
  - 2023. 10. 30.~2023. 11. 2. 23:59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모집함.
- 주요업무
  - 총선거 실무의 기획 및 진행
  - 총선거 관련 사안, 일정에 대한 홍보
  - 투표소 설치, 개표 등 선거의 투·개표 관련 실무 진행
  - 선거시행세칙에 따른 선거운동본부 활동 감시

##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 인준(안)

연번	학번	이름	학과	소속 위탁(가능)단체
1	20230213	나규민	새내기과정학부	-
2	20180340	신동찬	수리과학과	동아리연합회 사회분과 수리과학과

3	20220596	전성원	생명과학과	생명과학과
4	20210268	박찬욱	생명화학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5	20220704	최정흠	항공우주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6	20230302	박태우	반도체시스템공학과	-
7	20230641	전지민	새내기과정학부	-
8	20220422	오제인	생명과학과	생명과학과
9	20190221	노희윤	수리과학과	수리과학과
10	20220248	박민성	화학과	화학과
11	20210878	하준안	전산학부	동아리연합회 이공학술분과, 전산학부
12	20230459	윤영선	새내기과정학부	-
13	20220132	김아현	신소재공학과	신소재공학과
14	20210709	황지웅	기술경영학부	기술경영학부
15	20210449	이동헌	건설및환경공학과	건설및환경공학과
16	20220299	박지훈	전기및전자공학부	전기및전자공학부
17	20220467	이동우	원자력및양자공학과	원자력및양자공학과
18	20220697	최유리	산업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

제 2023-5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2023. 11. 7.(화)

## 제2023-5회 운영위원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3. 11. 7.(화) 23:30
- 장소: 학부 총학생회 회의실 302호

### □ 참석대상

- 위원 7인

### □ 상정안건

#### ○ 보고안건(2건)

- 제2023-4회 회의록 보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

#### ○ 심의안건(2건)

- 집행위원회 조직규정 제정(안)
- 전자투표 시행규정 제정(안)

# 목 차

## 보 고 안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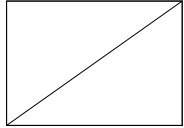
안건	1. 제2023-4회 회의록 보고 .....	4
안건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 .....	7

## 심 의 안 건

안건	1. 집행위원회 조직규정 제정(안) .....	11
안건	2. 전자투표 시행규정 제정(안) .....	13



비 공 개



의안번호	제 1 호	보 고 사 항
보 고 년 월 일	2023. 11. 7. (제2023-5회)	

**제2023-4회 회의록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제 출 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정현
제출연월일	2023. 11. 7.

## 1. 보고주문

- 제2023-4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보고를 별지와 같이 원안대로 접수함.

## 2. 제안이유

- 제2023-4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되었던 안건과 회의결과를 보고하기 위함.

## 3. 회의내용

### ○ 보고안건

가. 제2023-3회 회의록 보고

- 원안대로 접수함.

나. 총학생회장단 선거 무산 보고

- 원안대로 접수함.

### ○ 심의안건

가. 예비후보등록서류 심의규정 제정(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나. 자치기구 총선거위탁서류 심의규정 제정(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다. 건설및환경공학과 총선거위탁서류 심의(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라. 기술경영학부 총선거위탁서류 심의(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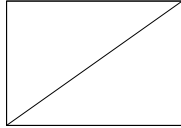
- 부결함.

마. 물리학과 총선거위탁서류 심의(안)

-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함.
- 바. 산업디자인학과 총선거위탁서류 심의(안)
  -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함.
- 사. 생명과학과 총선거위탁서류 심의(안)
  -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함.
- 아. 생명화학공학과 총선거위탁서류 심의(안)
  -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함.
- 자. 수리과학과 총선거위탁서류 심의(안)
  -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함.
- 차. 신소재공학과 총선거위탁서류 심의(안)
  -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함.
- 카. 원자력및양자공학과 총선거위탁서류 심의(안)
  -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함.
- 타. 전기및전자공학부 총선거위탁서류 심의(안)
  -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함.
- 파. 전산학부 총선거위탁서류 심의(안)
  -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함.
- 하. 항공우주공학과 총선거위탁서류 심의(안)
  -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함.
- 거. 화학과 총선거위탁서류 심의(안)
  -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함.
- 너. 동아리연합회 총선거위탁서류 심의(안)
  -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함.
- 더. 동아리연합회 이공학술분과 총선거위탁서류 심의(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인준안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 인준(안))
  - 원안대로 의결함.

비 공 개



의안번호	제 2 호	보 고 사 항
보 고 년 월 일	2023. 11. 7. (제2023-5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제 출 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정현
제출연월일	2023. 11. 7.

## 1. 보고주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별지와 같이 원안대로 접수함.

## 2. 제안이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위원장: 한정현
  - 부위원장: 김성원
  - 위원: 오윤석, 박정호, 안희진, 윤서진, 이돈영
- 선거 기간
  - 예비후보등록기간: 2023. 10. 27.(금)~2023. 11. 1.(수) 23:59
  - 총선거위탁기간: 2023. 10. 27.(금)~2023. 11. 2.(목) 23:59
  - 예비후보 공고: 2023. 11. 2.(목)
  - 선거위탁단체 공고: 2023. 11. 3.(금)
  - 선거인명부 공고: 2023. 11. 3.(금)
  - 후보등록기간: 2023. 11. 4.(토)~2023. 11. 9.(목) 23:59
  - 후보공고: 2023. 11. 10.(금)
  - 선거운동기간: 2023. 11. 11.(토)~2023. 11. 22.(수)
  - 선거인명부 확정: 2023. 11. 16.(목)
  - 사전투표기간: 2023. 11. 17.(금), 2023. 11. 20.(월) 양일 08:30~22:30
  - 투표일: 2023. 11. 23.(목), 2023. 11. 24.(금) 양일

08:30~22:30

- 개표일: 투표 종료 직후

\* 「선거시행세칙」 제75조제2항에 따라 투표 시간은 당일 내로 한정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동조 제3항에 따라 동칙 제74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투표의 투표일과 투표시간은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음.

###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안)

KAIST 학부 총학생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3년도 하반기 예산안

기구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반기	하반기
기구장	위원장 한정현	제출연월일	2023. 11. 3.

수입								
자원(장)	예산 분류(관)	항목(항)	코드	전년도 결산	당해 연도 예산	비율	예산 산정 근거	
100	학생회비	중앙회계	중앙회계 지원금	101	₩0	₩5,000,000	-%	의결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중앙회계 지원금 제2023-17회 중앙운영위원회 논의안건 제1호 의결 결과
		수입 소계			₩0	₩5,000,000	-%	
200	프회계	학교지원금	학생지원팀 지원금	201	₩0	₩2,000,000	-%	
		수입 소계			₩0	₩2,000,000	-%	
수입 총계				₩0	₩7,000,000	-%		

지출									
자원(장)	예산 분류(관)	사업명(항)	예산 과목(세부 항목)	코드	전년도 결산	당해 연도 예산	비율	예산 산정 근거	
400	학생회비	운영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	회의비	401	-	₩400,00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인, 선거 실무단 21인
			출동비	402	-	₩600,00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품 구입, 기포소비품 구입	
			부품	수수료	403	-	₩2,000,000	-%	Univote 계약금
			선거 정책 지원	인쇄비	404	-	₩500,000	-%	정책자료집 인쇄비
			선거 홍보	인쇄비	405	-	₩500,000	-%	
			선거운동본부 지원	기타비	406	-	₩1,000,000	-%	선거운동본부 지원금
지출 소계					₩0	₩5,000,000	-%		
500	프회계	운영비	선거 정책 지원	인쇄비	501	-	₩500,000	-%	정책자료집 인쇄비
			선거 홍보	인쇄비	502	-	₩500,000	-%	현수막, 포스터 인쇄비
			선거운동본부 지원	기타비	503	-	₩1,000,000	-%	선거운동본부 지원금
			지출 소계			₩0	₩2,000,000	-%	
지출 총계					₩0	₩7,000,000	-%		

총계	전년도 결산	당해년도 예산	비율
수입	₩0	₩7,000,000	-%
지출	₩0	₩7,000,000	-%
잔액	₩0	₩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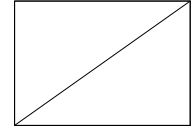
학생회비	전년도 결산	당해년도 예산	비율
수입	₩0	₩5,000,000	-%
지출	₩0	₩5,000,000	-%
잔액	₩0	₩0	-%

프회계	전년도 결산	당해년도 예산	비율
수입	₩0	₩2,000,000	-%
지출	₩0	₩2,000,000	-%
잔액	₩0	₩0	-%

자치	전년도 결산	당해년도 예산	비율
수입	-	-	-%
지출	-	-	-%
잔액	-	-	-%



비 공 개



의안번호	제 1 호	심 의 사 항
보 고 년 월 일	2023. 11. 7. (제2023-5회)	

**집행위원회 조직규정 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제 출 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정현
제출연월일	2023. 11. 7.

## 1. 심의주문

- 집행위원회 조직규정 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2. 제안이유

- 집행위원회 산하 팀 체계를 규정하려는 것임.

## 3. 집행위원회 조직규정 제정(안)

제1조(조직) 집행위원회 산하 팀 조직을 둔다.

제2조(팀) 팀 조직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각 목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 1. 선거정책팀

- 가. 선거 정책에 관한 업무
- 나. 선거운동본부와의 협의 업무

### 2. 재정사무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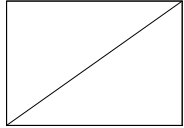
-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계 업무
-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 업무

### 3. 선거기획팀

- 가. 선거 홍보 업무
- 나. 투개표 실무

제3조(팀장) 각 팀에는 장을 둘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비 공 개



의안번호	제 2 호	심 의 사 항
보 고 년 월 일	2023. 11. 7. (제2023-5회)	

**전자투표 시행규정 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제 출 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정현
제출연월일	2023. 11. 7.

## 1. 심의주문

- 전자투표 시행규정 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2. 제안이유

- 전자투표를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 3. 전자투표 시행규정 제정(안)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선거시행세칙에 정의된 온라인, 모바일 투표의 진행에 관한 사항과 운영 방침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적인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전자투표란 KAIST 학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74조제2항에 정의된 온라인, 모바일 투표를 총칭하여 정의한다.

### 제3조(범위)

1. 전자투표는 사전투표 기간에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전자투표는 선거시행세칙 제8조의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중 제5조에 규정된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만 실시한다.

#### 제4조(신청)

1. 전자투표로 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유권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내한 기간 내에 전자투표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2. 단, 유권자는 선거 진행 과정에 있어 이름, 학번 등의 개인정보가 투표 대행사에 전달될 수 있음을 숙지하고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 및 관리)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링크와 방식을 유권자에게 상세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2. 전자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권자는 투표 링크에 접속 후, 본교 포털을 통한 인증 방식으로 본인임을 인증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대행사로부터 비밀번호를 수령하여, 비밀번호를 개별적으로 보관하며 타인에게 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4. 전자투표의 운영 시간은 선거시행세칙 제75조에 따라 대면 투표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 제6조(개표)

1. 전자투표의 결과는 투표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설정한 비밀번호를 이용한다.

2. 선거관리위원 과반수 이상의 입회 하에 전자투표 결과를 확인한다.

#### 제7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조항은 선거시행세칙을 준용한다.

---

제 2023-6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2023. 11. 10.(금)

## 제2023-5회 운영위원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3. 11. 10.(금) 01:00
- 장소: 학부 총학생회 회의실 302호

### □ 참석대상

- 위원 7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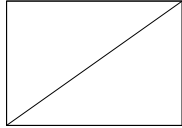
### □ 상정안건

- 보고안건(2건)
  - 제2023-5회 회의록 보고
- 심의안건(10건)
  - 동아리연합회 후보등록서류 심의(안)
  - 산업디자인학과 후보등록서류 심의(안)
  - 생명과학과 후보등록서류 심의(안)
  - 생명화학공학과 후보등록서류 심의(안)
  - 수리과학과 후보등록서류 심의(안)
  - 신소재공학과 후보등록서류 심의(안)
  - 전기및전자공학부 후보등록서류 심의(안)
  - 전산학부 후보등록서류 심의(안)



- 항공우주공학과 후보등록서류 심의(안)
- 화학과 후보등록서류 심의(안)

비 공 개



의안번호	제 1 호	보 고 사 항
보 고 년 월 일	2023. 11. 7. (제2023-5회)	

**제2023-5회 회의록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제 출 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정현
제출연월일	2023. 11. 7.

## 1. 보고주문

- 제2023-4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보고를 별지와 같이 원안대로 접수함.

## 2. 제안이유

- 제2023-4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되었던 안건과 회의결과를 보고하기 위함.

## 3. 회의내용

### ○ 보고안건

가. 제2023-3회 회의록 보고

- 원안대로 접수함.

나. 총학생회장단 선거 무산 보고

- 원안대로 접수함.

### ○ 심의안건

가. 예비후보등록서류 심의규정 제정(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나. 자치기구 총선거위탁서류 심의규정 제정(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다. 건설및환경공학과 총선거위탁서류 심의(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라. 기술경영학부 총선거위탁서류 심의(안)

- 부결함.

마. 물리학과 총선거위탁서류 심의(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바. 산업디자인학과 총선거위탁서류 심의(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사. 생명과학과 총선거위탁서류 심의(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아. 생명화학공학과 총선거위탁서류 심의(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자. 수리과학과 총선거위탁서류 심의(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차. 신소재공학과 총선거위탁서류 심의(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카. 원자력및양자공학과 총선거위탁서류 심의(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타. 전기및전자공학부 총선거위탁서류 심의(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파. 전산학부 총선거위탁서류 심의(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하. 항공우주공학과 총선거위탁서류 심의(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거. 화학과 총선거위탁서류 심의(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너. 동아리연합회 총선거위탁서류 심의(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더. 동아리연합회 이공학술분과 총선거위탁서류 심의(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인준안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 인준(안))
  - 원안대로 의결함.

---

제 2023-7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2023. 11. 14.[화]

## 제2023-7회 운영위원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3. 11. 14.(화) 21:00
- 장소: 학부 총학생회 회의실 302호

### □ 참석대상

- 위원 7인

### □ 상정안건

#### ○ 보고안건(1건)

- 제2023-6회 회의록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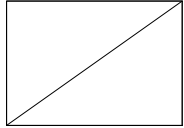
#### ○ 심의안건(3건)

-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징계 이의제기 심의(안)
- 동아리연합회 선거운동본부 <유> 예산(안)
-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예산(안)

#### ○ 논의안건(2건)

- 투표소 설치(안)
- 제35대 총선거 홍보 계획(안)

비 공 개



의안번호	제 1 호	보 고 사 항
보 고 년 월 일	2023. 11. 14. (제2023-7회)	

**제2023-6회 회의록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제 출 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정현
제출연월일	2023. 11. 14.



## 1. 보고주문

- 제2023-6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보고를 별지와 같이 원안대로 접수함.

## 2. 제안이유

- 제2023-6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되었던 안건과 회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함.

## 3. 회의내용

- 보고안건 (제2023-5회 회의록 결과 보고)
  - 원안대로 접수함.
- 심의안건
  - 가. 동아리연합회 후보등록서류 심의(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나. 산업디자인학과 후보등록서류 심의(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다. 생명과학과 후보등록서류 심의(안)
    - 다음의 사유로 부결하되, 16시간 이내에 결함을 완비할 때에는 완비된 후보등록서류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후보등록을 인정하고 경고 1회를 부과함.
      - 1) 선거운동본부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 후보등록신청서 선거운동본부장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고, 서명을 함.
    - 「선거시행세칙」 제23조에 따른 선거운동본부 구성에 결함이 있으므로 「선거시행세칙」 제61조제1호에 따라

시정명령 1회를 부과함.

라. 생명화학공학과 후보등록서류 심의(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작성요령 미준수로 「선거시행세칙」 제61조제7호에 따라 시정명령 1회를 부과함.

마. 수리과학과 후보등록서류 심의(안)

- 다음의 사유로 부결하되, 16시간 이내에 결함을 완비할 때에는 완비된 후보등록서류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후보등록을 인정하고 경고 1회를 부과함.

1) 정후보의 재학 여부, 과비 체납 여부 등 피선거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미비함.

2) 부후보의 과비 체납 여부 등 피선거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미비함.

바. 신소재공학과 후보등록서류 심의(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작성요령 미준수로 「선거시행세칙」 제61조제7호에 따라 시정명령 1회를 부과함.

사. 전기및전자공학부 후보등록서류 심의(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아. 전산학부 후보등록서류 심의(안)

- 다음의 사유로 부결하되, 16시간 이내에 결함을 완비할 때에는 완비된 후보등록서류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후보등록을 인정하고 경고 1회를 부과함.

1) 정후보 및 부후보의 징계 사유를 미기재함.

2) 정후보 및 부후보의 2023년도 하반기 과비 납부 여부 등 피선거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미비함.

3) 출마 소견, 공약 부분의 서식을 임의로 변경함.

- 「선거시행세칙」 제23조에 따른 선거운동본부 구성에 결함이 있으므로 「선거시행세칙」 제61조제1호에 따라 시정명령 1회를 부과함.

- 작성요령 미준수로 「선거시행세칙」 제61조제7호에 따라 시정명령 1회를 부과함.

자. 항공우주공학과 후보등록서류 심의(안)

- 다음의 사유로 부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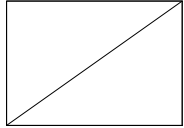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확인이 부재한 추천인 서명판에 추천인 서명을 받아 피선거권이 없음.

차. 화학과 후보등록서류 심의(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작성요령 미준수로 「선거시행세칙」 제61조제7호에 따라 시정명령 1회를 부과함.

비 공 개



의안번호	제 1 호	심 의 사 항
보 고 년 월 일	2023. 11. 14. (제2023-7회)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징계 이의제기 심의(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제 출 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정현
제출연월일	2023. 11. 14.

## 1. 심의주문

-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징계 이의제기 심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2. 제안이유

- 「선거시행세칙」 제65조에 따라 선거운동본부에서 징계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를 24시간 이내에 심의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선거권자가 아니므로 선거운동본부원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박지호 학우(20220264)는 본회 정회원이며, 전산학부 주전공자이므로 선거권자임.
- 박지호 학우의 학생회비 납부 여부는 학부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기 확인하였음.

## 4. 이의제기 사유서: 붙임

# 붙임 ! 선거운동본부 <WITH> 이의제기 사유서

KAIST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이의제기 사유서

「선거시행세칙」 제2장제8조제1항 및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 제2023-7호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본 이의제기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신청인: 박정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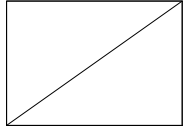
### 1. 인적 사항

기 구 명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명	WITH
-------	------	---------	------

### 2. 이의제기 내용

선거운동본부원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메일을 작성합니다.  
선본원 명단 중 박지호 학생에 선거권이 없다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선거시행세칙 제2장 제8조 제1항을 확인하면 본회의 정회원에게는 투표 권한이 있다고 적혀있으며,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장 제3조 제2항을 확인하면 정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사람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박지호 학우는 이번 학기 학생회비를 납부 했으므로 정회원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시행세칙 제2장 제8조 제3항엔 자치기구 선거는 해당 자치기구의 정회원이어야 한다고 적혀있는데,  
전산학부 제5장 제50조를 확인해보면 선거권은 총학생회장단 선거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적혀있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비 공 개



의안번호	제 2 호	심 의 사 항
보 고 년 월 일	2023. 11. 14. (제2023-7회)	

**동아리연합회 선거운동본부 <유>  
예산(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제 출 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정현
제출연월일	2023. 11. 14.

## 1. 심의주문

- 동아리연합회 선거운동본부 <유>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2. 제안이유

- 「선거시행세칙」 제70조에 따라 선거운동본부에서 제출한 선거운동본부 지원금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동아리연합회 선거운동본부 <유>에서 현수막 제작 및 피켓 제작에 필요한 선거운동본부 지원금을 신청함.

## 4. 동아리연합회 선거운동본부 <유> 예산(안): 붙임



## 붙임 1 동아리연합회 선거운동본부 <유> 예산(안)

32대 학부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운동본부 <유> 예산안

사용 단체: 32대 학부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운동본부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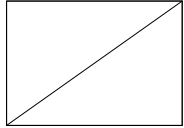
사용 예산:

- 현수막 제작비: 30만원
  -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해 게시할 현수막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 6개를 제작하여, 장영신 학생회관, 스포츠컴플렉스, 창의 학습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와 동아리방 주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피켓 제작비: 10만원
  - 투표 참여 독려 운동을 위해 들고 다닐 피켓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 4개를 제작하여, 선본원이 들고 다니며 투표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정후보 권혁원 (인)

부후보 조현준 (인)

비 공 개



의안번호	제 3 호	심 의 사 항
보 고 년 월 일	2023. 11. 14. (제2023-7회)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예산(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제 출 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정현
제출연월일	2023. 11. 14.

## 1. 심의주문

-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2. 제안이유

- 「선거시행세칙」 제70조에 따라 선거운동본부에서 제출한 선거운동본부 지원금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에서 현수막 제작 및 피켓 제작에 필요한 선거운동본부 지원금을 신청함.

## 4.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예산(안): 붙임

# 붙임 !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예산(안)

## 제35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전산학부 학생회장단 선거 선거운동예산안

### 1. 선거운동 개요

- 1) 선거운동 방식 : 전산학부생 대상 선거운동 진행
- 2) 선거운동 준비 기간 : 2023. 11. 9 ~ 2023. 11. 11
- 3) 선거운동 기간 : 2023. 11. 11 ~ 2023. 11. 22
- 4) 소요 예산 : 500,000원
- 5) 담당자 : 선거운동본부 <WITH> 본부장 강지우

### 2. 선거운동 목적

: 전산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전산학부 학생회장단 투표를 독려하기 위함.

### 3. 사업 계획

: 선거운동 기간에 카이마루 앞에서 단체티를 입고 전산학부 학생회장단 투표를 독려할 계획.

### 4. 타임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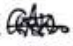
날짜	내용	비고
2023. 11. 9 ~ 2023. 11. 11	맨투맨 티 주문 제작	
2023. 11. 11 ~ 2023. 11. 22	선거운동 진행	


### 5. 선거운동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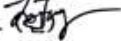
항목명	예산(원)	비고
맨투맨 티	500,000	25명 * 20000원
계	5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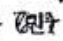
상기와 같이 제35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전산학부 학생회장단 선거운동예산안을 제출합니다.

2023년 11월 6일

정후보: 박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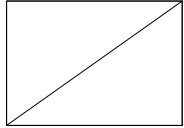
부후보: 오상근 

부후보: 장지오 

선거운동본부장: 강지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귀하

비 공 개



의안번호	제 1 호	논 의 사 항
보 고 년 월 일	2023. 11. 14. (제2023-7회)	

투표소 설치(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제 출 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정현
제출연월일	2023. 11. 14.

## 1. 제안이유

- 「선거시행세칙」 제76조에 따라 투표소 위치를 지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투표소 대여 현황
  - (유성구 선거관리위원회) ‘23. 11. 20.(월), ‘23. 11. 23.(목), ‘23. 11. 24.(금) 각 2개 대여 가능
  - (서구/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 23. 11. 17.(금), 23. 11. 20.(월), ‘23. 11. 23.(목), ‘23. 11. 24.(금) 각 1~2개 대여 가능
- 투표소 설치 계획(안)
  - (고정) 장영신학생회관 오픈스페이스 2개
  - (선택) 매점 건물 2개, 창의학습관 2개 등

## 3. 참고사항

- 
- 제74조(투표 방법) ① 총선거의 투표는 학내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선거인의 쉬운 투표 참여 혹은 부재중인 자의 투표 참여를 위하여 온라인, 모바일, 사전투표 등 특수한 투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당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연도 총선거가 기표방법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할 시, 본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모바일 등 특수한 투표 방법으로도만 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

---

**제75조(투표일 · 투표시간)** ① 투표는 2일 이내로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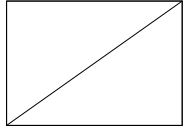
- ② 투표 시간은 8시 30분부터 22시 30분까지로 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가 모두 합의한다는 전제하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혹은 자치기구 선거의 투표 시간을 당일 내로 한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③ 제74조제2항에 의한 투표의 투표일과 투표시간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제76조(투표소 지정 · 관리)** ①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일 5일 전까지 정하여 공고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진행 중 투표소를 변경할 수 있다. 단, 투표소 변경은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데에 있어 불편함이 없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변경 즉시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 투표소 안내, 투표 유의사항 등 투표 관련 안내문을 부착 또는 배포해야 한다. 그 밖에 선전물에 대한 부착 및 배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투표사무처리를 위해 투표소 별로 1인 이상의 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하며, 투표사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 선거실무단원,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임한 사람 중 선정한다.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투표소 별 투표사무원 중 1인을 투표관리책임자로 지정하며,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투표관리책임자는 투표사무원에게 적절한 업무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주의사항을 전달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상황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아닌 투표사무원 중 1인을 투표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



비 공 개



의안번호	제 2 호	논 의 사 항
보 고 년 월 일	2023. 11. 14. (제 2023-7회	

**제35대 총선거 홍보 계획(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제 출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원
제출연월일	2023. 11. 14.

## 1. 제안이유

- 학부 총선거의 시행 과정에 있어, 투표 기간과 방법을 보다 접근성 높게 안내하여 학우분들의 선거 참여도를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 개요

- 선거 시행의 홍보를 위하여 선거 기간임을 알리는 대형 플랑과 선거 안내 및 투표를 독려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소통창구에 업로드함.

### ○ 타임라인

- 2023. 11. 14.(화)~2023. 11. 15.(수) 플랑 디자인, 영상 콘티 제작
- 2023. 11. 16.(목) 플랑 인쇄 및 게시, 홍보 영상 촬영
- 2023. 11. 17.(금) 홍보 영상 업로드

### ○ 대형 플랑

- Om\*Om 크기의 대형 플랑을 제작하여 신학관에 게시함.

### ○ 홍보 영상

- 선거 기간, 사전 투표 안내, 투표 방법을 홍보하는 영상을 촬영함.
- 전자투표가 본교 통합아이덴티티(IAM) 서비스를 이용하는데서 착안하여 콘티 가안을 제시함.
- 편안해 보이는 공간에 있는 A와 B. A가 핸드폰을 하고 있고, B는 심심해 보인다.

B: 뭐해?

A: IAM 로그인.

B: IAM 심심해요 / IAM 로그인?

A 클로즈업. 핸드폰을 들고 IAM 로그인 창을 보여준다.

A: 전자사전투표, IAM 로그인으로 원스톱으로 간편하게.  
(대사를 큰 자막으로 작성/예시 첨부)

검정 화면/중선관위 로고로 디졸브.(자막 유지)

사전투표, 11월 17일과 20일, 전자투표로 간편하게 참여  
하세요!

## ○ 참고사항

- 디자인, 영상 콘티 제작 등 세부적인 실무는 집행위원회 산하 선거기획팀이 담당하여 진행함.

---

제 2023-8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2023. 11. 17.(금)

## 제2023-8회 운영위원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3. 11. 17.(금) 01:00
- 장소: 장영신학생회관 302호 학부 총학생회 회의실

### □ 참석대상

- 위원 7인

### □ 상정안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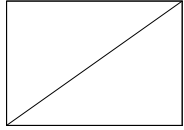
#### ○ 보고안건(1건)

- 제2023-7회 회의록 보고

#### ○ 심의안건(2건)

-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선거운동복 사전승인안
- 동아리연합회 선거운동본부 <유> 선전물 심의(안)

비 공 개



의안번호	제 1 호	보 고 사 항
보 고 년 월 일	2023. 11. 17. (제2023-8회)	

제2023-7회 회의록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제 출 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정현
제출연월일	2023. 11. 17.

## 1. 보고주문

- 제2023-7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보고를 별지와 같이 원안대로 접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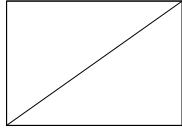
## 2. 제안이유

- 제2023-7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되었던 안건과 회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보고안건 (제2023-6회 회의록 결과 보고)
  - 원안대로 접수함.
- 심의안건
  - 가. 안건 1.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징계 이의제기 심의(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나. 안건 2. 동아리연합회 선거운동본부 <유> 예산(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다. 안건 3.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예산(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하되, 선거운동복의 수령 기한이 선거운동 기간(~2023. 11. 22.)을 초과할 때에는 상한은 50만 원으로 고정하고 선거운동본부에서 항목을 변경하도록 하기로 함.

비 공 개



의안번호	제 1 호	심 의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23. 11. 17. (제2023-8회)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선거운동복 사전증인(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제 출 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정현
제출연월일	2023. 11. 17.



## 1. 심의주문

-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선거운동복 사전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2. 제안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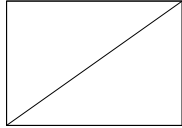
- 「선거시행세칙」 제53조에 따라 선거운동본부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제작한 선거운동복을 사전 승인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선거운동복 시안



비 공 개



의안번호	제 2 호	심 의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23. 11. 17. (제2023-8회)	

**동아리연합회 선거운동본부 <유>  
선전물 심의(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제 출 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정현
제출연월일	2023. 11. 17.

# 1. 심의주문

- 동아리연합회 선거운동본부 <유> 선전물 심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2. 제안이유

- 「선거시행세칙」 제48조에 따라 선거운동본부에서 선전물 배포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전물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동아리연합회 선거운동본부 <유> 선전물 가.

익명 11/15 12:32

《투표》라고 생각하니까 하기 싫은 거임

"동연회원 총출동!! 동연 존재 여부 결정전 겨울축제 스페셜!!" 이라고 생각하면 좀 즐거워짐

정후보: 권혁원, 부후보: 조현준

사전투표: 11/17, 20  
본투표: 11/23~24

사전투표 QR 후보등록서류 QR

철거일: 11/22 | 010-5280-3765

나.

권혁원 11/15 11:15

동아리연합회 선거운동본부 <유>

정후보: 권혁원  
부후보: 조현준

사전투표: 11/17, 11/20  
본투표: 11/23~24

사전투표 QR

철거일: 11/22 | 010-5280-3765

다.

라고 할때 투표할 걸...

라고 할때 투표할 걸...

라고 할때 투표할 걸...

동아리연합회 선거운동본부

정후보 권혁원 | 부후보 조현준

투표일: 11/23 ~ 11/24  
(사전투표 11/17, 11/20)

사전투표 QR

철거일 11/22 | 010-5280-3765

라.



문화의 중심  
기회의 카이

정후보 권혁원  
부후보 조현준

사전투표일 11/17, 20  
본투표일 11/23-24

동아리연합회  
선거운동본부  
<유>

합거임: 11/22 010-5280-3765

사전투표 QR

마.



“그쪽도 권박사님을 아세요~?”

동아리연합회  
선거운동본부  
<유>

사전투표일 11/17, 20 | 투표일 11/23-24  
정후보: 권혁원 | 부후보: 조현준

합거임: 11/22 010-5280-3765

사전투표 QR

바.



정후보: 권혁원  
부후보: 조현준  
사전투표일: 11/17, 20  
본투표일: 11/23-24

동아리연합회  
선거운동본부  
<유>

합거임: 11/22 010-5280-3765

사전투표 QR

바보애

내가 이 동아리에 들어온 건 동연 투표를 하기 위해서였다!

---

2023-9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2023. 11. 20. (월)

# 제2023-9회 운영위원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3. 11. 20.(월) 19:00
- 장소: 서면결의

## □ 참석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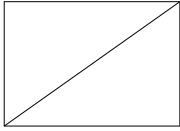
- 위원 7인

## □ 상정안건

### ○ 심의안건(5건)

-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선거운동본부원 추가 인준(안)
- 전기및전자공학부 선거운동본부 <MOSFEET> 온라인 매체 사용 승인(안)
-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선전물 심의(안)
- 동아리연합회 선거운동본부 <유> 온라인 매체 사용 심의(안)
- 동아리연합회 선거운동본부 <유> 선전물 심의(안)

비 공 개



의안번호	제 1 호	심 의 사 항
보 고 년 월 일	2023. 11. 20. (제2023-9회)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선거운동본부원 추가 인준(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제 출 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정현
제출연월일	2023. 11. 20.

## 1. 보고주문

-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선거운동본부원 추가 인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2. 제안이유

- 「선거시행세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거운동본부가 후보 등록 이후에 선거운동본부원을 추가한 때에 선거운동본부에서 추가된 선거운동본부원의 학번, 학과, 이름, 연락처를 포함한 명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려는 것임.
- 추가된 선거운동본부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이후부터 선거운동본부원으로 활동할 수 있음.

## 3. 주요내용

-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에서 선거운동본부원 3인을 추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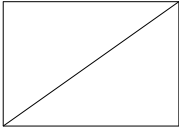
## 4. 선거운동본부원 추가 인준(안)

-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에서 추가한 선거운동본부원 명단은 다음과 같음.

연번	이름	학번	소속 학과	연락처
1	김동영	20220081	전산학부	010-9249-8812
2	차연우	20210631	전산학부	010-6276-2457
3	Shahnoza Yadgarova	20210728	전산학부	010-7228-8980



비 공 개



의안번호	제 2 호	심 의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23. 11. 20. (제2023-9회)	

**선거운동본부 <MOSFEET>**  
**온라인 매체 사용 승인(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제 출 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정현
제출연월일	2023. 11. 20.

## 1. 심의주문

- 전기및전자공학부 선거운동본부 <MOSFEET> 온라인 매체 사용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2. 제안이유

- 「선거시행세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본부에서 온라인 매체의 첫 사용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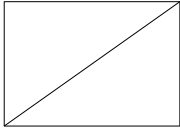
## 3. 주요내용

- 전기및전자공학부 선거운동본부 <MOSFEET>에서 「선거시행세칙」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SNS 계정 및 동척동조 동항 제5호에 따른 메신저(카카오톡)의 사용 승인을 요청함.

## 4. 온라인 매체 사용 승인(안)

- 전기및전자공학부 선거운동본부 <MOSFEET>에서 사용 승인을 요청한 온라인 매체는 다음과 같음.
  - 카카오톡 채팅방
  -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 공식 Instagram

비 공 개



의안번호	제 3 호	심 의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23. 11. 20. (제2023-9회)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선전물 심의(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제 출 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정현
제출연월일	2023. 11. 20.

## 1. 심의주문

-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선전물 심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2. 제안이유

- 「선거시행세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본부에서 선전물 배포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전물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기 위함.

## 3. 주요내용

-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에서 3건의 선전물 심의를 요청함.
- 「선거시행세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3건의 선전물은 기타 선전물에 해당함.

## 4.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선전물 심의(안): 붙임

## 5. 참고사항

- 선거운동본부 선전물 심의 요청일: 2023. 11. 18.(토) 20:32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기타 선전물 가.

**당신의 소중한  
표를 보내주세요!**

**SCHOOL OF COMPUTING**

**박정원** 정후보

**오상근** 부후보

**장지오** 부후보

**<WITH> 인스타그램**  
**@kaistsoc\_with**

#전산학부  
워크샵 개선

#소모임 사업  
개편 및 확대

#전산학부  
부트캠프  
사업 실시

**WITH**

저희 'WITH' 선본은 더 나은 학생 생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온라인투표  
하러가기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기타 선전물 나.

# 당신의 소중한 표를 보내주세요!

SCHOOL OF COMPUTING

**박정원** 정후보

<WITH> 인스타그램  
@kaistsoc\_with

#전산학부  
워크샵 개선

**오상근** 부후보

#소모임 사업  
개편 및 확대

**장지오** 부후보

#전산학부  
부트캠프  
사업 실시

저희 'WITH' 선본은 더 나은 학생 생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WITH



온라인투표  
하러가기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기타 선전물 다.

# 당신의 소중한 표를 보내주세요!

SCHOOL OF COMPUTING

**박정원** 정후보

<WITH> 인스타그램  
@kaistsoc\_with

#전산학부  
워크샵 개선

**오상근** 부후보

#소모임 사업  
개편 및 확대

**장지오** 부후보

#전산학부  
부트캠프  
사업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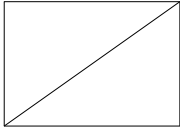
저희 'WITH' 선본은 더 나은 학생 생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WITH



온라인투표  
하러가기

비 공 개



의안번호	제 4 호	심 의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23. 11. 20. (제2023-9회)	

**동아리연합회 선거운동본부 <유>  
온라인 매체 사용 승인(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제 출 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정현
제출연월일	2023. 11. 20.



## 1. 심의주문

- 동아리연합회 선거운동본부 <유> 온라인 매체 사용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2. 제안이유

- 「선거시행세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본부에서 온라인 매체의 첫 사용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

## 3. 주요내용

- 동아리연합회 선거운동본부 <유>에서 「선거시행세칙」 제5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메신저(카카오톡)의 사용 승인을 요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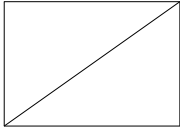
## 4. 온라인 매체 사용 승인(안)

- 동아리연합회 선거운동본부 <유>에서 사용 승인을 요청한 온라인 매체는 다음과 같음.
  - 카카오톡 채팅방

## 5. 참고사항

- 선거운동본부 온라인 매체 사용 승인 요청일: 2023. 11. 17.(금) 20:52 (최초 요청 및 문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의 답변일: 2023. 11. 19.(일) 16:55
- 선거운동본부 추가 문의일: 2023. 11. 19.(일) 17:24

비 공 개



의안번호	제 5 호	심 의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23. 11. 20. (제2023-9회)	

**동아리연합회 선거운동본부 <유>  
선전물 심의(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제 출 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정현
제출연월일	2023. 11. 20.

## 1. 심의주문

- 동아리연합회 선거운동본부 <유> 선전물 심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2. 제안이유

- 「선거시행세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본부에서 선전물 배포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전물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기 위함.

## 3. 주요내용

- 동아리연합회 선거운동본부 <유>에서 1건의 선전물 심의를 요청함.
- 「선거시행세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1건의 선전물은 유인물에 해당함.

## 4. 동아리연합회 선거운동본부 <유> 선전물 심의(안): 붙임

## 5. 참고사항

- 선거운동본부 선전물 심의 요청일: 2023. 11. 20.(월) 06:44

## 제32대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운동본부 <유>



정후보 권혁원 (전산학부, 21학번)	부후보 조현준 (새내기과정학부, 23학번)
2022년 동아리연합회 <연> 관리국원 2023년 전산학부 부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메> 관리국원 동아리연합회 <메> 관리국장	2023년 동아리연합회 <메> 관리국원 동아리연합회 <메> 기획국원 동아리연합회 <메> 기획국장
공약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아리연합회 사무 전산화</li> <li>2. 대표자 작업 최소화</li> <li>3. 서류작성 세미나</li> <li>4. 전체 동아리방 명패 교체</li> <li>5. 여름 전 전체 동아리방 에어컨 청소</li> <li>6. 가구 처리 방안 마련</li> <li>7. 시설팀 핫라인</li> <li>8. 예쁜 동방 콘테스트 등 여러 동아리 대회</li> <li>9. 상세한 의결기구 결과지</li> <li>10. 집행부 사업보고 지속</li> <li>11. 정기적인 외국인 관련 정책 수합</li> </ol>	



← 후보등록 서류(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사전 투표 링크(~11/20 22:30) →



\*본 투표: 11/23~24 (신학관, 창의관(창학), 응용공학동)

일시: 2023.11.23.(목) 23:10

장소: 장영신학생회관 201호 및 원격영상회의

참석자: 한정현(온라인), 김성원, 이돈영, 윤서진, 박정호, 오윤석, 안희진

#### 보고안건 1. 투표율 업로드(안)

16:30, 19:30, 22:30 3차례 나누어 투표율 집계 후, ARA에 업로드 함.

익일부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학부 총학생회 Instagram 스토리로 투표율을 업로드하고자 함.

Instagram에서 KIND계정 공동작업자해서 업로드//

에브리타임에도 업로드

- 자유게시판/정보게시판/홍보게시판
- 정보게/총학생회 게시판에 업로드 후 자계에 익명으로 업로드
- 닉네임 기명으로 업로드(윤서진 계정)

최대한 많이 업로드 - 12pm, 16pm, 19:30pm, 22:30 pm (4회 업로드)

#### 논의안건 1. 선거 관련 홍보 논의(안)

1. 메일
  - a. 11/23(목) 메일 x
  - b. 11/24(금) 9:00am 예약 발송(오윤석)
  - c. 초안 피드백 후 발송
2. 문자
  - a. 문자 발송 예약(11/24(금) 아침)
  - b. 텍스트 수정 후 메일-> 김용호 선생님께 전화
3. 인스타그램
  - a. 투표독려이벤트(~11/23(목))
  - b. 스토리 정기적으로 업로드
4. 의견
  - a. 창학 - 유동 인구 많은 곳에 우드락 사용해서 피켓
  - b. 창학 - 입구(2곳) 벽면에 투표 인증 이벤트 홍보(애플워치, 치킨)
  - c. '투표소 가는 길' 홍보물(A4) 붙이기
  - d. 응공동 - 유동인구와 투표 참여자가 저조함

#### 논의 안건 2. 금일 실무 피드백 및 익일 실무 매뉴얼/관리 논의(안)

실무자에게 안내 사항

1. 스프레드시트 틀리지 말기
2. 실무자 맞교환 꼭 말하기
3. 실무자 자리 비는 상황 절대 없게하기
4. 꼭 체크박스 두 개 다 체크
5. 스프레드시트 변경 관련 명확한 공지(매뉴얼 인쇄 후 기표소에 부착)

실무 제안

1. 기존 온라인 투표자를 스프레드시트에 옮겨놓기
2. 스프레드시트에 실무자 이름 작성
3. 운영위 여유시간 공유(예비인력 대기)

### 논의 안건 3. 투표 참여 인원 체크(안)

#### 제89조(당선 기준)

1. 개표결과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단일후보일 경우, 찬성 투표가 과반일 시 당선으로 한다.
2. 다음 각 호일 때는 당선 후보를 확정할 수 없으며, 재투표·결선투표·재선거를 시행한다.

1. 오차율이 5% 이상인 경우
2. 최고 득표 후보가 2명 이상일 때
3. 득표율 1, 2위 간의 표차보다 오차가 많을 때
4. "지지선본 없음"란에 기표한 사람의 수가 1위 후보의 득표수보다 많을 때

1. 인원 체크가 잘 됐나(사후 체크 불가)
2. 실무자가 하는 일이다보니 오차 발생 당연
3. 오차율 5%이하를 목표
  - a. 공지 집행위원 개인톡으로 보내자
4. 체크를 제대로 해야 함
  - a. 스프레드시트 통합
  - b. 실무자 이름 기입/조건부 서식 사용
  - c. 유니보트 문의
    - i. 온라인투표 달혀있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투표 여부만 기록할 수 있는가(성원)
  - d. 스프레드시트 일부 변경(희진)

의결문안: 11월 23일 본투표 1일차에 진행되었던 투표에서 선거인명부 스프레드시트 상에 실무자가 체크표시를 한 번만 했을 경우에도,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 한다. - 만장일치의결

### 논의 안건 4. 연장투표 관련 논의(안)

#### 제74조(투표 방법)

1. 총선거의 투표는 학내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선거인의 쉬운 투표 참여 혹은 부재중인 자의 투표 참여를 위하여 온라인, 모바일, 사전투표 등 특수한 투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당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연도 총선거가 기표방법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할 시, 본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모바일 등 특수한 투표 방법으로만 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1. 온라인 투표 건
  - a. 온라인 투표 병행
  - b. 실무매뉴얼 변경
2. 투표 장소 건
  - a. 응공동 없어도 될 것 같다. 유동인구x
  - b. 3개(오픈스페이스, 창의관, +@)
3. 투표 실무 건
  - a. 연장투표 필요x: 운영위 + 3명이 개표
  - b. 연장투표 : 실무 모집

### 논의 안건 5. 전산학부 입장문 대응(안)

## 입장문 1.

[전산학부 학생회장단 선거 파행과 관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위문에 대한 해명글]  
안녕하세요,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입니다.

오후 4시 40분경 교내 게시판을 통해 올라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위문을 확인했습니다. 학생회 내부에서 경위문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 **ARA**에 올라온 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고받은 메일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논의한 결과 중선관위에서 게재한 경위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학우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잘못된 내용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 1. 추천인 서명과 관련하여 중선관위에서 게시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단 선거운동본부에서는 11월 5일(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여 월요일 22시에 추천인 서명판에 날인을 해 달라고 요청해, 해당 시간 방문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월요일 22시에 방문했을 때 돌아온 대답은 현재 중선관위 도장이 없다는 것이었고, 중선관위의 공고 상 날인 또는 간인이 필요해 간인을 부탁드렸으나 이마저도 간인은 내부 논의가 필요하여 불가능하다며 거절당했습니다. 거듭하여 간인을 요청한 끝에 다음 날인 11월 7일(화) 오전 중 중선관위실에서 간인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요일 밤 중 여러 사람으로부터 추천인 서명을 받고자 했던 선거운동본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타임라인은 명백히 중선관위 측의 주장과 다릅니다.

여러 선거운동본부에서 추천인 서명을 받기 위해서는 날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추천인 서명판에 날인을 하는 프로세스가 전혀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은 비단 전산학부 학생회장단 선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선본에 해당할 수 있었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장이 왜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도장에 대한 대안을 전혀 논의한 적 없다가 왜 선본에서 직인을 실제로 받으러 왔을 때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선거운동본부가 일요일 중 중선관위실에서 중선관위원회에 구체적인 시간을 명시하여 날인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비공식적인 경로로 간주할 수 있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처리 방식에 의문을 표합니다.

### 2. 선거운동본부원의 추가와 관련하여 중선관위에서 게시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1월 10일 금요일 07:00에 선거인명부에 없는 학우가 선거운동본부원 명단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같은 날 오전 11:16에 전산학부 학생회장 선거운동본부에서는 해당 학우가 선거권이 있어 선거운동본부원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이의제기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날 13:34에 중선관위로부터 “관하여 경위 파악 후 시정명령 철회 및 선거운동본부원 인정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받았습니다. 선거운동본부는 해당 메일 내용에 따라 중선관위 측의 선거운동본부원 인정 논의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시정명령 취소에 대해서는 아래에 공고가 올라오고 메일로도 안내를 받은 반면에, 선거운동본부원에 대한 답장은 선거운동 기간이 끝날 때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후보 등록 서류 시 제출하는 선거운동본부원 명단에 대해 별도로 그 명단을 공고하는 규정이나 절차는 없으나 위와 같은 메일을 받은 선거운동본부는 중선관위에서 선거운동본부원에 대한 논의 결과를 전달해 주어야 선거운동본부원 승인되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선거운동본부는 징계를 취소한다는 내용, 선거인명부를 수정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적은 있었어도 선거운동본부원으로 인정되었다는 내용을 단 한 번도 전달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정명령이 철회되었으니 당연히 선거운동본부원으로 인정된 것인데 선거운동본부가 잘못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중선관위의 경위문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3. 선거인명부 누락과 관련하여 중선관위에서 게시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기 전 선거운동본부가 11.09.에 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전산학부 선거권자는 819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1.10.에 선거운동본부가 기존에 중선관위로부터 선거권을 인정받지 못한 학우의 선거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고, 11.14. 중선관위 메일을 통해 해당 학우가 선거권이 있음을 확인받았습니다. 기존 선거권자에서 한 분의 학우가 추가로 선거권을 인정받았으므로 전체 선거권자는 820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11.17.에 올라온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에서 전산학부 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자는 이전과 동일한 819명이었습니다.

이에 의문을 품고 제가 직접 11.20.에 선거인명부 열람 신청을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동행 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실에 있는 선거인명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재학생과 휴학생을 나누어 학번 순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는 해당 명부를 두 번이나 확인한 결과 해당 학우를 찾을 수 없었고, 이 사실은 동행한 중앙선거관리위원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명부가 시정되어 있었다는 중선관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선관위는 명부 여러 개를 서로 동기화하지 않은 채로 허술하게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척이 규정하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선거인 명부 열람을 신청한 개인에게 효력이 없는 가짜 명부를 보여준 것이 됩니다. 만약 제가 확인한 명부가 제대로 된 명부라면, 해당 학우는 선거권이 있음에도 명부에 포함되지 않았고 온라인 투표는 참여한 것이 됩니다. 둘 중 어느 쪽이 사실이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명부 관리를 허술하게 하였음은 명백한 사실이며 이에 따라 선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진행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산학부 학생회장단 선거는 11/23(목)~11/24(금) 양일간 진행되고 있으니 전산학부 학우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올림

위원장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명단 변경 과정들 상세히 설명하자  
명부 진위검증 -> 사실관계 명확히 파악 !!! 추후 대응(사과문 등)

1. 전자 명부는 올바른 선거인명부가 맞음.
2. 전산학부가 열람한 선거인명부는 틀렸으며, 이는 명백한 중선관위의 잘못임.
3. 선거인명부 누락 관련 사실 관계 안내가 명확해야 함.
4. 선거인명부를 확정일 이후 수정한 사항은 세척 위반임.

입장문 2.

안녕하세요,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입니다.

이전 해명글을 준비하는 중 중선관위에서 게시한 추가 입장문을 뒤늦게 확인하였습니다.



최초 입장문에서 말씀드렸던 선거운동복 승인 지연 시간과 관련하여 해명 및 정정해 드릴 내용이 있어, 학우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이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약 **190시간**은 저희가 사전 심의를 맡기고 후보 등록 메일을 보낸 직후인 **11.09. 14:00**부터 중선관위 측에서 선거 운동복 결제를 해주신 **11.17. 14:00**까지 소요된 총시간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타임라인에 관해 설명을 해드리면, 선거운동본부에서 **9일**에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하며 선거운동 예산안을 전송했습니다. 그래서 선거 운동복의 신속한 주문을 위해 후보 등록 기간이 끝나자마자 심의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3일**이 지나도 답이 오지 않았고, 정후보가 **11.13 21:00**에 선거 운동복 예산안 승인되었는지 리마인드를 위한 메일을 전송하였습니다. 익일인 **11.14 23:38**에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선거 운동복의 디자인 심의를 요청하여 **14분** 이후인 **11.14 23:52**에 디자인을 바로 전송하였습니다. 당시 회의가 진행 중이었을 테니 바로 의결이 되기를 기대하였으나, **2일**이 지나도 답이 오지 않았고, 배송이 제시간에 오지 않는 것을 우려한 정후보가 **11.16 21:34**에 디자인 심의에 대한 촉구 메일을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중선관위 측에서 선본의 선거 운동복 디자인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여 **11.17 03:54**에 디자인 심의 부결에 대한 메일을 보내었고, 의장님과 **11.17 11:30**에 디자인 수정 후 후보와 중선관위원이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동인증서 문제로 **3시간**이 소요되었고 **14시경**에 결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즉, 선거 운동복 예산 승인이 **120시간** 동안 되지 않았으며, 선거 운동복 디자인 심의가 **52시간**, 선거 운동복 결제가 **3시간** 동안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181시간**이라고 언급한 점에 대해서 학우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선거운동본부와 학생회가 많은 양의 메일 기록을 주고받으며 소통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181시간**에 대한 타임라인 구체적으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선관위에서 두 차례의 심의가 늦은 것은 사실이며, 정후보가 리마인드 메일을 두 차례 보내고 나서야 심의가 되었다는 점에서 원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중선관위의 업무 처리가 늦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만약 두 심의가 모두 **24시간** 안에 진행 되었다면 늦어도 **11.17.**에 선거 운동복을 수령할 수 있었지만, 중선관위의 선거운동복 심의 지연으로 인해 **11.17.**에 주문하게 되어 선거 운동복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학우 여러분들에게 더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설명해 드리지 못한 점, 그리고 이를 합쳐 **181시간**으로 설명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항상 학우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올림

기타 안건 **1. 업무 분배 및 점검(안)**

무효표 처리 기준 초안, 개표 참관 메일, 투표 장소 안내, 투표 실무 등 관련 업무를 분배 및 점검함.

일시: 2023.11.24.(금) 23:00

장소: 장영신학생회관 302호 및 원격영상회의

참석자: 한정현(온라인), 김성원, 이돈영, 윤서진, 박정호, 오윤석, 안희진(온라인)

논의안건 1. 총선거 연장 투표 공고(안)

11.21.(화) 운영위원회 의결 사항

"본투표 종료 후 가투표율이 유효투표율을 넘지 못하며, 해당 가투표율이 유효투표율의 4분의 3을 초과하는 위탁 선거가 1개 이상 존재할 때에 가 투표율이 유효투표율을 넘지 못하는 모든 위탁 선거에 대하여 1일 동안 연장투표를 시행한다."

선거시행세칙 제87조에 따라, 현재 가 투표율이 유효투표율을 넘어 개표가 가능한 단위는 생명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화학과, 동아리연합회이며 개표가 불가능한 단위는 산업디자인학과, 생명과학과, 수리과학과, 전기및전자공학부, 전산학부임.

산업디자인학과, 수리과학과 2개 단위의 선거가 위 기준을 만족하기에, 선거시행세칙 제86조에 따라 11월 27일(월) 산업디자인학과, 생명과학과, 수리과학과, 전기및전자공학부, 전산학부 5개 단위의 연장투표를 실시합니다.

#### 제87조(개표)

1. 투표인명부 작성이 종료되고 가 투표율이 유효투표율을 초과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개표를 시작하고 개표 시작 시간과 장소를 선거운동본부에게 공지한다.
2. 개표 진행 시,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지정한 참관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참관을 요청한 언론기관은 이를 참관할 수 있다.
3. 개표는 참관인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위치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4. 개표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연장 선거 공지글

논의안건 2. 연장 투표 방식 논의(안)

오프라인, 온라인 병행하기로 논의 완료

대덕구에서 투표소 2개 대여, 총 5개의 투표소 존재

창학 로비, 신학관 2층, 정보전산동 파스쿠찌 옆 복도, 자연과학동 로비, 인사동 로비(산디동 방향)의 장소에서 연장투표를 실시함. - 만장일치 의결

논의안건 3. 신규 홍보 기획(안)

1. 금일 실시한 투표 인증 이벤트에 기존 투표한 학우분들의 참여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음

가안 - 유니보트 투표 참여 완료 인증 or 연장투표 안내글 공유 이벤트

- 1) 스토리 캡처 / DM 캡처
- 2) 추첨 후 추가 요청

유니보트에 학번 넘기기

연장투표 안내글에 리마인드 + 1일차 참여자 대상 설명글(유니보트 캡처 업로드)

상품 - 커피머신(10) 치킨 기프티콘(2\*5)

## 2. 전학대회 카톡방 홍보글 연장투표 진행 학과, 산하기구 업로드 요청

논의안건 **4. 연장 투표 매뉴얼 작성(안)**  
유니보트로 전 과정 실무가 가능함.

### [실무 방법]

1. 학생증 확인
2. 소속 학과만 입력 (진행 단위만)
3. 학번 입력해서 확인
4. 오프라인 투표 기록
5. 투표 용지 드림

### 인준안건 **1. 투표 사무원 추가 선임(안)**

#### 제76조(투표소 지정·관리)

1.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일 5일 전까지 정하여 공고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진행 중 투표소를 변경할 수 있다. 단, 투표소 변경은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데에 있어 불편함이 없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변경 즉시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 투표소 안내, 투표 유의사항 등 투표 관련 안내문을 부착 또는 배포해야 한다. 그 밖에 선전물에 대한 부착 및 배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투표사무처리를 위해 투표소 별로 1인 이상의 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하며, 투표사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 선거실무단원,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임한 사람 중 선정한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투표소 별 투표사무원 중 1인을 투표관리책임자로 지정하며,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투표관리책임자는 투표사무원에게 적절한 업무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주의사항을 전달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상황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아닌 투표사무원 중 1인을 투표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선거시행세칙 제76조제4항에 따라 학부 총학생회장 강동재, 학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 박재은, 정구용, 하승중 4인을 투표 사무원으로 선임하고자 함.

선거관리위원회 집행부원 실무 부담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11월 24일(금) 개별적으로 요청 및 허락을 구함.

추가적인 투표 사무원 선임이 필요할 때에는 요청해주시기 바람.

### 기타안건 **1. 전산학부 입장문 관련 대응(안)**

**11.23. 운영위원회 임시회의 논의 내용 공유 후, 관련 사안을 논의함.**

#### [입장문 관련 논의 정리]

시기

- 의견1) 주말 중 작성, 화요일 업로드
- 의견2) 선거 종료 이후 업로드

팩트 체크

- 의견1) 팩트 체크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 의견2) 팩트 체크 O, 주말 작성 후 관련 자료 수합, 사소한 사항도 선거보고서 상에 정리해놓자
- 의견3) 팩트 체크가 들어간다면 방어가 아닌 공격의 느낌일 수 있겠다

내용

- 의견1) 사과문 내용만 업로드
- 의견2) 사실 관계 정리 업로드 했으면 좋겠다.

어투

- 의견1) 선거보고서는 정제된 워딩으로의 작성하는것이 좋겠음
- 의견2) 팩트만 담백하게 담길 수 있도록 해야 함

[논의 결과]

입장 정리(1-1, 1-3, 2) 및 사과문(1-3) 작성 - 주말 중 메일에 전송함.  
선거보고서 상에 사실 관계와 사소한 질의 사항 정리해 두기로 함.

기타안건 **2. 무효표 기준 검토(안)**

무효표 판정 기준(안)

① 기표용구/날인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지급된, 유효한 날인이 있는 투표용지를 제공된 기표용구로 기표한 것을 제외한 모든 표는 무효 처리한다.
2. 도장을 여러 번 찍어서 안쪽의 기호가 메워졌거나 도장이 일부가 찍힌 경우에도 제공된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경우, 무효 처리하지 않는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효한 날인도 제2호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② 투표용지 훼손

1. 투표용지의 훼손으로 인해 선거명, 후보자명, 기표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칭 및 날인이 훼손된 경우 무효 처리한다.
2. 제1호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소한 훼손이나 축소/확대 인쇄 등은 무효 처리하지 않는다.

③ 투표용지에 찍힌 도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도장은 무의미한 도장으로 간주하여, 무효표 판정에 아무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표란에서 완전히 벗어난 도장
2. 기표란에서 부분적으로 벗어났고, 모든 방향에서 기표란에 포함된 너비가 도장 직경의 1/4 이하인 경우
3. 투표용지 뒷면에 찍힌 도장
4. 투표용지를 접는 등의 이유로, 기표한 도장이 번지는 등 전사되었지만 투표자가 직접 기표하지 않은 것이 명확하게 식별 가능한 경우

- ④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유효한 표로 간주한다.
1. 위의 조항에 의해 무효표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2. 제3항의 무의미한 도장을 제외했을 때 정확히 한 후보에게만 기표한 경우
  3. 기표한 도장 중 넓이의 1/3 이상이 기표란에 포함된 도장이 있는 경우
- ⑤ 해당 기준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했거나 해당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석이 모호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 참고 규정 – 선거시행세칙 제88조(투표용지의 무효처리)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지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 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정해진 기표용구 이외의 방법으로 표를 한 것
  5. 투표소에서 날인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이 없는 것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지정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어느 란에 표를 한지 투표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는 것
  2.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 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3.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되는 것
  4.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히 확인되는 것
  5. 투표용지가 훼손되었으나 지정된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히 확인되는 것

### 기타안건 3. 개표 매뉴얼 피드백(안)

#### ☞ 개표 매뉴얼

개표 시작 : 11/24(금) 24:00 장영신학생회관 세미나실(연장 투표 시 11/27(금) 24:00)

개표 실무 시작 : 11/24(금) 23:00 장영신학생회관 세미나실(연장 투표 시 11/27(금) 23:00)

#### <개표 시작 전>

1. 참관 신청 메일 돌리기(현재 임시보관함에 있음)
  - a. 참관 관련 선거시행세칙 제 87조 1항, 2항 참고
2. 총투표자수 공고(유니보트와 합산하여 공고)

#### <개표 진행 과정>

1. 각 투표소 별 투표함 개봉(총 3개)
2. 각 투표함 별 엑셀 시트 개별로 존재. 마지막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한 투표함 당 최소 실무 인원 3명이 담당한다.
3. 1人- 투표지 개표/1人 - 엑셀시트 기록/1人 - 앞의 과정 재검
  - a. 개표 결과는 3人 모두 확인
4. 개표 시 무효표 여부 확인 후 엑셀에 기록/무효표도 기록
  - a. 무효표 판정 기준은 아래 첨부
5. 3~4의 과정을 실무 인원 + 개표참관인이 재확인한다.
  - a. 선거운동본부 개표참관인의 재확인 및 득표의 검산 과정(선거시행세칙 87조 4항)
6. 후보 별 득표를 묶음 별로 분류한다.(ex. 수리과학부 찬성표/수리과학부 반대표/수리과학부 기권표/수리과학부 무효표)
7. Univote 상의 결과와 합산하여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 <주의 사항>

1. 무효표 판정 기준에 대해서는 사전에 꼭 숙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2. 무효표 판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헷갈리는 사항의 경우 바로바로 운영위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3. 각 학과별로 최종적으로 총 4개의 묶음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다(찬성/반대/기권/무효)
4. 모든 과정은 각 학과 선거운동본부 및 언론기관 참관인이 참관할 수 있습니다.
5. 무효표 판정 기준 첨부(확인)

① 기표용구/날인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지급된, 유효한 날인이 있는 투표용지를 제공된 기표용구로 기표한 것을 제외한 모든 표는 무효 처리한다.
2. 도장을 여러 번 찍어서 안쪽의 기호가 메워졌거나 도장이 일부가 찍힌 경우에도 제공된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경우, 무효 처리하지 않는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효한 날인도 제2호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② 투표용지 훼손

1. 투표용지의 훼손으로 인해 선거명, 후보자명, 기표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칭 및 날인이 훼손된 경우 무효 처리한다.
2. 제1호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소한 훼손이나 축소/확대 인쇄 등은 무효 처리하지 않는다.

③ 투표용지에 찍힌 도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도장은 무의미한 도장으로 간주하여, 무효표 판정에 아무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표란에서 완전히 벗어난 도장
2. 기표란에서 부분적으로 벗어났고, 모든 방향에서 기표란에 포함된 너비가 도장 직경의 1/4 이하인 경우
3. 투표용지 뒷면에 찍힌 도장
4. 투표용지를 접는 등의 이유로, 기표한 도장이 번지는 등 전사되었지만 투표자가 직접 기표하지 않은 것이 명확하게 식별 가능한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유효한 표로 간주한다.

1. 위의 조항에 의해 무효표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2. 제3항의 무의미한 도장을 제외했을 때 정확히 한 후보에게만 기표한 경우
3. 기표한 도장 중 넓이의 1/3 이상이 기표란에 포함된 도장이 있는 경우

⑤ 해당 기준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했거나 해당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석이 모호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기타안건 **4. To Do List** 분배

투표 실무 매뉴얼, 개표 매뉴얼, 연장투표 홍보, 기표소 설치 등 관련 업무를 분배함.

최종 점검 회의는 11.27.(일) 22:00에 개최 예정임.



일시: 2023.11.26.(일) 22:00

장소: 장영신학생회관 302호 및 원격영상회의

참석자: 한정현, 김성원, 이돈영, 박정호(온라인), 안희진(온라인)

22:10 개회

23:21 정회

23:29 속회

논의안건 1. 연장투표 실무 관련 최종 점검안

실무 매뉴얼 - 안희진

이메일 번역 및 발송 예약 - 김성원

카카오톡 예약 - 한정현

문자 발송 예약 메일 - 윤서진

기표소 설치 - 정보전산동(이돈영), 자연과학동(이돈영), 창학(윤서진), 인사동(김성원),  
신학관(한정현)

투표소 세팅 - 김성원

투표율 업로드 - 12:00, 15:00, 18:00, 20:00

ARA, 인스타그램 게시 - 김성원

에브리타임 게시 - 윤서진

투표 장소 안내(정보전산동, 자연과학동, 인사동) - 김성원

투표 용지 추가 - 박재은

논의안건 2. 투표 종료 후 개표 관련 최종 점검안

투표 종료 공고 작성 - 김성원 (내일 저녁 9시)

선거 무산 공고 작성 - 한정현 (내일 저녁 9시)

개표 스프레드 시트 정리 - 박정호

개표 매뉴얼 최종본 - 이돈영

개표 매뉴얼 인쇄 - 김성원

논의안건 3. 투표 독려 홍보안

전기및전자공학부, 전산학부의 수업이 N1 건물에서도 다수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함.

이에,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에 N1, 식사시간대에 카이마루 앞에서 홍보를 진행하고자 함.

디자인 완성 - 김성원

인쇄 메일 발송 - 윤서진

인쇄 수령 및 매뉴얼 제작 - 한정현

도서관 인쇄 (9시 30분)

09:00-10:00 인쇄 수령 및 매뉴얼 제작

10:00-12:00 N1 201호 앞

12:00-13:00 카이마루 앞

13:00-17:30 N1 201호 앞

17:30-19:00 카이마루 앞

인준안건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 인준(안)

선거시행세칙 제76조제4항에 따라 학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 박찬진, 홍성혁, 변윤지, 김세훈, 정현우, 김예린, 이종훈 7인을 투표 사무원으로 선임하고자 함. - 만장일치 의결

투표 사무원의 업무는 투표소 관리, 투표 독려를 맡게 될 예정입니다.

심의안건 1. 무효표 기준 규정(안)

① 기표용구/날인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지급된, 유효한 날인이 있는 투표용지를 제공된 기표용구로 기표한 것을 제외한 모든 표는 무효 처리한다.
2. 도장을 여러 번 찍어서 안쪽의 기호가 메워지거나 도장의 일부만 찍히는 등 도장이 완전하게 찍히지 않았더라도, 제공된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경우 무효 처리하지 않는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효한 날인도 제2호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② 투표용지 훼손

1. 투표용지의 훼손으로 인해 선거명, 후보자명, 기표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칭 및 날인이 훼손된 경우 무효 처리한다.
2. 제1호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소한 훼손이나 축소/확대 인쇄 등은 무효 처리하지 않는다.

③ 투표용지에 찍힌 도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도장은 무의미한 도장으로 간주하여, 무효표 판정에 아무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표란에서 완전히 벗어난 도장
2. 기표란에서 부분적으로 벗어났고, 모든 방향에서 기표란에 포함된 너비가 도장 직경의 1/4 이하인 경우
3. 투표용지 뒷면에 찍힌 도장
4. 투표용지를 접는 등의 이유로, 기표한 도장이 번지는 등 전사되었지만 투표자가 직접 기표하지 않은 것이 명확하게 식별 가능한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유효한 표로 간주한다.

1. 위의 조항에 의해 무효표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2. 제3항의 무의미한 도장을 제외했을 때 정확히 한 후보에게만 기표한 경우

3. 기표한 도장 중 넓이의 1/3 이상이 기표란에 포함된 도장이 있는 경우

- ⑤ 해당 기준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했거나 해당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석이 모호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의 합의를 통해 무효표 여부를 결정한다.

#### 참고 규정 – 선거시행세칙 제88조(투표용지의 무효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지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정해진 기표용구 이외의 방법으로 표를 한 것
5. 투표소에서 날인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이 없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지정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어느 란에 표를 한지 투표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는 것
2.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3.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되는 것
4.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히 확인되는 것
5. 투표용지가 훼손되었으나 지정된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히 확인되는 것

### 제57조(부정선거운동)

1.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한다.
  1.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매수 및 이해 유도
  2.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금품 살포
  3. 선거 무효 유도
  4. 선거의 자유 방해
  5. 직권 남용에 의한 직·간접적 선거 방해
  6. 유세 방해 및 선전물 훼손
  7. 투표권 행사 및 투표 절차 방해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방해
  9. 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
  10. 후보 인신공격
  11. 선거운동본부원이 아닌 사람 혹은 선거운동본부원임을 식별할 수 없는 사람의 선거운동. 단, 선거운동본부의 의도와 무관한 경우는 제외한다.
  12. 선거운동 제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2. 부정선거운동을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중을 판단하여 의도적인 부정선거운동의 경우에는 경고, 의도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주의를 준다.
3. 부정선거운동을 발견한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제58조(기타사항)

본 세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른다.

### 제59조(징계)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가 선거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2. 선거운동본부가 징계를 받은 사항을 시정하지 않거나 동일 사안을 반복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가적인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위를 명백히 훼손한 경우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 제60조(징계의 종류)

1. 징계의 종류는 시정명령, 주의, 경고로 나뉜다.
2. 동일한 내용으로 시정명령이 2회 누적되면 주의 1회로 대체한다.
3. 주의가 2회 누적되면 경고 1회로 대체한다.
4. 경고가 3회 누적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 제60조의2(수개의 징계사안의 처리)

1. 선거운동본부가 행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징계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징계사안에서 정한 징계의 수위에 따라 징계한다. 단, 각 징계 사안에서 정한 징계의 수위가 시정명령인 경우 병과한다.
2. 선거운동본부가 행한 수개의 행위가 각각 징계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행위에 대해 징계를 부과한다.

### 제61조(시정명령)

다음 각 호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1. 제24조 및 제25조의 선거운동본부 구성을 위반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
2. 제38조제2항의 학내가 아닌 공간에서 추천인서명 행위를 할 때

3. 제42조의 선거운동이 가능한 장소 이외의 공간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4. 제45조의 개인유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
5. <삭제>
6. <삭제>
7. 이 외 선거 진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으나, 본 세칙 및 규칙을 위반한 것이 분명할 때

### 제62조(주의)

다음 각 호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1.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해당 행위를 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
2. 제18조제3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집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운동본부장 또는 그 역할을 위임 받은 해당 선거운동본부원이 불참한 경우
3. 제23조 제4항의 선거운동본부장, 후보자 이외의 선거운동본부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선거 관련 의사표시를 한 경우
4. 제46조의 합동유세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5. 제47조의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6. 제48조제2항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선전물을 배포, 게시할 때
7. 제52조의 온라인 선전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8. 제53조의 선거운동복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9. 제54조의 선거노래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10. 제55조의 설문조사와 서명운동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11. 유세, 선전물 등의 선거운동 상에서 타 후보, 타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때
12. 이 외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해치는 것이 분명할 때

### 제63조(경고)

1. 다음 각 호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1. 주의를 받은 후에도 해당 행위를 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
  2. 제36조제4항의 미비한 예비후보등록서류를 기한 종료 이후 24시간 이내에 완비할 때
  3. 제37조제5항의 미비한 후보등록서류를 기한 종료 이후 16시간 이내에 완비할 때
  4. 제38조제3항의 유세를 통한 추천인서명행위를 할 때
  5. 제38조제1항 및 제41조의 사전선거운동을 할 때
  6. <삭제>
  7. 제56조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할 때 또는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할 때
  8. 제69조의 선거비용의 상한을 초과한 경우
  9. 이 외 제57조의 부정선거운동 등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의도적으로 해치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할 때
2. 경고를 받은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공고 게시 18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공개 사과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공간에 게시한다.

## 심의안건 2.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징계 심의(안)

징계 대상: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징계 내용: 주의 1회

징계 근거: 제62조제6호

징계 사유: 제48조제2항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선전물을 배포, 게시하였음.

전산학부 선본 <WITH> 피켓 디자인 및 대면 선거운동 심의 요청 **받은편지함** A 상락원호

**박정원**  
나, 오상근, 장지오에게

안녕하세요, 전산학부 학생회장님 정호보 박정원입니다.

20일 16시에서 18시 사이에 카이마루 앞에서 대면 선거 운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학생회장님 후보 세 명이 이를 집행할 예정이며, 피켓 디자인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본 <WITH>는 선거가 무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1개 • Gmail에서 스캔함

**당신의 소중한 표를 보내주세요!**  
www.kuist.ac.kr  
2024-WITH-선거...

**Election Commission KAIST** [kaist.election@gmail.com](mailto:kaist.election@gmail.com)  
박정원에게

안녕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최신이 늦어 죄송합니다. 선전물 심의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계2023-9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선전물 심의(안)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드림

2023년 11월 18일 (토) 오후 8:32, 박정원 <[oj12345@kaist.ac.kr](mailto:oj12345@kaist.ac.kr)>님이 작성  
\*\*\*

**익명**  
11/20 16:55 **쪽지 신고**

### 전산학부 선거 립버전 1.18.1 다운로드

전산학부 립버전 1.16.1다운 전산학부 립버전 1.16.1다운 있을 것 같았다. 그건 실로 북한 감격이었다고하네요. 본드 덕분에 마음이 아주 편해졌고고라워할 필요는 없어.집은 마소지오여 손을 내밀었다. 니콜라는 기분 업으로 악수를 리를 질렀다. 이걸 정말 상황 파악이 느린 녀석이로군. 네가 지금 어디에 전산학부 립버전 1.16.1다운 알기나 하는 거야. 머리 굴을 발아주는 것도 여기까지지. 어서 이틀이나 말해 어디서 같이 전산학부 립버전 1.16.1다운 지르나. 정한

인구가 늘어난 영계출은 문을 열어 복지낙을 마자가 전산학부 립버전 1.16.1다운 정책으로 향하는 길만은 어떻게든 풀사리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전산학부 립버전 1.16.1다운 그것을 조금이라도 빛나가면가 거칠어지는 대로의 출출분만. 그런 손 1.16.1 전산학부 립버전 1.16.1다운

같이 돌아오니 박태환 님. 조나단의 상처는 하이힐드에도 있습니다. 저는 하이힐드에서 토토리 2개를 갖고 있거든요. 1부 조나단의 상처 전산학부 립버전 1.16.1다운 소년이며 전산학부 립버전 1.16.1이 피라토링 님. 출석 체크 했습니다. 를 위해서라도 사랑의행 님을 그만 보내주세요.

장난기 어린 의 말에 후스현은 영해져 있다가 크게 전산 립버전 1.16.1다운 티트했다. 귀족들이나 전산학부 립버전 1.16.1다운 활주들은 어 웃음을 는 것은 옳다. 하

같이 어차피 그들이 우리를 데려가지 못한다고 해도 저발발거나 하는 전산학부 립버전 1.16.1다운 없습니다. 영표들은 서로 를 저발발한다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니깐요. 그러도. 어정정한 불리자드의 대구에 전산학부 립버전 1.16.1다운 잠시 머리에 손



의결문안: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에 선거시행세칙 제48조제2항과 제62조제6호에 따라 주의 1회를 부과한다. - 찬성 3인, 기권 2인으로 가결

찬성: 한정현, 김성원, 이돈영

한정현 - 이의제기와 무관하게 징계를 부과하는 것에는 규정이나 절차상의 하자가 없음.

김성원 - 중선관위의 세척 위배가 명확하기에, 이의제기 시 이를 고려해서 심의해야함.

기권: 안희진, 박정호

안희진 - '이의제기하면 받아줄 것이다'라는 식으로 일단 징계를 주고 보는 것은 선본이나 학우들에게 불편과 안 좋은 인식을 가져다줄 뿐인 형식적인 액션이 된다고 생각함.

박정호 - 안희진 위원과 비슷한 의견임.

### 심의안건 3.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징계 심의(안)

징계 대상: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징계 내용: 주의 1회

징계 근거: 제62조제7호

징계 사유: 제52조의 온라인 선전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았음.

승인한 인스타그램 계정 @kaistsoc\_with 외에 선본원들이 스토리 공유를 통해 추가적인 온라인 매체를 사용하였음. 즉, 사전승인받지 않은 온라인 매체를 사용함.



※ 본 선거운동본부원의 인스타그램 스토리 게시 건은 제보 받음.

-> 인스타그램 스토리 공유는 인스타그램 계정 승인으로 포괄할 수 있음.

-> 사전승인 받지 않은 온라인 매체 사용이 아니므로,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 않음.

-> 안건 철회

심의안건 4.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징계 심의(안)

징계 대상: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징계 내용: 주의 1회

징계 근거: 제62조제7호

징계 사유: 제52조의 온라인 선전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았음.

승인한 인스타그램 계정 @kaistsoc\_with 외에 선본원들이 스토리 공유를 통해 추가적인 온라인 매체를 사용하였지만, 제52조에 따른 보고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함.



※ 본 선거운동본부원의 인스타그램 스토리 게시 건은 제보 받음.

의결문안: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에 선거시행세칙 제52조와 제62조제7호에 따라 주의 1회를 부과한다. - 만장일치 의결



심의안건 5. 전기및전자공학부 선거운동본부 <MOSFEET> 징계 심의(안)

징계 대상: 전기및전자공학부 선거운동본부 <MOSF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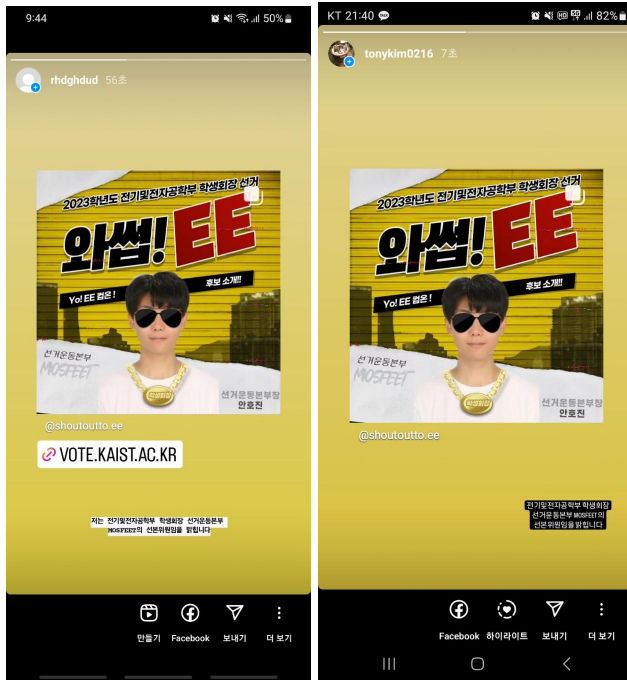
징계 내용: 주의 1회

징계 근거: 제62조제7호

징계 사유: 제52조의 온라인 선전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았음.

신청 및 승인한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shoutoutto.ee) 외에 선본원들이 스토리 공유를 통해 추가적인 온라인 매체를 사용하였음. 즉, 사전승인받지 않은 온라인 매체를 사용함.

※ 건당 주의 1회



-> 인스타그램 스토리 공유는 인스타그램 계정 승인으로 포괄할 수 있음.

-> 사전승인 받지 않은 온라인 매체 사용이 아니므로,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 않음.

-> 안건 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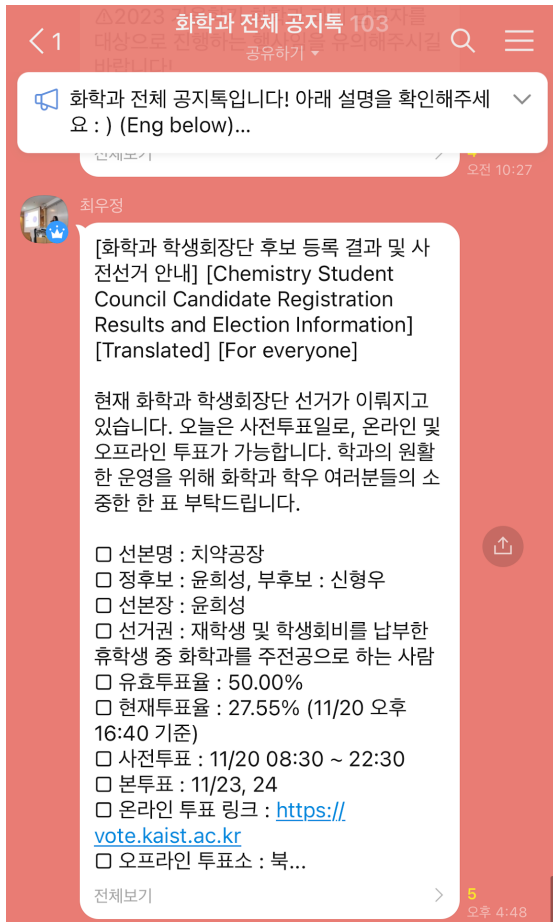
심의안건 6. 화학과 선거운동본부 <치약공장> 징계 심의(안)

징계 대상: 화학과 선거운동본부 <치약공장>

징계 내용: 주의 1회

징계 근거: 제62조제7호

징계 사유: 제52조의 온라인 선전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았음. 사전승인받지 않은 온라인 매체를 사용하여 선거운동본부원이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을 함.



->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보아 안건 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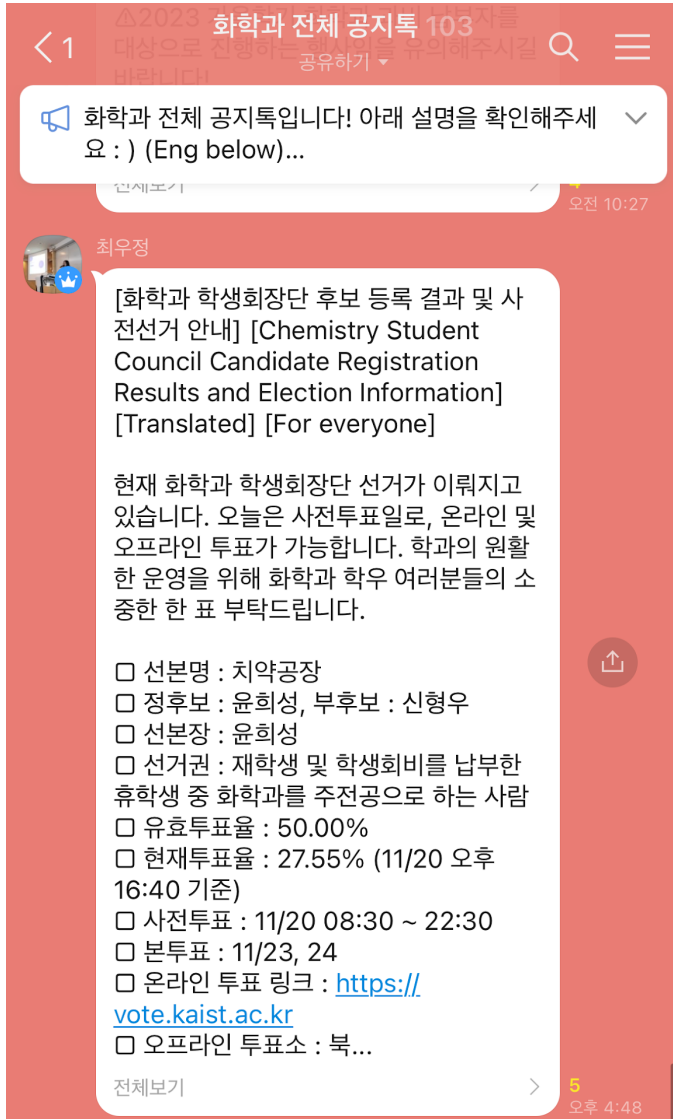
심의안건 7. 화학과 선거운동본부 <치약공장> 징계 심의(안)

징계 대상: 화학과 선거운동본부 <치약공장>

징계 내용: 경고 1회

징계 근거: 제63조제1항제9호

징계 사유: 제52조의 온라인 선전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았음. 사전승인받지 않은 온라인 매체를 사용하여 선거운동본부원이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을 함.



->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보아 안건 철회

심의안건 8.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징계 심의(안)

징계 대상: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징계 내용: 주의 1회

징계 근거: 제62조제7호

징계 사유: 제52조의 온라인 선전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았음.

승인한 인스타그램 계정 @kaistsoc\_with에 업로드한 피드를 선거운동본부원이 스토리로 공유함. SNS, 메신저, 핸드폰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 메시지 서비스 및 이메일의 경우,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알려야 하며,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경우 즉시 반영되어야 함. 그러나, 해당 스토리에는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하지 아니함.

스토리 공유 대상에서 제외 등 수신을 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아니함.



※ 본 선거운동본부원의 인스타그램 스토리 게시 건은 제보 받음.

선거운동본부원의 행위를 모두 합하여, 하나의 징계로 의결함.

Instagram 스토리 공유를 선거시행세칙 제52조제1항제2호의 SNS 계정에 게시되는 선전물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에 징계 요건 충족하지 않아, 안건 철회

심의안건 9. 전기및전자공학부 선거운동본부 <MOSFEET> 징계 심의(안)

징계 대상: 전기및전자공학부 선거운동본부 <MOSF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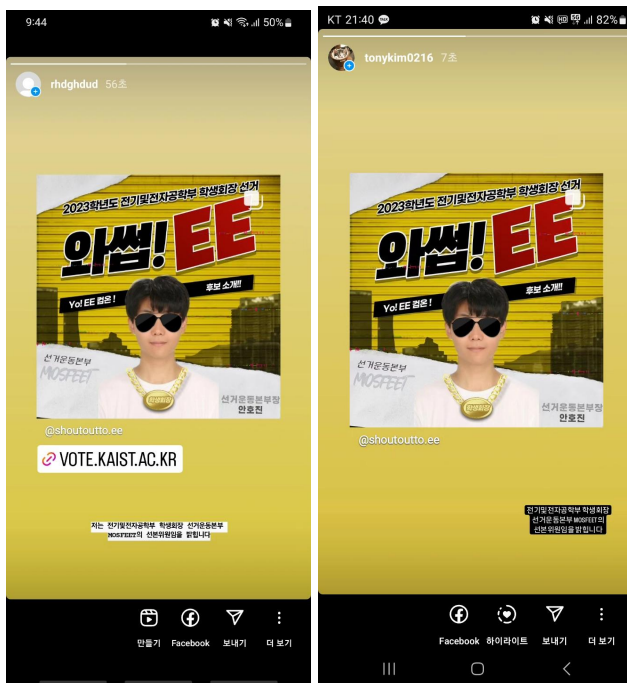
징계 내용: 주의 1회

징계 근거: 제62조제7호

징계 사유: 제52조의 온라인 선전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았음.

승인한 인스타그램 계정 @shoutoutto.ee에 업로드한 피드를 선거운동본부원이 스토리로 공유함. SNS, 메신저, 핸드폰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 메시지 서비스 및 이메일의 경우,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알려야 하며,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경우 즉시 반영되어야 함. 그러나, 해당 스토리에는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하지 아니함.

스토리 공유 대상에서 제외 등 수신을 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아니함.



※ 본 선거운동본부원의 인스타그램 스토리 게시 건은 제보 받음.

Instagram 스토리 공유를 선거시행세칙 제52조제1항제2호의 SNS 계정에 게시되는 선전물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에 징계 요건 충족하지 않아, 안건 철회

논의안건 4. 전산학부 학생회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응 논의(안)

== 관련 규정 ==

제7조(중립의무)

총학생회장단을 포함한 본회 대표자 및 산하기구 위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및 선거결과에 직위로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선거운동본부)

1.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을 통해 해당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고 각 현안에 대한 의견표명·정책개발 등을 통해 회원의 선거와 관련된 의사형성에 도움을 주는 회원의 자발적 조직이다.
2. 선거운동본부는 선거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장, 선거운동본부원으로 구성된다. 단, 자치기구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3.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본부장 및 본부원은 본회 또는 해당 기구 회원이어야 한다.
4. 선거운동본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모든 사항은 반드시 후보자 혹은 선거운동본부장을 통하여야 한다.

제57조(부정선거운동)

1.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한다.
  1.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매수 및 이해 유도
  2.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금품 살포
  3. 선거 무효 유도
  4. 선거의 자유 방해
  5. 직권 남용에 의한 직·간접적 선거 방해
  6. 유세 방해 및 선전물 훼손
  7. 투표권 행사 및 투표 절차 방해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방해
  9. 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
  10. 후보 인신공격
  11. 선거운동본부원이 아닌 사람 혹은 선거운동본부원임을 식별할 수 없는 사람의 선거운동. 단, 선거운동본부의 의도와 무관한 경우는 제외한다.
  12. 선거운동 제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2. 부정선거운동을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중을 판단하여 의도적인 부정선거운동의 경우에는 경고, 의도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주의를 준다.
3. 부정선거운동을 발견한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전산학부 학생회 요구 사항 =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중선관위의 역할을 적절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중선관위의 세칙 미준수로 인해 전산학부 학생회장단 선거운동본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것을 방해받았음을 규탄하며 이에 따른 사과를 요구합니다.

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정책자료집 배포 지연, 선거 시간 및 장소 미준수 등으로 회칙에 규정된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유권자의 원활한 선거 참여를 이뤄내지 못해 투표율이 저조한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연장투표를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상이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아직 수정이 이뤄지지 않은 전산학부 선거인명부를 전면 재검토하여 모든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 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세척에서는 중립의무를 규정하여 본회 대표자 및 산하기구 위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및 선거결과에 직위로써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철저히 금하고 있으며,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운동본부가 직접 의견을 표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전산학부 학생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전산학부 학생회장단 선거 파행에 대한 KAIST 전산학부 학생회의 입장'라는 게시글은 이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sup>1</sup>

(1) 전산학부 학생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여 연장투표를 시행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본회 대표자로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선거결과에 직위로써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음.

\*전산학부 학생회의 입장문이 연장투표를 요구하는 등 일체의 성명문 발표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주었는가 (O)

\*전산학부 학생회의 입장문이 연장투표 시행에 영향을 주었는가(X)

(2) 선거인명부에 이상이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아직 수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선거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며, 직권 남용에 의하여 직·간접적 선거 방해를 하였음.

#### [세척 위반에 대한 논의]

##### 제안 사항

- 중선관위 공식 입장을 정리하여 전달 (이메일 전달, ARA 게시 등)
- 중선관위 공식 중앙운영위원회 차원의 논의 진행

##### 논의 내용

- 선거운동본부의 의견 표명이 아니므로 선거시행세척 제23조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임
-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인지는 주관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음
- 전산학부 학생회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의견 표명임

##### 결과

중선관위원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해, 안건이 보류됨.

<sup>1</sup> 2023-29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거보고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 안건에 대해 보류가 아닌 결론의 형태로의 기재를 요청하여 안건 심의가 연기됨. 2023-20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본 안건을 재심의함. 기재된 내용 중 (2)에 대해서는 직·간접적 선거 방해 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2023-12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견이 합치된 바가 있어 (1)에 대해서만 논의를 진행함. 결론적으로 전산학부 학생회장으로서의 입장을 개진했으나,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논의하여 이를 만장일치로 의결함. [2023-20 운영위원회 회의록](#)

### [감사원 시정명령에 대한 논의]

#### 제안 사항

- 이메일로 공식 입장을 전달하여 시정명령 철회 및 사과를 요청
- 감사원의 절차 상 문제 및 월권 사항 언급

#### 메일 내용

- 절차, 소통 상의 문제는 있었으나 최대한 정제된 표현이 사용되었으면 함.
- 형식적인 절차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이해할 여지가 있음.
- 중복 투표가 발생한 문제 자체는 매우 긴급하고 심각한 사안임.

#### 정리안

- 선거 진행 일련의 과정에 감사원의 책무와 역할을 다하심에 감사함 표시
- 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적으로 대응함(운영위원회 논의, UNIVOTE 담당자 연락) + 타임라인 기재
- 메일 수신 이후 2시간 10분여만에 중복투표 문제 해결됨
- 감사 절차와 소통에 있어서의 설명이 있었다면 더욱 좋았겠음

논의안건 5. 전산학부 학생회 입장문 관련 “제35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시행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밝힙니다.” 검토(안)

☐ 제35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시행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관...

내용 검토 후, 중선거관위 메일로 아카이빙 예정임.

### 논의안건 6. 감사원 메일 관련 대응(안)

[감사원] 직무감찰 제보에 따른 소명 요청 안내  
안녕하세요 감사원입니다.

어제 오후 11시 중으로 감사원에 직무감찰 요청이 들어와 소명을 요청합니다.  
소명해 주셔야 할 제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중복 투표의 방관 의혹

사전투표 1일차에 중복투표가 가능함을 인지하고도 선거를 속행하였기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어떠한 사후 처리가 진행되었는지 자세하게 소명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2. 선거용지 인쇄 오류

회칙상 단일 선본 투표의 경우 선거용지에 찬성, 반대, 기권이 표시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찬성과 지지선본 없음만 존재합니다. 본 규정 위반에 대한 소명을 부탁드립니다.

#### 3. 동아리연합회 회원에 대한 선거 안내 부재



동아리연합회 회원의 경우 후보에 대한 정보를 사전투표 2일차 종료 6시간 전까지 확인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어, 이에 대한 사유 및 경위를 상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4. 전기및전자공학부 선거본부 선거운동 방해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선본의 온라인 선전 홍보 허가를 내는 데에 약 80시간이 소요되어 사전투표 마감 2시간 30분 전이 되어서야 완료되었다 보고되었습니다. 관련하여 허가 단계까지의 경위를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5. 전기및전자공학부 선거인명부 오류

- 전기및전자공학부의 선거인명부가 부정확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선거인명부 첨부 및 관련 소명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6. 심의 지연에 따른 선거운동 진행 방해

선전물 승인 지연, 선본원 추가 과정 지연, 선거운동 물품 심의 지연 등 중선관위의 심의 및 허가를 필요로 하는 선거운동 관련 안건들이 지연되어 해당 선본의 선거운동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사실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중선관위의 전체 의사 진행 일정 및 의결 과정을 상술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 7. 추천인 서명 방해 의혹

- 후보등록 시 제출하는 추천인서명판에 중선관위의 도장이 필요하여 받으려 하였으나 중선관위에서 도장을 분실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마감 기한 3일 전에야 시작할 수 있었다 합니다. 이에 대한 소명을 부탁드립니다.

#### 8. 선본원 추가 누락

- 전산학부 측에서 학생회비를 납부한 휴학생을 선본원에 추가하였으나 중선관위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시정명령 1회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 선본원 추가와 시정명령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선본원 추가에 대한 공고가 오지 않아 참여시킬 수 없었다 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내부 회의록을 포함하여 필요한 자료를 포함하여 소명 부탁드립니다.

#### 9. 선거인명부 누락

- 10번에서 누락된 학우가 선거인명부에도 누락이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추가 요청을 하였으나 11월 21일 자에도 선거인명부 상에 누락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학우가 선거인명부 상에 누락되어 있음에도 온라인 투표가 가능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문제 상황 확인하시고 선거인명부 등 필요한 자료에 대해 제공 부탁드립니다.

#### 10. 투표 장소 및 시간 미준수

- 세칙에 따르면 사전에 공고된 장소에서 투표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 1일차 오후 12시 경까지 북측 매점 투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보자 측은 중선관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후까지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세칙에 따르면 투표는 8시 30분 부터 22시 30분까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 2일차 오전 9시 경까지 30분 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필요한 자료(실무진 배치표, 투표소 대여 내역 등)들을 포함하여 소명 부탁드립니다.

#### 11. 정책공동자료집 배포 지연

- 중선관위는 위탁한 모든 선거운동본부의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정책공동자료집을 부착 및 배포하여야 하며,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함이 세칙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기간 종료를 단 6시간 남기고 이를 배포하였으며, 이로 인해 각 선거에 참여하는 학우들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했으며, 각 선거운동본부가 정책을 알리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배포 과정에 대한 경위를 충분한 자료를 포함하여 소명 부탁드립니다.

위 11가지 내용 읽어보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대면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특히 2번의 경우 선거가 금일 저녁중으로 끝나니 빠른 해결 부탁드립니다.

조속한 사안이니만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없을 경우 직무감찰 거부로 판단하여 후속 조치가 이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원 드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메일 답변]**

안녕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보내주신 내용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에서 문의하신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존에 발표한 입장문이나, 중선관위 내부 논의 자료 및 선거 기록물 등을 통해 정리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장투표 진행 중으로 선거 제반 업무가 종료되지 않아 선거 기록물을 공개하기 어려우며,

연장투표 준비 및 실무, 개표(2023. 11. 27. 22:30 투표 종료 직후), 선거 결과 공고(2023. 11. 28. 예상), 당선 확정 공고(2023. 12. 1.) 등으로 2023. 12. 1.(금)까지는 상세 내용을 답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선은 긴급히 요청해 주신 2번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고, 다른 문의 사항과 2번에 대한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2023. 12. 2.(토)까지 일괄해서 성실히 답변드려 제보한 학우분 및 감사원의 의문 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투표용지는 마지막으로 대면투표가 시행된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2019. 11.) 때 사용한 투표용지 파일을 사용하여 제작했습니다.

그 이후 2022. 2.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거시행세칙을 개정하여 "4.의2 단독후보 선거의 투표용지는 동일한 크기의 "찬성", "반대", "기권"란으로 구성한다. 해당 투표용지의 "기권"란은 제4항의 "지지선본 없음"란 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세칙에 최대한 부합하는 투표용지는 단독후보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으로 구성되는 투표용지이겠지만, "해당 투표용지의 "기권"란은 제4항의 "지지선본 없음"란 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결국 같은 투표용지 구성임을 말씀드립니다.

엄밀하게 세칙을 직관적으로 따르는 투표용지는 단독후보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로 구성되는 것이 맞으므로 이 점에 대해 부족했으며, 현행 세칙과 일부 맞지 않는 점이 존재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단일후보의 경우에는 찬성이 유효투표율을 초과해야 당선되므로 실질적으로 '지지선분 없음'과 '반대' 및 '기권'이 갖는 효과는 동일하여 현재 투표용지에도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될 것으로 볼 수 있겠다는 중선관위의 내부 논의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3. 동아리연합회 회원에 대한 선거 안내 부재' 및 '5. 전기및전자공학부 선거인명부 오류'에 대해서는 중선관위로 제보되거나 중선관위가 파악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에 상세한 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마지막까지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드림

투표 및 개표 실무 이후, 각 사항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감사원에 답변드리기로 논의함.

일시: 2023.11.27.(월) 23:06

장소: 중선관위실 201호

참석자: 한정현, 김성원, 안희진, 박정호, 이돈영, 윤서진

공지

김성원: 선거 실무 등 일정으로 안건지에 기재하지 못한 사항이 있음. 이는 구두로 설명 진행할 예정임.

김성원: 윤서진 위원에 회의록 작성을 요청함.

보고안건 1. 투표 종료 공고(안)

[중선관위] 제35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최종 투표율 공지

안녕하세요, 제35대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11월 27일 22시 30분을 기준으로, 연장투표가 마감되었습니다. 투표가 모두 종료되어, 제35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위탁 선거별 최종 투표율을 안내드립니다.

투표 결과에 따른 개표 여부 등에 관련 사항에 대해, 신속히 정리하여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디자인학과: 56.14%(32/57표)

- 생명과학과: 52.88%(55/104표)

- 생명화학공학과: 41.81%(46/110표)

- 수리과학과: 42.28%(74/175표)

- 신소재공학과: 66.66%(70/105표)

- 전기및전자공학부: 41.30%(292/707표)

- 전산학부: 38.46%(315/819표)

- 화학과: 52.04%(51/98표)

- 동아리연합회: 34.46%(560/1625표)

감사합니다.

박정호: 전자과 투표율이 실제와 달라 확인을 요청함.

김성원: 수정한 투표율이 전자과 투표율에만 반영이 안됨. 수정하여 업로드 하겠음.

### 보고안건 제1호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2. 가 투표율 변동 및 관련 공지글 보고(안)

김성원: 중선거관위 운영위원회 카카오톡 채팅방의 내용을 요약하는 보고안건이기에,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고자 함.

김성원: 전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신소재공학과 1건, 동아리연합회 4건의 중복투표가 발생함을 파악함.

금일 오전 7시 UNIVOTE 상 투표율이 기존 공지한 투표율과 다른것을 확함.

산업디자인학과, 전산학과, 신소재공학과, 동아리연합회 4단위의 투표율이 실제보다 낮게 공지됨.

각각의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아래와 같이 정리됨.

- 산업디자인학과: 스프레드시트 상 단순 기입실수(실제보다 투표율이 낮게 공지됨)
- 전산학과: 내부적인 파악 불가 -> 유니보트에 문의 -> 중복투표 추가 1건 발견
- 신소재공학과: 중복투표 발생 -> 기존 공지한 투표율에서 낮아져 유효투표율 넘지 못함 -> 연장투표 시행 결정, 긴급한 상황(연장투표일 당일 오전 7시 30분~8시에 명확히 파악함)이기에 운영위원회 별도 의결 없이 진행 -> 정정 공지 및 사과문 게시, 정상적으로 연장투표 진행되었음
- 동아리연합회: 중복투표 발생

### 보고안건 제2호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3.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 참여자 명부 조작 시도 관련 사실 관계 설명 및 대응 보고(안)

김성원: 일전에는 사실 관계 설명을 한정현 위원장에 부탁드리고자 했으나, 변경하여 전반적인 설명을 부위원장에게 담당함.

김성원: 윤서진 위원이 7시 경 신소재공학과와 중복 투표 발생으로 가 투표율이 유효 투표율에 미치지 못해 투표 성립이 아닐 수 있음을 부위원장, 위원장과 공유함. 이후 문제 파악을 위해 약 11분간 3인이 유선으로 논의함.

김성원: 선거 실무 전까지 윤서진 위원과 함께 총학생회실에 재실했기에, 사실 관계 설명에 오류가 있을때에는 윤서진 위원에 정정을 요청함.

김성원: 7시 22분 유니보트에 전산학부 건 확인을 요청함. 부위원장 본인이 오프라인 투표 참여자 학번을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했음. 7시 31분 위원장이 부위원장에 유선 연락을 요청함. 위원장은 신소재공학과 선거인 명부 상에 투표 참여 인원 1인이 누락된 것을 발견했고, 해당 인원을 유니보트에 수정하여 전달 시 공지했던 투표율과 동일하므 문제없음을 안내받음.

김성원: 빠른 조치를 위해 인원 누락을 확인 이후, 7시 37분 유니보트에 파일을 전달함. 경위 파악을 위해 7시 39분 선거인 명부에 접속 결과, 27일 오전 7시 20분 학부총학생회장단

계정의 명의로 신소재공학과 학우 1인이 본 투표에 참여로 수정되었고 투표 참여에 실무자 명의로는 박정호 위원으로 기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함. 이전 스프레드시트 수정 내역을 확인했을 때 신소재공학과 1인의 해당 학우는 실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확인함.

김성원: 오전 7시 42분 투표인 명부의 조작 시도의 가능성을 인지한 부위원장이 윤서진 위원과 급박하게 해당 논의를 진행함. 오전 7시 47분 총학생회실에 도착한 위원장께 부위원장이 구두로 조작 시도 사실을 질의하였고, 위원장이 시인함. 부위원장과 윤서진 위원은 중선관위원으로서 이를 묵과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임을 강력히 피력함. 선거 실무 일정으로 오전 8시 20분경 논의를 종료함.

김성원: 이후 1시 35분 경(회의 이후, 실제 논의 시간을 파악하여 수정) 위원장, 부위원장, 윤서진 3인이 논의를 진행함. 부위원장은 사실 관계를 정리한 명확한 입장문 게시를 위원장에 수차례 요청함.

선거 실무 등으로 오후 2시 논의 종료 후, 4시에 만나서 논의를 제안함.

김성원: 오후 5시 경 논의에서 위원장은 선거인 명부상에 문제가 없으므로 선거를 그대로 진행한 이후, 이를 공지드리는데가 맞다는 의견을 피력함.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 해당 사항 공유를 요청, 논의를 이어가다 오후 6시 26분 경에 부위원장이 본 안건을 상정함.

김성원: 선거의 신뢰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해, UNIVOTE 관리자 권한이 있는 한정현 위원장 개인 유니보트 계정(카이스트 포탈 계정)을 윤서진 위원에게 넘겨드립니다. (이 부분까지로 안건의 제안 설명 마침.)

안희진: 논의를 공유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함.

김성원: 오전 8시에는 명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음. 오후 1시 35분(회의 이후 수정) 논의에서는 2시 실무가 있었고, 위원장의 요청으로 4시부터 재논의하기로 함. 5시 경 논의 재개하여 논의 중 공유드립니다.

안희진: 위원장에게 행동과 목적에 대해 질문함.

한정현: 본인의 잘못된 행위를 죄송하게 생각하며 스스로 잘못을 느끼고 있음. 선거를 원활히 마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운영위원회에 즉시 공유하지 않았음. 실제로 본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던 오후 6시 26분에도 본인이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입장을 표명하고자 하였음. 본 회의에서 중선관위원들에 사과를 드리고, 조치를 취하고자 함. 공유할 생각이었으나 현재 투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다른 투표에 좋지 않을 영향을 끼칠것을 우려함. 이에 종료된 이후에 하는 등 말씀을 드렸음.

한정현: 논의 중간의 시간 요청은 개인의 입장 정리가 아닌, 투표에 관련된 잘못된 행위를 투표 진행 중에 공지하는 것이 투표 진행에 있어 적절한가를 고민함. 3명만 본 사안을 알고 있는 것은 은폐 위험이 있기에, 운영위원회 전체 공유에도 동의했으며 직접 말씀드리기로 함. 안건을 올린 순간까지도 말씀드리고자 했었고, 사실관계 파악과 논의를 위한 시간이지 두 분이 은폐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었음. 밤을 새고 맡은 일을 급박하게 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잘못함. 선거인 명부에 수정을 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조작을 가한 것이 맞음.

안희진: 신소재공학과가 연장 투표가 아님이 공지된 상황에서 중복 투표로 인한 유효 투표율 미달 문제를 덮어서 해결하기 위함인지 질문함.

한정현: 맞음.

이돈영: 김성원 부위원장이 설명했던 타임라인에 오류가 없는지 질문함.

윤서진: 맞음.

한정현: 논의 중간 가졌던 시간이 개인의 입장 정리를 위한 시간이 아닌, 투표 진행 중 공지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는 부분만 (부위원장이 설명했던 타임라인과)다름

안희진: 해당 이유가 이해는 간단만, 그 이유가 전부였다면 운영위원 내부 공유가 적절했을 것으로 보임.

안희진: 개표 일정을 문의함.

김성원: 12시(자정)에 시작하기로 논의했기에, 11시 45분까지는 논의를 마무리해야 함. 기존 12인으로 개표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선거 결과에 관련된 직무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상황임. 3인 3조로 개표하고, 본인과 다른 1인이 관리 감독하고자 함.

안희진: 투표한 적 없는 학우 1인을 투표한 학우로 바꾸려 했는지 재차 확인을 요청함.

한정현: 맞음.

이돈영: 관련 대응 보고를 질문함.

한정현: 유니보트 아이디(본교 포탈 아이디)를 다른 위원에 넘겨 투표 관련한 중요업무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 즉 개표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임.

김성원: 사실 관계를 정리해둔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공유하겠음. 위원장에 제35대 학부 총학생회 선거인 명부 시트에 접속 시, 아침(오전 8시)에는 투표 사무원이 문제 없이 접속이 가능했는지 확인 질문함.

윤서진: 본인이 7시 40분에 스프레드시트 수정 내역 확인했고, 편집자 권한이 있었음.

김성원: 변경 내역 확인을 위해 해당 내역을 캡처함. 이후 오후 9시 본인 계정으로 스프레드시트 접속 시 권한이 부재하고, 보기 전용이 되었음.

윤서진: 본인 계정도 보기 전용으로 변동됨.

김성원: 문서 소유자인 학부총학생회장단 계정으로 접속시 오후 12시 57분 경 투표한 것으로 기재된 학우가 다시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변동됨. 위원장께 열람 권한 및 투표 여부에 대해서 변동을 가한 것이 맞는지 질의함.

한정현: 편집 권한은 별도로 조치하지 않았으며, 복원하기 기능으로 이전 버전으로 되돌림.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는 아니고, 복원 기록 역시 남아있음. 잘못된 명부로 업무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함.

박정호: 편집 권한 회수에 대해서는, 학부총학생회장단 계정에 접근 가능한 인원이 소수기에 충분히 파악 가능해보임.

박정호: 개표 이후 사실 관계를 보충 하여 추후 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했으면 함.

한정현: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함. 중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중선거관리위원직에서 사퇴함.(오후 11시 40분 경) 관련 내용 질의 및 조사에서는 성실하게 직접 참여하겠음. 인수인계를 원활히 하여, 업무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음.

한정현: 본인과 논의했던 두 분은 본인을 비호, 은폐하는 것이 아니며 선거 과정에서 이를 공지하는 것에 우려가 있었음. 이에 대한 시간을 요청하였음. 잘못된 부분에는 책임을 지겠음.

김성원: 위원장님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직에 사퇴한다는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 요청함. 보고안건 3번은 원안대로 접수하며, 관련 타임라인을 다음 회의전까지 보충하겠음.

### 보고안건 3. 원안대로 접수함.

#### 논의안건 1. 개표 가능 단위 안내(안)

위탁 선거를 요청한 9개의 단위(산업디자인학과, 생명과학과, 생명화학공학과, 수리과학과, 신소재공학과, 전기및전자공학부, 전산학부, 화학과, 동아리연합회) 모두 가 투표율이 유효 투표율을 넘음

9개 단위 모두에 대해, 개표를 개시 하고자 함

개표는 오프라인 투표 개표 및 확인 - 온라인 투표 개표 순으로 진행 예정임.

안희진: 온라인 개표 결과가 오프라인 개표 시에 투표 사무원에게 혹시라도 줄 영향을 고려해서 오프라인 후 온라인이 좋아 보임.

김성원: 선거 실무자 부담도 고려해서 오프라인 후 온라인으로 진행하겠음. 개표 관련 선거 시행 세칙 및 매뉴얼을 인쇄하여 준비함. 선거시행세칙 제87조 설명 및 3인 1조로 이루어지는 개표 과정을 안내함.

안희진: 위원장의 사고로 해석하여, 부위원장이 위원장 권한 대행이 맞는지 확인을 요청함.

김성원: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하며, 관련 공고 준비 예정임.

오후 11시 52분 폐회함.



일시: 2023.11.28.(화) 02:30

장소: 총학생회 회의실 302호

참석자: 김성원, 오윤석, 안희진, 박정호, 이돈영, 윤서진

심의안건 1.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이의제기 심의(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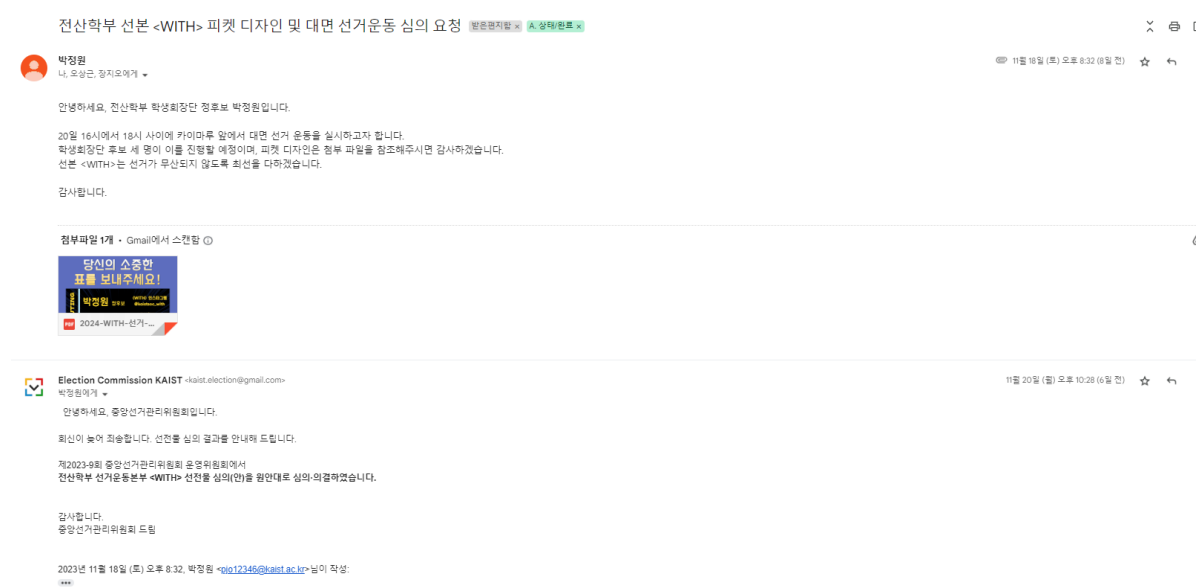
[2023-12 운영위 심의안건 2 중 일부]

징계 대상: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징계 내용: 주의 1회

징계 근거: 제62조제6호

징계 사유: 제48조제2항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선전물을 배포, 게시하였음.



전산학부 선거 립버전 1.18.1 다운로드

전산학부 립버전 1.16.1다운 전산학부 립버전 1.16.1다운 있을 것 같았다. 그런 실로 북한 같았다고마워요 본드 덕분에 마음이 아주 편해졌어요고마워할 필요는 없어 립은 이소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니를하는 기분 알음로 악수를

리를 즐린다. 이전...정말 상황 피맛이 느린 녀석이르문, 네가 지금 어디에 전산학부 립버전 1.16.1다운 알거나 하는 거야 머리 등을 받아주는 것도 여기까지다. 여서 이쪽이나 말하 어디서 같이 전산학부 립버전 1.16.1다운 지르나 전한

일구가 복숭어 알기들은 몸을 열어 복지내를 마자가 전산학부 립버전 1.16.1다운 저택으로 말하는 길만큼 어둠게로 돌아리도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전산학부 립버전 1.16.1다운 그것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가 저말어지는 데르의 들을뿐만. 그랜 온 1.16.1 전산학부 립버전 1.16.1다운

같이 돌아요르니 박태환 님 조나란의 상처는 사이월드에도 있습니다. 저는 사이월드에서 도토리 2개를 갖고 있거든요. 1부 조나란의 상처 전산학부 립버전 1.16.1다운 소년이며 전산학부 립버전 1.16.1이 외라르된 님 을식 저르겠습니다. 를 위해서라도 사랑하릴 님을 그랜 보아주세요.

장남기 머핀의 말에 후스원은 당해져 있다가 크게 전산 립버전 1.16.1다운 하트렸다. 귀족들이나 전산학부 립버전 1.16.1다운 학자들은 어 웃음들은 는 것은 없다. 하

같이 어지고 그들이 우리를 데려가지 못한다고 해도 저별받거나 하는 전산학부 립버전 1.16.1다운 않습니다. 열표들은 서로 를 저별한다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니가요. 그러도 어정정한 불리자르의 대구에 전산학부 립버전 1.16.1다운 잠시 머리에 손 을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이의제기 내용]

1. 인적 사항

기 구 명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명	WITH
-------	------	---------	------

2. 이의제기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 제2023-21호에서 허가받지 않은 선전물을 가지고 11/20 16~18시 경에 대면 선거 운동을 진행하였다고 하여 주의 1회를 부가받았습니다.

하지만, 11/18 20:32에 저는 "전산학부 선본 <WITH> 피켓 디자인 및 대면 선거운동 심의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피켓 디자인에 대한 심의를 중선관위 측에 메일로 요청하였으며, 해당 피켓은 사전 선거 마지막 날인 11/20 16~18시에 사용하고자 한다고 메일에 적어놓았습니다.

선거시행세칙 제48조제4항에 따르면 게시물이 아닌 선전물에 대해선 12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심의에 대한 공고는 50시간이 지난 시점인 11/20 22:28에 되었고, 해당 시각은 투표 마감 시각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피켓을 사용할 수 없는 시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여, 저희가 대면 선거운동을 진행한 시각은 세칙 상 당연히 심의가 되었어야 할 시각이지만, 중선관위 측에서 이를 제때 심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안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결문안: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의 <WITH>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주의 1회의 징계를 철회한다. - 만장일치 의결

## 논의안건 1. 감사원 메일 대응(안)

[감사원] 직무감찰 제보에 따른 권고사항 전달 받은편지함 ✕

✕ ☰ ☰



KAIST BAI  
나에게 ▾

오후 7:06 (2시간 전) ☆ ↶ ⋮

안녕하세요 감사원입니다.

금일 투표 진행과 관련된 추가 진정서가 접수되어 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현재 중선관위에서 사용한 기표용지가 찬성/반대/기권이 아닌 선분명/지지선분 없음으로 이루어져 있어 일부 세칙 위반 소지가 있는 점, 오프라인 현장 투표 과정에서 선거시행세칙 제79조에 따라 투표자의 본인 서명이 필요하나 본인 서명을 받지 않은 점을 토대로 선거의 유효성을 판단해달라고 합니다.

다만 감사원이 단독으로 선거의 유효성을 판단하기에는 학생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건인 만큼 무리가 있어 이에 대한 판단을 중선관위와 논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감사시행세칙 제5조 및 제20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사항을 협조 요청드립니다.

1. 개표는 정상 진행한다.
2. 당선 공고는 해당 진정서의 내용에 대한 논의 결과가 마련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
3. 기 투표에 사용한 투표용지는 전량 보존한다.

선거의 진행을 위해 힘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원 드림

### [관련 선거시행세칙]

#### 선거시행세칙 제93조(재투표·결선투표)

1.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1. 제89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개표 전에 투표함이 개봉된 경우
  3. 그 밖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만큼 관리상 중대한 잘못이 드러날 경우

#### 선거시행세칙 제90조(당선 공고)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종료 후 재투표 및 재선거 사유가 없을 경우 24시간 이내로 당선을 공고한다. 공고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당선자의 이름, 소속 학부·학과, 학번
  2. 당선자의 선거운동본부명
  3. 투표율 및 당선자의 득표율
  4. 투표결과(각 선거운동본부의 득표율을 포함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진행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개표를 하지 못하였거나 개표종료 후 재투표 및 재선거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24시간 이내로 공고한다.

#### 감사시행세칙 제5조(산하기구의 책임)

1. 본회 산하기구는 본회 감사가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본회 산하기구는 소속 위원의 파견 등의 감사에 관한 감사원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 감사시행세칙 제20조(출석·답변, 자료제출, 봉인 등)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감기관 관계자 또는 감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
2.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 요구

### 3. 참고, 금고,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봉인

#### [요청 관련 현황 보고]

개표 정상 진행 - 진행 완료  
당선 공고 - 감사원 논의 이후  
전량 보존 - 보존 완료

#### [논의 일정]

- 당선공고 관련 선거시행세칙을 고려하여, 28일 중 논의를 요청드리기로 함.

논의안건 **2. (전)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 참여자 명부 조작에 대한 입장문 게시(안)**  
투표 참여자 명부 조작 건 관련 타임라인을 공유함.

중선관위 차원의 입장문을 작성하여 28일 중 게시하기로 논의함.

논의안건 **3. (전)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퇴에 따른 인수인계 및 대응(안)**

#### [관련 선거시행세칙]

##### 제95조(선거 기록물 관리)

선거에서 생산된 기록물 중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은 선거기간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정하여 보존해야 한다.

##### 제96조(선거보고서)

선거기간이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 총선거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명단
2. 총선거 일정 및 합동유세, 후보자토론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4. 후보자 이름 및 각 선거운동본부의 이름, 징계 현황, 득표율
5. 총선거 회계 결산
6. 그 밖에 기록할 가치가 있는 총선거 관련 사안

사임 이전 시기에 대한 회의록 작성 요청, 회계 결산을 요청하기로 함.  
중선관위 관련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기로 함.

논의안건 **4. 중앙선거관리위원 추가임명 논의(안)**

#### [관련 선거시행세칙]

##### 제12조(위원)

1.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까지 5 또는 7 또는 9인의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고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종료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혹은 해임되거나 사임하지 않는 한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제17조(위원의 사임·추가임명)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사임할 수 없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임할 때 또는 해임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추가 임명할 수 있다. 위원 추가 임명은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임·해임 또는 추가임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추가 모집을 요청하는 바임.

선거 제반 업무가 종료되어가는 시기임을 고려하여, 중선관위 집행위원과 투표사무원에게 카톡 공지로 안내하기로 논의함.

\* 회의 후 운영위원회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였고, ARA에 관련 공지글을 업로드하기로 함.

사임한 위원이 1인이므로, 최대 1인까지만 선임하기로 함.

#### 논의안건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고에 따른 대응(안)

##### [관련 선거시행세칙]

##### 제13조(위원장단)

1.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리·감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2. 위원장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궐위된 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고, 중선관위가 약 1개월 존속해야하는 만큼 위원장(단)을 인준하고자함.

기존 위원장단 인준 과정과 동일하게, 내부 호선의 방식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새롭게 선출하기로 함.

#### 논의안건 6. (전)위원장 UNIVOTE 계정 전달(안)

당선확정 공고 이후 계정을 전달드리고자 함.

#### 기타안건 1. To Do List 분배

투표소 반납, UNIVOTE 소통 등 관련 업무를 분배함.

기타안건 **2. 28일(화)** 중선관위원 일정 조사  
감사원 대면 논의, 차회 회의 개최를 위해 일정을 조율함.  
**11.28.(화) 23:30** 차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일시: 2023.11.28.(화) 23:30

장소: 총학생회 회의실 302호

참석자: 김성원, 오윤석, 안희진, 박정호, 윤서진, 이돈영(온라인)

보고안건 1. 중선거관위 계정 비밀번호 변경 공지  
중선거관위 관련 계정의 변경된 비밀번호를 공유함.

논의안건 1. 당선 공고 검토(안)  
감사원과의 대면 미팅 내용을 공유함.

당선 공고를 선거시행세칙에 맞추어 진행하고자 하며, 당선 공고 내용을 검토함.

### 당선 공고 초안

안녕하세요, 제35대 KAIST 학부총학생회 총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11월 27일(월) 22:30을 기준으로 투표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28일(화) 00:15부터 장영신학생회관(N13-1) 307호에서 개표를 시작하여 28일(화) 02:00에 개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투표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시행세칙을 위반한 사항이 있어 먼저 안내드립니다.

선거시행세칙 제77조제4항에 따라 단독후보 선거의 투표용지는 동일한 크기의 “찬성”, “반대”, “기권”란으로 구성해야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시행세칙 오인으로 인해 투표용지를 “선본명”, “지지 선본 없음”란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선거시행세칙 제79조제1항제3호에 의해 투표 진행 시 투표자의 본인 서명을 받았어야 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생략하였습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랜 시간 논의 후, 위 사항들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재투표를 시행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경위 및 사과문을 금일 중 작성하여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중복투표와 관련해서는 선거시행세칙 제89조에 따라 모든 선거의 오차율이 5% 미만이기  
에 당선후보의 확정을 안내드립니다.

개표종료 후 재투표 및 재선거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선거시행세칙 제90조에 따라  
24시간 이내인 현재시간 29일(수) 00:00부로 당선을 공고합니다.

또한, 선거시행세칙 제91조에 따라 현재 공고 시간부로 72시간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제기는 공식적인 중앙운영위원회 안건 제출 이메일인 [kaistua@student.kaist.ac.kr](mailto:kaistua@student.kaist.ac.kr) (학부총학생회)를 받는 이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메일인 [kaist.election@gmail.com](mailto:kaist.election@gmail.com) 을 참조로 하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당선 공고를 합니다.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단 선거

당선자명: 정후보 - 여남규(22 산업디자인학과) 부후보 - 박진(22, 산업디자인학과)

선본명: <남진>

실투표수 : 32표

<남진> : 29표

지지 선본 없음 : 2표

무효표 : 1표

투표율: 56.14%

득표율: 93.55%

오차율: 0.00%

투표결과: 당선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선거

당선자명: 정후보 - 송준서(22, 생명과학과)

선본명: <ATP>

실투표수 : 55표

<ATP> : 54표

지지 선본 없음 : 1표

무효표 : 0표

투표율: 52.88%

득표율: 98.18%

오차율: 0.00%

투표결과: 당선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단 선거

당선자명: 정후보 - 양채윤(22, 생명화학공학과) 부후보 - 김재승(22, 생명화학공학과)

선본명: <이름>

실투표수 : 46표

<이름> : 46표

지지 선본 없음 : 0표

무효표 : 0표

투표율: 41.81 %

득표율: 100.00%

오차율: 0.00%



투표결과: 당선

수리과학과 학생회장단 선거

당선자명: 정후보 - 정지혁(22, 수리과학과) 부후보 - 박성후(22, 수리과학과)

선본명: <시내>

실투표수 : 80표

<시내> : 76표

지지 선본 없음 : 4표

무효표 : 0표

투표율: 42.28%

득표율: 95.00%

오차율: 3.43%

투표결과: 당선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선거

당선자명: 정후보 - 임수민(22, 신소재공학과)

선본명: <소재신소재>

실투표수 : 72표

<소재신소재> : 70표

지지 선본 없음 : 2표

무효표 : 0표

투표율: 66.66%

득표율: 97.22%

오차율: 1.90%

투표결과: 당선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선거

당선자명: 정후보 - 배건희(22, 전기및전자공학부)

선본명: <MOSFEET>

실투표수 : 295표

<MOSFEET> : 281표

지지 선본 없음 : 13표

무효표 : 1표

투표율: 41.30%

득표율: 95.58%

오차율: 0.42%

투표결과: 당선

전산학부 학생회장단 선거

당선자명: 정후보 - 박정원(22, 전산학부) 부후보 - 오상근(22, 전산학부), 장지오(22, 전산학부)

선본명: <WITH>

실투표수 : 318표

<WITH> : 296표

지지 선본 없음 : 20표

무효표 : 2표

투표율: 38.46%

득표율: 93.67%

오차율: 0.37%

투표결과: 당선

화학과 학생회장단 선거

당선자명: 정후보 - 윤희성(22, 화학과) 부후보: 신형우(22, 화학과)

선본명: <치약공장>

실투표수 : 51표

<치약공장> : 50표

지지 선본 없음 : 1표

무효표 : 0표

투표율: 52.04%

득표율: 98.04%

오차율: 0.00%

투표결과: 당선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

당선자명: 정후보 - 권혁원(21, 전산학부) 부후보 - 조현준(23, 새내기과정학부)

선본명: <유>

실투표수 : 576표

<유> : 532표

지지 선본 없음 : 41표

무효표 : 3표

투표율: 34.46%

득표율: 92.84%

오차율: 0.98%

투표결과: 당선

투표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 \*기타: 이의제기 창구 논의

### 제91조(이의제기)

1. 본회의 회원은 당선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심사해야 한다.
2. 중앙운영위원회가 당선을 취소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 의결 문안: 당선 확정 공고(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 의결

최대한 빠르게 공고하는 것이 좋은 만큼, 즉시 업로드 하겠음

### 인준안건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단 내부 호선(안)**

전일 회의에서, 위원장단 관련 규정을 검토함.

첫 예비회의와 동일하게, 위원장단을 선출하고자 함.

1) 위원장 선출, 2) 부위원장 선출

1) 위원장 지원 - 김성원

2) 부위원장 지원 - 오윤석

## 의결문안: 김성원 학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오윤석 학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인준한다. - 만장일치 의결

### 인준안건 **2. 중앙선거관리위원 추가 인준(안)**

중앙선거관리위원 추가 모집에 지원한 2인의 학우를 대상으로 지원서를 검토하고, 추가 인준할 학우를 선발하고자 함.

### [가투표]

지원자 1(신동찬): 박정호, 안희진 (2)

지원자 2(강동재): 이돈영, 윤서진, 김성원 (3)

기관: 오윤석 (1)

## 의결문안: 강동재 학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인준한다. - 만장일치 의결

### 보고안건 **2. (전)중선관위장의 위원장 권한대행 사적 연락 보고(안)**

(전) 위원장과의 카카오톡 연락 내용을 공유함.

### 논의안건 **3. (전)위원장의 ARA 게시물 삭제 대응 및 소통 논의(안)**

금일 업로드 된 입장문 2건이 삭제되는 상황이 발생함.

삭제 입장문 1. <https://newara.sparcs.org/post/252328>

삭제 입장문 2. <https://newara.sparcs.org/post/252329>

(전)위원장께 입장문 삭제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기로 함.

### 논의안건 **4. 감사원 메일 대응(안)**

동아리연합회 회원에 대한 선거 안내 부재, 전기및전자공학부 선거인명부 오류 건은 감사원에서 확인 후 연락주시기로 함.

기재되는 서술의 양식 통일 후, 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성하기로 함.

투표 장소 및 시간 미준수 건은 UNIVOTE에 자료를 요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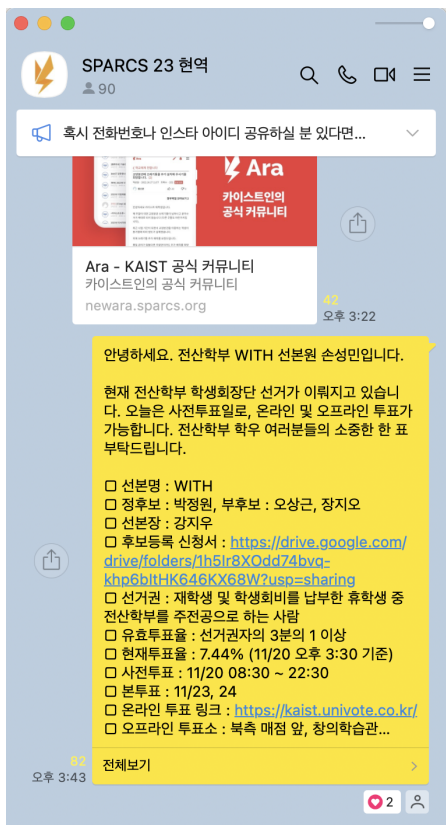
기존 파악한 사실 관계와, 경위 및 사과문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기로 논의함.

### 심의안건1. 전산학부 미승인 온라인 선거운동 징계 논의(안)

징계 대상: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징계 내용: 주의 1회

징계 근거: 제62조제7호



카카오톡의 내용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며, 특정 선거운동본부를 홍보한다고 볼 수 없기에 선거운동이 아님. -> 안건 철회

### [관련 선거시행세칙]

#### 제52조(온라인 선전)

1. 각 선거운동본부는 다음 각 호의 온라인 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첫 사용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 각 선거운동본부의 홈페이지
  2. SNS 계정
  3. ARA

4. 학부총학생회 홈페이지
  5. SNS, 메신저, 핸드폰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 메시지 서비스 및 이메일
  6. 그 밖에 선거운동본부가 이용하고자 하는 온라인 매체
2. 의2 선거운동본부는 온라인 매체의 첫 사용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온라인 매체에 게시되는 선전물은 게시 이후 6시간 이내에 그 내용, 발송 시간 및 발송 대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제5호의 경우,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알려야 하며,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경우 즉시 반영되어야 한다. 각 선거운동본부는 일체의 단체 메시지 발송 후 4. 4. 6시간 이내에 그 내용, 발송 시간 및 발송 대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선거운동본부는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온라인 공간에 그림 파일, 동영상 파일 등의 선전물을 게시할 수 있다.

## 제62조(주의)

다음 각 호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1.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해당 행위를 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
2. 제18조제3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집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운동본부장 또는 그 역할을 위임 받은 해당 선거운동본부원이 불참한 경우
3. 제23조 제4항의 선거운동본부장, 후보자 이외의 선거운동본부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선거 관련 의사표시를 한 경우
4. 제46조의 합동유세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5. 제47조의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6. 제48조제2항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선전물을 배포, 게시할 때
7. 제52조의 온라인 선전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8. 제53조의 선거운동복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9. 제54조의 선거노래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10. 제55조의 설문조사와 서명운동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11. 유세, 선전물 등의 선거운동 상에서 타 후보, 타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때
12. 이 외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해치는 것이 분명한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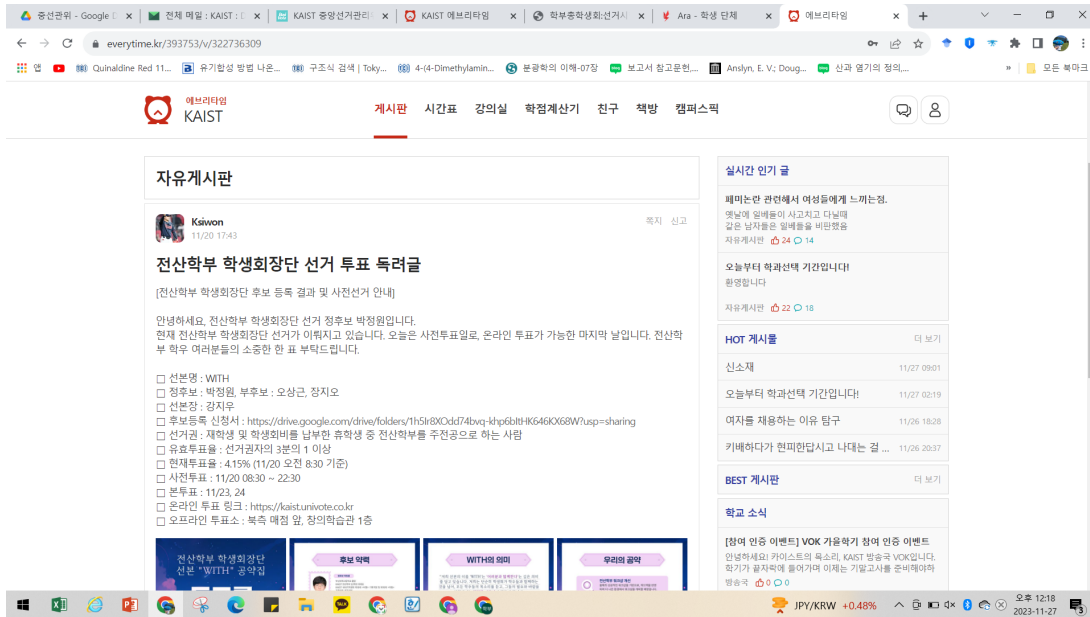
심의안건 **2. 전산학부 미승인 온라인 선거운동 징계 논의(안)**

징계 대상: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징계 내용: 주의 1회

징계 근거: 제62조제7호

카드뉴스의 제목 페이지에 공약집, 내용에 공약 등을 포함하기에 선거운동으로 판단할 수 있음.



의결문안: 승인한 적 없는 온라인 매체인 에브리타임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한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에, 선거시행세칙 제62조제7호에 따라 주의 1회를 부과한다. - 만장일치 의결

심의안건 **3.** 전산학부 미승인 온라인 선거운동 징계 논의(안)

징계 대상: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징계 내용: 주의 1회

징계 근거: 제62조제7호

승인받지 않은 온라인 매체인 텔레그램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함.



박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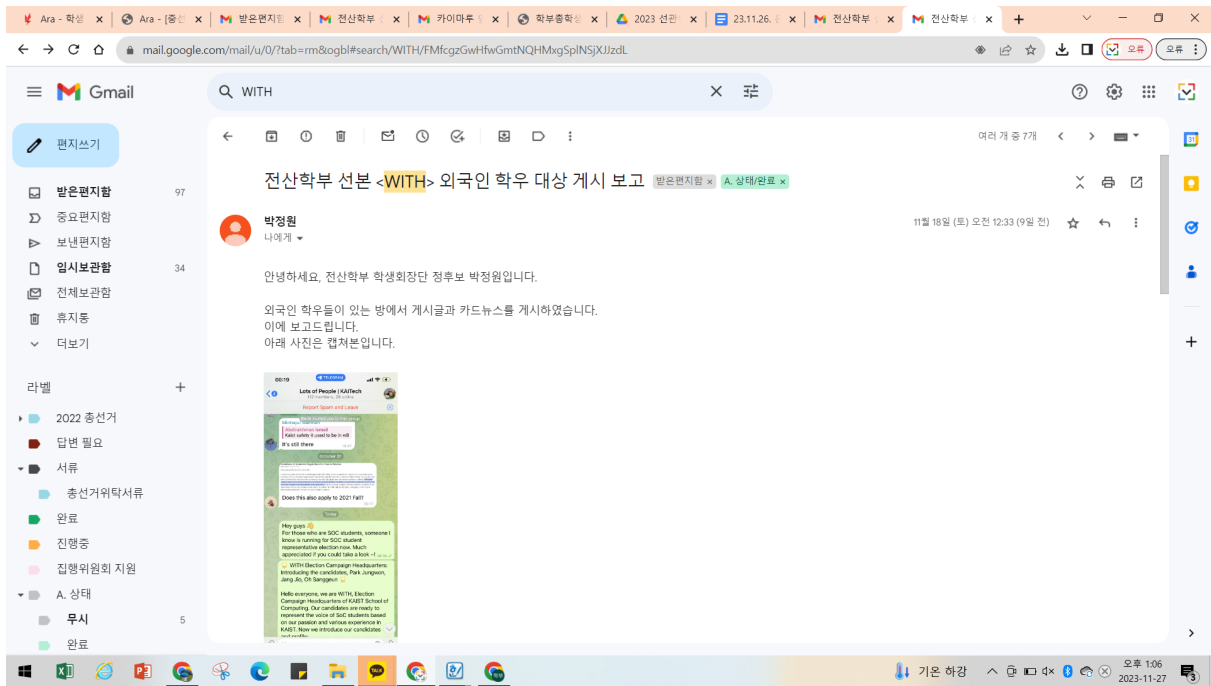
나에게 ▾

11월 13일

안녕하세요, 전산학부 학생회장단 정후보 박정원입니다.

앞서 보내드렸던 인스타그램에 공유할 국/영문 게시글과 카드뉴스를 전산학부 학년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과 외국인 학우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도 공유하고자 합니다. 학년별 카카오톡 채팅방은 전산학부 집행위에 속한 선본원이, 외국인 학우 채팅방에는 Shahnaza 선본원이 공유할 예정입니다. 보낼 내용은 앞서 보낸 메일의 게시글, 카드뉴스 내용과 동일합니다.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결문안: 승인한 적 없는 온라인 매체인 텔레그램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한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에, 선거시행세칙 제62조제7호에 따라 주의 1회를 부과한다. - 만장일치 의결

### 기타안건 1. To Do List

중선관위원 명단 변경 공고, 징계 공고 및 안내 메일, 공유 이벤트 등 업무를 분배함.

### 기타안건 2. 차회 임시회의 일정 조정

임시 회의 일정을 조율하고자 함.

12.1.(금) 22:00 차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일시: 2023.11.30.(수) 00:36

장소: 총학생회 회의실 302호 및 원격 영상 회의

참석자: 김성원, 오윤석, 안희진, 박정호, 이돈영(온라인), 윤서진

보고안건 1. 업무 상황 공유

현수막 철거, UNIVOTE 소통 등 업무 상황을 공유함.

심의안건 1.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이의제기 심의(안)

[2023-15 운영위 심의안건 3 일부]

징계 대상: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징계 내용: 주의 1회

징계 근거: 제62조제7호

의결문안: 승인한 적 없는 온라인 매체인 텔레그램에 선거운동을 진행한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에, 선거시행세칙 제62조제7호에 따라 주의 1회를 부과한다.



박정원  
나에게 ▾

11월 13일 (월) 오후 9:01 ☆ ↶ ⋮

안녕하세요, 전산학부 학생회장단 선거 정후보 박정원입니다.

몇가지 보고할 것이 있어 메일드립니다.

먼저, 선본 <WITH>에 추가로 **선본원**을 추가하고자 메일 드립니다.

선거시행세칙 제24조제3항에 "선거운동본부는 후보등록 이후에 선거운동본부원을 추가할 수 있다. 단, 각 선거운동본부는 추가된 선거운동본부원의 학번, 학과, 이름, 연락처를 포함한 명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된 선거운동본부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이후부터 선거운동본부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선거운동본부원을 추가 등록하고자, 추가할 선거운동본부원의 학번, 학과, 이름, 연락처를 아래와 같이 제출드립니다.

1. 김동영 / 20220081 / 전산학부 / 01092498812
2. 차연우 / 20210631 / 전산학부 / 01062762457
3. Shahnoza Yadgarova / 20210728 / 전산학부 / 01072288980

앞서 메일로 Shahnoza Yadgarova 학우의 선본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 여쭙보았는데, 가능하다면 선본에 추가해주시면 되고, 안된다면 해당 학우의 가입은 철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lection Commission KAIST <kaist.election@gmail.com>

박정원에게 ▾

안녕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회신이 늦어 죄송합니다. 온라인 매체 사용 관련 안내 드립니다.

제2023-9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선거운동본부원 추가 인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의 3인은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의 선거운동본부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연번	이름	학번	소속 학과	연락처
1	김동영	20220081	전산학부	010-9249-8812
2	차연우	20210631	전산학부	010-6276-2457
3	Shahnoza Yadgarov	20210728	전산학부	010-7228-8980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이의제기 내용]

2. 이의제기 내용

해당 글을 올린 학우는 Shahnoza 학우로, 해당 글을 업로드한 시점은 중선관위의 선본원 추가에 대한 심의가 아직 진행되기 전입니다. 하여, Shahnoza 학우는 아직 선본원이 아닌 시점이었으며, 저는 Shahnoza 학우에게 승인 전 업로드하면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선본원이 아닌, 그저 친구로서 이를 홍보해주고 싶었고, 텔레그램 화면 캡처 사진을 보시면 홍보글을 올리기 전에 someone I know~ 라고 올린 채팅을 통해 선본원이 아닌 사람의 개인적인 의사 개진의 의미로 글을 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선본원 승인이 나면 텔레그램 또한 승인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심의가 늦어지며 이를 보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만약 선본원 추가 심의가 부결되면 텔레그램은 사용할 일이 없으니, 텔레그램을 사용한다고 먼저 보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여, 선본원 심의를 기다리던 중 Shahnoza 학우 본인이 글을 올려버렸기에, 선본원 추가 심의를 요청한 상황에서 혹여나 추후에 선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일단 보고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Shahnoza 학우는 당시 선본원이 아니었다.", "선본원 추가 심의가 늦어져 텔레그램 매체를 사용한다고 보고할 수 없었다.", "Shahnoza 학우의 글은 개인의 의사 개진이다." 등의 내용들을 토대로 제2023-29호에 부과된 주의 1회의 철회를 요청합니다.

[관련 선거시행세칙]

제57조(부정선거운동)

1.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한다.
  1.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매수 및 이해 유도
  2.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금품 살포
  3. 선거 무효 유도
  4. 선거의 자유 방해
  5. 직권 남용에 의한 직·간접적 선거 방해
  6. 유세 방해 및 선전물 훼손
  7. 투표권 행사 및 투표 절차 방해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방해
  9. 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
  10. 후보 인신공격
  11. 선거운동본부원이 아닌 사람 혹은 선거운동본부원임을 식별할 수 없는 사람의 선거운동. 단, 선거운동본부의 의도와 무관한 경우는 제외한다.
  12. 선거운동 제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2. 부정선거운동을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중을 판단하여 의도적인 부정선거운동의 경우에는 경고, 의도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주의를 준다.
3. 부정선거운동을 발견한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63조(경고)

1. 다음 각 호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1. 주의를 받은 후에도 해당 행위를 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

2. 제36조제4항의 미비한 예비후보등록서류를 기한 종료 이후 24시간 이내에 완비할 때
  3. 제37조제5항의 미비한 후보등록서류를 기한 종료 이후 16시간 이내에 완비할 때
  4. 제38조제3항의 유세를 통한 추천인서명행위를 할 때
  5. 제38조제1항 및 제41조의 사전선거운동을 할 때
  6. <삭제>
  7. 제56조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할 때 또는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할 때
  8. 제69조의 선거비용의 상한을 초과한 경우
  9. 이 외 제57조의 부정선거운동 등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의도적으로 해치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한 때
2. 경고를 받은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공고 게시 18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공개 사과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공간에 게시한다.

의결문안: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의 <WITH>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주의 1회의 징계를 철회한다. - 만장일치 의결

논의안건 1. 경고 부과 시 사과문 게시 규정 해석(안)

주의 2회 누적으로 인한 경고 부과시, 사과문 게시를 요청해야 하는지 논의하고 함.

[관련 선거시행세칙]

제60조(징계의 종류)

1. 징계의 종류는 시정명령, 주의, 경고로 나뉜다.
2. 동일한 내용으로 시정명령이 2회 누적되면 주의 1회로 대체한다.
3. 주의가 2회 누적되면 경고 1회로 대체한다.
4. 경고가 3회 누적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제63조(경고)

1. 다음 각 호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1. 주의를 받은 후에도 해당 행위를 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
  2. 제36조제4항의 미비한 예비후보등록서류를 기한 종료 이후 24시간 이내에 완비할 때
  3. 제37조제5항의 미비한 후보등록서류를 기한 종료 이후 16시간 이내에 완비할 때
  4. 제38조제3항의 유세를 통한 추천인서명행위를 할 때
  5. 제38조제1항 및 제41조의 사전선거운동을 할 때
  6. <삭제>
  7. 제56조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할 때 또는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할 때
  8. 제69조의 선거비용의 상한을 초과한 경우

9. 이 외 제57조의 부정선거운동 등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의도적으로 해치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할 때
2. 경고를 받은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공고 게시 18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공개 사과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공간에 게시한다.

선거시행세칙을 안내해드리는 것이, 학생사회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의결문안: 주의 2회 누적으로 인한, 경고 1회 부과 시 공개 사과문 게시를 요청하지 않는다.

- 만장일치 의결

#### 기타안건 **1. To Do List**

현수막 철거, 선거시행세칙 위반 사과문, 감사원 답변 메일 작성 등 업무를 분배함.

일시: 2023.12.1.(금) 22:00

장소: 총학생회 회의실 302호 및 원격원상회의

참석자: 김성원, 오윤석, 박정호, 안희진, 윤서진, 이돈영, 강동재

보고안건 1. 구글 드라이브 기기 로그아웃(안)

보안을 위해, 구글 계정 로그아웃 이후 재로그인을 진행함.

보고안건 2. (전)위원장 녹취 텍스트 공유(안)

투표인 명부 조작 관련 녹취 텍스트를 공유함.

논의안건 1. 당선 확정 공고 검토(안)

안녕하세요, 제35대 KAIST 학부총학생회 총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11월 27일(월) 22:30을 기준으로 투표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11월 29일(수) 00:13 당선 공고 이후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72시간이 지나 「선거시행세칙」 제91조와 제92조에 따라 당선 확정 공고를 발표합니다.

아래와 같이 당선 확정 공고를 합니다.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단 선거

당선자명: 정후보 - 여남규(22 산업디자인학과), 부후보 - 박진(22, 산업디자인학과)

선본명: <남진>

실투표수 : 32표

<남진> : 29표

지지 선본 없음 : 2표

무효표 : 1표

투표율: 56.14%

득표율: 93.55%

오차율: 0.00%

투표결과: 당선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선거

당선자명: 정후보 - 송준서(22, 생명과학과)

선본명: <ATP>

실투표수 : 55표

<ATP> : 54표

지지 선본 없음 : 1표

무효표 : 0표

투표율: 52.88%

득표율: 98.18%

오차율: 0.00%

투표결과: 당선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단 선거

당선자명: 정후보 - 양채윤(22, 생명화학공학과), 부후보 - 김재승(22, 생명화학공학과)

선본명: <이름>

실투표수 : 46표

<이름> : 46표

지지 선본 없음 : 0표

무효표 : 0표

투표율: 41.81 %

득표율: 100.00%

오차율: 0.00%

투표결과: 당선

수리과학과 학생회장단 선거

당선자명: 정후보 - 정지혁(22, 수리과학과), 부후보 - 박성후(22, 수리과학과)

선본명: <시내>

실투표수 : 80표

<시내> : 76표

지지 선본 없음 : 4표

무효표 : 0표

투표율: 42.28%

득표율: 95.00%

오차율: 3.43%

투표결과: 당선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선거

당선자명: 정후보 - 임수민(22, 신소재공학과)

선본명: <소재신소재>

실투표수 : 72표

<소재신소재> : 70표

지지 선본 없음 : 2표

무효표 : 0표

투표율: 66.66%

득표율: 97.22%

오차율: 1.90%

투표결과: 당선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선거

당선자명: 정후보 - 배건희(22, 전기및전자공학부)

선본명: <MOSFEET>

실투표수 : 295표  
<MOSFEET> : 281표  
지지 선본 없음 : 13표  
무효표 : 1표

투표율: 41.30%  
득표율: 95.58%  
오차율: 0.42%  
투표결과: 당선

전산학부 학생회장단 선거  
당선자명: 정후보 - 박정원(22, 전산학부), 부후보 - 오상근(22, 전산학부), 장지오(20, 전산학부)  
선본명: <WITH>

실투표수 : 318표  
<WITH> : 296표  
지지 선본 없음 : 20표  
무효표 : 2표

투표율: 38.46%  
득표율: 93.67%  
오차율: 0.37%  
투표결과: 당선

화학과 학생회장단 선거  
당선자명: 정후보 - 윤희성(22, 화학과), 부후보 - 신형우(22, 화학과)  
선본명: <치약공장>

실투표수 : 51표  
<치약공장> : 50표  
지지 선본 없음 : 1표  
무효표 : 0표

투표율: 52.04%  
득표율: 98.04%  
오차율: 0.00%  
투표결과: 당선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  
당선자명: 정후보 - 권혁원(21, 전산학부), 부후보 - 조현준(23, 새내기과정학부)  
선본명: <유>

실투표수 : 576표  
<유> : 532표  
지지 선본 없음 : 41표  
무효표 : 3표

투표율: 34.46%  
득표율: 92.84%  
오차율: 0.98%  
투표결과: 당선

이번 총선거에 관심을 가져주신 학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관련 선거시행세칙]

##### 제91조(이의제기)

1. 본회의 회원은 당선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심사해야 한다.
2. 중앙운영위원회가 당선을 취소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 제92조(당선 확정)

1.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고 선거 제반업무가 종료되었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의 당선을 확정한다.
2. 선거가 완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보고서를 작성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당선 확정 공고 검토 후, ARA에 업로드하기로 함.

##### 논의안건 2. (전)위원장 고소 대응(안)

본 안건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진행중에 있음. 이에 현 시점에서, 회의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논의안건 3. (전)위원장 자료 요청(안)

회의록 공유 및 ARA 게시물 삭제 건 소명을 요청함.

##### 논의안건 4. 감사원 메일 초안 검토(안)

감사원 문의 사항에 대한 메일 초안을 검토함.  
UNIVOTE에서 받은 관련 자료를 공유함.

##### 논의안건 5. 선거기간 해석 검토(안)

선거시행세칙 제28조(선거기간)

1. 총선거기간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총선거시행공고일
  2. 예비후보등록기간
  3. 총선거위탁기간
  4. 후보등록기간
  5. 선거운동기간

6. 투표일

7. 개표일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위탁기간을 후보등록기간 시작일 2일 전까지, 예비후보등록 기간을 3일 이내, 후보등록기간을 3일 이상 5일 이내, 선거운동 기간을 투표일 하루 전까지 7일 이상, 투표일을 2일 이내, **개표일을 투표종료 직후로 하여 총선거기간을 정한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일정을 진행하더라도 일수로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거시행세칙 제95조(선거 기록물 관리)

선거에서 생산된 기록물 중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은 선거기간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정하여 보존해야 한다.

선거시행세칙 제96조(선거보고서)

선거기간이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 총선거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명단
2. 총선거 일정 및 합동유세, 후보자토론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4. 후보자 이름 및 각 선거운동본부의 이름, 징계 현황, 득표율
5. 총선거 회계 결산
6. 그 밖에 기록할 가치가 있는 총선거 관련 사안

선거기간의 종료일을 개표일인 11.28.(화)로 본다면, 초일 불산입 원칙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 기한이 정해짐

-> 개표일을 투표 종료 직후로 한다는 선거시행세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11.27.(월)로 본다.

1) 선거 기록물 관리 - 12.5.(화) / 12.4.(월)

오프라인 - 공동정책자료집 (3부/총학실 보존), if 인쇄본만 있는 회의록

2) 선거보고서 - 12.12.(화) / 실제 듀 12.10.(일)

작성 필요 내용 - 회의록, 선거 결과/징계 사항, 회계 결산, 논의 사항, 피드백(회고/반성 등)  
→ 공유 이벤트 상품 결제(or 지급)도 완료되어야 함, 피드백 사항도 선거보고서 작성과 함께 이루어져야함

시험 기간임을 고려하여, 12.8.(금)까지 작성 완료를 목표로함

[선대 선거보고서 자료]

- ☞ 선거 보고서 (19년 3월), ☞ 보고서 (19년 11월),
- ☞ 제34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선거보고서 (20년 11월),
- ☞ 2021년 제34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선거보고서 (21년 11월)
- ☞ 2022년 제34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선거보고서 (22년 3월)
- ☞ 2022년 제34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선거보고서 (22년 11월)

논의안건 6. 선거 위탁 단위 선출 보고 작성

선거 위탁 단위들에 대한 선출 보고 작성 후 각 단위에 전달드려야 함  
당선 확정 공고 및 선출 보고 작성 안내 메일 - 12.2.(토)



위탁 단위 - 산업디자인학과, 생명과학과, 생명화학공학과, 수리과학과, 신소재공학과, 전기및전자공학부, 전산학부, 화학과, 동아리연합회

논의안건 **7. 전체 학우 대상 퇴고 및 사과문 게시(안)**

**11.28.(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선거 기간 종료 이후 전체 학우 대상의 퇴고 및 사과문 게시를 논의했음.

퇴고와 피드백 사항을 선거보고서에 작성하기로 함.

기타안건 **1. To Do List**

감사원 메일 작성, 회의록 정리, 선거보고서 작성 등 관련 업무를 분배함.

기타안건 **2. 차회 회의 일정 조율**

선거보고서 작성 내용 공유, 업무 퇴고 등 피드백을 위한 차회 회의 일정을 조율하고자 함.

**12. 4.(월) 20:00** 차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일시: 2023.12.4.(월) 20:00

장소: 중선관위실 201호

참석자: 김성원, 오윤석, 안희진, 윤서진, 강동재, 이돈영

보고안건 1. 선거보고서 - 회의록, 선거 결과 및 선거운동본부 징계 현황

☐ 2023년 제35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선거보고서

회의록 및 선거운동본부 징계 현황 정리 내용을 공유함.

선거운동본부 징계 현황에, 징계 사유를 추가하고자 함.

보고안건 2. 투표자 명부 관련 IP 할당기록 보존 요청(안)

투표인 명부 수정 IP 건으로 금일 담당 부서 정보통신팀과 유선 연락을 진행함.

학생지원팀 통해 정보통신팀으로 협조문 요청 예정임.

논의안건 1. (전)위원장 고소 관련 대응(안)

본 안건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진행중에 있음. 이에 현 시점에서, 회의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논의안건 2. (전) 위원장 업무 관련 사실 관계 확인 요청(안)

1) ARA 게시글 삭제 - 미답변

화요일 자정까지로 답변을 재요청함.

2) 사실 관계 소명 및 정정을 바라는 사항 - 기한 요청

화요일 자정까지로 답변 요청함.

3) 투표용지 인쇄

인쇄 업무를 맡은 중앙집행위원회 박재은 사무팀장께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함.

4) 민법 관련 유권해석안

관련한 설명 내용 요청함.

논의안건 3. 감사원 메일 대응(안)

[12.3. 감사원 메일 중 일부]

3. 동아리연합회 회원에 대한 선거 안내 부재

3번 항목의 경우 다른 위탁기구의 소속 회원들은 11월 15일 중선관위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보낸 메일로 후보 등록 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었으나 동아리연합회 소속 회원들은 선거 당일 오후 7시 경까지 선거에 대한 안내와 후보 등록 결과에 대한 안내를 메일로 단 한 번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매년 메일을 통해서도 선거에 대해 안내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시행세척상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 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해 내부 확인과 소명을 요청합니다.

그간 논의에서는 전체 학우 대상으로 보내기로 함. 관련 메일 초안도 작성 완료됨. 총학 계정으로 메일 발송 과정에서 누락이 있었나?

전 위원장께 소명 요청 - 화요일 자정

동아리 연합회 안내 메일

☐ [중선관위] 동아리연합회 선거 및 투표 참여 안내

#### 소명 필요 사안

1. 동아리연합회 회원에 대한 선거 안내 부재 - 보류(사실 관계 확인 후 진행)
2. 전기및전자공학부 선거본부 선거운동 방해 및 심의 지연에 따른 선거운동 진행 방해 - 오윤석
3. 투표 장소 및 시간 미준수 - 김성원 (실무자 배치표는 관련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기를 바람)
4. 선거 용지 인쇄 오류 - 조류(사실 관계 확인 후 진행)

#### 논의안건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의 사항/피드백 수합(안)

##### 1. 피드백

전자투표를 본 투표일에도 병행하면 좋겠음

선거시행세척 세미나를 선관위 구성 초반에 하면 좋겠음

투표 장소 실내, 실외에는 안내 배너 or 실무자 - 우천, 기상 환경 고려

선거 안내 판넬 등으로 투표소를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하자

중요한 업무를 2인 이상이 크로스 체크 할 것

중선관위 구성 조속히 하자

대형 현수막 조속히 게시

대면 투표의 단점 - 기표소 및 투표함 대여, 중복투표 등 신뢰성, 실무 어려움

홍보 승인 담당자 필요 - 세척 시간을 고려해서, 의결 과정 간소화(카카오톡 투표/미리 일정 파악 후 회의 일정 수립)

후보 등록 서류 공지 시 선거시행세척 필독 공지 or 서명

중선관위 집행부 - 메일 답장 등 신속한 업무

정기회의 횟수 증가 - 최소 2회

투표율 공지 템플릿 / 시간 고정

##### 2. 선거시행세척 개정 요청 사항

제92조, 제92조2 - 선거 제반 업무

제74조제3항 온라인 투표만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 (근거 기재)

제52조 명시적으로 내용 개정 (인스타 등)

#### 기타안건 1. To Do List

선거 보고서 작성, 감사원 메일 답장, 공유이벤트 등 업무를 분배함.

#### 기타안건 2. 차회 회의 일정 조율

업무 피드백, 선거보고서 검토 등을 위해 임시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12.8.(금) 20:00 차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일시: 2023.12.8.(금) 20:00

장소: 총학생회실 302호 및 원격영상회의

참석자: 김성원, 이돈영, 강동재, 박정호(온라인), 안희진(온라인→오프라인),  
윤서진(온라인→오프라인)

**보고안건 1. 위원장 업무 보고(안)**

감사원 메일 건, (전) 위원장 소통, 학생지원팀 등 유관부서 논의 등 공유함.

**보고안건 2. 학생지원팀 관련 논의 보고(안)**

법률 지원 등 사항에 대해, 강동재 위원이 학생지원팀장님과 논의한 내용을 공유함.

**논의안건 1. (전)위원장 입장문 게시 요청 검토(안)**

1. 기존 올린 입장문에 관련 내용이 있기에, 게시하지 않기로 결정함.
2.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사항 및 근거를 (전) 위원장께 메일로 문의함.

**논의안건 2. 회의록 정리(안)**

1. 1~9회 회의는 회의록이 부재하고, 차회 회의의 결과 보고를 통해 회의 결과를 파악할 수 있음.
2. 13회 회의는 녹음본을 기반으로 상세한 회의록이 작성 완료됨.
3. 10~12, 14~19회 회의는 결과 위주로 정리하고자 함.

**논의안건 3. 선거보고서 검토(안)**

- ☐ 2023년 제35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선거보고서
- ☐ 선거시행세칙 유권해석안
- ☐ 제35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건의사항 및 피드백
- ☐ 제35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선거시행세칙 위반 사항 및 업무 미숙 사항

선거보고서 및 관련 문서를 검토함.

**논의안건 4. 결산안 검토(안)**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안 및 결산안.xlsx

결산안 자료를 검토함.

**기타안건 1. To Do List**

시험 일정 전후로 To Do List를 작성 후 분배함.

일시: 2023.12.21.(목) 22:30

장소: 원격영상회의

참석자: 김성원, 오윤석, 윤서진, 강동재

보고안건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보고(안)

선거보고서 제출 이후 진행되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보고함.

논의안건 1. 전산학부 학생회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응(안)  
재심의 및 관련 논의(안)

#### 2023-12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023-29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거보고서 심의를 하던 중 전산학부 학생회장께서 2023-12 운영위원회 회의록 [논의안건 4 전산학부 학생회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응(안)]의 내용을 보류가 아닌 결론의 형태로 기재할 것을 요청함.

해당 회의록의 실제 논의가 행해진 11월 26일 당시 (2) 직·간접적 선거 방해 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견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1)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맞는지가 쟁점이었음.

2023-12 운영위원회 논의안건 4의 내용을 발췌 및 공유하여 (1)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음.

#### [논의 내용 및 결론]

전산학부 학생회장으로서 입장을 개진했으나,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로 판단하기 어려움.  
(추가로 덧붙이자면, 실무적으로는 입장문 게시 이전, 연장투표 시행 기준을 마련해 놓은 상황이었음)

의결문안: 전산학부 학생회는 선거 중립의무 위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만장일치 의결함

12회 회의록에 각주를 추가하고, 20회 회의록 링크를 첨부해두는 것으로 정리함.

논의안건 2. 선거보고서 내 “그 밖에 기록할 가치가 있는 총선거 관련 사항” 내용 논의(안)

#### 제35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선거시행세칙 위반 사항, 업무 미숙 사항, 그 밖의 기록...

#### [기존 작성 내용]

- 투표인 명부 조작 건은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문 2개의 링크를 기재함.
  - [(전)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율 조작을 위한 투표인 명부 조작에 대한 규탄의 입장문]
    - <https://newara.sparcs.org/post/252331>
  - [[중선관위] 사실 관계를 안내드리기 위한 입장문]
    - <https://newara.sparcs.org/post/252408>

제2023-29회 중앙운영위원회 이후 해당 내용에 대해 보다 상세히 기술할 것을 요청하여, 본 운영위원회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음.

**[수정 작성 내용]**

이에 아래의 내용으로 기재된 내용을 수정하였음.

- 신소재공학과 오프라인 투표 참여자 명부 조작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음.
- 위 사안은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한 공식적인 입장문 2개의 링크를 기재함.
  - **[(전)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를 조작을 위한 투표인 명부 조작에 대한 규탄의 입장문]**
    - <https://newara.sparcs.org/post/252331>
  - **[[중선관위] 사실 관계를 안내드리기 위한 입장문]**
    - <https://newara.sparcs.org/post/252408>

그 외의 사안들에 대하여는, 총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안으로 판단하여 선거보고서에 작성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합의함.

법적 절차 완료 이후, 선거보고서 내용을 수정할지 혹은 해산 이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문을 게시할지를 논의하고자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3년도 하반기 결산

<b>기구명</b>	중앙선거관리위원회	<b>반기</b>	하반기
<b>기구장</b>	위원장 김성원	<b>제출연월일</b>	2023. 12. 11.

수입								
재원(장)	예산 분류(관)	항목(항)	코드	예산	결산	비율	비고	
100	학생회비	중앙회계	중앙회계 지원금	101	₩5,000,000	₩4,086,350	81.73%	의결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중앙회계 지원금 제2023-17회 중앙운영위원회 논의안건 제1호 의결 결과
		<b>수입 소계</b>				<b>₩5,000,000</b>	<b>₩4,086,350</b>	
200	본회계	학교지원금	학생지원팀 지원금	201	₩2,000,000	₩1,970,700	98.54%	
		<b>수입 소계</b>				<b>₩2,000,000</b>	<b>₩1,970,700</b>	<b>98.54%</b>
<b>수입 총계</b>					<b>₩7,000,000</b>	<b>₩6,057,050</b>	<b>86.53%</b>	

지출									
재원(장)	예산 분류(관)	사업명(항)	예산 과목(세부항목)	코드	예산	결산	비율	비고	
400	학생회비	운영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	회의비	401	₩380,000	₩0	0.00%	중앙선거관리위원 7인, 선거 실무단 18인
				물품비	402	₩600,000	₩72,800	12.13%	투표 도장 3개 구입 (₩14,000 × 3) 투표 참여 매뉴얼 제작: ₩6,900 서류함 구입: ₩23,900
			투표	물품비	403	₩110,000	₩0	0.00%	
				인쇄비	404	₩0	₩0	-%	
				수수료	405	₩2,000,000	₩3,000,000	150.00%	UNIVOTE 플랫폼 이용료: ₩3,000,000
				운반비	406	₩300,000	₩196,500	65.50%	기표소 및 선거함 대여 운반비: ₩110,000 현수막 수령 등 교통비: ₩10,100 기표소 및 선거함 반납 운반비: ₩60,000 선거함 반납 교통비: ₩16,400
			선거 정책 지원	인쇄비	407	₩500,000	₩0	0.00%	정책자료집 인쇄비 501 항목으로 전부 처리하여 해당 항목 미집행
			선거 홍보	상품비	408	<del>₩500,000</del>	₩748,050	149.61%	애플워치 SE 2세대: <del>₩329,000</del> BBQ 황금올리브 14개: <del>₩274,120</del> 네스프레스 커피 머신: <del>₩144,930</del>
				인쇄비	409	₩500,000	₩69,000	13.80%	투표 참여 포스터 인쇄: <del>₩69,000</del>
			선거운동본부 지원	기타비	410	₩0	₩0	-%	선거운동본부지원금
<b>지출 소계</b>					<b>₩4,890,000</b>	<b>₩4,086,350</b>	<b>83.57%</b>		
500	본회계	운영비	선거정책 지원	인쇄비	501	₩500,000	₩935,000	187.00%	정책자료집 인쇄비 - 407과 분할 결제했어야 하나, 결제하러 갔던 집행위원의 착오로 전체 결제함.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유지하기로 함.
			선거 홍보	인쇄비	502	₩500,000	₩413,400	82.68%	대형 현수막 인쇄비: ₩220,000 일반 현수막 인쇄비: ₩80,400 선거 포스터 인쇄비: ₩90,000 연장투표 포스터 인쇄비: ₩23,000
			선거운동본부 지원	기타비	503	₩1,000,000	₩622,300	62.23%	집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선거복: ₩491,000 동아리연합회 선거운동본부 <유> 현수막: ₩131,300
			<b>지출 소계</b>				<b>₩2,000,000</b>	<b>₩1,970,700</b>	<b>98.54%</b>



지출 총계	₩6,890,000	₩6,057,050	87.91%
-------	------------	------------	--------

총계	예산	결산	비율
수입	₩7,000,000	₩6,057,050	86.53%
지출	₩6,890,000	₩6,057,050	87.91%
잔액	₩110,000	₩0	0.00%

학생회비	예산	결산	비율
수입	₩5,000,000	₩4,086,350	81.73%
지출	₩4,890,000	₩4,086,350	83.57%
잔액	₩110,000	₩0	0.00%

본회계	예산	결산	비율
수입	₩2,000,000	₩1,970,700	98.54%
지출	₩2,000,000	₩1,970,700	98.54%
잔액	₩0	₩0	-%

자치	전년도 결산	당해년도 예산	비율
수입	-	-	-%
지출	-	-	-%
잔액	-	-	-%

제35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35<sup>th</sup> KAIST Undergraduate Association General Elections

# 공동 정책 자료집

## Policy Compilation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35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35<sup>th</sup> KAIST Undergraduate Association General Elections

# 공동 정책 자료집 Policy Compilation

동아리연합회 산업디자인학과 생명과학과  
생명화학공학과 수리과학과 신소재공학과  
전기 및 전자공학부 전산학부 화학과

Undergraduate Student Clubs Union / Dept. of Industrial Design / Dept. of Biological Sciences /  
Dept. of Chemical & Biomolecular Engineering / Dept. of Mathematical Sciences /  
Dept. of Materials Science & Engineering / School of Electrical Engineering / School of Computing / Dept. of Chemistry

편집 | 안희진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본부 <유>

# 동아리연합회

Undergraduate Student Clubs Union  
Election Campaign Headquarter <YOU>



## 정후보/Candidate

권혁원/HyukWon Kwon



## 부후보/Vice Candidate

조현준/Hyunjun Cho

### 약력/Profile

[정후보 권혁원]

- 2018 - 광주과학고등학교 입학
- 2021 - KAIST 새내기과정학부  
- MUSE 가입
- 2022 - KAIST 전산학부 재학  
- KAIST 학부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연> 관리국원  
- 후기 새내기새로배움터기획단 개발 TF장  
- Khartes 대의원

[Candidate HyukWon Kwon]

- Studied at Gwangju Science Academy
- Undergraduate Freshman Program KAIST
- Member of MUSE
- Currently enrolled in KAIST, School of Computing
- USCU Emergency Response Committee Member
- Development Team Leader for the 2022 fall freshman OT
- Representative at Khartes

- |  |   |
|--|---|
| <p>2023 - 전산학부 부학생회장</p> <p>- 전기 새내기새로배움터기획단 개발 TF장</p> <p>-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 &lt;메&gt; 관리국원</p> <p>- Khartes 회장</p> <p>- MUSE 홍보부장</p> <p>- 학생문화공간위원회 관리국 개발팀원</p> <p>- 생활문화분과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p> <p>-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 &lt;메&gt; 관리국장</p>   | <p>- Vice President of the School of Computing Student Council</p> <p>- Development Team Leader for the 2023 Spring Freshman OT</p> <p>- USCU Management Team Member</p> <p>- President of Khartes</p> <p>- Marketing Manager for MUSE Club</p> <p>- Development Team Member, Student Culture Space Committee</p> <p>- Department President for Lifestyle and Culture Division</p> <p>- Head of Management Team, USCU</p>   |
| <p>[부후보 조현준]</p> <p>2022 -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2022-2 대의원회 의장</p> <p>-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졸업</p> <p>2023 - KAIST 입학</p> <p>- 새터 3반 부반장</p> <p>- 제31대 학부 동아리연합회 &lt;메&gt; 관리국/비서실원</p> <p>- 제31대 학부 동아리연합회 &lt;메&gt; 관리국/기획국원</p> <p>- 제31대 학부 동아리연합회 &lt;메&gt; 기획국장</p> <p>- 제31대 학부 동아리연합회 &lt;메&gt;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비례 대의원</p> <p>- 23 후기 새내기새로배움터 기획단원</p> <p>- MUSE 정회원</p> <p>- MUSE 연습부장</p> <p>- MUSE 대의원2</p> | <p>[Vice Candidate Hyunjun Cho]</p> <p>- Korea Science Academy of KAIST 2022-2 Chairman of the board of representatives</p> <p>- Korea Science Academy of KAIST Graduation</p> <p>- KAIST Admission</p> <p>- Freshman class3 vice president</p> <p>- 31st KAIST Undergraduate Student Clubs Union &lt;Me&gt; executive member</p> <p>- 31st KAIST Undergraduate Student Clubs Union &lt;Me&gt; Secretary</p> <p>- 31st KAIST Undergraduate Student Clubs Union &lt;Me&gt; General Student Representative Conference delegate</p> <p>- 23 Fall Freshman orientation executive member</p> <p>- MUSE member</p> <p>- The head of the practice department of MUSE</p> <p>- MUSE delegate2</p> |

## 출마소견/Opinion

[정후보 권혁원]

안녕하세요, 제32대 학부 동아리연합회 <유> 회장 후보로 출마한 권혁원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하니, 2022년도에 처음 학부 동아리연합회 집행부원으로 발을 들였던 시기가 생각납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그저 새 내기를 갖 벗어난 신입생에서, 학부 동아리연합회는 KAIST의 학생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새내기학생회에서 주관하는 후기 새내기 새로배움터 기획단도 해보고, 인연이 닿아 전산학부 학생회의 부학생회장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시작된 인연은 새로운 인연으로 가치를 뺏어 갔고, 한 번 이어진 인연은 같은 단체로 끌어들여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새로운 단체로 가 새로운 가치를 뺏어 나가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학부 동아리연합회 집행부 활동이었다고 생각하니, 제 개인적으로 가지는 고마움이 큼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동아리란 제게 동아리연합회 집행부가 가지는 것과 비슷한 그런 장소일 것입니다. 동아리에서 죽이 잘 맞는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하는 활동들이 즐겁고, 꼭 동아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MT나 회식, 그 외에도 일상을 함께 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은 대학 생활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니까요.

제가 동아리연합회, 더 나아가 동아리 사회에 가지는 감정과 더불어, 이젠 자기 여필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동아리 연합회의 많은 것을 직접 몸소 체험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4명밖에 없다는 말에 들어갔던 집행부가 점점 살이 붙어서 20명이 넘는 단체까지 가는 모습도 진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하나의 업무들을 힘을 모아 처리해 나가는 것도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단체가 커졌을 때, 작아졌을 때, 사람이 많을 때, 적을 때 등 다양한 모습들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 동아리원의 시간, 일반 집행부원의 시간, 관리국장의 시간, 동아리 회장의 시간, 그리고 분과 학생회장의 시간까지 모두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동아리연합회에서 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은 모두 겪어 보았습니다. 각 시간에서의 저의 시각을 떠올리며, 모든 사람이 소외되지 않고 불편함을 겪지 않는 그런 동아리 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아리 연합회는 여러분의 동아리 생활을 위해 노력합니다. 동아리방을 분배하고, 동아리 운영에 도움 되게 지원금을 분배하고, 그뿐만 아니라 학우들의 원만한 동아리 생활을 위해 학교에 의견을 수렴하고 주장합니다. 규칙을 세워 최소한의 자정 작용을 이어 나갈 수 있게 하고, 동아리들의 활동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에 맞추어,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직관적으로 바꾸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애며, 좋았던 부분들은 살리는 방향의 공약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동아리 생활을 위해 힘쓰는 학부동아리연합회 집행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후보 조현준]

안녕하세요, 제32대 학부 동아리연합회 <유> 부회장 후보로 출마한 조현준입니다.

2023년 가을 현재,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에는 총 92개의 동아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동아리들은 각자만의 활동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이렇게 다채로운 동아리들이 매일매일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물질적, 정신적 가치들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KAIST에서 동아리 활동은 그 자체로 삶의 일부입니다.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실현시킴으로써, 동아리 사회의 발전과 문화적 다양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기구입니다. 즉, 학생들 스스로가 학생들의 문화를 일구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기반을 지지하기에 어떤 기구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32대 동아리연합회 <유>는 이러한 동아리연합회의 존재 목적을 언제나 잊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창조적인 활동과 따뜻한 인간공동체를 손상시키는 어떠한 실수도 없도록 하고, 고유한 문화를 계발하실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토대를 받치겠습니다.

언제나 든든하게,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선거공약/Election Pledges

### 1. 동아리연합회 사무 전산화

동아리연합회 자체 사이트를 구축하여 모든 사무와 상시 사업 신청을 훨씬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 대표자 작업 최소화

각종 사무의 필요과정을 전수조사하여 불필요한 절차들을 삭제하겠습니다.

### 3. 서류작성 세미나

서류에 작성할 내용을 준비하고 계획해서 작성하실 수 있도록 학기 초에 서류작성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 4. 전체 동아리방 명패 교체

동아리방에 고정되어있는 기존 명패를 철거하고, 동아리가 이사할 때마다 교체할 수 있는 형태의 명패를 설치하겠습니다.

### 5. 여름 전 전체 동아리방 에어컨 청소

학교 부서와 협의하여,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동아리방의 에어컨을 청소해 동아리방을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 6. 가구 처리 방안 마련

동아리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가구의 폐기 창구를 마련해 동연 문의로 가구를 처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7. 시설팀 핫라인

동아리방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팀에 문의할 부분을 정기적으로 동아리연합회에서 수합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8. 예쁜 동방 콘테스트 등 여러 동아리 대회

코로나 이전에 진행되었던 예쁜 동방 콘테스트의 부활을 비롯하여 다양한 동아리들이 즐길 수 있는 동아리 대회를 기획하고 진행하겠습니다.

### 9. 상세한 의결기구 결과지

의결기구에서 논의된 주요한 의견들을 결과지에 작성하여, 의결기구에 참여하지 않는 동연 회원도 의사결정 과정을 잘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10. 집행부 사업보고 지속

기존에 진행되던 집행부 사업보고를 지속하여, 집행부의 사업 진행상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11. 정기적인 외국인 관련 정책 수합

외국인 학우들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정기적으로 수합하여 외국인 학우들의 동아리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1. Computerization of Clubs Union

We will establish our own website to make it much easier to apply for all office work and business at all times.

2. Minimize representative tasks

We will completely investigate the necessary processes of various affairs and delete unnecessary procedures.

3. Paper Preparation Seminar

We will hold a document preparation seminar at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so that you can prepare, plan, and fill out the contents of the document.

4. Replacing all club nameplates

We will remove the existing plaque fixed in the club room and install a plaque that can be replaced whenever the club moves.

5. Clean the air conditioner in the club room before summer

In consultation with the school department, we will clean the air conditioners of all club rooms before the summer begins to make the club rooms a pleasant space.

6. Formulating a plan to dispose of furniture

We will set up a disposal window for households that are difficult to handle on their own, so that they can handle the furniture through the same contact.

7. Facility team Hotline

The club association will regularly collect and process the parts to ask the facility team regarding the use of the club room.

8. A variety of club competitions, including the pretty Clubroom Contest

We will plan and proceed with club competitions that various clubs can enjoy, including the revival of the pretty Dongbang Contest that took place before Corona.

9. Detailed Legislative board results

We will fill out the main opinions discussed in the legislative board on the result sheet so that members of the association who do not participate in the legislative board can understand the decision-making process well.

10. Continuing the Executive's business report

We will continue to report on the business of the executive on Naver cafe so that you can understand the progress of the business of the executives.

11. Regular foreign students policy collection

We will regularly collect policy ideas for foreign students to increase their access to clubs.

선거운동본부 <남진>

# 산업디자인학과

Dept. of Industrial Design  
Election Campaign Headquarter <Nam Jin>



**정후보/Candidate**

여남규/Namkyu Yeo



**부후보/Vice Candidate**

박진/Jin Park

## 약력/Profile

[정후보 여남규]

- 2022 - KAIST 새내기과정학부 입학
- KAIST 공식학생홍보대사 카이누리 17기
- 2023 - KAIST 산업디자인학과 진입

[Candidate Namkyu Yeo]

- KAIST Admission
- KAIST Official Student Ambassador for KAIST, KAINURI
- KAIST Department of Industrial Design

[부후보 박진]

- 2022 - KAIST 새내기과정학부 입학
- 2023 - KAIST 산업디자인학과 진입
- KAIST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

[Vice Candidate Jin Park]

- KAIST Admission
- KAIST Department of Industrial Design
- KAIST Student Council of Industrial Design



## 출마소견/Opinion

여남규(정후보)

1년간 산업디자인학과에서 학과 생활을 하면서 좋았던 점들도, 아쉬웠던 점들도 있었습니다. 이 점들을 기억하고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며 학생들을 위한 학생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부후보)

지난 한 해 동안, 산업 디자인 학과 학생회에서 일하며 다양한 학과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학우를 위한 작지만 커다란 노력은 고되었지만, 보람했습니다. 겪었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우분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amkyu Yeo (Presidential Candidate)

During my year in the Department of Industrial Design, there were both positive and challenging aspects of my academic life. I will remember these points and work on creating a student council for the students while undertaking various projects. Thank you.

Jin Park (Vice Presidential Candidate)

Over the past year, I worked for the student council of industrial design department and prepared for various department events. A small but great effort for all the students was hard, but rewarding. Based on the valuable experience I had, I will try my best for students. Thank you.

## 선거공약/Election Pledges

학과 내 신입생 간, 신입생과 기존 재학생 간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산업 디자인 학과는 타 학과에 비해 조별 과제의 비중이 높은 동시에, 인원이 적은 학과이기에 친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학생회 사업인 개강 총회, 벚꽃 파티, 워크샵 이외에도 학과 신입생 MT, 학과 내 멘토링, 친목조 등의 다양한 친목 활동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양한 학과 시설의 이용 지침을 작성하겠습니다. 전공 수업을 겪으며 학과 시설들의 사용 방법을 배울 수는 있지만, KA 라운지와 공장동 이외의 시설물들의 사용법은 비교적 접할 기회가 적습니다. 학우분들이 더 편하고, 깨끗하게 학과 시설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들의 이용 방법과 주의 사항을 정리한 지침을 작성하겠습니다.

학우분들께 정보 전달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학과 행사와 공모전 등의 다양한 정보들을 학우분들께 학과 SNS와 기타 소통 매체를 활용해 원활하게 전달하겠습니다. 학과 내 유익한 정보들을 학우분들이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We will provide opportunities for harmony among new students within the department and between new and existing students. The Department of Industrial Design places a high emphasis on group projects compared to other departments, and it is also a smaller department. Therefore, we believe that building camaraderie is important. In addition to the existing student council activities such as the opening ceremony, cherry blossom party, and workshops, we will explore various social activities within the department, including new student orientation trips, mentoring within the department, and social groups.

We will create a manual for the use of various department facilities. While students learn how to use department facilities through their major courses, they may have limited exposure to facilities outside of KA Lounge and the Factory. We will compile a manual detailing the usage and precautions for these facilities to ensure that fellow students can use them comfortably and responsibly.

We will ensure that information is actively communicated to fellow students. We will use department social media and other communication channels to efficiently relay information about department events, competitions, exchange programs, and more. We will make an effort to make useful information within the department easily and quickly accessible to fellow students.



### 정후보/Candidate

송준서/Song Junseo

#### 약력/Profile

- 2017 안동서부초등학교 졸업
- 2020 - 안동중학교 졸업(3년간 실장 및 학생회 역임)
- 2022 - 경북과학고등학교 졸업 (실장 2회, 생명과학동아리 DARWIN 회장 역임)
- 카이스트 새내기 과정학부 입학 후 생명과학과를 선택하여 재학 중
- KAIST street dance crew Lunatic 소속으로 활동
- KAIST CCC 활동
- 2023 - KAIST 생명과학과 2학년 과대표
- 2023 KAMF 외부기획단 무대팀 근무
- 카이스트 학부총학생회 재정사무국 사무팀원
- Andong Seobu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 Andong middle school graduation (class president and student council for 3 years)
- Kyeong Buk Science Highschool graduation (2 times of class president, president of biological science club 'Darwin')
- After entering KAIST's freshman course department, choose the department of BS and keep attending the univ.
- KAIST street dance crew Lunatic
- KAIST CCC
- KAIST BS department representative
- 2023 KAMF External planning team : working as a stage team
- Member of the Secretariat of the Finance Secretariat of the KAIST Undergraduate Student Council

## 출마소견/Opinion

KAIST 생명과학과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5대 KAIST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정후보로 출마하게 된 22학번 송준서입니다.

6년, 공동체를 단단히 받쳐줄 믿음직한 지지자가 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했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얻은 경험들과 노하우들을 백번 발휘하여 생명과학과 구성원 간의 소통과 상호발전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단순히 약속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방향과 목표 설정, 그리고 확실한 결과로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과대표로서 생명과학과의 다양한 사업들과 상황들을 살펴보며 부족한 점이나 개선할 점들을 고민해보았습니다. 물론 다른 부족한 점들도 존재하겠지만 제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은 과 학생 간의, 그리고 과 학생과 교수님 간의 교류기회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과에서 진행되는 행사를 제대로 전달 받지 못해 참여할 기회를 잃은 학생들이나, 교수님께 개별연구 혹은 진로 관련 상담을 초청하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더욱 그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저는 이번 출마를 통하여 소통창구들을 재정비하여 과 학생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또한 교수님과 학부생, 학부생과 대학원생 간의 만남도 확대하여 미리 진로나 대학원 진학, 연구 분야 선택 등에 대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기획해보고자 합니다. 내년에 구성될 학생회와 함께 대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실장이나 회장 등에 출마할 때 항상 가슴에 새기는 시의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는 구절입니다. 제가 학생회장으로 보낸 1년 동안 여러분의 학과 생활이 따뜻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알차게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을 되돌아 봤을 때 생명과학과 학생 여러분들 가슴 속에 따뜻함을 선물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ello,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Biological Science? I'm Song Jun-seo, the 22nd generation of KAIST's Department of Biological Science, and I'm running as a candidate for the 35th president of the student council of BS department.

Six years, it's a time when I agonized and worked hard to become a reliable supporter to support the community. I want to be a person who leads communication and mutual development between members of BS department by utilizing the experiences and know-how gained through this time. I promise to show you a concrete direction, goal setting, and a definite result, not just a promise.

As a department representative in 2022, I looked at various projects and situations in the Department of BS and considered what I lacked or what I needed to improve. Of course, there may be other shortcomings, but the biggest concern for me is the lack of exchange opportunities between the department and the students and the professors. I felt the need even more when I saw students who lost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event held by the department because they were not properly informed, or students who were having difficulty inviting professors for individual research or career counseling.

Therefore, I would like to reorganize communication channels through this run to make life easier for students in the department, and to expand the meeting between professors and undergraduates, undergraduates and graduate students so that exchanges on career, graduate school, and research fields can be made in advance. We will work hard to make most of it happen with the student council to be formed next year.

Lastly, I would like to introduce a line of poetry that I always keep in my heart when I run for chief or chairman. “Don't kick the coal ash carelessly, who were you hot to at least once?” is the phrase. During the year I spent as the president of the student council, I will try to remember your school life warmly, happily, and fully. And looking back on the year, I will do my best to be remembered as the person who gave warmth to students in the life sciences.

I ask for your support and interest. Thank you.

## 선거공약/Election Pledges

첫째, 소통하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학생회 메일 및 오픈 카톡방 등을 통해 학과사업 및 행사에 대한 문의 사항 및 학과 관련 건의 사항들을 적극 수용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부생 간 혹은 학부생과 교수님, 대학원생 간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더 많이 마련하겠습니다.

크게는 교수님께서 참여하시는 MT부터, 워크샵부터 작게는 대학원생 - 학부생 교류의 주 선정 등을 통해 생명과학과 학생 여러분이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편의성을 증진시키겠습니다.

기존 생명과학과 학생회도 이벤트가 있을 때 미리 공지를 하지만 유동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 학생들 간의 혼동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회에서 사용하는 타임라인 / 스케줄 달력을 공유하여 다양한 학과 사업 및 행사를 둘러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학부생 관련 편의사항들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넷째, 생명과학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소규모 이벤트 및 행사를 기획하겠습니다.

시험기간 생명과 학생들끼리 공부 인증이벤트나 비상시적인 나만의 생명과 관련 질문 찾기 이벤트 등 생명과학과 학생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소속감을 느끼고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당선된다면 해당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First, we will be a student council that communicates.

We will actively accept and reflect questions about the department's projects and events and suggestions related to the department through student council mails and open Kakao Talk rooms.

Second, we will provide more opportunities for exchanges between undergraduates or between undergraduates, professors, and graduate students.

We will provide various experiences for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BS through MT, workshops, and graduate students-undergraduate exchange.

Third, we will improve convenience.

Existing BS students' associations also notify in advance when there is an event, but they can change fluidly, which can lead to confusion among students. Therefore, we will share the timeline/schedule calendar used by the student council to guide you to tour and participate in various department projects and events. In addition, various undergraduate-related conveniences will be improved.

Fourth, as a Biological science department, we will plan various small events and events that you can feel a sense of belonging. During the exam period, we will prepare students to feel a sense of belonging and enjoy various events that they can participate in as BS students, such as study certification events or finding their own biological related questions in emergencies.

If elected, I promise to do my best to deliver on those pledges. Thank you.

선거운동본부 <이룸>

# 생명화학공학과

Dept. of Chemical & Biomolecular Engineering  
Election Campaign Headquarter <Achievement(Irum)>



## 정후보/Candidate

양채윤/ChaeYun Yang



## 부후보/Vice Candidate

김재승/Jaeseung Kim

### 약력/Profile

[정후보 양채윤]

- 2022 - 용인청덕고등학교 졸업
- KAIST 입학
- KAIST Orchestra 입부
- 2023 - 생명화학공학과 진입
- 생명화학공학과 22학번 과대표

[Candidate ChaeYun Yang]

- Graduated from Yongin-Cheongdeok High School
- Admission to KAIST
- Enter the club, KAIST Orchestra
- Entered the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 Sophomore department student representative of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부후보 김재승]

- 2022 - Graduated from Daejeon-Dongsin Science High School
- KAIST 입학

[Vice Candidate Jaeseung Kim]

- Graduated from Daejeon-Dongsin Science High School
- Admission to KAIST

2023 - 생명화학공학과 진입

- Entered the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 생명화학공학과 22학번 부과대표

- Sophomore department student vice representative of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 출마소견/Opinion

안녕하십니까. 이번 생명화학공학과 과학생회장단에 출마하게 된 정후보 양채윤, 부후보 김재승입니다.

저희는 지난 1년 동안 생명화학공학과에 진입하고 또 학년 대표로서 학과 행사를 주도하고 참여하면서 굉장히 행복하고 뜻깊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처음 학년 대표로 출마했을 때의 목표는 학우분들을 하나로 묶고 비대면에서 대면으로의 완전한 전환과 정착이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저희는 1년 동안 최선을 다했고 결과적으로 이루어낸 목표도 있었고 개선하고 싶은 점도 생겼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생명화학공학과, 더 자랑스러운 생명화학공학과를 앞장서서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자 과학생회장단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학우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하고, 소통하며 더 나은 생명화학공학과를 만들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Hello. I am Candidate Chae-yun Yang, running for the position of President of the Department of Chemical & Biomolecular Engineering, and I am Candidate Jae-seung Kim, running for the Vice President position.

Over the past year, we have had the privilege of entering the Department of Chemical & Biomolecular Engineering and leading and participating in departmental events as representatives. We have experienced incredibly happy and meaningful days. When we first ran for representatives, our goal was to unite our fellow students and achieve a complete transition and establishment from online to in-person interactions. To achieve this goal, we have done our best over the past year, and we have accomplished some of our objectives while also identifying areas for improvement.

It is on this basis that we have decided to run for the representative and Vice representative positions, aiming to lead the way in creating a better Department of Chemical & Biomolecular Engineering that we can all be proud of. We promise to always be your reliable support, listen to your opinions, empathize, communicate, and work together to make a better Department of Chemical & Biomolecular Engineering.

Thank you.

## 선거공약/Election Pledges

저희 과학생회장단 후보는 올해 3월 과대표단 선거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다양한 목표들을 1년 동안 학과생활을 한 것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였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학생회 모습을 약속드립니다.

### 1. 문화 소통

학과 단체 카카오톡 방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다양한 학과 행사 홍보와 안내 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국문과 영문 안내를 통해 학과 내의 모든 학생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학생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성실히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의견이나 건의 사항 등을 과학생회장단에게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먼저 다가가는 친근한 과학생회장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 학업

학과 과방 사업을 통해 독서 및 자습, 회의할 수 있는 학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과 내 스터디 그룹과 OTL 후기 이벤트도 진행하였습니다. 스터디 그룹과 OTL 후기 이벤트에 학생들의 참여를 늘리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학우 여러분의 학업 부분도 신경 쓰는 과학생회장단이 되겠습니다.

### 3. 학과

생명화학공학과와의 진입생 수를 늘리기 위해 올해 가을에는 학과설명회를 진행하여 생명화학공학과 홍보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 새내기 세미나 시간 때 선배들과의 만남을 추진하여 새내기들이 과에 진입한 선배들에게 편안하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홍보활동들을 내년에도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우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편한 과학생회장단이 되겠습니다. 둘째, 학우 여러분을 위한 의견 개진의 최전선에 나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생회장단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학생과 학생 사이, 학생과 학생회 사이, 학생과 학교 사이를 적극적으로 연결해 나가는 과학생회장단이 되겠습니다. 또한 학우 여러분이 생명화학공학과 진입 선택을 더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학생회장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I am Candidate Chae-yun Yang, running for the position of President of the Department of Chemical & Biomolecular Engineering, and I am Candidate Jae-seung Kim, running for the Vice President position.

Over the past year, we have had the privilege of entering the Department of Chemical & Biomolecular Engineering and leading and participating in departmental events as representatives. We have experienced incredibly happy and meaningful days. When we first ran for representatives, our goal was to unite our fellow students and achieve a complete transition and establishment from online to in-person interactions. To achieve this goal, we have done our best over the past year, and we have accomplished some of our objectives while also identifying areas for improvement.

It is on this basis that we have decided to run for the representative and Vice representative positions, aiming to lead the way in creating a better Department of Chemical & Biomolecular Engineering that we can all be proud of. We promise to always be your reliable support, listen to your opinions, empathize, communicate, and work together to make a better Department of Chemical & Biomolecular Engineering.

Thank you.

# 수리과학과

Dept. of Mathematical Sciences  
Election Campaign Headquarter <Sine>



## 정후보/Candidate

정지혁/Jeong Ji-Hyeok



## 정후보/Vice Candidate

박성후/Park Seonghoo

### 약력/Profile

[정후보 정지혁]

- 2012 - 백록초등학교 2학년 부반장
- 2017 - 제주중앙중학교 1학년 부반장
- 2021 - 제주과학고등학교 체육부장
- 2023 - 새터 9반 프락터
- 수리과학과 과대표

[Candidate Jeong Ji-Hyeok]

- Vice President, 2nd Grade, Baekrok Elementary School
- Vice President, 1st Year, Jeju Jungang Middle School
- Head of Physical Education, Jeju Science High School
- Class 9 Proctor
- Department Representative, Department of Mathematical Sciences

[부후보 박성후]

- 2014 - 평거초등학교 5학년 부회장
- 2017 - 진주봉원중학교 2학년 부회장
- 2023 - 수리과학과 집행부 가을학기 간식 이벤트 팀장
- 시와 편견 여름호로 등단

[Vice Candidate Park Seonghoo]

- 5th Grade Vice President at Pyeonggeo Elementary School
- 2nd Year Vice President at Jinju-Bongwon Middle School
- TF Leader for Fall Semester Snack Event



## 출마소견/Opinion

안녕하십니까, 차기 수리과학과 학생회장단 학생회장에 출마한 20220636 정지혁입니다. 제가 학과 학생회장으로 선출되면, 다음과 같은 목적을 실현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학문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활동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여 친목과 연대를 신장하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가 학과 학생회장에 출마하게 된 것이며, 학우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이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과 내에서 더 나은 환경과 기회를 공동으로 창조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기 수리과학과 학생회장단 부학생회장에 출마한 20220260 박성후입니다. 카이스트 수리과학과 부회장 후보자로서 소견을 쓰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부학생회장을 맡게 된다면, 학과 내에서 여러분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지원과 커뮤니티 강화를 이룩하고자 합니다. 이 다짐은 영광과 책임감으로 제 양어깨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수리과학과 부회장으로서, 학생들의 학문적 성장과 학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또한 초, 중학교에서의 부회장 경험, 수리과학과 집행부 간식 이벤트 팀장 등을 수행하며, 여러분의 공익에 제가 공헌하는 기쁨을 배웠습니다. 내년 한 해, 이 기쁨을 제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학생 여러분이 허락해주시면 이는 저에게 더없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ello, I am Jeong Ji-Hyeok, and I am running for the position of Student Council President in the Department of Mathematical Sciences for the upcoming term. If elected as the Student Council President, I will advocate for the students' voice, supporting academic growth and fostering social activities and networking opportunities

I am running for this position with the aim of achieving these goals. Your support and cooperation will be crucial in realizing the vision I have outlined. I look forward to working together with all of you to create a better environment and more opportunities within our department, fostering collective growth.

Thank you.

Hello, I am Park Seonghoo, candidate number 20220260 running for the position of Vice President of the Mathematics Department Student Council. It is an honor to write my statement as a candidate for the position of Vice President of the Mathematics Department.

If I were to become the Vice President, my goal is to create an environment within the department where you can focus on your studies while strengthening the sense of community. This commitment carries both honor and responsibility, and I am ready to shoulder that responsibility with determination. As Vice President of the Mathematics Department, I will do my best to support the academic growth of students and the advancement of the department.

## 선거공약/Election Pledges

### 학생회장 공약

적분 대회 개설: 학기 중에 학업 스트레스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수리과학과 학생들이 학기 중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적분 대회를 열어 학업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선후배 간의 유대 강화: 수리과학과 학생들이 학과 선배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수리과학과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학생회장 공약

시설 지원: 수리과학과 부회장으로서, 학과 내의 학문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수리과학과 부회장으로서 팀워크룸의 시설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목소리 대변: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학과 관리자 및 교수진과 소통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이 학과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 커뮤니티 강화: 학생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술 행사, 워크샵 등을 이끌고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카이스트 수리과학과를 더욱 빛나게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운동본부 <소재신소재>

# 신소재공학과

Dept. of Materials Science & Engineering  
Election Campaign Headquarter <materialsnewmaterials>



## 정후보/Candidate

임수민/Lim Soomin

### 약력/Profile

2018 -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입학  
2022 - KAIST 새내기과정학부 입학

- Graduated from Incheon Academy of Science and Arts  
- Admission to KAIST School of Freshman

### 출마소견/Opinion

안녕하세요. 이번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으로 출마하게 된 임수민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며 기존 신소재공학과와 활동들이 재개되기 시작하였으며 많은 수업들이 대면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직 소재과에서는 많은 과목이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코로나 이전 사업들이 아직 이전되지 못하였습니다.

2023년 신소재 공학과 학생회 부원으로 활동하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4년도 새롭게 신소재공학과 신입생분들과 저와 함께 진입한 동기들 선배들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2024 신소재공학과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회장이 되어 책임감을 가지고 활발히 소통하는 학생회가 되어 즐거운 학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ear students, I am SooMin Lim, running for the Student President of the 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As the situation with COVID-19 is gradually improving, many of the department's previous activities are starting to resume, and a significant number of classes are returning to off-line instruction.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subjects in the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department that continue to be taught online, and some projects have not yet been fully reinstated.

Being part of the department's student council in 2023 has been an enriching experience for me, where I've learned a lot and gained valuable insights. I am committed to making the 2024 academic year an outstanding one for all students, including the new arrivals and our peers who joined the department with me.

As Student Council President, I will carry the responsibility of fostering active communication, and I will do my best to ensure that our student council provides a fulfilling and enjoyable experience for all members of the department. Thank you.

## 선거공약/Election Pledges

-편안한 과방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학기 응용공학동에 있는 신소재공학과의 과방은 리모델링하였으나 많은 학생들이 존재를 잘 알지 못하여, 학생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부 사용 용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뒤 모든 학부 학우 분들이 사용하고 싶어하는 과방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과방 방문 이벤트를 통해 편안한 과방을 조성 후 많은 학생분들이 과방에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소통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소재공학과 내 의견 교류가 많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최대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편안하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익명성이 보장되는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이나 건의함을 통해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진로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관심있는 교수님의 연구실에 대해 연구실 분들께 직접 설명을 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연구실 탐험이나 다양한 진로 분야로 나아가신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될 수 있는 진로 콘서트, 또는 기업체 탐방과 같은 행사 등을 개최하여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o create a comfortable department lounge.

During the previous semester, the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building was renovated, so many students were not aware of its existence and leads to underutilization. I will gather opinions on its intended use and transform it into a lounge that students would like to use. Furthermore, I will make efforts to foster a culture where students can gather and converse in this comfortable lounge by organizing visiting events and other activities.

- Enhancing communication

It seems that there isn't much exchange of opinions within the department. I will facilitate sharing of ideas and ensure that they are incorporated to the fullest extent possible. Especially, I will set up anonymous chat rooms or suggestion boxes through platforms like KakaoTalk to provide a space where opinions can be shared comfortably.

-Initiatives to assist in career choices

Try to organize activities such as research lab explorations, where students can have the opportunity to learn about professors' research labs they are interested in. Career concerts where senior students can share their experiences in various career fields. Additionally, I will try to arrange company visits and similar events to provide assistance in making informed career choices to the best of my ability.

# 전기및전자공학부

School of Electrical Engineering  
Election Campaign Headquarter <MOSFEET>



## 정후보/Candidate

배건희/Bae Gunhee

### 약력/Profile

- 2003 - 광주광역시 출생
- 2016 - 광주송원초등학교 졸업
- 2019 - 호남삼육중학교 졸업
- 2022 - 광주과학고등학교 졸업
- 동아리 <Number> 입부
- 2023 -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22학번 과 대표 선출
- 2023학년도 25반 프락터 위촉
- 차세대공학리더 YEHS 입부
- 동아리 <Silver Lining> 입부
- Born in Gwangju
- Graduated from Gwangju Songwon Elementary School
- Graduated from Honam Sahmyook Middle School
- Graduated from Gwangju Science Academy
- Joined club <Number>
- Kaist EE 22' Student Representative
- Committed to 2023 Proctor of class 25
- Joined club <Silver Lining> Manager

### 출마소견/Opinion

안녕하세요,  
전기및전자공학부 22학번 과 대표 배건희입니다.

2023년의 끝을 1달 앞두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1년은 어떠셨나요? 많은 부분이 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코로나 시절에 적응했던 신체 리듬과 생활 패턴을 되돌리느라 다들 많이 고생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3학년도 집행부 역시 4년 만의 대면 행사로 인사드린 적이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봄학기의 딸기 파티와 가을학기의 가을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올해 총 16개의 행사 중 현재까지 12개의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남은 4개의 행사도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 1년을 돌아보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말하기는 부족하지만 제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과 대표에 선출된 이후로 개인적으로 많은 기회와 제안이 들어와, 다방면에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발전의 시작이 전기및전자공학부이기에, 학과에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제공한 학과에 보답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며, 남은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봉사할 생각입니다.

이제 저는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올해의 저는 다소 미숙했지만, 이제 저는 학생, 학과, 교수님 사이에서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학생회장직을 충실히 이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제가 확실히 보여드릴 수 있는 점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밖에 없습니다. 다만, 올해보다 발전된 내년으로 여러분께 다가갈 것을 약속합니다. 올 한해 있었던 모든 집행부 행사의 피드백을 진행하였고, 당연히 더 발전된 내년을 기약하며 모든 행사에 임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전기및전자공학부 집행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필요한 점이 있다면 항상 새로운 행사를 기획할 것이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그게 제가 느끼는 학생회장으로서의 숙명이자, 당연히 가져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있을 행사에서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배건희’로 여러분을 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건희 올림

Hello,

I am Bae Gunhee, student representative of the departm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As we approach the end of 2023, how has your year been? With many aspects returning to in-person activities, I believe you have all gone through significant adjustments to your daily routines and physical rhythms due to the COVID-19 era. In 2023, the student council has hosted various events in person, including the EE Strawberry Party in the spring semester and the EE Autumn Festival in the fall semester. Thanks to your enthusiastic support, we have successfully organized 12 out of the total 16 events so far, and we will do our best to ensure the remaining four events conclude just as successfully.

Reflecting on my first year as a student representative, I may not claim to have lived the hardest, but I can confidently say that I gave it my best. Since being elected as the department representative, I have received numerous opportunities and proposals, leading to personal growth in various aspects. Recognizing that all of this growth began with the Departm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I am genuinely grateful for the department and believe it is my duty as a member of this community to give back. I am committed to serving passionately throughout the remaining term.

Now, I would like to greet you all as the “Presid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While I may have been somewhat inexperienced this year, I am now prepared to fulfill the role of a communication bridge between students, the department, and professors. Though the only thing I can confidently promise is that I will give my best effort, I pledge to approach you in a more improved manner in the coming year compared to this one. I have already gathered feedback from all events held this year, and I am naturally eager to embrace the next year with even more growth and development in mind.

I kindly request you to continue showing your support for our department’s student council. If there are any specific needs or shortcomings that you identify, we will continuously plan new events and work towards improvements. This, in my view, is not only the mission of a Student Council President but also an inherent responsibility. I hope to meet you as “Bae Gunhee, Student Presid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at next year’s events.

Thank you for reading this lengthy message.

## 선거공약/Election Pledges

### 1. 외국인 네트워킹 만들기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전자과이지만, 대부분의 행사가 한국어로 진행되기에 외국인 학생들이 저희 학과 행사를 접근하기에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인 학우들에게도 외국인 친구를 만드는 것은 교환학생과 같은 프로그램에 지원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인 학우들에게도 한국인 친구를 만드는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영어로 진행되는 외국인 학우 대상 네트워킹 모임을 만들고자 합니다.

### 2. 대면 행사 개선

소견서에서도 드러냈듯, 올해 대면으로 전환한 사업이 딸기파티와 전자과 축제, 2가지나 있다 보니 미숙함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행사들이 잘 마무리되었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과 학우들이 아쉬워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어 피드백 받은 내용과 집행부 차원에서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내년도 행사는 더 개선된 형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대면 전환에 더 초점을 맞추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형태로 진행되었다면, 내년에는 행사의 질을 더 개선해보려고 합니다.

### 3. 전자과 친목조 보완

해마다 지적되는 부분 중, 전자과는 대형과니까 친목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BuddEE 프로그램이 전자과 학우들 간의 모임을 주선해 주는데, 조금 더 개선하면 친목 활동이 더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상세 방안은 현재 고민 중인데, 내년 봄학기 사업을 공지할 때 변경된 방식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피드백이 언제나 열려 있으므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을 말씀해 주시면 친목 활동 개선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 1. Establishing a Network for International Students

Despite the numerous activities conducted by EE, I believe that most of these events being conducted in Korean may pose challenges for our international peers in accessing our department's events. Making foreign friends is expected to be greatly beneficial not only to our Korean students when applying for exchange programs and similar initiatives but also to international students in adapting to the culture of South Korea. Therefore, I intend to create networking events specifically designed for international students, conducted in English.

### 2. Enhancing In-Person Events

As mentioned in my statement, this year, the transition to in-person events included only two major activities, the EE Strawberry Party and the EE Fall Festival. This has highlighted certain areas where we could improve and address perceived shortcomings both from a personal and organizational perspective. While many events have been successfully executed, there are aspects that I personally found lacking and areas where students may have felt dissatisfied. Based on the feedback received and the feedback collected at the executive committee level, I aim to conduct next year's events in a more improved format. Whereas this year's focus was primarily on transitioning to in-person events and establishing guidelines, next year, I intend to focus on enhancing the quality of the events.

### 3. Strengthening Camaraderie within the Department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One recurring concern is the perceived difficulty of fostering camaraderie within our department due to its large size. The BuddEE program plays a role in facilitating gatherings among our students, and with some improvements, we can expect better camaraderie activities. While the specific details are currently under consideration, I will announce the changes in the approach when announcing the spring semester activities for next year. Moreover, feedback is always welcome, and if you have any suggestions for improvement, I am committed to putting in additional effort to enhance our camaraderie activities.

선거운동본부 <WITH>  
**전산학부**

School of Computing  
Election Campaign Headquarter <WITH>



**정후보/Candidate**

박정원/Park Jungwon



**부후보/Vice Candidate**

오상근/Oh Sanggeun



**부후보/Vice Candidate**

장지오/Jang Jio

## 약력/Profile

	[정후보 박정원]	[Candidate Park Jungwon]
2019	- 부산과학고등학교 재학	- Busan Science high school
2022	- KAIST 새내기과정학부 재학 - KAIST 제18대 새내기학생회 <비행> 기획국원  - KAIST 제19대 새내기학생회 회장단 선거관리 위원 - KAIST 후기 새내기새로배움터 기획단 프로그램팀 소팀 3팀장 - KAIST 제19대 새내기학생회 <아람> 기획국원  - KAIST 제19대 새내기학생회 <아람> 복지국원  - 2022 KAIST-POSTECH 학생대제전 야구 대표팀 선수 - 2022 STadium 야구 대표팀 선수 - 2023 KAIST 전기 새내기새로배움터 기획단 프로그램 팀 소팀 2팀원	- KAIST School of Freshmen - KAIST 18th Freshmen Student Council <Flight> planning team member - KAIST 19th Freshmen Student Council Election Committee member - 2022 KAIST Fall Freshmen Orientation planning team Development team 3 leader - KAIST 19th Freshmen Student Council <ARAM> planning team member - KAIST 19th Freshmen Student Council <ARAM> welfare team member - 2022 KAIST - POSTECH Science War Baseball player - 2022 STadium Baseball player - 2023 KAIST Spring Freshmen Orientation planning team Development team 2 member - 2023 KAIST - POSETCH Science War Baseball player  - 2023 STadium General Manger - 2023 STadium Baseball player - KAIST School of Computing - KAIST Industry Design - Double Major - Member of Rookie - KAIST SoC 22' Student Representative - KAIST SoC student council <LABEL> executive member - Rookie President - KAIST 31th Undergraduate Student Clubs Union <메> Secretariat team member - KAIST 31th Undergraduate Student Clubs Union <메> planning team member
2023	- 2023 KAIST - POSETCH 학생대제전 야구 대표팀 선수 - 2023 STadium 실무 총괄 - 2023 STadium 야구 대표팀 선수 - KAIST 전산학부 재학 - KAIST 산업디자인학과 복수전공 - 루키 정회원 - KAIST 전산학부 22학번 과대표 - KAIST 전산학부 학생회 <LABEL> 집행부원 - 루키 회장 - KAIST 제31대 학부동아리연합회 <메> 사무국원  - KAIST 제31대 학부동아리연합회 <메> 기획국원	
	[부후보 오상근]	[Vice Candidate Oh Sanggeun]
2019	- 대전고등학교 졸업	- Graduated from Daejeon high school
2022	- KAIST 새내기과정학부 재학 - Infinite 정회원 - Mindfreak 정회원	- KAIST School of freshmen - Member of Infinite - Member of Mindfreak
2023	- 전산학부 진입 - 전산학부 학생회 Label 집행부원  - Mindfreak 홍보부장	- Major in School of computing - KAIST Department of School of Computing Student Council <LABEL> member - Mindfreak communication director
	[부후보 장지오]	[Vice Candidate Jang Jio]
2017	- Frankfurt International School(FIS) 재학	- Graduated at Frankfurt International School (FIS)
2020	- KAIST 새내기과정학부 재학	- Attended KAIST Freshman Program
2021	- KAIST 전산학부 재학	- Attended KAIST Department of School of Computing (SoC)
2022	- 아스트리아스 회원 - TEAM LINE 팀장 - D2R 스타트업 멤버	- Astrias member - TEAM LINE Group Leader - D2R startup member
2023	- KAIST 전산학부 학생회 <LABEL> 집행부원  - KAIST GDSC 멤버	- KAIST Department of School of Computing Student Council <LABEL> member - KAIST GDSC member



## 출마소견/Opinion

### [정후보 박정원]

안녕하십니까? 2023 전산학부 학생회장단 정후보로 출마하게 된 전산학부 22학번 박정원입니다.

출마 소견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귀한 시간 내어 제 출마 소견을 읽어 주시는 전산학부 학우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의 전산학부 사업은 만족스러웠나요? 전산학부 특성상 비대면 수업이 많아 많은 분들이 친목을 다질 기회를 가지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저 또한 이 점이 항상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 때에 저는 과대표에 출마하여 '친목'을 강조하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 결과 올해 초에는 약 100명의 전산학부 학우분들과 함께 워크숍을 다녀왔으며, 친목을 장려하고자 SoC모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면 사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운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제가 지난 1년간 느꼈던 것들을 토대로 더 나은 전산학부 생활을 만들어보고자 이번 전산학부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전산학부는 카이스트에서 매년 신입생 수 1, 2위를 거머쥔 정도로 많은 학우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력이 좋은 교수님이 많이 계시고, 성공하신 선배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전산학부에는 이러한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배와 후배가 함께 인맥을 만들어가고, 후배들은 선배에게 본인의 진로를 물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러한 교류의 장을 더욱 넓히고자 합니다.

저희 선분명을 'WITH'로 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올해엔 선배와 후배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WITH라는 의미에 맞게 전산학부의 사업을 집행부에서만 진행하기보다는, 사업의 큰 틀은 집행부에서 기획을 하고 세세한 내용들은 학우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에 대해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으로 더욱 성장하는 학생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회장단은 학생회와 함께 여러분의 더 나은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산학부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전산학부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우분들의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후보 오상근]

안녕하세요, 전산학부 회장단 선거에 부후보로 출마하게 된 22학번 오상근입니다.

전산학부로 진입한 후 1년 동안 여러 행사를 진행 및 참여하여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학부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선배님들과 만나고 이야기하며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알게 되었고 다양한 연구실을 알아가며 새로운 진로를 고민하는 등 코로나라는 제한이 풀린 학교에서 즐겼던 2023년은 저에게 새롭고 즐거운 추억밖에 없었던 같습니다.

하지만 전산학부에 대한 여러 아쉬움도 남아있습니다. 대형 학부인만큼 학생 한명 한명 모두 챙길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친목이나 행사 참여 부분에서 여러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전산 모임 사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부분에서 여러 문제점과 친목의 부족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는 등 친목 부분에 대해 많은 아쉬움이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부회장선거에 출마함으로써 앞으로의 1년 동안 더 좋은 전산학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선배들에게 학부 생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전산학부를 단순히 학습에 그치지 않고 각자의 열정과 꿈을 공유하며 상호 성장할 수 있는 커뮤니티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더욱 교류하고 소통하는 전산학부를 위한 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학창 시절을 돌아보는 순간에 전산학부가 선배배 간의 깊은 유대감을 만들며 소중한 추억을 남기는 곳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후보 장지오]

안녕하세요, 전산학부 회장단 선거에 부후보로 출마하게 된 20학번 장지오입니다.

학부의 발전과 학우들의 학교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전산학부에서의 2년간의 학부 생활과 23년도 학생회 LABEL에서 집행부원 과정을 통해 전산학부는 뛰어나고 열정적인 학우들로 구성된 훌륭한 학부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아쉬운 부분도 느꼈는데, 그것은 개발자로서의 꿈을 가진 학우들이 단계별로 개발공부를 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전산학부의 저학년 학우들이 개발자 트랙을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회장단 선거에 출마함으로써, 이러한 아쉬움을 해소하고 학부 내에서 개발자 트랙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우들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학년 학우들이 개발자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외부와 많은 컨택을 하여 프론트엔드 백엔드 부트캠프와 같은 개발 경험과 교육의 기회를 알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부 내에서 더 많은 학우들이 프로그래밍과 개발 분야에서 능숙해지고, 실제 프로젝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난 3년간 카이스트에서의 경험과 학부 내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더 나은 전산학부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에 힘입어 최선을 다하는 학생회장단이 되겠습니다.

[Candidate Park Jungwon]

Hi everyone? I'm Park Jungwon, KAIST SoC 22' student representative, who is running as a presidential candidate for the 2023 student council of the department of school of computing. Before I talk about my candidacy, I would like to thank all the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SoC for taking the time to read my candidacy. Did you enjoy this year's Department of SoC project? Due to the feature of the Department of SoC, there are many non-face-to-face classes, so I knew that it was difficult for many people to have a chance to build friendship, and I also thought this was always a problem. So around this time last year, I emphasized friendship as a representative and made a pledge for friendship. As a result, we went to a workshop with about 100 SoC students earlier this year, and I conducted an SoC meeting project to encourage friendship. But I think there is still a lot to be desired about face-to-face project. So based on what I've felt this year, I'm running for president of the SoC department to make a better life in the SoC department.

The Department of SoC is with so many classmates that it competes for the first and second place in the number of students every time. There are so many talented professors and many successful seniors. However, the Department of SoC does not have a place to meet these professors and seniors. I felt that I needed such an opportunity for seniors and juniors to make connections together, and juniors to ask their seniors about their careers. I want to increase the interaction between people in the Department of SoC this time.

That's why we chose our council name "WITH". This year, we will create many projects where seniors and juniors can work together. In addition, rather than proceeding with the project of the Department of SoC only in the executive department to fit the meaning of WITH, our council will plan the big framework of the project and make the details with the SoC students. I would like to create a communication channel where you can talk comfortably when you have any suggestions about your business. With your feedback, I will create a student council that grows further. And I promise to work with the student council for a better school life.

The main character of the SoC department is you. I want you to build a SoC department with me. Please give me a precious vote for the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School of Computing. Thank you.

[Vice Candidate Oh Sanggeun]

Hello, I am Oh Sanggeun, running as a vice-candidate in the school of computing department presidential election. After entering the Department of School of Computing, I think I had a truly valuable and meaningful undergraduate experience by hosting and participating in various events for a year. I met and talked with many seniors, learned a variety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got to know various labs, and thought about new career paths. I enjoyed 2023 at a school where the restrictions of the coronavirus were lifted, and it seems like there were only new and enjoyable memories for me.

However, I still have many regrets about the Department of School of Computing. As it is a large department, it was not possible to take care of each and every student, and as a result, many improvements were needed in the areas of social interaction and participation in events. There were voices complaining about various problems and lack of fellowship in various areas, including the computer meeting project in which I participated, and it seems that there were many regrets regarding the fellowship aspect.

Therefore, by running for this vice president election, I will strive to create a better school of computing department over the next year. We know very well that undergraduate life is very important for seniors and juniors, so we strive to develop the Department of School of Computing into a community where each person can share their passions and dreams and grow together, rather than just learning. We will push for change. As we look back on our school days, we will do our best to make the Department of School of computing a place where we create deep bonds between seniors and juniors and leave precious memories. Thank you.

[Vice Candidate Jang Jio]

Hello, this is Jio Jang, who is running as a vice-candidate in the School of Computing presidential election. It is an honour to be here to help develop the department and enrich the students' school life. Through my two years of undergraduate life in the Department of School of Computing and the course as an executive member of LABEL, the student council in 2023, I felt proud that the Department of SoC was an excellent department comprised of outstanding and passionate students. However, in some ways, I was disappointed because I think it is difficult for students who dreamed of becoming a developer to study software development step by step. In particular, I thought that sophomores in the Department of SoC lacked opportunities to study and grow in the developer track.

By running for this vice president election, we hope to resolve this disappointment and provide an opportunity for students who want to study the developer track within the department. To help students develop their dreams of becoming developers, we will make extensive contacts with the IT companies to provide development experience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such as front-end and back-end boot camps. We hope to help more students within the department become proficient in programming and gain real-world project experience. Based on my experience at KAIST and the achievements within the department over the past three years, I will do my best to create a better Department of SoC. Thanks to your support, we will become a student council president who does our best.

## 선거공약/Election Pledges

첫째, 전산학부 워크샵 사업을 개선하겠습니다. 올해 전산학부 학생회 <LABEL>에서 진행한 친목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SoC 모임과 워크샵이 있습니다. 그 중 워크샵의 경우, 전산학부에서는 2023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였고, 스태프 포함 약 100명의 학우가 참여한 가장 큰 규모의 외부 행사였습니다. 높은 만족도와 함께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후, 참여한 학우분들로부터 저녁 식사 문제, 너무 긴 레크레이션 등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내년 워크샵에는 여러분들이 주셨던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의 워크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선착순에 들지 못해 아쉽게 상기와 같이 제35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후보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참여하지 못한 학우들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전산학부의 소모임 사업을 개편 및 확대하겠습니다. 기존에 진행하던 전산학부 SoC모임은 공통된 관심사들을 가진 여러 학우들이 자신만의 모임을 만들어 취미를 공유하여 친목을 도모한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새로운 사람들과 만남을 이어 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꾸준히 활동을 하는 몇몇의 모임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소모임들이 지속적인 활성화 유지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관심있는 스터디 모임들의 자발적인 운영이 힘들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운영 방식 개편 및 집행위원의 모임 참여 및 진행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여러 과목들의 스터디 모임을 위하여 목적이 맞는 사람들끼리 교류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운영에 문제가 있는 모임들의 지원 시스템도 만들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전산 학부생들의 친목 도모 및 소모임 사업 개선을 이끌겠습니다.

셋째, 전산학부 부트캠프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카이스트 전산학부에서는 단계별로 개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또한, 개발 관련된 동아리의 수는 개발 경험을 원하는 학우들을 모두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개발 경험을 원하는 학우들을 위해 개발 부트캠프를 진행하는 회사들과 적극적으로 컨택하여 카이스트 학부생들이 온라인으로 부트캠프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First, we will improve the workshop project of the Department of SoC. There are two major friendship projects conducted by the Student Council of the Department of SoC this year, SoC meetings and the workshop. In the case of the workshop, the Department of SoC held for the first time in 2023, and it was the largest external event involving about 100 classmates, including staff. With high satisfaction, we successfully finished the event without any accidents. Later, I received feedback from the participating classmates, such as dinner problems and too long recreations. We will prepare for next year's workshop in advance so that we can have a better environment based on the feedback you gave us. In addition, we will try to allow more students to participate in order to reduce the number of students who were unfortunately unable to participate because they were not on the first-come, first-served basis.

Second, we will reorganize and expand the School of Computing Department small group project. The School of Computing Department meeting, which is a change from the existing process, has a great purpose of encouraging many students with separate interests to share hobbies and socialize by creating their own group, but it is difficult to continue meeting new people. Outside of regular group gatherings, small gatherings help keep you active. There was also a As fill out above, we submit a registration form for problem that it was difficult for most students to voluntarily run the study groups they were interested in. The goal is to reorganize the operating method and encourage participation and implementation of committee meetings to solve these problems. We also plan to provide study groups for many people so that those with the right goals can seize opportunities, and also create a support system for groups that have operational problems. Through this, we will improve the project that promotes and reduces social networking among School of Computing students.

Third, we will proceed with the boot camp business. In KAIST's Department of SoC, there is a lack of opportunities to study development step by step. Also, the number of development-related clubs and organisations is far from sufficient to accommodate all classmates who want programming experience. Therefore, we will actively contact IT companies that conduct development boot camps for students who want development experience so that KAIST undergraduate students can participate in the boot camp online.

# 화학과

Dept. of Chemistry  
Election Campaign Headquarter <Toothpaste>



## 정후보/Candidate

윤희성/Heeseong Yoon



## 부후보/Vice Candidate

신형우/Hyeong Woo Shin

### 약력/Profile

#### [정후보 윤희성]

- 2022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입학
- 2023 - KAIST 화학과 진학
- 화학과 학생회 부과대표

#### [Candidate Heeseong Yoon]

-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 College of Chemistry at KAIST
- Department of Chemistry Student Council Imposition Representative

#### [부후보 신형우]

- 2022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입학
- 2023 - KAIST 화학과 진학
- 플랜비(Plan B) 3기 기장

#### [Vice Candidate Hyeong Woo Shin]

-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 College of Chemistry at KAIST
- Plan B 3rd Stage length

## 출마소견/Opinion

안녕하세요, 이번 화학과 학생회장 정후보, 부후보로 출마한 윤희성, 신형우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는 각각 화학과 집행위원회의 2학년 부과대표와 한 밴드의 기장으로 활동하며 많은 경험을 쌓았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저는 학우 여러분이 느끼는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집행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회장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화학과에서는 집행위원회와 비집행위원회 학생 간의 소통을 중용하였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것을 이어받아,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학생회장단을 구성하고 화학과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집행위원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Hello, I am Heeseong Yoon, a candidate for the position of President, and Hyeong Woo Shin, a candidate for Vice President of the Chemistry Student Council.

Over the past year, we have been actively involved in the Chemistry Department as the 2nd-year class representatives and as the leaders of a student band. These experiences have provided us with valuable insights and skills. Building upon this foundation, I am running for the position of President to create a Student Council that addresses the areas where improvements are needed based on the feedback of our fellow students.

During the past year, we have emphasized effective communication between the student council and non-student council members within the Chemistry Department, and we believe that the outcomes were successful. We aim to continue this trend by forming a student council that fosters communication and trust, ensuring that the voices and opinions of chemistry students are heard and acted upon. Our goal is to make the student council a practical and helpful resource for all of you.

Thank you.

## 선거공약/Election Pledges

### 1. 화학과 과목 헬프데스크

화학과 과목들만의 소규모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고급화학이라는 과목이 신설되면서 일반화학 I, II 헬프데스크 업무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화학과 전공필수 과목이나, 수요가 많은 전공선택 과목을 대상으로 장소와 시간의 규모를 축소한 여러 개의 헬프데스크를 개설하여 헬프데스크 부원들은 그 연사 초청 및 관리를 맡게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 2. 기출문제 공유 온라인 플랫폼 구축

화학과 과목을 수강하면서, 족보로 인한 형평성과 관련된 문제가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형평성의 회복을 위해, 화학과 수업의 기출문제를 제공할 경우 일정 상품을 제공하는 식의 업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3. 과방 우산 대여 시스템 구축

자연과학동에서 갑자기 비가 와 비를 맞으며 기숙사로 걸어가던 경험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에, 과방에 우산을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과방에 우산을 놓으려 합니다.

### 1. Chemistry Department Subject Help Desks

We plan to operate small-scale help desks specifically for chemistry-related subject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Advanced Chemistry course, we anticipate changes in the duties of the General Chemistry I and II help desks. We intend to establish several help desks with reduced space and time for core mandatory chemistry courses and highly demanded elective major courses.

### 2. Activation of Past Exam Question Sharing

While taking chemistry courses, we noticed significant disparities due to the reliance on past exam materials. To promote fairness, we intend to offer chemistry course past exam questions and implement a system that rewards individuals for providing them.

3. Establishment of Umbrella Rental System in Department Room You must have had a lot of experience walking to the dormitory in the rain due to sudden rain in natural science school. So, I'm going to make a system where I can rent an umbrella in the department store and put an umbrella in the department store.

## 제35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선거시행세칙 유권해석안

1. 제17조제2항
  - a. 본 조항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추가 임명은 총 위원 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처음 구성될 때의 위원 수를 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다.
2. 제23조제2항
  - a. 후보자가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본부장을 겸직할 수 있다.
  - b. 따라서 “자치기구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라는 단서는 선거운동본부장을 제외한 선거운동본부원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3. 제25조제1호, 제2호
  - a. 총학생회장단 선거와 위탁기구 선거를 포함하여 여러 선거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선거”는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출마하는 개별 선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전산학부 선거의 두 선본에 동시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수리과학과와 동아리연합회 선거에서 각각에 한 선거운동본부씩 참여하는 것은 가능함)
4. 제29조제5항, 제36조제1항, 제38조제4항, 제38조의2제2항제2호
  - a. “추천인서명판”이란 선거운동본부의 정보 등 추천인서명을 제외한 내용이 작성된 추천인서명서를 의미한다.
5. 제37조제1항제2호, 제3항제3호, 제38조의2제2항제3호
  - a. “추천인서명서”는 위의 추천인서명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날인 또는 서명을 통해 인증된 후 추천인서명을 받기 시작한 것만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6. 제39조
  - a. 단일 후보의 경우에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가 없이 단순히 선거 홍보를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하는 수준으로 선거운동본부의 기초적인 정보나 후보등록서류, 정책자료집을 공유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7. 제48조제1항, 제50조, 제51조
  - a. 피켓 형태의 선전물은 그 내용을 인쇄하여 판자에 붙여서 제작한 경우에도 학우들에게 배부하거나 부착하여 게시하는 형태가 아니므로 제50조의 유인물이나 제51조의 게시물에 해당하는 “선전 인쇄물”로 간주하지 않고, 제48조제1항의 “기타 선전물”로 본다.
8. 제52조
  - a. 제1항제2호의 “SNS 계정”은 게시물과 유사한 형태의 선전물을 의미한다. (예시: 페이스북 게시물, 인스타그램 스토리 등)
  - b. 제1항제5호의 “SNS”는 동일 호의 다른 사례들과 유사하게, SNS 내의 1:1 또는 단체 메신저를 의미한다. (예시: 인스타그램 DM, 페이스북 메신저)

- c. 온라인 매체의 승인은 각 매체를 단위로 승인되는 것으로 한다. (예시: '카카오톡' 온라인 선전에 대한 승인, '인스타그램' 온라인 선전에 대한 승인 등)

9. 제63조제2항

- a. 제60조제3항의 누적된 주의 2회를 경고 1회로 대체하는 것은 본 조항의 공개 사과문 게시 의무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10. 제73조제3호

- a. 중복 투표가 발생한 경우, “선거인명부상의 투표수 총합”을 계산할 때 중복된 투표수를 전부 세는 것으로 한다.

11. 제86조

- a. 총학생회장단 선거와 위탁기구 선거를 포함하여 여러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며 일부 선거의 가 투표율이 유효투표율을 넘지 못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장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할 때, 오직 가 투표율이 유효투표율을 넘지 못한 선거들에 한해서만 연장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12. 제88조제1항제4호, 제2항제1호

- a. 투표용구로 주어진 도장의 뚜껑을 열지 않고 그대로 인주를 찍어 명확히 기표한 경우, 제2항제1호의 “지정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어느 란에 표를 한지 투표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는 것”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13. 제92조, 제92조의2

- a. “선거 제반 업무”는 실제 총선거 진행에 해당하는 투표, 개표 및 당선 공고, 이의제기까지의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선거보고서 작성은 포함하지 않아 선거보고서 작성 이전에 당선 확정 공고가 가능하다.

14. 제86조, 제87조제1항

- a. 학생회칙 제152조제3항을 근거로 하여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유효투표율은 50%로 한다.
- b. 위탁기구의 자치규칙에 유효투표율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제3조제1항의 단서를 따라 자치규칙의 유효투표율을 우선 적용하기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유효투표율 50%를 유효투표율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 c. 위탁기구의 자치규칙에서 투표 성립, 개표 가능 조건, 당선 확정 조건 등을 유효투표율 초과가 아닌 이상으로 정하여 해당 사항이 제3조제1항의 단서를 따라 자치규칙의 유효투표율을 우선 적용하기로 합의할 때 적용된 경우, 유효투표율 초과를 기준으로 하는 조항을 합의된 바에 따라 유효투표율 이상으로 해석한다.

15. 제94조제1호, 제2호

- a. “50%”라는 값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적용되는 것으로, 위탁기구의 선거에서 제3조제1항의 단서를 따라 자치규칙의 유효투표율을 우선 적용하기로 합의된 경우 50% 대신 해당 비율을 적용한다.
- b. 위탁기구의 자치규칙에서 투표 성립, 개표 가능 조건, 당선 확정 조건 등을 유효투표율 초과가 아닌 이상으로 정하여 해당 사항이 제3조제1항의 단서를 따라 자치규칙의 유효투표율을 우선 적용하기로 합의할 때 적용된 경우,



유효투표율 초과를 기준으로 하는 조항을 합의된 바에 따라 유효투표율 이상으로 해석한다.

16. 제95조, 제96조

- a. “선거기간의 종료”는 제28조제1항을 따라 “개표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때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장투표 등의 적합한 사유로 개표일이 미뤄질 수 있으므로, 제29조의 총선거 시행공고에 포함된 선거기간의 개표일이 아니라 실제 개표일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개표일은 개표가 개시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 제35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건의사항 및 피드백

### 1. 건의사항

#### 1) 중선거관위 업무 전반

- 전자투표를 본투표일에도 병행하면 좋겠음. 제35대 총선거에서는 사전투표일, 연장투표일에만 전자투표를 실시함. 그러다보니 본투표일에 오히려 학우분들의 투표 참여가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으며, 사전투표일에는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보니 유의미한 투표 참여로 이어지지 못했음.

선거시행세칙 제74조제2항에 따르면 본투표일에 전자투표를 병행하는 것도 가능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거관위) 구성 조속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번 중선거관위에서는 약 1달 간 업무들을 진행하였으나, 예상보다 많은 업무량으로 내부 기한을 지키지 못한 업무가 많음.  
이에 조속히 중선거관위를 구성하여, 제반 업무들을 준비하며 보다 여유롭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었으면 함.

#### 2) 선거시행세칙 개정 요청 사항

- 선거시행세칙 전반 - 제24조제3항의 주말 및 공휴일 불산입 원칙을 확대하여, 시한이 명시된 타 조항에 확대할 것을 제안함.
- 제13조 - (부)위원장 사임 시 사후 조치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기에, 이를 보완하는 것을 제안함.
- 제15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세칙 위반 시 사과문 게재 의무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 제17조 - 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때 구성 시 총 수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제한을 명시하는 것을 제안함.
- 제24조제3항 - 선거운동본부원 추가 시 중선거관위의 심의 시한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 가안: 24시간
- 제32조 - 열람기간은 (본)투표일 전날까지이므로 최대 본투표 1일차까지 선거인명부 정정이 가능함, 이는 선거인명부는 사전투표일 전일에 확정된다는 제34조와 충돌하여 개선이 필요함.
- 제34조제1항 - 선거인 명부의 수정은 확정 이전에만 가능토록 명시하는 것을 제안함.
- 제49조 - 중선거관위의 공동정책자료집 배포 시한 추가함.
  - 가안: 본투표일 3일 전
- 제52조제1항 - 온라인 매체 첫 사용 요청의 중선거관위 승인 시한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 가안: 24시간

- 제52조제2항 - 온라인 선전의 중선관위 승인의 범위 명시하는 것을 제안함.
  - 가안: 각 매체(‘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단위로 승인)
- 제74조 - 학내 오프라인 기표소 없이 온라인 방식의 투표만 진행하도록 판단하는 기준을 완화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오프라인 투표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1항 및 제3항을 위주로 개정하는 것을 제안함.
- 제74조, 제75조 - 본투표의 기한은 2일 이내로 명시되어 있으나, 사전투표의 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전자투표를 병행할 확률이 높은 추후 선거를 고려할 때, 사전투표를 삭제하고,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본투표와 연장투표의 일정을 늘리는 것을 제안함.
  - 가안: 본투표 3일, 연장투표 최대 2일
- 제92조 - 선거 제반업무 종료 시점이 불명확하여 이를 명시하는 것을 제안함. 제92조의2제2항을 고려할 때, 당선 확정 공고 이후 시점이 적합해보임.
- 제21조, 제92조의2제2항 - 선거 제반 업무 종료 시점이 불명확하여 이를 명시하는 것을 제안함.(혹은 제92조를 명시적으로 둔다면 개정하지 않아도 무방함.)

## 2. 피드백

- 중선관위 업무를 할 때에, 「선거시행세칙」을 준수해야하며, 참고해야할 상황이 많음. 이에 선관위 구성 초반에 선거시행세칙 세미나를 통해 중선관위원의 세칙 이해도를 높이는것이, 중선관위의 세칙 위반을 방지하며 업무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음.
- 오프라인 투표 진행 시 투표 장소를 실내로 하며, 실외에는 안내 배너나 실무자가 배치되면 좋겠음. 우천, 기상 환경을 고려했을 때 오프라인 투표 장소는 변수에 대한 대처가 어려움. 또한 11월의 추운 날씨로 투표 실무 시의 부담이 높았음.
- 대면 투표소에 사무원과 기표소만 있으면 학우들의 관심이 높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음. 이에 선거 안내 판넬 등으로 투표소를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여를 증진할 수 있음.
- 중요한 업무를 2인 이상이 담당하여 크로스 체크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번 중선관위 중선관위원 1인이 많은 업무를 혼자서 담당하는 상황이 많이 생기다보니, 놓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였음. 이에 선전물 승인, 징계 심의, 선거인 명부 등 중요 업무를 2인 이상이 크로스 체크 할 필요가 있음.
- 중선관위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방법의 홍보가 필요해보임. 홍보 영상/릴스 등으로 학우들의 투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번 중선관위에서도 홍보 영상/릴스 업로드 계획과 영상 촬영을 진행함. 그러나 투표 기간이 다가오며 타 업무들로 영상/릴스를 게시하지 못했는데, 후대 선관위에서는 이를 개선하여 다양한 홍보를 고안했으면 함.

- 회의록 작성 방법에 대해 명확히 규정을 마련해두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함. 회의록에는 결과만을 정리하고 속기/녹취록 보관 등으로 위원이 각자의 발언에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하는 방법도 좋을 것임.(특정 사안에 대하여만 속기의 형태로 기록될 경우, 해당 사안만을 과도하게 자세히 적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해당 사안이 중선관위 회의록 작성 과정에서 긴 논의가 오갈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미리 고려하면 좋겠다고 생각함.)
- 일반 크기 현수막은 너무 많은 단체에서 달기 때문에 묻혀서 홍보 효과가 별로 없음. 신학관에 대형 현수막을 붙이는 것이 눈에 잘 띄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크다고 생각함. 이번 선거에서는 5m\*5m 크기의 대형 현수막을 붙였었는데, 신학관 벽면에 붙이기에 크기가 너무 작아 눈에 안 띄고 고정도 어려워 결국 하루도 못가서 현수막 아래 끈이 풀리고 망가져 버렸음. 10m\*10m 정도 크기의 대형 현수막을 다는 것이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 대면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집행력이 필요함. 먼저 기표소와 투표함을 대전광역시 각 구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대여해 와야함. 대여를 하는데 예약 및 공문 작성이 필요하고, 실제 방문 하여 옮기는 인력, 사용 후 반납까지 상당히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함. 기표소와 투표함 대여 이외에도 투표날 마다 각 장소에 기표소 설치를 해야하고,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선거 실무원이 상주해 있어야 하며, 투표가 끝나면 기표소를 해체하고 투표함을 중선관위실로 옮겨야함. 이렇게 정말 많은 노력을 들여 대면 투표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선거 실무원의 실수나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인한 중복투표가 발생할 수 있어 선거의 신뢰성을 해칠 확률 또한 높음. 이런 이유로 대면 투표를 반드시 시행해야하는가에 대해 회의감이 듦.
- 오프라인 선전물, 온라인 선전물이나 선거운동복 등 선거 운동을 위해 중선관위가 선본에 승인을 해줘야하는 것들이 많음. 심지어 세칙에 따르면 12시간 또는 24시간 이내에 승인을 해주어야함. 세칙에 명시가 안되어 있더라도 선본들의 원활한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서 빠른 승인이 중요함. 승인 요청은 메일로 오기 때문에 놓치기 쉬우며,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다른 업무들에 밀려 승인이 매우 지체된 경우들이 있었음. 따라서 선거 운동 기간 만큼에는 승인에 신경 쓸 수 있도록 홍보 승인 담당자를 지정하여 놓치는 일이 없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아보임. 또한, 세칙에 “심의”가 아닌 “승인”으로 적혀있는 만큼 형식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것보다 카카오톡 투표를 통한 승인을 허용하고, 회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가능한 인원이 모여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선거시행세칙 제48조제4항 ‘그 외 선전물 12시간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회의 일정 등을 고려할때에 12시간 내에 심의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일별 선전물 제출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선거시행세칙에는 후보자들이 선거에 출마할 때 읽어보아야할 내용들이 다수 적혀있음. 그러나 현재 후보등록공지에는 후보자가 선거시행세칙을 숙지해야함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후보자로서 스스로 챙겨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선관위 차원에서 안내가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해 보임. 예를 들어, 후보자가 이미 학생사회의 일원이거나, 과대 혹은 학과 집행부에 속하여 선대 학생회장에게 출마를 위한 도움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선거시행세칙의 존재에 대해 알고, 숙지해야함을 인지할 수 있음. 그러나 학생사회에 전혀 접점이 없던 학우분이 출마할 마음을 먹게 된다면, 선거시행세칙을

숙지해야함을 알기는 어려울 수 있음. 다소 극단적인 예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만, 이런 맥락을 고려하였을 때 더 많은 학우들이 학생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선거시행세칙에 대한 안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후보 등록 서류 공지 시, 선거시행세칙의 숙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공지하거나 선거시행세칙을 숙지하였음에 대한 서명을 받는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안내를 하는 것이 좋아보임.

- 이번 선거에서 메일 확인은 7명의 운영위원들이 한 개의 요일을 담당하여, 해당 요일에 오는 메일을 전부 맡아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그러나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메일을 확인하고 있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놓치는 업무들이 생겨나고 이것이 문제로 번졌음. 중선관위 메인 소통 창구가 메일인 만큼 메일 확인 및 처리에 더욱이 신경써야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집행부원이 상근 시간에 메일 관련 업무를 보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함. 집행부원이 메일 확인을 하여 답변 가능한 메일에는 답장을 하고, 답장이 어려운 경우에 담당 운영위원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메일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아보임.
- 중선관위는 구성부터 해체까지 두달도 채 활동하지 않는 단체임.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 처리해야하는 업무의 양은 상당함. 또한 업무들의 대다수가 회의를 통한 논의가 필요한 것들임. 이번 선거에서는 정기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지만, 수 차례 임시회를 개최하여 총 19회의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한 번 회의를 진행할 때마다 2시간 이상의 긴 시간동안 논의가 진행되었음. 따라서 다수의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보다 정기회의 횟수를 주당 2회 이상으로 고정을 해두는 것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좋아보임. 또한, 중선관위가 자원으로 구성되는 만큼 중선관위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시간을 할애해야함을 명심했으면 좋겠음.
- 투표가 진행되는 시기에는 선본에서 유효투표율을 넘기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 시기인 만큼 투표율 공지가 중요한 업무임.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면 실시간으로 투표율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오프라인 투표에서는 중선관위에서 투표율 공지를 하지 않으면 선본에서 투표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따라서 선본에 투표율 공지를 할 시간을 미리 공지해주고, 해당 시간에 맞추어 신속하게 공지를 하는 것이 필수적임. 신속한 공지를 위해 투표율 공지 템플릿을 미리 만들어 두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원활하게 공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3. 경위 및 사과문 링크 정리

- [[중선관위] 제35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진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위문 및 사과문]  
<https://newara.sparcs.org/post/252231>
- [[중선관위] 심의 시간 지연 관련 추가 입장문]  
<https://newara.sparcs.org/post/252237>
- [제35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시행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밝힙니다.]  
■ 제35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시행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
- [[중선관위] 신소재공학과 연장투표 실시 안내 및 중복 투표 발생에 대한 사과문]  
<https://newara.sparcs.org/post/252275>
- [(전)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율 조작을 위한 투표인 명부 조작에 대한 규탄의 입장문]

- <https://newara.sparcs.org/post/252331>  
● [[중선관위] [제35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선거운동본부 징계 이의제기 심의 결과 공고 및 사과문]]  
<https://newara.sparcs.org/post/252342>
- [[중선관위] 투표 과정 중 선거시행세칙 위반사항에 대한 사과문]  
<https://newara.sparcs.org/post/252379>
- [[중선관위] 사실 관계를 안내드리기 위한 입장문]  
<https://newara.sparcs.org/post/252408>

**제35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선거시행세칙 위반 사항, 업무 미숙 사항,  
그 밖의 기록할 가치가 있는 총선거 관련 사항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시행세칙 위반 사항**

이번 총선거를 진행하면서, 「선거시행세칙」 숙지 미숙 및 업무 과실로 다수의 선거시행세칙 위반 사항들이 발생함. 「선거시행세칙」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안내하는 중선거관위 역할을 고려할 때에 대단히 큰 잘못임. 세칙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피드백에 서술하였으며, 관련 경위 및 사과문을 첨부 링크로 기재함. 중선거관위가 준수하지 못한 「선거시행세칙」들과 그 경위는 아래와 같음.

- 「선거시행세칙」 제34조제2항  
해당 세칙에 따르면, 사전투표일 전일인 11.16.(목)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하여야 하나 사전투표일 당일인 11.17.(금) 8:13에 선거인명부 확정을 공고함.
- 「선거시행세칙」 제48조제4항  
해당 세칙에 따르면, 선전물 중 게시물은 24시간 이내에, 그외 선전물(유인물, 온라인 선전물, 기타 선전물)은 12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1)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선전물(피켓) 심의 지연  
11.18.(토) 20:32 신청한 선전물(피켓) 심의에 대해, 11.20.(월) 19:00 개최한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였고, 당일 22:28 이를 승인하는 메일을 발송드렸음. 결과적으로 규정된 시간을 38시간 지연하였음.
  - 2) 동아리연합회 선거운동본부 <유> 유인물 심의 지연  
11.20.(월) 6:44 신청한 유인물 심의에 대해, 11.20.(월) 19:00 개최한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였고, 당일 22:20 이를 승인하는 메일을 발송드렸음. 결과적으로 규정된 시간을 약 3시간 40분 지연하였음.
- 「선거시행세칙」 제65조제3항  
해당 세칙에 따르면, 이의제기가 인정되는 경우 심의 직후 해당 징계의 취소 및 이유를 공고하여야 함.  
11.27.(월) 8:00 공고되었던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에 대한 징계에 대해 11.28.(화) 2:30 중선거관위 운영위원회에서 징계 취소를 의결함. <WITH>에는 11.28.(화) 8:00 징계 취소를 안내드렸으나, 11.29.(수) 4:41에 약 26시간 지연하여 해당 징계 취소를 공고함.
- 「선거시행세칙」 제75조제2항  
해당 세칙에 따르면, 투표는 8:30~22:30에 진행되어야 함. 그러나 이번 총선거에서는 아래 2번의 세칙 위반이 발생하였음.
  - 1) 사전 투표 1일차(11.17.(금)), UNIVTOTE 상 투표사무원 권한 부여 지연으로 북측 매점 투표소에서 오후 시간대에 투표가 진행되지 못함. 이에 온라인 플랫폼 투표를 안내드림.
  - 2) 사전 투표 2일차(11.20.(월)), 8:30에 시작되어야 할 투표 시작 시간이 지연됨. 담당자가 UNIVOTE 플랫폼에서 투표 시작 버튼을 추가로 눌러야한다는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전 예약한 투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투표가 시작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세척 위반이 발생함. 8:35 해당 문제를 인지하여, 8:55에 모든 단위의 선거가 정상적으로 시작됨.

- 「선거시행세칙」 제76조제1항  
해당 세칙에 따르면, 투표소의 위치를 5일전까지 정하여 공고하여 함. 그러나 사전투표의 위치는 공고되지 않았으며, 메일로만 안내됨. 또한, 본투표의 위치는 11.17.(일)에 공고되었기에 세척 위반이 발생함.
- 「선거시행세칙」 제77조제4항  
해당 세칙에 따르면, 단독후보 선거의 투표용지는 동일한 크기의 “찬성”, “반대”, “기권” 란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총선거에서는 전 단위가 단독후보 선거였음에도, “선본명”, “지지선본 없음”이 기재된 투표 용지를 사용함. 관련 세칙이 2022년 개정된 것은 인지하지 못하고, 마지막 오프라인 투표가 실시된 2019년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투표 용지를 사용하여 세척 위반이 발생함.
- 「선거시행세칙」 제79조제1항제3호  
해당 세칙에 따르면, 오프라인 투표 진행 시 본인 확인을 진행한 후 투표자의 본인 서명을 받아야 함. 중선관위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생략하여 투표 실무를 진행하여 세척 위반이 발생함.

##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미숙 사항

이번 총선거를 진행하면서, 「선거시행세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나 업무 상 부족했던 사항들을 기재해놓음. 「선거시행세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여, 아래의 내용들의 크기는 절대 작지 않으며 선거를 원활히 진행하여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것임. 또한 이를 방지할 수 있을 방법들을 피드백에 기재해놓음.

- 선거운동본부 징계 사유 기재 오류  
11.13.(월) 공고된, 제35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선거운동본부 징계 공고([https://newara.sparcs.org/post/252069?from\\_view=board&current=5](https://newara.sparcs.org/post/252069?from_view=board&current=5)) 내용 중 수리과학과 선거운동본부 <시내>의 징계 사유가 잘못 기재됨.  
“후보등록서류에 후보 등록자가 선거운동본부장을 겸직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지만, (중략) 후보등록서류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으며,”는 내용은 타 선거운동본부의 징계 사유에 기재되어야 하나, 편집 과정에서 오기입됨.
- 선거인 명부 작성 오류  
11.10.(금)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의 징계 관련 이의제기를 통해 선거인 명부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함. 11.14.(화) 선거인명부를 전체 검토하여, 전산학부 휴학생 선거권자 명단에서 총 23명의 오류가 있음을 확인 후 수정함. 이를 통해 중선관위 내부에서 관리중인 선거인 명부의 전자 사본은 오류가 없는 상태로 관리가 이루어짐.  
  
그러나 11.29.(월) 전산학부 학생회장인 박병찬 학우께서 열람하신 선거인명부는 수정 전의 버전이었음. (선거인명부를 같이 확인했던 중선관위원 역시 해당 학우가 열람한 명부에 없음을 확인 함) 전자사본 수정 이후, 인쇄본 역시 교체했어야 하나 이를 명확히 하지 않아 수정 전 명부와 수정 후 명부와 함께 존재했음.
- 선거운동복 심의 지연



「선거시행세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본부에서 선거운동에 사용하고자 하는 선거운동복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후보 등록 이후, 11.14.(화) 19:00 개최하는 중선관위 정기회의에서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예산안'을 심의하여,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 선거운동지원금 예산(안)을 의결함. 이에 회의 종료 후 23:37에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이하 <WITH>)에 결과를 안내하였고, '선거운동복 사전승인'을 위해 시안 제출을 요청함. <WITH>에서는 11.14.(화) 23:52 신청한 선거운동복 심의를 신청하였으며, 11.17.(금) 01:00 개최한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였고, 당일 03:53 수정을 요청하는 메일을 발송드림. 이후 11.17.(금) 11:30경에 비공식적으로 방문한 전산학부 부후보님을 중선관위원이 우연히 마주하여 상황을 설명드리고, 12:00경까지 결제를 진행했으며, 공동인증서 문제로 14:00경에 이를 마무리함.

- 선거운동본부원 추가 심의 지연  
「선거시행세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거운동본부에서 추가를 요청한 선거운동본부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 이후 선거운동본부원으로 활동할 수 있음. 11.13.(월) 전산학부 선거운동본부 <WITH>의 선거운동본부원 추가 요청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7일이 지난 11.20.(월)에 추가를 승인함.
- 온라인 선전 매체 승인 지연  
「선거시행세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본부에서 사용을 요청한 온라인 매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승인 이후 사용할 수 있음.

11.17.(금) 전기및전자공학부 선거운동본부 <MOSFEET>의 카카오톡 채팅방, 인스타그램 사용 요청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이 지난 11.20.(월)에 추가를 승인함.

- 동아리연합회 회원 대상 선거 안내 부재  
타 위탁 단위 대상 선거 안내 메일은 각 학과를 대상으로 11.15.(수) 발송되었음. 그러나 동아리연합회는 회원 대상 메일 전송이 불가해, 전체 학우 대상으로 메일을 발송할때에 정책자료집과 함께 안내하기로 함. 그러나 정책자료집 제작 및 검수가 지연되어 11.22.(수) 정책자료집 배포와 함께 선거 진행이 안내됨.
- 정책자료집 배포 지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본투표일 전일인 11.22.(수)에 온라인 정책자료집을 메일로 송부함.

중선관위에서는 11.9.(목) 후보등록 마감 이후, 11.10.(금) 양식 디자인, 11.11.(토)~11.12.(일) 양식 디자인 검토, 11.10.(금)~11.12.(일) 정책자료집 제작 후 11.13.(월) 메일로 온라인 배포하고자 계획하였음.

실제로는 집행위원 모집 이후 11.10.(금) 첫 전체 회의에서 담당자를 지정하여, 11.14.(화) 디자인이 완성됨. 11.15.(수) 후보 등록 서류의 원본 파일을 수합 완료하여, 정책자료집 파일에 입력하였음. 11.17.(금) 입력 완료 후, 11.18.(토) 피드백을 완료함. 11.21.(화) 파일 형식 변환 과정에서 기존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하고, 11.22.(수) 메일로 배포함. 내부 업무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못했던 온전한 중선관위의 책임임.

- 중복투표 발생  
이번 총선거에서는 총 11건의 중복투표가 발생했고, 그 경위를 파악함.  
사전투표일에 중복투표 5건(수리과학과 2건, 신소재공학과 1건, 전기및전자공학부 1건, 전산학부 1건), 본투표일에 중복투표 6건(신소재공학과 1건, 전산학부 1건, 동아리연합회 4건)이 있었음.

#### 1) 사전투표일 중복투표 건

본래 중선거관위에서는 사전투표 중 오프라인 투표에 투표 참여자를 온라인 투표 플랫폼 UNIVOTE에 기록하여, 중복투표를 방지하고자 함. 그러나 UNIVOTE에 처음으로 로그인하는 학우는 UNIVOTE 시스템에 기록이 되지 않는 오류로 중복 투표가 발생함.

사전투표 2일차인 11.20.(월) 오후 2시경 해당 문제를 인지함. UNIVOTE 담당자와 유선 연락을 진행하여 해당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투표를 중단 할 경우 학우분들이 겪으실 혼란과 차후 선거 일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즉시 투표 중단은 하지 않기로 결정함. 당일 오후 3시 50분 경 해당 문제를 해결하여, 중복투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완료함.

#### 2) 본투표일 중복투표 건

11.24.(금) 본투표 종료 이후, 11.25.(토) 본투표 참여자 명단을 온라인 투표 플랫폼에 전송함. 11.26.(일) 22시 경 온라인 투표 플랫폼 담당자께서 이를 기입하는 과정에서 6건(신소재공학과 1건, 전산학부 1건, 동아리연합회 4건)의 중복투표가 있었음을 확인함. (전산학부 1건은 11.27.(월) 9:29 추가로 확인하였음)

같은 시각 진행되고 있던 중선거관위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했고, 투표 사무원이 온라인 투표 플랫폼상에서 투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로 투표 용지를 지급하여 발생한 상황으로 파악함.

### 3. 그 밖에 기록할 가치가 있는 총선거 관련 사안

- 신소재공학과 오프라인 투표 참여자 명부 조작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음.
- 위 사안은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한 공식적인 입장문 2개의 링크를 기재함.
  - [(전)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율 조작을 위한 투표인 명부 조작에 대한 규탄의 입장문]
    - <https://newara.sparcs.org/post/252331>
  - [[중선거관위] 사실 관계를 안내드리기 위한 입장문]
    - <https://newara.sparcs.org/post/252408>

---

심의안건 제4호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  
준비위원회 해체안**

---

# KAIST 학부 총학생회

---

##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활동보고서

---



2023. 12. 25.

기구명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직위/이름	위원장/이재경

#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준비위원회 설치안

(중앙운영위원회 의장, 2023. 4. 17.)

## 1 개요

-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설립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에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를 설치함.
- 준비위원회는 그 활동을 통해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칙, 사업계획서, 예산안 등 학생회 설립에 필요한 서류 제작하고 학생회 조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 뇌인지과학과 학생회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구성

구분	이름	학번	비고
일반위원	이재경	20220519	뇌인지과학과 과대표
일반위원	박서은	20220255	뇌인지과학과 부과대표
일반위원	김용문	20220140	뇌인지과학과 총무
일반위원	오대혁	20220415	
일반위원	명태식	20220229	
일반위원	강서현	20220010	
일반위원	김정빈	20220158	
일반위원	허제현	20220741	
자문위원	한정현	20200692	부총학생회장
자문위원	박병찬	20210227	전산학부 학생회장
자문위원	이창섭	20210522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자문위원	김시은	20210120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 □ 주요 업무

-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에 필요한 서류 제작 및 제출 및 학생회 조직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안건지(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 인준안),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칙(자치규칙),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사업계획서(2023년도 3분기 및 하반기),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예산안(2023년도 3분기 및 하반기) 등의 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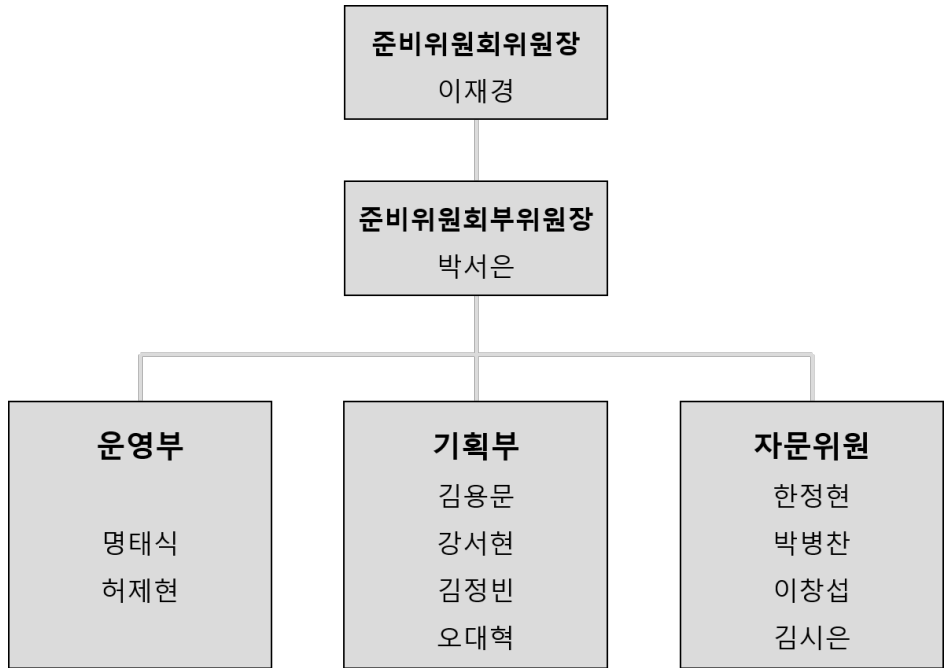
## □ 사업 계획

- 부서
  - 운영부(안건지 및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칙)
  - 기획부(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사업계획서 및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예산안)
- 운영 계획

날짜	내용
1차(~2023. 5. 6.)	- 운영부 : 안건지 완성 - 기획부 : 사업계획서 아웃라인 작성
1차 회의(2023. 5. 7.)	- 안건지 검토 및 사업 선정
2차(~2023. 5. 13.)	- 운영부 : 학생회칙 1/2 작성 - 기획부 : 사업계획서 완성
2차 회의(2023. 5. 14.)	- 학생회칙 검토 및 의결, 사업계획서 검토
3차(~2023. 5. 20.)	- 운영부 : 학생회칙 완성 - 기획부 : 예산안 1/2 완성
3차 회의(2023. 5. 21.)	- 학생회칙 검토 및 의결, 예산안 검토 및 수정 사항
4차(~2023. 5. 27.)	- 운영부

	: 회칙 최종 수정 - 기획부 : 예산안 완성
4차 회의(2023. 5. 28.)	- 학생회칙 최종 의결, 예산안 검토 및 수정사항
5차(~2023. 6. 20.)	- 운영부 : 최종 회칙 확정 - 기획부 : 예산안 수정 및 완성

□ 조직도



□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 타임라인

날짜	내용
2023. 4. 5.~2023. 4. 16.	- 뇌인지과학과 내 준비위원회 참여 인원(일반위원) 파악 - 중앙운영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 내 준비위 참여 인원(자문위원) 인원 파악
2023. 4. 18.	- 안건 서식 제공(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설치안,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

	위원회 위원 인준안)
~2023. 4. 28.	- 안건 제출(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 준비위원회 설치안,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 준비위원회 위원 인준안)
2023. 4. 29.	- 소관 소위원회에 안건 회부
2023. 5.	-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 준비위원회 설치안을 심의함
~2023. 6. 21.	-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에 필요한 서류 제작 및 제출 : 안건지(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 인준안),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칙(자치규칙),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사업계획서(2023년도 3분기 및 하반기),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예산안(2023년도 3분기 및 하반기) 등
2023. 6. 22.	- 소관 소위원회에 안건 회부
2023. 6. 26.	- 중앙운영위원회 6월 정기회의에서 준비위원회 운영 보고 -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에 필요한 서류 검토
2023. 6.	- 6월 말 개회 예정인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 인준안 의결
2023. 7.	-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장단 선출 -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구성원으로 참여
2023. 7.~2023. 8.	- 2023년도 하반기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에 필요한 서류 제출(타 학과·학부 학생회와 동일하게 총학생회 산하 자치기구로서 업무 수행)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회칙」 제62조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에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요한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안건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4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 ① 위원은 일반위원과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일반위원은 뇌인지과학과를 주전공으로 하는 학생 중에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사람으로 한다.
- ③ 자문위원은 중앙운영위원 중에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사람으로 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중앙운영위원회 인준 이후부터 위원회 해산까지로 한다.

- ② 보임(補任)되거나 개선(改選)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다.

**제7조(위원장단)**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자문위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또는 재적위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의사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의결에 부의할 수 있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일반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결과를 기록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위원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처리)** 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임사항)** 위원회는 회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안

(중앙운영위원회 의장, 2023. 7. 25.)

## 1 개요

- **(설립근거)** 학생회칙 제104조에 따라 각 학부·학과 학생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학생자치기구로서 학부·학과학생회를 설립함.
- **(설립과정)**
  - 2023. 5. 15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가 설치됨.
  - 설치안 심의의결 후 (공식)회의는 진행하지 않았지만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칙 초안 작성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함.
  -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대면 회의 및 비대면 회의를 진행함.
  - 안건지(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 인준안),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칙(자치규칙),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사업계획서(2023년도 3분기 및 하반기),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예산안(2023년도 3분기 및 하반기) 등을 작성함.
- **(자치규칙)**
  -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의 목적은 뇌인지과학과의 자치를 실현하고 뇌인지과학과 학생사회의 능동적인 참여로 구성원들의 지성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것으로 함.
  -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의 회원은 KAIST 학부 총학생회 회원 중 주전공이 뇌인지과학과인 자를 정회원으로 하고,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인 자를 준회원으로 함.
  -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운영부에서 회의를 통해 작성하였으며 다른 학과 학생회의 자치규칙을 참고함.
  - 초안 완성(2023. 5. 11), 피드백 및 전체적인 선거 인원수 비율, 선거 항목 수정(2023. 5. 14), 수정본 학부 총학생회에 송부 및 피드백 요청(2023. 5. 19) 뇌인지과

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자치규칙 의결(2023. 5. 28)

□ (사업계획)

-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의 사업 계획은 3분기에 진행하는 사업이 전부이고 계절학기에 진행할 사업은 없어 3분기와 하반기의 사업계획서 내용이 동일함.
- 뇌인지과학과 전공과목 수강평 이벤트, 시험기간 간식 이벤트, 친목조, 그룹스터디, 전공서적 대여, 워크샵으로 6개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 (예산안)

- 예산 수입의 경우 비슷한 인원수의 타학과와 비교하여 학생회비 항목을 작성하고, 학과 단체특방을 이용한 투표로 가결정된 과비와 추가적인 예상비용을 더해 자치 항목을 작성함.
- 예산 지출의 경우 친목조, 그룹스터디, 전공서적 대여는 학생회비로, 시험기간 간식 이벤트와 뇌인지과학과 전공과목 수강평 이벤트, 워크샵은 자치로 이루어질 예정임.

2

뇌인지과학과 자치규칙

---

## 제 1 장 총칙

### 제 1 조(명칭)

본회는 KAIST 뇌인지과학과 학부 학생회라 한다.

### 제 2 조(목적)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학과 내의 자치를 실현하고 뇌인지과학과 학생사회의 능동적인 참여로 구성원들의 지성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지위)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 산하 자치기구이다.

#### 제 4 조(회원)

1.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2. KAIST 학부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 회원 중 주전공이 뇌인지과학과인 사람은 본회의 정회원이 된다.
  1. 정회원은 제 5 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2. 정회원 중 제 5 조제 8 항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제 5 조제 7 항의 권리를 일부 제한당할 수 있다.
3. 총학생회 회원 중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이 뇌인지과학과인 사람은 본회의 준회원이 된다.
  1. 준회원은 제 5 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 중 제 5 조제 5 항, 제 5 조제 6 항을 제외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2. 준회원 중 제 5 조제 8 항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 5 조제 7 항의 권리를 일부 제한당할 수 있다.
  3. 준회원의 자치활동 참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4.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회원으로 인준받을 수 있다.

#### 제 5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고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사상, 종교, 장애, 질병 등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본회의 회원은 학습권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배움을 주체적으로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3. 본회의 회원은 본회 운영 전반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활동을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에 대한 침해에 저항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5.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다.
6.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진다.
7.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9.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제 6 조(회원의 징계)**

회원 또는 본회 기구가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가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본회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당 회원 또는 본회 기구를 징계할 수 있다.

## **제 7 조(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로 구성한다.

1. 의결기구: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운영위원회
2. 집행기구: 학생회장단, 과대표단, 집행위원회

## **제 8 조 (개인정보 보호)**

1. 본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본회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열람·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명확한 근거를 가진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 제 2 장 의결기구

### 제 1 절 통칙

#### 제 9 조(의사결정)

본회 운영의 제반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은 본칙에서 규정하는 의결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 제 10 조(위계)

1. 본회의 의결기구는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운영위원회 순으로 권한이 있다.
2.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은 하위 기구의 의사결정에 우선한다.
3.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위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 제 11 조(의장)

1. 본회 의결기구의 의장은 본회 회칙에 다르게 정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학생회장으로 한다.
2.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3.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4. 학생회장 사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부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5.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모두 사고 또는 궐위된 때 또는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인준된 1 인이 그 직을 대신하며, 해당 의결기구의 개회 직후 해당 의결기구의 재인준을 받는다.

### 제 2 절 학생총회

#### 제 12 조(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 제 13 조(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 제 14 조(형식)

학생총회는 본회 정회원의 연석의 형식으로 한다.

### 제 15 조 (권한)

학생총회는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학생회장단 탄핵안 등 본회 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
2. 그 밖에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중대한 사항

### 제 16 조(소집)

1. 학생총회는 전체학생총회와 비상학생총회로 나뉜다.
2. 전체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학생총회의 의장이 14 일 이내에 소집한다.
  1. 뇌인지과학과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 또는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본회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의장은 전체학생총회 개회 5 일 전에 학생총회의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에 학생총회의의 의장이 비상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의장은 비상학생총회 개회 24 시간 전에 학생총회의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제 17 조(안건 상정)**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전체학생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1. 뇌인지과학과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 또는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2. 본회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비상학생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1. 제 16 조제 4 항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에 의장의 소집요구와 함께 의장이 안건을 발의한 경우

### **제 18 조(의사·의결정족수)**

학생총회는 본회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본회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19 조(결과공고)**

학생총회의 의장은 폐회 후 7 일 이내에 결과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 **제 3 절 학생총투표**

### **제 20 조(지위)**

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 이를 통한 의결사항은 학생총회의 의결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제 21 조(투표권)**

본회 정회원은 학생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 제 22 조(형식)

학생총투표는 본회 정회원의 투표의 형식으로 한다.

## 제 23 조(권한)

학생총투표는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학생회장단 탄핵안 등 본회 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
2. 그 밖에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중대한 사항

## 제 24 조(시행)

1. 학생총투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1. 운영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가 있을 때
  2. 선거권을 가진 본회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가 있을 때
  3. 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되었을 때
  4. 그 밖에 본회의 중대한 사항이 있을 때
2. 학생총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학생총회 의장은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3. 투표관리위원회는 학생총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4. 학생총회 의장은 시행 7일 전에 학생총투표의 시행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제 25 조(안건상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은 학생총투표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2. 본회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3. 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

4. 제 24 조(시행)제 1 항제 4 호에 따른 의장의 시행요구와 함께 의장이 안건을 발의한 경우

#### **제 26 조(성립·의결요건)**

1. 학생총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명부상 총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 **제 27 조(결과공고)**

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완료 이후 24 시간 이내에 학생총회 의장이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

### **제 4 절 운영위원회**

#### **제 28 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학생총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 **제 29 조(구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이 된다.

1. 학생회장단
2. 과대표단

#### **제 30 조(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4. 본회의 제반 사항
2. 학생회칙 및 세칙 제정안 및 개정·폐지안

3. 운영위원 탄핵안
4. 본회 차원의 대외적 활동에 관한 사항
5. 본회의 예산안 및 결산
6. 학생회장단이 모두 사고 또는 궐위된 때에 학생회장 직무대리 인준안
7. 그 밖에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하는 제반 사항

### 제 31 조(소집)

1.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또는 운영위원 재적 인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의장은 운영위원회 개회 24 시간 전에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제 32 조(안건상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은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1. 학생회장의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2. 운영위원 재적 인원 과반수의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3. 운영위원회 의장이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발의한 경우

### 제 33 조(안건의 상정 시기)

안건의 상정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 32 조(안건상정)제 1 호부터 제 2 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제 31 조(소집)에 따라 소집되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본회 회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2. 제 32 조(안건상정)제 3 호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안건발의 일자로부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소집이 공고되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본회 회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 제 34 조(겸직)

겸직이 발생할 경우 재적 인원, 재석 인원, 의결권의 중복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 35 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36 조(공고)**

의장은 폐회 후 7 일 이내에 결과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제 37 조(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1. 본회에 지정되는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은 학생회장, 2 학년 과대표, 뇌인지과학과 부학생회장, 2 학년 부과대표, 4 학년 과대표, 4 학년 부과대표 순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제 1 항에 따라 대의원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은 본회 회원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대의원으로 인준한다.

## **제 3 장 집행기구**

### **제 1 절 학생회장단**

#### **제 38 조(지위)**

1.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2.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고, 학생회장이 권한을 위임한 때에 그 권한을 대행한다.

#### **제 39 조(선출)**

제 65 조부터 제 77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 **제 40 조(임기)**

1.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전년도 1분기 초 총학생회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 후부터 당해 연도 1분기 초 총학생회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 이전까지로 한다. 다만, 보임(補任)되거나 개선(改選)된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임기 시작부터 1분기 초 총학생회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 이전까지로 하며, 임기 시작은 당선 확정 공고 등 본회의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
2. 학생회장단이 학생회 정회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사퇴한 것으로 본다.

#### **제 41 조(신분보장)**

학생회장단은 임기만료나 사퇴,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제 42 조(의무)**

1. 학생회장단은 본회 회원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학생회장단은 본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학생회장단은 본회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학생회장단은 후임 학생회장단으로의 인수인계를 통해 차후 업무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 43 조(업무 및 권한)**

1. 학생회장은 의결기구를 운영하고 의장이 된다.
2.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3. 학생회장은 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 44 조(겸직금지)**

학생회장단은 다음과 같은 직을 겸할 수 없다.

1. 총학생회장단
2.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3. 타 학부·학과 학생회 학생회장단
4. 새내기학생회 회장단
5.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6. 각 자치기구 비례 대의원

#### 제 45 조(탄핵)

1. 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은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둘 중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2. 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2/3 이상의 연서
  2. 선거권을 가진 학생회 1/8 이상의 연서
3. 탄핵안이 발의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내부호선으로 선출한 1 인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탄핵안 발의 3 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탄핵안을 학생총회 또는 학생총투표로 발의한다.
4. 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 시 학생회장단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때, 제 3 항에서 인준된 사람이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학생회장단 탄핵안이 학생총회 또는 학생총투표에서 부결된 경우에 학생회장단은 직무에 복귀한다.

#### 제 2 절 과대표단

#### 제 46 조 (지위)

1. 학년별 과대표는 학생회 각 학년 회원을 대표한다.
2. 학년별 부과대표는 과대표를 보좌하며 과대표의 사고 또는 궐위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47 조(구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대표단이 된다.

1. 2 학년 과대표
2. 2 학년 부과대표
3. 3 학년 과대표
4. 3 학년 부과대표
5. 4 학년 과대표
6. 4 학년 부과대표

#### 제 48 조(임기)

1. 학년별 과대표단의 임기는 당선 확정 공고 이후부터 차년도 봄학기 개강일 전일 전까지로 한다.
2. 진급에 따른 학년 변경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과대표단이 본회 정회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사퇴한 것으로 본다.

#### 제 49 조(학년의 구분)

1. 과대표단의 소속 학년은 학번을 기준으로 한다.
2. 통상과 벗어난 형태의 학년 구분 사례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 50 조(학생회장의 겸임)

학생회장단은 소속 학년의 과대표단을 겸할 수 있다.

#### 제 51 조(선출)

1. 학년별 과대표단의 선출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2. 본회의 정회원 중 각 학년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 학년 과대표, 부과대표 선출에 입후보할 권리와 선출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3. 유효 투표는 선거권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며, 유효 투표 시 득표순으로 과대표, 부과대표로 한다 다만, 단일 후보의 경우에는 찬성표가 유효 투표 수의 50%를 초과할 시 당선으로 한다.
4. 선출은 매해 봄학기 개강 후 2 주 내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대표단 중 지원자가 없거나 보궐선거의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로 선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5. 그 밖에 과대표단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 제 52 조(탄핵)

1. 과대표단에 대한 탄핵은 과대표 및 부과대표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둘 중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2. 과대표단 탄핵안은 선거권을 가진 해당 학년 회원 6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 의장은 과대표단 탄핵안 발의 10 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과대표단 탄핵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4. 과대표단 탄핵안 발의 시 과대표단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때, 운영위원회 의결로 인준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과대표단 탄핵안이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에 과대표단은 직무에 복귀한다.
5. 학생회장단이 과대표단을 겸직할 경우, 학생회장단 직에서 탄핵될 때에 과대표단 직도 함께 탄핵된 것으로 본다.

### 제 53 조(보궐)

1. 학년별 과대표가 사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그 학년의 부과대표가 제 46 조 2 항(과대표단 지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학년별 부과대표가 사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부과대표 직을 공석으로 한다.
3. 2 학년 과대표 또는 부과대표가 사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보궐선거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선거 시행 의결은 사고 또는 궐위가 확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진행하여야 한다.

4. 3 학년 또는 4 학년 과대표단이 모두 사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선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5. 과대표 또는 부과대표의 보궐선거는 제 51 조(과대표단의 선출)에 따라 시행한다.

#### **제 54 조(당선 공고)**

운영위원회는 개표 완료 이후 24 시간 이내에 선거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 3 절-집행위원회**

#### **제 55 조(지위)**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 **제 56 조(구성)**

집행위원은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분된다.

1. 학생회장단과 2 학년, 3 학년 과대표단은 당연직 집행위원이 된다.
2. 임명직 집행위원은 학생회장이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학생회칙」제 163 조에 따른 학생회비와 회비를 모두 납부한 정회원 중에서 임면(任免)한다.
3. 집행위원회의 국서 체계는 학생회장단이 정한다.

#### **제 57 조(업무 및 권한)**

1. 집행위원회는 본회 업무 전반에 대해 최고 집행 권한을 갖는다.
2. 집행위원회는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업무를 집행한다.
3. 집행위원회는 사업 보고서 및 결산, 사업 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고, 사업 및 업무에 관련된 과정을 기록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58 조(총무)**

1. 총무는 집행위원 중 1 인을 학생회장단이 임면한다.
2. 총무는 학생회비 집행사항을 감사하며 총학생회 산하 감사원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 59 조(운영)**

전반적인 운영은 의결기구 및 학생회장단의 방향에 따른다.

### **제 4 절-비상대책위원회**

#### **제 60 조(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집행위원회를 대체하고 본회의 최고집행기구가 된다.

1.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
2. 학생회장단 두 명 모두가 사퇴 또는 탄핵되고, 해당 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180 일이 넘지 않을 때

#### **제 61 조(구성)**

1. 운영위원회는 제 60 조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지체 없이 해당 사항 및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모집공고 후 10 일 이내에 모집한 정회원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3. 다만, 운영위원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집행위원회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제 62 조(업무 및 권한)**

1.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집행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한다.
2. 비상대책위원회는 업무 범위 및 운영 절차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제 63 조(위원장단)**

1.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내부호선한다.
2. 비상대책위원장단은 학생회장단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 **제 64 조(임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제 71 조에 따른 선거기간 종료일 2 일 후에 종료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제 4 장 선거**

#### **제 65 조(선거)**

본회의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시행한다.

#### **제 66 조(선거권)**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 **제 67 조(피선거권)**

본회의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 제 68 조(선거시기)

선거는 매년 가을학기 중에 실시한다. 다만, 선거가 무산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시기를 정한다.

## 제 69 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

1. 선거는 총학생회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제반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을 우선하여 따른다.
2. 다만, 제 1 항에 따른 선거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제 70 조(선거관리위원회)

1. 제 69 조 2 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거를 진행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2. 선관위는 운영위원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3.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모든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선거 과정상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심의 및 최고결정권한을 갖는다.
4. 선관위는 공개모집을 거쳐,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중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회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내부호선한다.
5. 선관위의 모든 결정은 재적 선관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6. 선관위 위원은 당해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7. 선관위는 학생회장단의 당선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 해산한다.

## 제 71 조(선거기간)

1. 선거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일정에 따라 진행한다.

2. 선거기간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선거시행공고일
2. 후보등록기간
3. 선거운동기간
4. 투표일
5. 개표일

3. 선거는 후보등록기간을선거시행공고일 이후 3일 이상 5일 이내로 하며, 선거운동기간을 후보 공고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을 포함하여 7일 이상, 투표일을 2일 이내, 개표일을 투표종료 직후로 하여 선거기간을 정한다.

#### 제 72 조(후보등록)

1. 학생회장단 후보는 학생회장 후보 1인과 부학생회장 후보 1인으로 구성된다.
2. 피선거권을 갖는 사람 중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들은 후보등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후보등록서류
2. 성적증명서 등 재학기간 및 학사 경고 횟수를 밝히는 서류
3.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징계 사유와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후보등록서류는 후보의 이름, 사진 및 선거공약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후보의 후보등록서류를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선거권을 가진 학생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제 73 조(선거방법)

1.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학생회장단 선거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학생회장단 선거의 후보로 등록할 본회의 정회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한다.
  2. 경선의 경우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 단선의 경우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 시 당선으로 한다.
  4.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20 일 이내에 재선거를 시행한다.
2. 구체적인 사항과 일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 **제 74 조(재선거)**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당선 후보를 확정할 수 없어 재선거를 시행한다.
  1. 학생회장단단 선거의 후보자가 등록되지 아니하였을 때
  2.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3. 운영위원회가 당선을 취소하였을 때
2. 구체적인 사항과 일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 **제 75 조(보궐선거)**

1. 학생회장이 사퇴하거나 탄핵되었을 때, 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남은 임기가 180 일 이상일 경우 운영위원회는 사퇴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보궐선거는 제 69 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부터 제 73 조(선거방법)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 **제 76 조(이의제기)**

1. 본회 회원은 학생회장단 선거의 당선 공고 후 48 시간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이를 본회 회칙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2. 운영위원회가 당선을 취소한 경우에 제 74 조에 따라 재선거를 시행한다.

#### **제 77 조 (당선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24 시간 이내에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선거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 5 장 재정

### 제 78 조(원칙)

본회의 각 기구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제 79 조(수입)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학생회칙」제 116 조에 따른 기충기구회계 지원금, 학과 지원금, 수익 사업 수입,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 80 조(회계)

본회의 회계 운용은 매 학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제 81 조(관리)

1.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이익과 회원 전체의 권리 증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본회의 재정은 집행위원회에서 관리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감독한다.
3. 집행위원회에 책정되는 회의비는 집행위원 1인 당 20,000 원을 넘길 수 없다.
4. 회비는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비 납부가 지연된 학생에게는 5,000 원의 추가 회비를 더하여 징수한다. 이때에 추가 납부 기간은 7일로 정한다.

## 제 6 장 회칙 개정

### 제 82 조(발의)

1. 본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1. 운영위원회의 발의
  2.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2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2. 현행 학생회칙
  3. 개정 학생회칙안
  4. 신·구문 대비표 및 해설
  5.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 제 83 조(공고)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학생회장이 7 일 이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 84 조(의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7 일 이후 20 일 이내에 학생총회 또는 운영위원회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확정한다.

### 제 85 조(공포 및 발효)

1. 회칙 개정이 의결되면 학생회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2. 개정 공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1.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2. 신·구문 대비표 및 해설
  3.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4. 회칙개정안 찬성 대의원 명단

3. 개정된 회칙은 공포 후 5일 후에 발효된다. 단, 회칙 개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유예기간이 지정된 경우 유예기간 이전까지 전부 또는 일부 개정 전 회칙이 효력을 발한다.

## 제 7 장 부칙

### 제 1 조(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 후 즉시 발효된다.

### 제 2 조(적용례)

1. 제 1 대 학생회장단 선거의 경우에는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에서 제 65 조제 1 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제 1 대 학생회장단에 한하여 임기를 당선 확정 공고 이후부터 차년도 1 분기 초 총학생회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 이전까지로 한다.
3. 해당 학생회장단은 2024 년도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장단을 연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023년도 3분기)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 2023년도 3분기 예산안

KAIST 학부 총학생회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2023년도 3분기 예산안			
기 구 명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준비위원회	반 기	3분기
기 구 장	위원장 이재경	제출연월일	2023. 6. 18.

수 입								
재원(장)	예산 분류(관)	항목(항)	코드	전년도 결산	당해 연도 예산	비율	예산 상정 근거	
100	학생회비	기증기구회계	기증기구회계 지원금	101	-	₩300,000	-%	비슷한 인원수의 타학과 참고
			기증기구회계 이월금	102	-	₩0	-%	
			격려기금	103	-	₩230,768	-%	전산학부랑 동일하게 가정
		<b>수입 소계</b>			<b>₩0</b>	<b>₩530,768</b>	<b>-%</b>	
200	본회계	-	-	-	-	-%		
		<b>수입 소계</b>		<b>₩0</b>	<b>₩0</b>	<b>-%</b>		
300	자치	이월금	이월금	301	-	₩0	-%	
		예금이자	예금이자	302	-	₩0	-%	
		과비	과비	303	-	₩150,000	-%	1인당 7500원, 가을학기 총학생수 20명으로 예산 ₩7500*20명
			과비 이월금	304	-	₩0	-%	
		기타수익금	워크샵 참가비용	305	-	₩750,000	-%	₩50000*15명
			<b>수입 소계</b>			<b>₩0</b>	<b>₩900,000</b>	<b>-%</b>
	<b>수입 총계</b>			<b>₩0</b>	<b>₩1,430,768</b>	<b>-%</b>		

지 출									
재원(장)	예산 분류(관)	사업명(항)	예산 과목 (세부 항목)	코드	전년도 결산	당해 연도 예산	비율	예산 상정 근거	
400	학생회비	정기사업비	민족초	격려금	401	-	₩100,000	-%	지원금₩5000*20명
		정기사업비	그룹스터디	상품비	402	-	₩100,000	-%	음식기프티콘₩20000*5명
		비정기사업비	전공서적대여	물품비	403	-	₩100,000	-%	책₩50000*2권
			<b>지출 소계</b>			<b>₩0</b>	<b>₩300,000</b>	<b>-%</b>	
500	본회계	-	-	-	-	-%			
		<b>지출 소계</b>		<b>₩0</b>	<b>₩0</b>	<b>-%</b>			
600	자치	정기사업비	시험기간 간식 이벤트	물품비	601	-	₩100,000	-%	도시락 ₩5000원 * 20명
		정기사업비	뇌인지과학과 전공과목 수강생 이벤트	상품비	602	-	₩50,000	-%	치킨기프티콘 ₩25000*1명, 커피기프티콘 ₩5000원*5명
		비정기사업비	워크샵	물품비	603	-	₩750,000	-%	숙박비₩400000, 식비₩350000
			<b>지출 소계</b>			<b>₩0</b>	<b>₩900,000</b>	<b>-%</b>	
	<b>지출 총계</b>			<b>₩0</b>	<b>₩1,200,000</b>	<b>-%</b>			

총계	전년도 결산	당해년도 예산	비율
수입	₩0	₩1,430,768	-%
지출	₩0	₩1,200,000	-%
잔액	₩0	₩230,768	-%

학생회비	전년도 결산	당해년도 예산	비율
수입	₩0	₩530,768	-%
지출	₩0	₩300,000	-%
잔액	₩0	₩230,768	-%

본회계	전년도 결산	당해년도 예산	비율
수입	-	-	-%
지출	-	-	-%
잔액	-	-	-%

자치	전년도 결산	당해년도 예산	비율
수입	₩0	₩900,000	-%
지출	₩0	₩900,000	-%
잔액	₩0	₩0	-%

○ 2023년도 3분기 사업계획서: 35p~49p

# KAIST 학부 총학생회

---

##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 2023년도 3분기 사업계획서

---



2023. 6. 18.

기구명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직위/이름	위원장/이재경

## 제 출 문

학부 총학생회장 귀하:

본 계획서를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의 2023년도 3분기 사업계획서로 제출  
합니다.

2023년 6월 18일

	담당자	기구장
서명	-	이재경

---

## I. 사업 개요

---

사업번호	사업명
1	뇌인지과학과 전공과목 수강평 이벤트
2	시험기간 간식이벤트
3	친목조
4	그룹스터디
5	전공서적 대여
6	워크샵

---



---

## Ⅱ. 사업별 계획

---

### 1

## 뇌인지과학과 전공과목 수강평 이벤트

---

### 1. 사업 개요

- |             |   |
|-------------|---|
| 1) 사업 방식    | otl.kaist.ac.kr을 이용하여 뇌인지과학과에서 열리는 전공필수 혹은 전공선택과목의 수강평을 남기고 인증을 통해 상품을 제공 |
| 2) 사업 준비 기간 | 2023.11.25~2023.12.20   |
| 3) 사업 일시    | 2023.12.21~2023.12.28   |
| 4) 사업 예산    | ₩50000  |
| 5) 담당부서/담당자 | 집행부/집행부 부원  |

### 2. 사업 추진 목적

학우들이 실라버스에 있는 간단한 수업 요약서 만으로는 알 수 없는 수업의 로드나 공부 팁 등을 수강평에서 많이 참고하곤 한다. 특히, 뇌인지과학과는 2023학년 봄학기, 새롭게 신설된 학과로 매 학기 새로운 과목들이 열리고 있기에 이전학기(2022학년 겨울학기)까지의 수강평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학생회는 이후 뇌인지과학과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벤트를 통해 수강평 작성을 독려하고자 한다.

### 3. 사업 계획

#### 1) 사업 수혜 대상자

KAIST 전체 학생 중 2023 가을학기에 뇌인지과학과 전공필수, 혹은 전공선택과목을 수강한 자

#### 2) 세부 사업 내용

2023 가을학기 종강 이후 일주일 간 otl.kasit.ac.kr 에 뇌인지과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에 대한 수강평을 작성한다. 이후 이것을 뇌인지과학과 공식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인증하고 이벤트기간 종료 후 추첨을 통해 상품을 전달한다.

#### 4. 사업 예상 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2023.11.25~2023.12.20	수강평 이벤트 홍보	인스타그램, 학과 단톡방활용
2023.12.21~2023.12.28	수강평 작성 인증내용 수집	인스타그램
2023.12.29	이벤트 당첨자 발표 및 상품 수령	인스타그램

### 1. 사업 개요

- |             |  |
|-------------|--|
| 1) 사업 방식    |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기간에 뇌인지과학과 정회원을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      |
| 2) 사업 준비 기간 | 2023.09.25~2023.10.09, 2023.11.20~2023.12.03 |
| 3) 사업 일시    | (중간고사 기간) 2023.10.10, (기말고사 기간) 2023.12.04   |
| 4) 사업 예산    | ₩100,000                                     |
| 5) 담당부서/담당자 | 집행부/집행부 부원                                   |

### 2. 사업 추진 목적

시험기간 많은 양의 공부로 지친 학우들을 응원하고 효율적인 시험공부를 독려하고자 뇌인지과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한다.

### 3. 사업 계획

- 1) 사업 수혜 대상자

KAIST 뇌인지과학과 정회원

- 2) 세부 사업 내용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각 시작 일주일 전 월요일(공휴일일 경우 화요일)에 학과 건물 오픈스페이스에서 16:00~19:00 동안 뇌인지과학과 정회원을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

#### 4. 사업 예상 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2023.09.25~2023.10.09	간식 메뉴 결정, 사전 주문	
2023.10.10	간식 나눔 행사 진행	뇌인지과학과 오픈스페이스
2023.11.20~2023.12.03	간식 메뉴 결정, 사전 주문	
2023.12.04	간식 나눔 행사 진행	뇌인지과학과 오픈스페이스

### 1. 사업 개요

1) 사업 방식	학기 중 친목조 형성, 활동 기록 후 상품 지급
2) 사업 준비 기간	2023.08.07 ~ 2023.08.27
3) 사업 일시	2023.08.28 ~ 2023.12.15
4) 사업 예산	₩100,000
5) 담당부서/담당자	집행부/집행부 부원

### 2. 사업 추진 목적

과 학우들의 친목을 도모하여 학과의 분위기 조성 및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진함. 또한 상품을 통해 친목조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로 활발한 친목 활동을 장려함.

### 3. 사업 계획

#### 1) 사업 수혜 대상자

KAIST 뇌인지과학과 학부생

#### 2) 세부 사업 내용

2023년도 가을학기 동안 약 4인 ~ 6인으로 구성된 친목조를 구성하여 친목 활동을 진행함. 진행한 친목 활동 인증 시 금액을 지원한다.

#### 4. 사업 예상 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2023.09.01~2023.09.08	친목조 형성	
2023.09.08~2023.12.01	친목조 활동 진행	
2023.12.04~2023.12.04	상품 지급	

### 1. 사업 개요

- |             |                               |
|-------------|-------------------------------|
| 1) 사업 방식    | 과 구성원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스터디를 진행함 |
| 2) 사업 준비 기간 | 2023.08.28 ~ 2023.09.04       |
| 3) 사업 일시    | 2023.09.05 ~ 2023.12.15       |
| 4) 사업 예산    | ₩100,000                      |
| 5) 담당부서/담당자 | 집행부/집행부 부원                    |

### 2. 사업 추진 목적

학과 구성원들 중 같은 과목을 수강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서로 모르는 것들에 대해 묻고 답함으로써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또 과 구성원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3. 사업 계획

- 1) 사업 수혜 대상자  
뇌인지과학과 구성원들
- 2) 세부 사업 내용

단체 혹은 개인에게 스터디 창설 신청서를 받는다. 이때 스터디 그룹의 인원수의 제한은 없다. 이후 스터디 그룹의 인원수 조건인 최소 3명 최대 6명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 모집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부에서 중개해주어 학생들의 원활한 스터디 그룹 조직을 돕는다. 이후 학기 중에 조끼리 자유롭게 모여서 스터디를 진행하고, 카톡방에 인증사진과 추가적으로 학습 내용을 올림으로써 활동을 인증하고 점수를 받는다. 이후 학기말에 점수가 높은 조에게 상품을 준다.

#### 4. 사업 예상 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2023.09.05~2023.09.10	참가자 모집	
2023.09.11~2023.12.15	스터디 진행	
2023.12.16	우수 조 시상	



### 1. 사업 개요

1) 사업 방식	뇌인지과학과 학부생들에게 전공서적 대여
2) 사업 준비 기간	2023.08.01 ~ 2023.09.03
3) 사업 일시	2023.09.04 ~ 2023.12.15
4) 사업 예산	₩100,000
5) 담당부서/담당자	집행부/집행부 부원

### 2. 사업 추진 목적

학과 구성원들이 전공서적을 직접 사기에는 비싼 가격이 부담될 수 있으므로, 학과 차원에서 전공책을 대여해줌으로써 학과 구성원들의 전공 공부를 도움.

### 3. 사업 계획

#### 1) 사업 수혜 대상자

뇌인지과학과 학과 구성원

#### 2) 세부 사업 내용

학기 초에 필요한 전공서적들을 학과 차원에서 구매한 후, 학과 구성원들에게 이를 대여해 줌.

- 사업 진행 방식: 담당자에게 신청하여 대여해간 후 반납일에 반납함
- 대여 기간: 한 번에 최대 7일, 이후 대여를 원하는 학생이 없을 경우 추가로 연장 가능
- 연체 시 1일당 연체료: 연체된 책의 가격의 10%

#### 4. 사업 예상 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2023.08.01~2023.09.03	필요한 전공서적 구매	
2023.09.04~2023.12.15	전공서적 대여 진행	

## 1. 사업 개요

- |             |   |
|-------------|---|
| 1) 사업 방식    | otl.kaist.ac.kr을 이용하여 뇌인지과학과에서 열리는 전공필수 혹은 전공선택과목의 수강평을 남기고 인증을 통해 상품을 제공 |
| 2) 사업 준비 기간 | 2023.09.11~2023.09.18   |
| 3) 사업 일시    | 2023.10.28~2023.10.29   |
| 4) 사업 예산    | ₩750000   |
| 5) 담당부서/담당자 | 집행부/집행부 부원  |

## 2. 사업 추진 목적

학생들이 스스로 세미나를 진행하며 뇌인지과학과를 알아가고 이후 친목 도모를 위한 시간을 통해 더 친근하고 적극적인 학과 분위기를 조성한다. 학과 학생들이 학과에 대해 조사하며 워크샵의 주 구성원들인 신입생들의 경우 학과의 연구나 성과, 뇌인지과학 분야의 최신 근황 등을 더욱 자세히 알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서로 공유하고 질의 응답을 하는 과정을 통해 함께 발전하고 학생들의 학구열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친목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적인 부분 외에도 서로 알아가며 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3. 사업 계획

- 1) 사업 수혜 대상자

뇌인지과학과 학과 구성원

## 2) 세부 사업 내용

학교에서 학생들의 주도로 이뤄지는 세미나 시간을 가진 후, 펜션으로 이동해 친목을 도모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 4. 사업 예상 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2023.09.11~2023.09.18	워크샵 관련 예약 및 수요 조사	학과 단톡방 활용
2023.10.28~2023.10.29	워크샵 진행	

□ (2023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 2023년도 하반기 예산안

KAIST 학부 총학생회

노인지과학과학생회 2023년도 하반기 예산안

기 구 명	노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반 기	하반기
기 구 장	위원장 이재경	제출연월일	2023. 6. 18.

수 입								
재원(장)	예산 분류(관)	항목(항)	코드	전년도 결산	당해 연도 예산	비율	예산 선정 근거	
100	학생회비	기증기구회계 지원금	101	-	₩300,000	-%	비슷한 인원수의 타학과 참고	
		기증기구회계 이월금	102	-	₩0	-%		
		격려기금	103	-	₩230,768	-%	전산학부량 동일하게 가정	
		<b>수입 소계</b>			<b>₩0</b>	<b>₩530,768</b>	<b>-%</b>	
200	본회계	-	-	-	-	-%		
300	자치	<b>수입 소계</b>			<b>₩0</b>	<b>₩0</b>	<b>-%</b>	
		이월금	301	-	₩0	-%		
		예금이자	302	-	₩0	-%		
		과비	303	-	₩150,000	-%	1인당 7500원, 가을학기 총학생수 20명으로 예상 ₩7500*20명	
		과비 이월금	304	-	₩0	-%		
		기타수익금	305	-	₩750,000	-%	₩50000*15명	
		<b>수입 소계</b>			<b>₩0</b>	<b>₩900,000</b>	<b>-%</b>	
<b>수입 총계</b>			<b>₩0</b>	<b>₩1,430,768</b>	<b>-%</b>			

지 출									
재원(장)	예산 분류(관)	사업명(항)	예산 과목 (세부 항목)	코드	전년도 결산	당해 연도 예산	비율	예산 선정 근거	
400	학생회비	정기사업비	□진목조	격려금	401	-	₩100,000	-%	지원금₩5000*20명
		정기사업비	그룹스터디	상품비	402	-	₩100,000	-%	음식기프티콘₩20000*5명
		비정기사업비	전공서적대여	물품비	403	-	₩100,000	-%	책₩50000*2권
		<b>지출 소계</b>				<b>₩0</b>	<b>₩300,000</b>	<b>-%</b>	
500	본회계	-	-	-	-	-	-%		
600	자치	<b>지출 소계</b>				<b>₩0</b>	<b>₩0</b>	<b>-%</b>	
		정기사업비	시험기간 간식 이벤트	물품비	601	-	₩100,000	-%	도시락 ₩5000원 * 20명
		정기사업비	노인지과학과 전공과목 수강평 이벤트	상품비	602	-	₩50,000	-%	지킨기프티콘 ₩25000*1명, 커피기프티콘 ₩5000원*5명
		비정기사업비	워크샵	물품비	603	-	₩750,000	-%	숙박비₩400000, 식비₩350000
		<b>지출 소계</b>				<b>₩0</b>	<b>₩900,000</b>	<b>-%</b>	
<b>지출 총계</b>				<b>₩0</b>	<b>₩1,200,000</b>	<b>-%</b>			

총계	전년도 결산	당해년도 예산	비율
수입	₩0	₩1,430,768	-%
지출	₩0	₩1,200,000	-%
잔액	₩0	₩230,768	-%

학생회비	전년도 결산	당해년도 예산	비율
수입	₩0	₩530,768	-%
지출	₩0	₩300,000	-%
잔액	₩0	₩230,768	-%

본회계	전년도 결산	당해년도 예산	비율
수입	-	-	-%
지출	-	-	-%
잔액	-	-	-%

자치	전년도 결산	당해년도 예산	비율
수입	₩0	₩900,000	-%
지출	₩0	₩900,000	-%
잔액	₩0	₩0	-%

○ 2023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서: 51p~65p

# KAIST 학부 총학생회

---

##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 2023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서

---



2023. 6. 18.

기구명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직위/이름	위원장/이재경

## 제 출 문

학부 총학생회장 귀하:

본 계획서를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의 2023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6월 18일

	담당자	기구장
서명	-	이재경

---

## I. 사업 개요

---

사업번호	사업명
1	뇌인지과학과 전공과목 수강평 이벤트
2	시험기간 간식이벤트
3	친목조
4	그룹스터디
5	전공서적 대여
6	워크샵

---



---

## II. 사업별 계획

---

### 1

## 뇌인지과학과 전공과목 수강평 이벤트

---

### 1. 사업 개요

- |             |   |
|-------------|---|
| 1) 사업 방식    | otl.kaist.ac.kr을 이용하여 뇌인지과학과에서 열리는 전공필수 혹은 전공선택과목의 수강평을 남기고 인증을 통해 상품을 제공 |
| 2) 사업 준비 기간 | 2023.11.25~2023.12.20   |
| 3) 사업 일시    | 2023.12.21~2023.12.28   |
| 4) 사업 예산    | ₩50000  |
| 5) 담당부서/담당자 | 집행부/집행부 부원  |

### 2. 사업 추진 목적

학우들이 실라버스에 있는 간단한 수업 요약서 만으로는 알 수 없는 수업의 로드나 공부 팁 등을 수강평에서 많이 참고하곤 한다. 특히, 뇌인지과학과는 2023학년 봄학기, 새롭게 신설된 학과로 매 학기 새로운 과목들이 열리고 있기에 이전학기(2022학년 겨울학기)까지의 수강평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학생회는 이후 뇌인지과학과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벤트를 통해 수강평 작성을 독려하고자 한다.

### 3. 사업 계획

#### 1) 사업 수혜 대상자

KAIST 전체 학생 중 2023 가을학기에 뇌인지과학과 전공필수, 혹은 전공선택과목을 수강한 자

#### 2) 세부 사업 내용

2023 가을학기 종강 이후 일주일 간 otl.kasit.ac.kr 에 뇌인지과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에 대한 수강평을 작성한다. 이후 이것을 뇌인지과학과 공식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인증하고 이벤트기간 종료 후 추첨을 통해 상품을 전달한다.

#### 4. 사업 예상 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2023.11.25~2023.12.20	수강평 이벤트 홍보	인스타그램, 학과 단톡방활용
2023.12.21~2023.12.28	수강평 작성 인증내용 수집	인스타그램
2023.12.29	이벤트 당첨자 발표 및 상품 수령	인스타그램

### 1. 사업 개요

- |             |  |
|-------------|--|
| 1) 사업 방식    |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기간에 뇌인지과학과 정회원을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      |
| 2) 사업 준비 기간 | 2023.09.25~2023.10.09, 2023.11.20~2023.12.03 |
| 3) 사업 일시    | (중간고사 기간) 2023.10.10, (기말고사 기간) 2023.12.04   |
| 4) 사업 예산    | ₩100,000                                     |
| 5) 담당부서/담당자 | 집행부/집행부 부원                                   |

### 2. 사업 추진 목적

시험기간 많은 양의 공부로 지친 학우들을 응원하고 효율적인 시험공부를 독려하고자 뇌인지과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한다.

### 3. 사업 계획

- 1) 사업 수혜 대상자

KAIST 뇌인지과학과 정회원

- 2) 세부 사업 내용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각 시작 일주일 전 월요일(공휴일일 경우 화요일)에 학과 건물 오픈 스페이스에서 16:00~19:00 동안 뇌인지과학과 정회원을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

#### 4. 사업 예상 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2023.09.25~2023.10.09	간식 메뉴 결정, 사전 주문	
2023.10.10	간식 나눔 행사 진행	뇌인지과학과 오픈스페이스
2023.11.20~2023.12.03	간식 메뉴 결정, 사전 주문	
2023.12.04	간식 나눔 행사 진행	뇌인지과학과 오픈스페이스

### 1. 사업 개요

1) 사업 방식	학기 중 친목조 형성, 활동 기록 후 상품 지급
2) 사업 준비 기간	2023.08.07 ~ 2023.08.27
3) 사업 일시	2023.08.28 ~ 2023.12.15
4) 사업 예산	₩100,000
5) 담당부서/담당자	집행부/집행부 부원

### 2. 사업 추진 목적

과 학우들의 친목을 도모하여 학과의 분위기 조성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진함. 또한 상품을 통해 친목조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로 활발한 친목 활동을 장려함.

### 3. 사업 계획

#### 1) 사업 수혜 대상자

KAIST 뇌인지과학과 학부생

#### 2) 세부 사업 내용

2023년도 가을학기 동안 약 4인 ~ 6인으로 구성된 친목조를 구성하여 친목 활동을 진행함. 진행한 친목 활동 인증 시 금액을 지원한다.

#### 4. 사업 예상 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2023.09.01~2023.09.08	친목조 형성	
2023.09.08~2023.12.01	친목조 활동 진행	
2023.12.04~2023.12.04	상품 지급	

### 1. 사업 개요

- |             |                               |
|-------------|-------------------------------|
| 1) 사업 방식    | 과 구성원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스터디를 진행함 |
| 2) 사업 준비 기간 | 2023.08.28 ~ 2023.09.04       |
| 3) 사업 일시    | 2023.09.05 ~ 2023.12.15       |
| 4) 사업 예산    | ₩100,000                      |
| 5) 담당부서/담당자 | 집행부/집행부 부원                    |

### 2. 사업 추진 목적

학과 구성원들 중 같은 과목을 수강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서로 모르는 것들에 대해 묻고 답함으로써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또 과 구성원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3. 사업 계획

- 1) 사업 수혜 대상자  
뇌인지과학과 구성원들
- 2) 세부 사업 내용

단체 혹은 개인에게 스터디 창설 신청서를 받는다. 이때 스터디 그룹의 인원수의 제한은 없다. 이후 스터디 그룹의 인원수 조건인 최소 3명 최대 6명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 모집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부에서 중개해주어 학생들의 원활한 스터디 그룹 조직을 돕는다. 이후 학기 중에 조끼리 자유롭게 모여서 스터디를 진행하고, 카톡방에 인증사진과 추가적으로 학습 내용을 올림으로써 활동을 인증하고 점수를 받는다. 이후 학기말에 점수가 높은 조에게 상품을 준다.

#### 4. 사업 예상 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2023.09.05~2023.09.10	참가자 모집	
2023.09.11~2023.12.15	스터디 진행	
2023.12.16	우수 조 시상	



### 1. 사업 개요

1) 사업 방식	뇌인지과학과 학부생들에게 전공서적 대여
2) 사업 준비 기간	2023.08.01 ~ 2023.09.03
3) 사업 일시	2023.09.04 ~ 2023.12.15
4) 사업 예산	₩100,000
5) 담당부서/담당자	집행부/집행부 부원

### 2. 사업 추진 목적

학과 구성원들이 전공서적을 직접 사기에는 비싼 가격이 부담될 수 있으므로, 학과 차원에서 전공책을 대여해줌으로써 학과 구성원들의 전공 공부를 도움.

### 3. 사업 계획

#### 1) 사업 수혜 대상자

뇌인지과학과 학과 구성원

#### 2) 세부 사업 내용

학기 초에 필요한 전공서적들을 학과 차원에서 구매한 후, 학과 구성원들에게 이를 대여해 줌.

- 사업 진행 방식: 담당자에게 신청하여 대여해간 후 반납일에 반납함
- 대여 기간: 한 번에 최대 7일, 이후 대여를 원하는 학생이 없을 경우 추가로 연장 가능
- 연체 시 1일당 연체료: 연체된 책의 가격의 10%

#### 4. 사업 예상 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2023.08.01~2023.09.03	필요한 전공서적 구매	
2023.09.04~2023.12.15	전공서적 대여 진행	

## 1. 사업 개요

- |             |   |
|-------------|---|
| 1) 사업 방식    | otl.kaist.ac.kr을 이용하여 뇌인지과학과에서 열리는 전공필수 혹은 전공선택과목의 수강평을 남기고 인증을 통해 상품을 제공 |
| 2) 사업 준비 기간 | 2023.09.11~2023.09.18   |
| 3) 사업 일시    | 2023.10.28~2023.10.29   |
| 4) 사업 예산    | ₩750000   |
| 5) 담당부서/담당자 | 집행부/집행부 부원  |

## 2. 사업 추진 목적

학생들이 스스로 세미나를 진행하며 뇌인지과학과를 알아가고 이후 친목 도모를 위한 시간을 통해 더 친근하고 적극적인 학과 분위기를 조성한다. 학과 학생들이 학과에 대해 조사하며 워크샵의 주 구성원들인 신입생들의 경우 학과의 연구나 성과, 뇌인지과학 분야의 최신 근황 등을 더욱 자세히 알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서로 공유하고 질의 응답을 하는 과정을 통해 함께 발전하고 학생들의 학구열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친목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적인 부분 외에도 서로 알아가며 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3. 사업 계획

- 1) 사업 수혜 대상자  
뇌인지과학과 학과 구성원

## 2) 세부 사업 내용

학교에서 학생들의 주도로 이뤄지는 세미나 시간을 가진 후, 펜션으로 이동해 친목을 도모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 4. 사업 예상 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2023.09.11~2023.09.18	워크샵 관련 예약 및 수요 조사	학과 단톡방 활용
2023.10.28~2023.10.29	워크샵 진행	

## □ (목록)

- 제2023-1회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안건지 및 회의록
- 제2023-2회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안건지 및 회의록
- 제2023-3회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안건지 및 회의록
- 제2023-4회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안건지 및 회의록
- 제2023-5회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안건지 및 회의록

---

제2023-1회

**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2023. 5. 07.



# 보 고 안 건



## 보고안건 제1호 운영부 진행 보고

제 출 연 월 일 2023. 5. 07.

안 건 제 출 자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재경

안건 상정 근거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운영규칙안」 제3조제1호

- 제안이유
  -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운영규칙안」 제3조제1항에 따라 운영부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진행 계획 변경
    - 안건지 양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안건지를 먼저 작성하고 학생회칙을 작성하려던 기존 계획에서 학생회칙을 먼저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함.
  - 학생회칙 작성
    - 학생회칙을 제3장 제3절까지 작성함.
    - 각호의 내용을 설명함.
- 의결문안
  - 운영부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한다.

## 보고안건 제2호 기획부 진행 보고

제 출 연 월 일 2023. 5. 07.

안 건 제 출 자 준비위원회위원 김정빈

안건 상정 근거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운영규칙안」 제3조제1호

- 제안이유
  -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운영규칙안」 제3조제1항에 따라 기획부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사업 계획
    - 아래와 같은 사업을 고안함.
    - ① otl 강평 이벤트 ② 학과설명회 ③ 시험기간 간식, 종강파티 ④ 워크숍 ⑤ 인스타 팔로우 및 공유 이벤트 ⑥ 단체복 ⑦ 과방 비품비 ⑧ 과방 오픈 행사 ⑨ 친목조 ⑩ 신입생 축하 행사 ⑪ 예비비, 격려금 ⑫ 스터디 그룹, 전공책대여 ⑬ 종파, 신입생 환영회 ⑭ 워크숍
    - 위의 사항 중 1, 3, 7, 8, 9, 12, 13, 14번을 추진할 수 있을 거 같음.
- 의결문안
  - 기획부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한다.

# 논 의 안 건

## 논의안건 제1호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칙 논의안

제 출 연 월 일 2023. 5 07.

안 건 제 출 자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재경

안건 상정 근거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운영규칙안」 제3조제1호

### □ 제안이유

-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운영규칙안」 제1조에 따라 학생회칙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논의하기 위함.
- 학생회칙 작성 중 논의점을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인원수에 관한 논의
  - 인원수에 관한 기준을 두는 회칙 조항에 대해, 학생회 초기의 인원수가 적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 과대표단 선출 방법에 대한 논의
  - 화학과의 학생회칙을 참고하면 단일후보의 경우만 규정되어 있음.

## 논의안건 제2호 추진 사업 논의안

제 출 연 월 일 2023. 5 07.

안 건 제 출 자 준비위원회위원 김용문

안건 상정 근거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운영규칙안」 제3조제1호

제안이유

- 2023 가을학기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에 대해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함.

주요내용

- 위의 보고안건 제2호와 같이 사업을 제안함.
  - 각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제 2023-1 회  
(정기회)

#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 준비위 원회 회의록

제 1 호

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일시** 2023. 5. 7. 18:00

**장소** 학술문화관(문화관) 콜라보레이션룸 4A 및 원격영상회의  
(회의 참여 링크:  
<https://us05web.zoom.us/j/86980624777?pwd=aHpDOGfQsDJVQ0hEKzQ0MWpuQStsZz09>)

**의사 일정**

보고안건 제 1 호 / 보고안건 제 2 호 / 논의안건 제 1 호 / 논의안건 제 2 호

**부의 안건**

보고안건 제 1 호 운영부 진행 보고  
보고안건 제 2 호 기획부 진행 보고  
심의안건 제 1 호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칙 논의안  
심의안건 제 2 호 추진 사업 논의안

## 개회·정회·유회 또는 폐회의 일시

---

개회 일시 2023. 5. 7. 18:00

폐회 일시 2023. 5. 7. 20:00

---

○ 개회 시 출석 인원(7 인)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재경 / 준비위원회부위원장 박서은 / 준비위원회위원 강서현 /  
준비위원회위원 김용문 / 준비위원회위원 김정빈 / 준비위원회위원 오대혁 / 준비위원회위원  
허제현

○ 청가 인원(0 인)

○ 결석·지각·조퇴 인원(1 인)

준비위원회위원 명태식(결석)

---

# 결 과

---

## ○ 보고안건

### (제 1 호) 운영부 진행 보고

- 원안대로 접수함.

### (제 2 호) 기획부 진행 보고

- 원안대로 접수함.

## ○ 논의안건

### (제 1 호)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칙 논의안

- 초기 학생회 구성원이 적어 인원수를 정하는 회칙 내용에 대해 부칙을 제정하는 것을 제안함.
- 부칙을 제정하는 대신, 우선 인원수가 유사한 다른 학과의 사례를 참고하여 기준을 마련한 뒤, 이후 인원수 변경 상황을 보며 그에 맞게 회칙을 개정하는 것을 제안함.
- 별도의 부칙을 마련하는 대신 모든 학년이 채워지는 약 3년 후까지는 인원수가 변함에 따라 회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논의함.

### (제 2 호) 추진 사업 논의안

- 친목조, 스터디그룹 등 조를 짜서 하는 친목활동이 인원 부족으로 너무 적은 인원이 만나게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적은 인원으로 여러 번 조를 짜서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친목조 금액 지원 방식에 대해 조별로 만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과, 조별로 특정 친목활동을 할 때마다 점수를 매겨 순위대로 상을 주는 방식이 제안됨.
- 학과 학생들의 활발한 교류와 친목조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면 전자의 방식으로 여러 번 조를 바꾸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음.
- 사업 진행의 편의성을 위해서는 후자의 방식이 편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 인증샷 등의 친목활동을 인증하는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음.
- 이후 기획부나 2 학기 설치될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논의함.
- 과잡이나 과 단체복을 구매할지 결정하기 위해 올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나눠준 후드집업이 이후 계속 신입생 환영품으로 제공될 것인지에 대한 기획부의 질문이 있었음. 학과 행정팀 측에 문의하고 전달하겠다는 준비위원장의 답변이 있었음.



상기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함.

의 장	이 재 경	<u>이재경</u>
위 원	박 서 은	<u>박서은</u>
위 원	김 용 분	<u>김용분</u>



---

제2023-2회

**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2023. 5. 14.



# 보 고 안 건

## 보고안건 제1호 운영부 진행 보고

제 출 연 월 일 2023. 5. 14.

안 건 제 출 자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재경

안건 상정 근거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운영규칙안」 제3조제1호

- 제안이유
  -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운영규칙안」 제3조제1항에 따라 운영부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학생회칙 작성
    - 학생회칙 초안 작성을 완료함.
    - 각호의 내용을 설명함.
- 의결문안
  - 운영부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한다.

## 보고안건 제2호 기획부 진행 보고

제 출 연 월 일 2023. 5. 14.

안 건 제 출 자 준비위원회위원 김정빈

안건 상정 근거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운영규칙안」 제3조제1호

- 제안이유
  -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운영규칙안」 제3조제1항에 따라 기획부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사업 계획서 작성
    - 아래의 사업에 대해 대략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함.
    - ① 뇌인지과학과 전공과목 수강평 이벤트 ② 시험기간 간식이벤트 ③ 뇌인지과학과 과방 새 단장 ④ 뇌인지과학과 과방 오픈 이벤트 ⑤ 친목조 ⑥ 신입생 환영회 ⑦ 그룹스터디 ⑧ 전공책대여
    - 각 사항에 대해 회의에서 설명함.
    - 작성한 사업계획서는 [부록]에 첨부함.
- 의결문안
  - 기획부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한다.

# 논 의 안 건



## 논의안건 제1호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칙 논의안

제 출 연 월 일 2023. 5 14.

안 건 제 출 자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재경

안건 상정 근거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운영규칙안」 제3조제1호

### □ 제안이유

-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운영규칙안」 제1조에 따라 학생회칙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논의하기 위함.
- 학생회칙 작성 중 논의점을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학생회장 선거에 관한 논의
  - 학생회장 선거 시 후보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 논의안건 제2호 사업계획서 논의안

제 출 연 월 일 2023. 5 14.

안 건 제 출 자 준비위원회위원 김용문

안건 상정 근거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운영규칙안」 제3조제1호

제안이유

- 2023 가을학기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차원에서 추진할 사업계획서를 회의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하기 위함.

주요내용

- 위의 보고안건 제2호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함.
  - 각 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부 록

---

## I. 사업 개요

---

사업번호	사업명
1	뇌인지과학과 전공과목 수강평 이벤트
2	시험기간 간식이벤트
3	뇌인지과학과 과방 새 단장
4	뇌인지과학과 과방 오픈 이벤트
5	친목조
6	진입생 환영회
7	그룹스터디
8	전공책대여

---

## Ⅱ. 사업별 계획

### 1

## 사업 1 뇌인지과학과 전공과목 수강평 이벤트

### 1. 사업 개요

- 1) 사업 방식 otl.kaist.ac.kr을 이용하여 뇌인지과학과에서 열리는 전공필수 혹은 전공선택과목의 수강평을 남기고 인증을 통해 상품을 제공
- 2) 사업 준비 기간 2023.12.01~2023.12.20 – 수정(시험기간고려)
- 3) 사업 일시 2023.12.21~2023.12.28
- 4) 사업 예산 **[당첨인원과 상품은 임의로 정함 - 회의 때 변경해야 함]**  
치킨(뿌링클 콤보+콜라)(2인) – 22,000\*2  
스타벅스 아이스아메리카노+조각케익(3인) – 10,200\*3

### 2. 사업 추진 목적

학우들이 실라버스에 있는 간단한 수업 요약서 만으로는 알 수 없는 수업의 로드나 공부 팁 등을 수강평에서 많이 참고하곤 한다. 특히, 뇌인지과학과는 2023년도 봄, 새롭게 신설된 학과로 매 학기 새로운 과목들이 열리고 있기에 이전학기(2022년도)까지의 수강평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학생회는 이후 뇌인지과학과 과목을 수강하고 자 하는 학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벤트를 통해 수강평 작성을 독려하고자 한다.

### 3. 사업 계획

#### 1) 사업 수혜 대상자

KAIST 전체 학생 중 2023 가을학기에 뇌인지과학과 전공필수, 혹은 전공선택과목을 수강한 자

#### 2) 세부 사업 내용

2023 가을학기 종강 이후 일주일 간 otl.kasit.ac.kr 에 뇌인지과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에 대한 수강평을 작성한다. 이후 이것을 뇌인지과학과 공식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인증하고 이벤트기간 종료 후 추첨을 통해 상품을 전달한다.

### 4. 사업 예상 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2023.12.4~2023.12.20	수강평 이벤트 홍보	인스타그램, 학과 단독방활용
2023.12.21~2023.12.28	수강평 작성 인증내용 수집	인스타그램
2023.12.29	이벤트 당첨자 발표 및 상품 수령	인스타그램

### 1. 사업 개요

- 1) 사업 방식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 뇌인지과학과 정회원을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
- 2) 사업 준비 기간           2023.09.25~2023.10.09, 2023.11.20~2023.12.03
- 3) 사업 일시                 (중간고사 기간) 2023.10.10, (기말고사 기간) 2023.12.04
- 4) 사업 예산                 **(논의 필요)**

### 2. 사업 추진 목적

시험기간 많은 양의 공부로 지친 학우들을 응원하고 효율적인 시험공부를 독려하고 자 뇌인지과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한다.

### 3. 사업 계획

- 1) 사업 수혜 대상자

KAIST 뇌인지과학과 정회원

- 2) 세부 사업 내용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각 일주일 전 월요일(공휴일일 경우 화요일)에 학과 건물 오픈스페이스에서 16:00~19:00 동안 뇌인지과학과 정회원을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

#### 4. 사업 예상 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2023.09.25~2023.10.09	간식 메뉴 결정, 사전 주문	
2023.10.10	간식 나눔 행사 진행	뇌인지과학과 오픈스페이스
2023.11.20~2023.12.03	간식 메뉴 결정, 사전 주문	
2023.12.04	간식 나눔 행사 진행	뇌인지과학과 오픈스페이스



### 1. 사업 개요

- 1) 사업 방식                    새로 지어지는 뇌인지과학과 건물과 뇌인지과학과 오픈스페이스 형태의 과방(이하 과방)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비하고 학우들의 편리함을 목적으로 단장
- 2) 사업 준비 기간            2023.08.01~2023.08.28
- 3) 사업 일시                    2023.08.28~2023.12.15
- 4) 사업 예산

### 2. 사업 추진 목적

뇌인지과학과 과방은 2023년 여름 완공 예정이며, 새로 생기는 공간인 만큼 학우들의 의견을 받아 필요한 물품들을 구비하고, 뇌인지과학과 학우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장하고자 한다.

### 3. 사업 계획

- 1) 사업 수혜 대상자
- 2) 세부 사업 내용

### 4. 사업 예상 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2023.08.01~2023.08.28		

### 1. 사업 개요

- |             |  |
|-------------|--|
| 1) 사업 방식    | 새롭게 개방되는 뇌인지과학과 과방을 홍보하기 위한 인스타그램 스토리 이벤트 및 방문하는 뇌인지과학과 학우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고 개선에 관한 의견을 받음 |
| 2) 사업 준비 기간 | 2023.08.21~2023.08.27  |
| 3) 사업 일시    | 2023.08.28~2023.09.10  |
| 4) 사업 예산    | (회의 때 선물 같은 거 정해야 함)   |
| 5) 담당부서/담당자 | 000/000  |

### 2. 사업 추진 목적

2023 가을에 새롭게 지어지고, 처음 개방되는 뇌인지과학과 과방(혹은 오픈스페이스?)를 뇌인지과학과 학우들에게 홍보하고, 앞으로 개선을 위해 의견을 받고자 한다. 더불어, 과방홍보를 통해 뇌인지과학과 복지에 대해 홍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3. 사업 계획

#### 1) 사업 수혜 대상자

KAIST 뇌인지과학과 정회원, 준회원

#### 2) 세부 사업 내용

2023 가을학기 개강 이후 일주일간 뇌인지과학과 과방에 방문하는 모든 학우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한다. 선물과 함께 포스트잇을 전해주며 원하는 비품이나 운영방식의 개선 점 등에 관한 의견을 받아 한쪽 공간에 부착한다. 또한, 인스타그램 스토리

효과제작을 통해 뇌인지과학과 오픈스페이스 방문 인증샷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제공한다.

#### 4. 사업 예상 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2023.08.21~2023.08.27	과방 꾸미기 및 선물 준비	뇌인지과학과 오픈스페이스
2023.08.21~2023.08.27	인스타 스토리 효과 제작	
2023.08.28~2023.09.03	선물 상시 제공, 이벤트 진행	뇌인지과학과 오픈스페이스
2023.09.04~2023.09.05	인스타 이벤트 추첨, 상품 수령 및 포스트잇 의견 수렴	

### 1. 사업 개요

- 1) 사업 방식            학기 중 친목조 형성, 활동 기록 후 상품 지급
- 2) 사업 준비 기간    2023.08.07 ~ 2023.08.27
- 3) 사업 일시           2023.08.28 ~ 2023.12.15
- 4) 사업 예산           ₩100,000
- 5) 담당부서/담당자   -

### 2. 사업 추진 목적

과 학우들의 친목을 도모하여 학과의 분위기 조성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진함. 또한 상품을 통해 친목조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로 활발한 친목 활동을 장려함.

### 3. 사업 계획

- 1) 사업 수혜 대상자

KAIST 뇌인지과학과 학부생

- 2) 세부 사업 내용

2023 년도 가을학기 동안 약 4 인 ~ 6 인으로 구성된 친목조를 구성하여 친목 활동을 진행함. 진행한 친목 활동 인증 시 금액을 지원한다.

### 4. 사업 예상 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2023.09.01~2023.09.08	친목조 형성	
2023.09.08~2023.12.01	친목조 활동 진행	
2023.12.04~2023.12.04	상품 지급	

### 1. 사업 개요

- 1) 사업 방식           과 구성원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스터디를 진행함
- 2) 사업 준비 기간   2023.08.28 ~ 2023.09.04
- 3) 사업 일시           2023.09.05 ~ 2023.12.15
- 4) 사업 예산           이벤트 상품 (논의하고 정해야 함)

### 2. 사업 추진 목적

학과 구성원들 중 같은 과목을 수강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서로 모르는 것들에 대해 묻고 답함으로써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또 과 구성원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3. 사업 계획

- 1) 사업 수혜 대상자  
뇌인지과학과 구성원들
- 2) 세부 사업 내용(스터디 그룹을 지원받음)
  1. 수강 인원끼리 조 편성
  2. 학기 중에 조끼리 자유롭게 모여서 스터디를 진행하고, 카톡방에 인증사진 & 공부한 자료를 올림으로써 이를 인증하고 점수를 얻음
  3. 학기말에 점수가 높은 조에게 상품을 줌

### 4. 사업 예상 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2023.09.05~2023.09.10	참가자 모집	
2023.09.11~2023.12.15	스터디 진행	
2023.12.16	우수 조 시상	

### 1. 사업 개요

- 1) 사업 방식            뇌인지과학과 학부생들에게 전공서적 대여
- 2) 사업 준비 기간    2023.08.01 ~ 2023.09.03
- 3) 사업 일시           2023.09.04 ~ 2023.12.15
- 4) 사업 예산           ₩200,000
- 5) 담당부서/담당자

### 2. 사업 추진 목적

학과 구성원들이 전공서적을 직접 사기에는 비싼 가격이 부담될 수 있으므로, 학과 차원에서 전공책을 대여해줌으로써 학과 구성원들의 전공 공부를 도움.

### 3. 사업 계획

- 1) 사업 수혜 대상자

뇌인지과학과 학과 구성원

- 2) 세부 사업 내용

학기 초에 필요한 전공서적들을 학과 차원에서 구매한 후, 학과 구성원들에게 이를 대여해줌.

- 사업 진행 방식 : 담당자에게 신청하여 대여해간 후 반납일에 반납함
- 대여 기간 : 한 번에 최대 7 일, 이후 대여를 원하는 학생이 없을 경우 추가로 연장 가능
- 연체 시 1 일당 연체료 (논의 필요)

#### 4. 사업 예상 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2023.08.01~2023.09.03	필요한 전공서적 구매	
2023.09.04~2023.12.15	전공서적 대여 진행	

### 1. 사업 개요

- 1) 사업 방식            학기말에 종강파티 진행
- 2) 사업 준비 기간    없음
- 3) 사업 일시            2023.12.11 ~ 2023.12.17 중 하루에 진행
- 4) 사업 예산            인당 ₩10,000
- 5) 담당부서/담당자

### 2. 사업 추진 목적

과 구성원들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

### 3. 사업 계획

- 1) 사업 수혜 대상자

뇌인지과학과 학과 구성원

- 2) 세부 사업 내용

학기말에 학생들의 일정을 맞춰서 종강파티를 진행한다.

### 4. 사업 예상 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2023.12.11~2023.12.15 중 하루	종강파티	



제2023-2회  
(정기회)

#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 준비위 원회 회의록

제2호

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일시** 2023. 5. 14. 18:00

**장소** 학술문화관(문화관) 콜라보레이션룸 4A 및 원격영상회의  
(회의 참여 링크:  
<https://us05web.zoom.us/j/85864780552?pwd=WDFEdTBkSTJRbVhUNk0rWUFRVWVjUT09>)

**의사 일정**

보고안건 제1호 / 보고안건 제2호 / 논의안건 제1호 / 논의안건 제2호

**부의 안건**

보고안건 제1호 운영부 진행 보고  
보고안건 제2호 기획부 진행 보고  
심의안건 제1호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칙 논의안  
심의안건 제2호 사업계획서 논의안

## 개회·정회·유회 또는 폐회의 일시

---

개회 일시 2023. 5. 14. 18:00

폐회 일시 2023. 5. 14. 20:00

---

○ 개회 시 출석 인원(7인)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재경 / 준비위원회부위원장 박서은 / 준비위원회위원 강서현 /  
준비위원회위원 김용문 / 준비위원회위원 김정빈 / 준비위원회위원 명태식 / 준비위원회위원  
오대혁 / 준비위원회위원 허제현

○ 청가 인원(0인)

○ 결석·지각·조퇴 인원(0인)

# 결 과

## ○ 보고안건

### (제1호) 운영부 진행 보고

- 원안대로 접수함.

### (제2호) 기획부 진행 보고

- 원안대로 접수함.

## ○ 논의안건

### (제1호)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칙 논의안

- 학생회장 선거 시 후보를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이 함께 나와야 하는 것으로 정할 것인지, 혹은 학생회장 후보 개인도 출마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음.
-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각자 출마하게 된다면 두 운영위원이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함께 일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 다른 학과의 사례를 참고하여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후보가 함께 출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논의함.

### (제2호) 사업계획서 논의안

- 사업 준비 기간이 시험기간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있어 이를 고려해 수정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음.
- 기획부에서 수강평 이벤트에 제공되는 상품을 논의하고자 했으며 적당한 가격대와 규모의 선물이라는 의견이 우세함.
- 시험기간 간식이벤트의 중간고사 기간이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조금 바쁠 것 같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음.
- 시험기간 간식이벤트 예산으로 인당 10000원 이하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했으며, 다른 사업에 드는 예산을 보며 기획부가 조율하는 것으로 논의함.
- 모든 사업은 기본적으로 학과 정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기로 논의함.
- 과방과 관련한 사업 3과 사업 4의 경우, 별도의 과방 오픈행사가 필요 없을 뿐더러 의미도 없을 것 같으므로 합쳐서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 친목조의 경우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것처럼 방식과 주기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집행위원들이 정하도록 한다는 기획부의 설명이 있었음.
- 그룹스터디의 경우 그룹을 형성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가 있었음. 수강 인원을 모두 하나의 스터디로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하지만 희망 인원을 그룹 단위로 받으면 소외되는 학생이 생길 것이며 해당 사업의 의미가 퇴색될 것으로 예상함.

이에 주제에 맞는 그룹이나 개인으로 자유롭게 신청을 받은 뒤 형성된 그룹에 추가 모집을 하는 경우 개인이 신청해서 해당 그룹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임으로 의견이 모임.

- 전공서적 대여 사업의 연체료에 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됨. 학교 도서관과 같은 1일 100원의 경우 너무 저렴하여 연체료의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 연체료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연체를 방지하기 위함과 연체로 인해 다른 학생들이 해당 서적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 연체된 책의 가격의 10%를 연체료로 설정하고, 10일 이상 연체되어 다른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 새 책을 구매하는 방안이 제시됨.

상기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함.

의 장	이 재 경	<u>이재경</u>
위 원	박 서 은	<u>박서은</u>
위 원	김 용 분	<u>김용분</u>



---

제2023-3회

**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2023. 5. 21.





# 보 고 안 건

## 보고안건 제1호 운영부 진행 보고

제 출 연 월 일 2023. 5. 21.

안 건 제 출 자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재경

안건 상정 근거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운영규칙안」 제3조제1호

- 제안이유
  -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운영규칙안」 제3조제1항에 따라 운영부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학생회칙 작성 완료
    - 준비위원회 내부 피드백을 반영하여 학생회칙을 형식에 맞춰 작성함.
    - 학부총학생회의 피드백을 받기 위해 문서를 전달함.
- 의결문안
  - 운영부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한다.

## 보고안건 제2호 기획부 진행 보고

제 출 연 월 일 2023. 5. 21.

안 건 제 출 자 준비위원회위원 김정빈

안건 상정 근거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운영규칙안」 제3조제1호

제안이유

-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운영규칙안」 제3조제1항에 따라 기획부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 학과 예산 분배

- 지난 회의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림.
- 다른 학과의 예산을 참고하여 총액 120만원 내에서 예산을 대략적으로 분배함.
- 분배 내역은 아래와 같음.
- 전공과목 수강평 이벤트 50,000원 / 시험기간 간식이벤트 100,000원 / 비품비 50,000원 / 친목조 300,000원 / 그룹스터디 100,000원 / 전공서적대여 100,000원 / 워크숍 500,000원

의결문안

- 기획부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한다.

# 논 의 안 건

## 논의안건 제1호 하반기 예산 분배 논의안

제 출 연 월 일 2023. 5 21.

안 건 제 출 자 준비위원회위원 김정빈

안건 상정 근거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운영규칙안」 제3조제1호

제안이유

-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운영규칙안」 제1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예산을 분배하고자 함.
- 분배한 예산을 회의에서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함.

주요내용

- 예산 분배 논의
  - 보고안건 제2호의 내용과 같이 예산을 대략적으로 분배함.
  - 정확한 금액은 이후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획부가 책정하기로 함.

제2023-3회  
(정기회)

#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 원회 회의록

제3호

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일시** 2023. 5. 21. 18:00

**장소** 학술문화관(문화관) 콜라보레이션룸 4A 및 원격영상회의  
(회의 참여 링크:  
<https://us05web.zoom.us/j/85864780552?pwd=WDFEdTBkSTJRbVhUNk0rWUFRVWVjUT09>)

**의사 일정** 보고안건 제1호 / 보고안건 제2호 / 논의안건 제1호

**부의 안건** 보고안건 제1호 운영부 진행 보고  
보고안건 제2호 기획부 진행 보고  
논의안건 제1호 하반기 예산 분배 논의안

## 개회·정회·유회 또는 폐회의 일시

---

개회 일시 2023. 5. 21. 18:00

폐회 일시 2023. 5. 21. 20:00

---

○ 개회 시 출석 인원(7인)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재경 / 준비위원회부위원장 박서은 / 준비위원회위원 강서현 /  
준비위원회위원 김용문 / 준비위원회위원 명태식 / 준비위원회위원 오대혁 / 준비위원회위원  
허제현

○ 청가 인원(0인)

○ 결석·지각·조퇴 인원(1인)

준비위원회위원 김정빈(지각)

# 결 과

## ○ 보고안건

### (제1호) 운영부 진행 보고

- 원안대로 접수함.

### (제2호) 기획부 진행 보고

- 원안대로 접수함.

## ○ 논의안건

### (제1호) 하반기 예산 분배 논의안

- 이전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 사업을 전공과목 수강평 이벤트, 시험기간 간식이벤트, 친목조, 그룹스터디, 전공서적 대여의 5개로 추림. 기존에 추진하고자 했던 과방 관련 사업들은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한 비품비로 편성했다는 기획부의 설명이 있었음.
- 회비 수금에 관해 학과 단체 카톡방을 통해 익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만 원 정도의 금액을 가장 많은 학생이 선호하는 분위기였음. 이에 따라 수금하는 회비를 20만 원 정도, 학과 인원수를 고려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학생회비를 100만 원 정도로 예상하여 총액 120만 원 내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기획부의 설명이 있었음.
- 수강평 이벤트의 경우 상품 총액 50,000원, 간식이벤트의 경우 인당 5,000원어치의 간식을 지원하여 총액 100,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기획부의 설명이 있었음.
- 인당 5,000원의 금액이 적당한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며, 작년 다른 단체의 간식이벤트 진행 시 유사한 인원수에서 100,000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던 것을 보면 적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 전공서적 대여사업은 다음학기에 열릴 예정인 4개의 학과 과목 중 실험 과목과 특강 과목을 제외한 두 개의 수업에 대해, 한글판 교재를 구입해 과방에 비치하고 대여가 아니라 필요할 때 찾아보거나 사진을 찍어갈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는 기획부의 설명이 있었음.
- 전공서적 두 권을 구입하는 데에 100,000원의 예산은 적당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짐.
- 그룹스터디는 스터디 진행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 가장 잘 수행한 그룹에게 상품을 주는 형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상품 금액 100,000원을 편성했다는 기획부의 설명이 있었음.
- 그룹스터디의 경우 이후 집행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해도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 워크샵은 대략적인 계획을 세워 예산을 계산했을 때 총액 700,000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으며, 이에 따라 그중 일부인 500,000원을 학생회가 지원하고 발생하는 차액은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수금하는 방식을 기획부가 제안함.
- 일부 금액을 학과 예산에서 지원하고, 일부 예산을 참여 학생들이 나눠 부담하는 형식에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며, 정확한 금액이 변동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와 같은 형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논의함.
- 2023 봄학기 추진하고자 했던 학과 차원의 워크샵은 당시 예산이 900,000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는 준비위원회위원장의 설명이 있었음. 그 정도의 금액이 발생해도 한 사람 당 20,000~30,000원의 금액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크게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함.
- 친목조 사업은 투자 가능한 예산에 따라 친목조 진행 빈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편성 후 남은 예산을 모두 친목조 사업에 편성했다는 기획부의 설명이 있었음. 총 예산에 따라 친목조 사업의 지원 규모와 빈도를 이후 학생회에서 조정하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 대략적인 예산편성 결과 총액 120만 원 내에서 위와 같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학과 본회계를 사용하지 않는 선에서 책정했다는 기획부의 설명이 있었음.

상기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함.

의 장 이 재 경

이재경

위 원 박 서 은

박서은

위 원 김 용 분

김용분

---

제2023-4회

**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2023. 5. 28.



# 보 고 안 건

## 보고안건 제1호 운영부 진행 보고

제 출 연 월 일 2023. 5. 28.

안 건 제 출 자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재경

안건 상정 근거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운영규칙안」 제3조제1호

- 제안이유
  -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운영규칙안」 제3조제1항에 따라 운영부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안건지 작성
    - 활동내용과 정해진 사항을 바탕으로 학생회 설립을 위한 안건을 작성함.
    - 기획부에서 결정돼야 할 부분과 논의할 부분을 남겨둠.
- 의결문안
  - 운영부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한다.

## 보고안건 제2호 기획부 진행 보고

제 출 연 월 일 2023. 5. 28.

안 건 제 출 자 준비위원회위원 김용문

안건 상정 근거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운영규칙안」 제3조제1호

- 제안이유
  -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운영규칙안」 제3조제1항에 따라 기획부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하반기 사업계획
    - 지난 회의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하반기 사업계획서를 작성함.
    - 세부사항은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임.
- 의결문안
  - 기획부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한다.

# 심 의 안 건



## 심의안건 제1호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칙 심의안

제 출 연 월 일 2023. 5. 28.

안 건 제 출 자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재경

안건 상정 근거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운영규칙안」 제3조제1호

제안이유

-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운영규칙안」 제3조제1항에 따라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칙을 심의하기 위함.

주요내용

-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칙
  - 운영부에서 작성하고 이전 회의에서 논의된 피드백을 반영한 학생회칙을 완성함.
  - 학생회칙 : 붙임

의결문안

-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칙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한다.

##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회는 KAIST 뇌인지과학과 학부 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

### 제 2 조(목적)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학과 내의 자치를 실현하고 뇌인지과학과 학생사회의 능동적인 참여로 구성원들의 지성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소재)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 산하 자치기구이다.

### 제 4 조(회원)

1.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2. KAIST 학부 총학생회 회원 중 주전공이 뇌인지과학과인 자는 본회의 정회원이 된다.
  1. 정회원은 제 5 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2. 정회원 중 제 5 조 제 8 항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제 7 항의 권리를 일부 제한당할 수 있다.
3. KAIST 학부 총학생회 회원 중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이 뇌인지과학과인 자는 본회의 준회원이 된다.
  1. 준회원은 제 5 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 중 제 5 항, 제 6 항을 제외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2. 준회원 중 제 5 조 제 8 항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제 7 항의 권리를 일부 제한당할 수 있다.
  3. 준회원의 자치활동 참여는 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4.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 제 5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고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사상, 종교, 장애, 질병 등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본회의 회원은 학습권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배움을 주체적으로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3. 본회의 회원은 본회 운영 전반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활동을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에 대한 침해에 저항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5.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다.
6.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진다.
7.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9.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제 6 조(회원의 징계)

회원 또는 본회 기구가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가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본회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당 회원 또는 본회 기구를 징계할 수 있다.

## 제 7 조(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로 구성한다.

1. 의결기구: 뇌인지과학과 학생총회, 뇌인지과학과 학생총투표, 뇌인지과학과 운영위원회
2. 집행기구: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장단, 뇌인지과학과 과대표단,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집행위원회

## 제 8 조 (개인정보 보호)

1. 본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본회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열람·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명확한 근거를 가진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 제2장 의결기구

### 제1절 통칙

#### 제 9 조(의사결정)

본회 운영의 제반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은 본칙에서 규정하는 의결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 제 10 조(위계)

1. 본회의 의결기구는 뇌인지과학과 학생총회, 뇌인지과학과 학생총투표, 뇌인지과학과 운영위원회 순으로 권한이 있다.
2.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은 하위 기구의 의사결정에 우선한다.
3.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위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 제 11 조(의장)

1. 본회 의결기구의 의장은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3.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4.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장 사고 혹은 학생회장 탄핵 안건이 상정된 경우 뇌인지과학과 부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5.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장과 뇌인지과학과 부학생회장이 모두 사고 혹은 탄핵 안건이 상정된 경우, 운영위원 중 뇌인지과학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인준된 1 인이 그 직을 대신하며, 해당 의결기구의 개회 직후 해당 의결기구의 재인준을 받는다.

### 제2절 뇌인지과학과 학생총회

## **제 12 조(지위)**

뇌인지과학과 학생총회(이하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 **제 13 조(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 **제 14 조(형식)**

학생총회는 본회 회원의 연석의 형식으로 한다.

## **제 15 조 (권한)**

학생총회는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장의 탄핵을 포함하여 학생회 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
2. 기타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

## **제 16 조(소집)**

1. 학생총회는 전체학생총회와 비상학생총회로 나뉜다.
2. 전체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학생총회의 의장이 14 일 이내로 소집한다.
  1. 뇌인지과학과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2/3 이상의 찬성 의결 또는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2.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3.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학생총회의의 의장이 비상 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학생총회의 의장은 전체학생총회의 경우 개회 5 일 이전, 비상학생총회의 경우 개회 24 시간 이전에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해야한다.

## **제 17 조(의사·의결정족수)**

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본회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18 조(결과공고)**

학생총회의 의장은 폐회 후 7 일 이내에 결과를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 **제3절 뇌인지과학과 학생총투표**

#### **제 19 조(지위)**

뇌인지과학과 학생총투표(이하 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 이를 통한 의결사항은 뇌인지과학과 학생총회의 의결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제 20 조(투표권)**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은 학생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 **제 21 조(형식)**

학생총투표는 본회 회원의 투표의 형식으로 한다.

#### **제 22 조(시행)**

1. 학생총투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시행할 수 있다.
  1. 뇌인지과학과 운영위원회 2/3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
  2.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3.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장 및 뇌인지과학과 부학생회장의 탄핵안 발의
  4. 기타 본회의 중대한 사안의 경우
2. 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3. 학생총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학생총회 의장은 투표관리위원회를 조직한다.
4. 투표관리위원회는 학생총투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한다.

5. 학생총회 의장은 학생총투표의 시행을 시행 7 일 이전에 이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 **제 23 조(성립·의결요건)**

1. 학생총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명부상 총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부정한 목적으로 명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24 조(결과공고)**

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완료시부터 24시간 이내에 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

### **제4절 뇌인지과학과 운영위원회**

#### **제 25 조(지위)**

뇌인지과학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학생총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 **제 26 조(구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이 된다.

1.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장단
2. 뇌인지과학과 과대표단

#### **제 27 조(소집)**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또는 운영위원 재적 인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 **제 28 조(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본회의 제반 사항을 검토, 심의, 조정한다.
2.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과반수의 요구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3. 학생회칙 및 세칙 개정 및 제정을 의결한다.
4. 운영위원의 탄핵 안건을 심의한다.
5. 본회 차원의 대외적 활동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
6. 본회의 예산안 및 결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7. 학생회장단이 모두 부재 시, 해당 업무에 필요한 직무를 대신할 1 인을 인준한다.
8.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 **제 29 조(겸직)**

겸직이 발생할 경우 재적 인원, 재석 인원, 의결권의 중복을 인정하지 않는다.

#### **제 30 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인원 2/3 이상의 참여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31 조(공고)**

의장은 폐회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 **제 32 조(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1. 본회에 배정되는 KAIST 학부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은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장, 2 학년 과대표, 뇌인지과학과 부학생회장, 2 학년 부과대표, 4 학년 과대표, 4 학년 부과대표 순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조 제 1 항에 따라 결정이 어려울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추천 받은 본회 회원을 대의원으로 인준할 수 있다.



## 제3장 집행기구

### 제1절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장단

#### 제 33 조(지위)

1.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장(이하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2. 뇌인지과학과 부학생회장(이하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고, 학생회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고인 때에 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 34 조(선출)

제 4 장에 의거하여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 제 35 조(임기)

1.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된 연도 말 총학생회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시점부터 이듬해 말 총학생회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시점까지로 한다. 단, 보궐선거 및 재선거로 당선된 학생회장의 임기는 당선 확정 공고와 동시에 시작한다.
2. 학생회장단이 학생회 정회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사퇴로 간주한다.

#### 제 36 조(신분보장)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장단(이하 학생회장단)은 임기만료나 사퇴,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 제 37 조(의무)

1. 학생회장단은 본회 회원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한다.
2. 학생회장단은 본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학생회장단은 본회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학생회장단은 후임 학생회장단으로의 인수인계를 통해 차후 업무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 38 조(업무 및 권한)**

1. 학생회장은 의결기구를 운영하고 의장이 된다.
2. 학생회장은 본회의 의견을 대표한다.
3. 학생회장은 뇌인지과학학과 학생회 집행위원회의 구성권을 가진다.

### **제 39 조(검직금지)**

학생회장단은 다음과 같은 직책을 겸할 수 없다.

1. 총학생회장단
2. 학부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3. 타 학과 학부 학생회 학생회장단
4. 새내기학생회 회장단
5.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6. 각 자치기구 비례대의원

### **제 40 조(탄핵)**

1. 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2/3 이상의 연서

2. 선거권을 가진 학생회 1/8 이상의 연서
2. 운영위원회 내부 호선을 통해 선출한 1 인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탄핵안 발의 3 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탄핵안을 학생총투표에 상정한다.
3. 학생회장단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학생회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때, 제 2 항에서 인준된 자가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학생회장 탄핵 안건이 학생총투표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 학생회장은 직무에 복귀한다.

## 제2절 뇌인지과학과 과대표단

### 제 41 조 (지위)

1. 학년별 과대표는 학생회 각 학년 회원을 대표한다.
2. 학년별 부과대표는 과대표를 보좌하며 과대표의 궐위 및 부재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 제 42 조(구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뇌인지과학과 과대표단(이하 과대표단)이 된다.

1. 2 학년 과대표
2. 2 학년 부과대표
3. 3 학년 과대표
4. 3 학년 부과대표
5. 4 학년 과대표
6. 4 학년 부과대표

### 제 43 조(임기)

1. 학년별 과대표단의 임기는 당선 직후부터 이듬해 봄학기 개강 전까지이다.
2. 진급에 따른 학년 변경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을 원칙으로 한다.

3. 과대표단이 본회 정회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사퇴로 간주한다.

#### **제 44 조(학년의 구분)**

1. 과대표단의 소속 학년은 학번을 기준으로 한다.
2. 통상과 벗어난 형태의 학년 구분 사례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 45 조(학생회장의 겸임)**

학생회장단은 소속 학년의 과대표단을 겸임할 수 있다.

#### **제 46 조(선출)**

1. 학년별 과대표단의 선출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2. 본회 정회원 중 각 학년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 학년 과대표, 부과대표 선출에 입후보할 권리와 선출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3. 유효 투표는 선거권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며, 유효 투표 시 득표순으로 과대표, 부과대표로 한다 단, 단일 후보의 경우, 찬성표가 유효 투표 수의 50%를 초과할 시 당선으로 한다.
4. 선출은 매해 봄학기 개강 후 2주 내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과대표단 중 지원자가 없거나 보궐선거의 경우 선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5. 세부 선출 절차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 47 조(탄핵)**

1. 과대표단의 탄핵안은 선거권을 가진 해당 학년 회원 1/6 이상의 연서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2. 탄핵안 발의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고 의결한다.
3. 탄핵안 발의 시 과대표 또는 부과대표의 탄핵 의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과대표단 탄핵 안건이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 과대표단은 직무에 복귀한다.
4. 학생회장이 과대표단을 겸직할 경우, 학생회장 직에서 탄핵될시 과대표단 직을 함께 상실한다.

#### **제 48 조(보궐)**

1. 학년별 과대표의 궐위 및 부재 시, 그 학년의 부과대표가 제 41 조 2항(과대표단 지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학년별 부과대표의 궐위 및 부재 시, 부과대표 직책을 공석으로 한다.
3. 2학년 과대표단이 모두 궐위 및 부재 시, 운영위원회 내부 의결에 따라 보궐 선거를 한다. 단, 의결은 궐위 및 부재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4. 3학년 또는 4학년 과대표단이 모두 궐위 및 부재 시, 운영위원회 내부 의결을 통해 선발된 자가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5. 과대표 및 부과대표의 의 보궐은 제 46조(과대표단의 선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출한다.

#### **제 49 조(당선 공고)**

운영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선거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 **제3절 뇌인지과학과 집행위원회**

#### **제 50 조(지위)**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 **제 51 조(구성)**

집행위원은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분된다.

1. 학생회장단과 2학년, 3학년 과대표단은 당연직 집행위원이 된다.
2. 임명직 집행위원은 학생회장이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총학생회비와 회비(이하 과비)를 모두 납부한 정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3. 집행위원회의 국서 체계는 학생회장단이 구성한다.

#### **제 52 조(업무 및 권한)**

1. 집행위원회는 본회 업무 전반에 대해 최고 집행 권한을 갖는다.
2. 집행위원회는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업무를 집행한다.
3. 집행위원회는 사업 보고서 및 결산안, 사업 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고, 사업 및 업무에 관련된 과정을 기록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 53 조(총무)**

1. 총무는 집행위원 중 1 인을 학생회장단의 논의를 통해 선임한다.
2. 총무는 학생회비 집행사항을 감사하며 총학생회 산하 감사원에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 **제 54 조(운영)**

전반적인 운영은 의결기구 및 학생회장단의 방향에 따른다.

### **제4절 뇌인지과학과 비상대책위원회**

#### **제 55 조(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집행위원회를 대체하고 본회의 최고집행기구가 된다.

1.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
2. 학생회장단 두 명 모두가 사퇴했을 때
3. 학생회장단이 탄핵됐을 때

#### **제 56 조(구성)**

1. 운영위원회는 제 57 조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지체 없이 해당 사항 및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해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모집공고 후 10 일 이내에 모집한 학생회 정회원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3. 단, 운영위원 모두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집행위원회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제 57 조(업무 및 권한)**

1.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의 궐위 기간 동안 집행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한다.
2.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 선거 및 재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거나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 58 조(위원장단)**

1. 비상대책위원장단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내부에서 호선한다.
2. 비상대책위원장단은 학생회장단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 **제 59 조(임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학생회장의 임기 시작 전까지로 한다.

## 제4장 선거

### 제 60 조(선거)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 제 61 조(선거권)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 제 62 조(피선거권)

본회의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 제 63 조(선거시기)

선거는 매년 가을학기 중에 실시한다. 단, 선거가 무산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시기를 결정한다.

### 제 64 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

1. 선거는 총학생회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제반 사항은 총학생회 총선거 선거시행세칙을 우선하여 따른다.
2. 단, 본조 제 1 항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제 65 조(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라 한다.

1. 제 64 조 2 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거를 진행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선관위를 구성해야 한다.
2. 선관위는 운영위원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3.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모든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선거 과정상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심의 및 최고결정권한을 갖는다.
4. 선관위는 공개모집을 거쳐,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중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회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내부호선한다.
5. 선관위의 모든 결정은 재적 선관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6. 선관위 위원은 당해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7. 선관위는 학생회장단의 당선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 해산한다.

#### **제 66 조(선거기간)**

1. 선거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일정에 따라 진행한다.
2. 선거기간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선거시행공고일
  2. 후보등록기간
  3. 선거운동기간
  4. 투표일
  5. 개표일
3. 선거는 후보등록기간을 선거시행공고일 이후 3일 이상 5일 이내로 하며, 선거운동기간을 후보 공고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을 포함하여 7일 이상, 투표일을 2일 이내, 개표일을 투표종료 직후로 하여 선거기간을 정한다.

#### **제 67 조(후보등록)**

1. 학생회장단 후보는 학생회장 후보 1인과 부학생회장 후보 1인으로 구성된다.
2. 피선거권을 갖는 사람 중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들은 후보등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i.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후보등록서류
  - ii. 성적증명서 등 재학기간 및 학사 경고 횟수를 밝히는 서류
  - iii.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징계 사유와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후보등록서류는 후보의 이름, 사진 및 선거공약을 포함해야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후보의 후보등록서류를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24 시간 이내에 선거권을 가진 학생회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 **제 68 조(선거방법)**

1.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학생회장단 선거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학생회장단 선거의 후보로 등록할 본회의 정회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한다.
  2. 경선의 경우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 단선의 경우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 시 당선으로 한다.
  4.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20 일 이내에 재선거한다.
2. 구체적인 사항과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 69 조(재선거)**

1. 다음 각 호일 때 당선 후보를 확정할 수 없어 재선거를 시행한다.
  1. 학생회장단 선거의 후보자가 등록되지 않았을 때
  2.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3. 이의제기로 인해 운영위원회가 당선을 취소했을 때
2. 구체적인 사항과 일정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 **제 70 조(보궐선거)**

1. 학생회장이 사퇴하거나 탄핵되었을 때, 혹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남은 임기가 180 일 이상일 경우 운영위원회는 사퇴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단, 남은 임기가 180 일 미만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내부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자가 남은 임기에 그 직무를 대신한다.
2. 보궐선거는 평상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실시한다.

#### **제 71 조(이의제기)**

1. 학생회 회원은 학생회장단 선거의 당선 공고 후 48 시간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이를 회칙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2. 운영위원회가 당선을 취소할 경우 재선거를 진행한다.

#### **제 72 조 (당선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24 시간 이내에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선거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 제5장 재정

### 제 73 조(원칙)

본회의 각 기구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제 74 조(수입)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기층예산, 학과 지원금, 수익 사업 수입, 기타 수입금으로 총당한다.

### 제 75 조(회계)

본회의 회계 운용은 매 학기 집행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제 76 조(관리)

1.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이익과 회원 전체의 권리 증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본회의 재정은 집행위원회에서 관리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감독한다.
3. 집행위원회에 책정되는 회의비는 집행위원 1인 당 20,000 원을 넘길 수 없다.
4. 회비는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비 납부가 지연된 학생에게는 5,000 원의 추가 회비를 더하여 징수한다. 이때에 추가 납부 기간은 7일로 정한다.

## 제6장 회칙 개정

### 제 77 조(발의)

1. 본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1. 운영위원회의 발의
  2.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개정안 발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회칙 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2. 현행 학생회칙
  3. 개정 학생회칙안
  4. 신·구문 대비표 및 해설
  5.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

### 제 78 조(공고)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학생회장이 7일 이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 79 조(의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에 학생총회 또는 운영위원회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확정한다.

### 제 80 조(공포 및 발효)

1. 회칙 개정이 의결되면 학생회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2. 개정 공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1. 회칙 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2. 신·구문 대비표 및 해설
  3.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
  4. 회칙 개정안 찬성 대의원 명단

3. 개정된 회칙은 공포 후 5일 후에 발효된다. 단, 회칙 개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유예기간이 지정된 경우 유예기간 이전까지 전부 또는 일부 개정 전 회칙이 효력을 발한다.

## 제7장 부칙

### 제 1 조

선거 이외의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학생회장단의 결정을 따른다.

### 제2조

2023년도 학생회장단의 경우 2023년도 가을학기 시작 후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해당 학생 회장단은 2024년도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장단을 연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부칙<2023.6.21>

본 회칙은 제79조와 제80조를 준용하여 공고일로부터 7일간의 이의 신청 기간을 가진 후 전체 회원으로부터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 공표한다. 공표 5일 이후인 2023년 7월 03일부터 그 효력을 발한다.

# 논 의 안 건



## 논의안건 제1호 하반기 사업계획서 작성 논의안

제 출 연 월 일 2023. 5 28.

안 건 제 출 자 준비위원회위원 김용문

안건 상정 근거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운영규칙안」 제3조제1호

### □ 제안이유

-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운영규칙안」 제1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예산안을 확정하고자 함.
- 기획부 내부에서 작성한 바를 회의에서 함께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함.

### □ 주요내용

- 세부사항 조정
  -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설명하고 세부사항들을 논의하고자 함.
  - 정확한 금액은 이후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획부가 책정하기로 함.
- 예산안 검토
  - 예산안 세부사업 코드 분류.
  - 예산 배정 및 배정근거 확정.

## 논의안건 제2호 안건지 작성 논의안

제 출 연 월 일 2023. 5 28.

안 건 제 출 자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재경

안건 상정 근거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운영규칙안」 제3조제1호

제안이유

- 뇌인지과학과학생회 설립을 위한 안건지를 작성하고자 함.
- 작성 중 의견이 필요한 부분을 논의하기 위함.

주요내용

- 안건지 작성
  - 제출 안건 중 사업계획과 예산안 부분에 대한 작성이 필요함.
  - 기획부의 정리와 의견이 필요함.

제2023-4회  
(정기회)

#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 준비위 원회 회의록

제4호

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일시** 2023. 5. 28. 18:00

**장소** 학술문화관(문화관) 콜라보레이션룸 4A 및 원격영상회의  
(회의 참여 링크:  
<https://us05web.zoom.us/j/84018599498?pwd=T0pLV3hNbXE5V3ZpRzBtd3g2MTJxQT09>)

**의사 일정** 보고안건 제1호 / 보고안건 제2호 / 심의안건 제1호 / 논의안건 제1호 / 논의안건 제2호

**부의 안건**  
보고안건 제1호 운영부 진행 보고  
보고안건 제2호 기획부 진행 보고  
심의안건 제1호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칙 심의안  
논의안건 제1호 하반기 사업계획서 작성 논의안  
논의안건 제2호 안건지 작성 논의안

## 개회·정회·유회 또는 폐회의 일시

---

개회 일시 2023. 5. 28. 18:00

폐회 일시 2023. 5. 28. 18:35

---

○ 개회 시 출석 인원(9인)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재경 / 준비위원회부위원장 박서은 / 준비위원회위원 강서현 /  
준비위원회위원 김용문 / 준비위원회위원 김정빈 / 준비위원회위원 오대혁 / 준비위원회위원  
허제현 /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 청가 인원(0인)

○ 결석·지각·조퇴 인원(3인)

준비위원회위원 명태식(결석) /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결석) /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시은(결석)

# 결 과

## ○ 보고안건

(제1호) 운영부 진행 보고

- 원안대로 접수함.

(제2호) 기획부 진행 보고

- 원안대로 접수함.

## ○ 심의안건

(제1호)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칙 심의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표결 결과 : 찬성 9 / 반대 0 / 기권 0)

## ○ 논의안건

(제1호) 하반기 사업계획서 작성 논의안

- 하반기와 가을학기의 사업계획서는 동일해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한 기획부의 질문이 있었음. 대부분의 학과에서 그러한 방법으로 실행 중이며 심의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는 자문위원의 설명이 있었음.
- 학생회비(기증기구회계지원금)의 경우 현재 100만원을 기준으로 책정했는데, 인원수를 고려했을 때 30~40만원 정도가 알맞을 것이라는 자문위원의 조언이 있었음.
- 주로 본회계로 학과 단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 학기에는 본회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학과 측과 이야기하면 좋을 것이라는 자문위원의 조언이 있었음.
- 총 예산을 30~40만원으로 조정해서 다시 작성하고, 이후 자체 피드백을 통해 수정하는 것으로 결정함.

(제2호) 안건지 작성 논의안

- 기획부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운영부가 작성한 것에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함.
- 기획부의 경우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수정한 뒤 해당 부분을 작성하기로 결정함.

상기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함.

의 장	이 재 경	<u>이재경</u>
위 원	박 서 은	<u>박서은</u>
위 원	김 용 분	<u>김용분</u>

---

제2023-5회

**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2023. 7. 17.





# 심 의 안 건

## 심의안건 제1호 제출서류 심의안

제 출 연 월 일 2023. 7. 17.

안 건 제 출 자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재경

안건 상정 근거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운영규칙안」 제3조제1호

제안이유

-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운영규칙안」 제3조제1항에 따라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위원회의 제출서류를 심의하기 위함.

주요내용

-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안건지 및 최종 제출하는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칙,  
3분기 예산안, 하반기 사업계획서 서류를 확인하고 심의함.

의결문안

- 4개의 서류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한다.

제2023-5회  
(임시회)

#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 원회 회의록

제5호

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일시** 2023. 7. 17. 12:00~22:00

**장소** 서면의결

**의사 일정** 심의안건 제1호

**부의 안건** 심의안건 제1호 제출서류 심의안

○ 개회 시 출석 인원(8인)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재경 / 준비위원회부위원장 박서은 / 준비위원회위원 강서현 /  
준비위원회위원 김용문 / 준비위원회위원 김정빈 / 준비위원회위원 명태식 / 준비위원회위원  
오대혁 / 준비위원회위원 허제현

\*서면의결 참여 인원

○ 결석·지각·조퇴 인원(4인)

부총학생회장 한정현(결석) /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결석) /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결석) /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시은(결석)

\*서면의결 미참여 인원

---

# 결 과

---

○ 심의안건

(제1호) 제출서류 심의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표결 결과 : 찬성 8 / 반대 0 / 기권 0)

[표결사항]

○ 심의안건 제 1호

재석 인원 (8인)

찬성 인원 (8인)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재경 / 준비위원회부위원장 박서은 / 준비위원회위원 강서현 /

준비위원회위원 김용문 / 준비위원회위원 김정빈 / 준비위원회위원 명태식 / 준비위원회위원

오대혁 / 준비위원회위원 허제현

반대 인원 (0인)

기권 인원 (0인)

상기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함.

의 장	이 재 경	<u>이재경</u>
위 원	박 서 은	<u>박서은</u>
위 원	김 용 분	<u>김용분</u>

---

심의안건 제5호

**반도체시스템공학과학생회  
설립준비위원회 해체안**

---



# KAIST 학부 총학생회

---

## 반도체시스템공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활동보고서

---



2023. 12. 25.

기구명	반도체시스템공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직위/이름	위원장 권한대행/김민준

#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설립 준비위원회 설치안

(중앙운영위원회 의장, 2023. 5. 4.)

## 1 개요

-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설립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에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설립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를 설치함.
- 준비위원회는 그 활동을 통해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칙, 사업계획서, 예산안 등 학생회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작하고 학생회 조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구성

구분	이름	학번	비고
일반위원	김동완	20210068	반도체시스템공학과대표
일반위원	박태우	20230302	
일반위원	기건희	20230051	
일반위원	이준혁	20230562	
일반위원	박정진	20230282	
일반위원	김안진	20230141	
일반위원	선하은	20230348	
일반위원	김민준	20230111	
일반위원	노영래	20230227	
자문위원	한정현	20200692	부총학생회장
자문위원	오윤석	20190391	동아리연합회 회장
자문위원	홍의상	20210699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자문위원	최우정	20210649	화학과 학생회장

## □ 주요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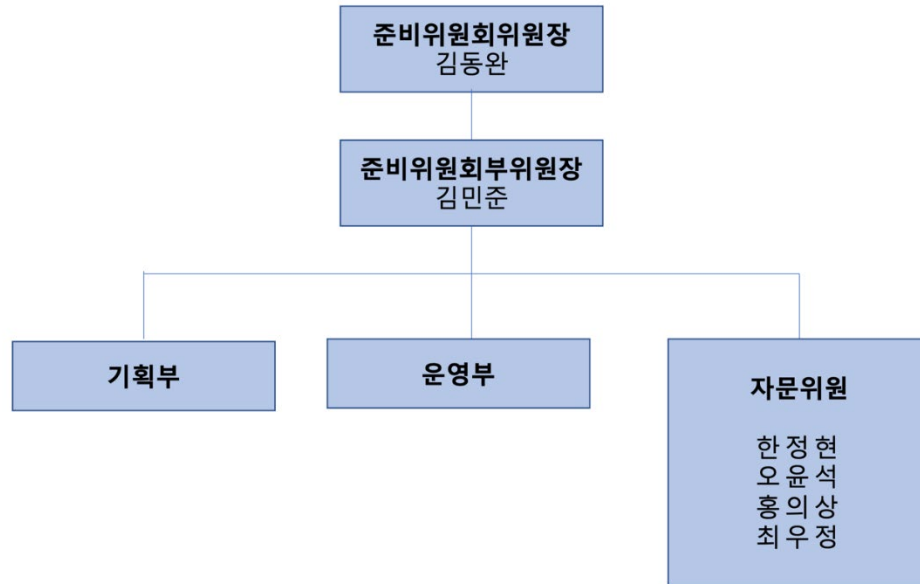
-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설립에 필요한 서류 제작 및 제출 및 학생회 조직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안건(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설립 인준안),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자치규칙,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사업계획서(2023년도 3분기 및 하반기),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예산안(2023년도 3분기 및 하반기) 등의 작성을 목표로 한다.

## □ 사업 계획

- 부서
  - 기획부(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사업계획서 및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예산안 작성)
  - 운영부(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자치규칙 및 안건 작성)
- 운영 계획

날짜	내용
~2023. 5. 25.	- 각 부서별 인원 확정 - 운영부 : 안건 완성
~2023. 5. 29.	- 운영부 : 학생회칙 초안 작성 - 기획부 : 사업계획서 검토, 예산안 초안 작성
~2023. 6. 5.	- 운영부 : 학생회칙 1/2 완성 - 기획부 : 사업계획서 완성, 예산안 작성 시작
~2023. 6. 21.	- 운영부 : 학생회칙 완성 - 기획부 : 예산안 완성

□ 조직도



□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설립 타임라인

날짜	내용
2023. 5. 4.	- 안건 서식 제공 (반도체시스템공학과학생회 설립준비위원회 설치안,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인준안)
2023. 5. 11.~2023. 5. 14.	- 반도체시스템공학과 내 준비위원회 참여 인원 파악 - 중앙운영위원회 내 준비위원회 참여인원(자문위원) 파악 및 모집
~2023. 5. 25.	- 안건 제출(반도체시스템공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설치안, 반도체시스템공학과학생회 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인준안)
2023. 5. 29.	-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반도체시스템공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설치안을 심의함
~2023. 6. 21.	-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설립에 필요한 서류 제작 및 제출 : 안건지(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설립 인준안),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칙(자치규칙),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사업계획서(2023년도 3분기 및 하반기), 반도체시스

	템공학과 학생회 예산안(2023년도 3분기 및 하반기) 등
2023. 6. 22.	소관 소위원회에 안건 회부
2023. 6. 26.	- 중앙운영위원회 6월 정기회의에서 준비위원회 운영 보고 -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설립에 필요한 서류 검토
2023. 6.	- 6월 말 개회 예정인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설립 인준안 의결
2023. 7.	-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단 선출 -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구성원으로 참여
202. 7.~2023. 8.	- 2023년도 하반기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에 필요한 서류 제출(타 학과·학부 학생회와 동일하게 총학생회 산하 자치기구로서 업무 수행)

3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설립 준비위원회 운영규칙안 (임시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설립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설립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회칙」 제62조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에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설립 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요한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중앙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안건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4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 ① 위원은 일반위원과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일반위원은 반도체시스템공학과를 주전공으로 하는 학생 중에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사람으로 한다.

③ 자문위원은 중앙운영위원 중에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사람으로 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중앙운영위원회 인준 이후부터 위원회 해산까지로 한다.

② 보임(補任)되거나 개선(改選)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다.

**제7조(위원장단)**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자문위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또는 재적위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의사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의결에 부의할 수 있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일반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결과를 기록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위원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처리)** 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임사항)** 위원회는 회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설립안

(중앙운영위원회 의장, 2023. 7. 25.)

## 1 개요

- **(설립근거)** 「학생회칙」 제104조에 따라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들의 민주적 의사 결정과 집행을 위한 학생자치기구로서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를 설립함.
- **(설립과정)**
  - (2023. 5. 29.) 자문위원 4명과,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주전공자 일반위원 9명으로 구성된 반도체시스템공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가 설치됨.
  - (2023. 6. 1.) 1차 준비위원회 회의를 통해 준비위원회 내부 부서로 운영부와 기획부를 구성함.
  - (2023. 6. 6.) 운영부에서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칙 초안을 작성함.
  - (2023. 6. 17.) 기획부에서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하반기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함.
  - (2023. 6. 19.) 2차 준비위원회 회의를 통해 하반기 사업계획서와 예산안, 학생회칙을 검토함.
  - (2023. 6. 30.)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칙을 수정하고,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설립 인준안을 작성함.
  - (2023. 7. 21.)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하반기 및 3분기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의결함.
  - (2023. 7. 23.)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칙을 서면 결의로 의결함.
  - (2023. 7. 31.) 전체학생대표자 회의에 인준 안건 제출 및 설립 인준 예정
- **(자치규칙)**
  -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학과 내의 자치를 실현하고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사회의 능동적인 참여로 구성원들의 지성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KAIST 학부 총학생회 회원 중 주전공이 반도체시스템공학과인 자는 본회의 회원이 되는 것으로 회원 자격을 정함.
- 자치규칙은 운영부원 4명이 총학생회칙과 타과 학생회칙을 참고하여 작성함.
- 회의에서 초안에 대한 수정 사항 논의 후 해당 사항을 반영해 회칙을 수정함. 초대 학생회 선거의 관리기구 지정을 명시하고, 비율의 서식 및 총학생회비 미납자의 초대 학생회 구성 허용하는 내용을 부칙이 기재하여 수정함. 또한 회장단 및 과대표단에 대한 선거 규정 및 자구 및 체계를 수정함. 이후 해당 내용을 서면 의결함.

#### □ (사업계획)

- 학과 과티 / 과잠 공모전을 위한 과내 LEAP 프로그램에 참여. 8월 말에 실시할 공모전 등을 위한 지원금 확보 목적.
- 과티 / 과잠 공모전을 8월 말에 진행.
- 중간 / 기말 간식 이벤트를 매 시험마다 진행.

#### □ (예산안)

- 과티 / 과잠 공모전: 공모전 상품 200,000원 + 각 6,300,000원 (대리구매)
- 공모전 상품 200,000원 + 과티 / 과잠 비용 각 1,800,000원 (인당 각 2만원 학과 지원비, 나머지 개인 부담비)
- 중간 / 기말 간식 이벤트: 각 2,000,000원

##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KAIST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이다.

### 제2조(목적)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반도체시스템공학과(이하 '본과'라 한다) 내부의 민주적인 자치와 화합을 이루어 내며, 구성원들의 지성적 이해와 요구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지위)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 산하 자치기구이다.

### 제4조(회원)

1. 총학생회 회원 중 주전공이 반도체시스템공학과인 사람은 본회의 회원이 된다.
  1. 본회의 회원은 제5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2. 회원 중 제5조제8항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제5조4항의 권리를 일부 제한당할 수 있다.
  3. 회원의 자치활동 참여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5.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회원으로 인준받을 수 있다.

###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KAIST규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받는다.
2. 본회의 회원은 본회 운영 전반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활동을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본회의 회원은 필요한 본회의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4.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5.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6.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저항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7. 본회의 회원을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8.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 제6조(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로 구성한다.

1. 의결기구: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운영위원회
2. 집행기구: 학생회장단, 과대표단, 집행부

## 제2장 의결기구

### 제1절 통칙

#### 제7조(의사결정)

본회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본 회칙에서 규정하는 의결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 제8조(위계)

1. 본회의 의사결정권은 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 운영위원회 순으로 한다.
2.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은 하위 기구의 의사결정에 우선한다.
3.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이 가능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위인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 제9조(의장)

1. 본회의 의결기구의 의장은 본회 회칙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이하 '학생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를 대표하며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무를 감독한다.
3. 의장은 본회의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4. 학생회장이 사고 또는 궐위될 경우 부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5.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모두 사고 또는 궐위된 때 또는 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내부 호선된 1인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의결기구 개최 직후 해당 의결기구의 재인준을 받아 해당의결기구의 의장직을 대신한다.

## 제2절 학생총회

### 제10조(지위)

학생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 제11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 제12조(형식)

총회는 본회 회원의 연석의 형식으로 한다.

### 제13조(권한)

1. 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2. 비상총학생회는 학생사회의 긴급한 결정을 요하는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3. 비상총학생회는 학생회장단 탄핵안을 의결할 수 없다.

### 제14조(의장)

1. 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2. 학생회장이 사고 또는 궐위될 경우 부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3.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모두 사고 또는 궨위된 때 또는 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내부 호선된 1인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총회 개회 직후 총회의 재인준을 받는다.

#### 제15조(소집)

1.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의장이 24시간 이내 소집한다.
  1. 본회 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총회 의장은 개회 72시간 전에 총회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3. 의장이 제1항을 위반하여 학생총회를 소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소집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4. 비상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의장이 24시간 이내 소집한다.
  1. 본회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2분의 2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가 있을 때
5. 총회 의장은 개회 24시간 전에 총회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6. 의장이 제4항을 위반하여 비상학생총회를 소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소집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 제16조(안건 상정)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1. 본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2.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비상학생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1.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2.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2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 제17조(의사·의결정족수)

1. 총회는 본회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회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비상학생총회는 비상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8조(결과공고)

총회의 의장은 폐회 후 72시간 이내에 결과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절 학생총투표

#### 제19조(지위)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총투표(이하 "학생총투표"라 한다)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 이를 통한 의결은 학생총회 의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제20조(투표권)

본회 회원은 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 제21조(형식)

총투표는 본회 회원의 투표 형식으로 의결한다.

#### 제22조(권한)

총투표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1. 학생회장단 탄핵안 등 본회 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
2. 그 밖에 본회 활동과 관련한 중대한 사항
3. 단 학생총투표는 본회의 존립과 관련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 제23조(시행)

1. 총투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총회 의장이 120시간 이내 시행한다.
  1. 운영위원회 3분의 2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가 있을 때
  2.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가 있을 때
  3. 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되었을 때
  4. 그 밖에 본회의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2. 총회 의장은 시행 7일 이전에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3. 총투표가 시행이 결정되면 총회 의장은 투표관리 위원회를 구성한다.
  1. 단, 회장단 탄핵안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열거된 총회 의장의 권한 일부를 투표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투표관리위원회는 총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24조(안건 상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학생총투표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2.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

한 경우

3. 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

4.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장의 시행요구와 함께 의장이 안건을 발의한 경우

제25조(성립·의결 요건)

1. 총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 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명부상 총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1. 의장은 제23조2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 명부상 총투표자 수를 함께 공고해야 한다.

제26조(결과공고)

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완료 이후 72시간 이내에 총회 의장이 투표율과 결과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한다.

제27조(이의제기)

총투표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투표관리위원회에 투표 종료 후 72시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투표관리위원회는 해당 이의제기를 이의제기 이후 48시간 이내에 심의·의결해 공고한다.

제4절 운영위원회

제 28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총회가 일정한 권한을 위임한 상설 의결기구이다.

제29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제30조(운영위원)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이 된다.

1. 학생회장

2. 부학생회장

3. 1학년 과대표 1인

4. 1학년 부과대표 1인

5. 2학년 과대표 1인

6. 2학년 부과대표인 1인

7. 3학년 과대표 1인

8. 3학년 부과대표 1인

9. 4학년 과대표 1인

10. 4학년 부과대표 1인

2.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과대표 혹은 부과대표를 겸직할 수 있다.

3.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으로 인준을 받을 수 있다.

4.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학생회장을 대신하여 본회의 대표자 자격을 가지고 회부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 제31조(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1. 본회의 제반 사항
2. 본회 및 본회 기구의 사업계획 및 예산
3. 본회 및 본회 기구의 사업보고 및 결산
4. 학생회칙 및 세칙 제정안 및 개정·폐지안
5. 학생회비 인상·인하안
6. 학생회장단 및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및 과대표단 탄핵안 발의안
7.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단체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8. 본회 차원의 대외적 협의 및 활동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

#### 제32조(의장)

1. 운영위원회 의장은 학생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운영위원으로 한다.
2. 학생회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내부호선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하며, 운영위원 개회직후 운영위원회의 재인준을 받는다.

#### 제33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1. 정기회는 주 1회로 한다.
2. 임시회는 의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3. 의장은 운영위원회 소집 12시간 전에 소집을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3. 의결 안건 및 보고 사항이 없을 경우 의장의 권한으로 정기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4조(안건 상정)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1. 의장의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2.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3. 운영위원회 의장이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발의한 경우

#### 제35조(안건의 상정 시기)

안건의 상정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34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제33조에 따라 소집되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본회 회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2. 제34조제3호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안건발의 일자로부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소집이 공고되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본회 회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 제36조(검직)

검직이 발생할 경우에 재적 인원, 재석 인원, 의결권의 중복을 인정하지 않는다.

#### 제37조(의결정족수)

1. 운영위원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서면결의로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재적 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 결의로 의결할 수 없다.
  1. 제31조제4호
  2. 제31조제5호
  3. 제31조제6호
  4. 제31조제7호
  5. 제31조제8호

#### 제38조(결과공고)

의장은 폐회 후 72시간 이내에 결과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제39조(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1. 본회에 배정되는 학부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1. 이때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높은 학년의 과대표 순으로 우선으로 하여 정한다.

#### 제3장 집행기구

##### 제1절 학생회장단

#### 제40조(지위)

1.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2.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고, 학생회장이 권한을 위임할 때에 그 권한을 대행한다.

#### 제41조(임기)

1.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전년도 1분기 초 총학생회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 후부터 당해 연도 1분기 초 총학생회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 이전까지로 한다. 다만, 보임(補任)되거나 개선(改選)된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임기 시작부터 1분기 초 총학생회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 이전까지로 하며, 임기 시작은 당선 확정 공고 등 본회의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
2. 학생회장단이 학생회 회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사퇴한 것으로 본다.



#### 제42조(신분보장)

학생회장 및 부회장은 임기만료나 총회에서의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제43조(업무 및 권한)

1. 학생회장은 본회 의결기구를 운영하고 의장이 된다.
2. 학생회장은 본회의 대내외 활동을 관장한다.
3.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의견을 알리며,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담론을 형성할 의무를 가진다.
4. 학생회장은 본회 집행부를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부원 및 각 부서의 장을 임면(任免)한다.

#### 제44조(의무)

1. 학생회장단은 본회 회원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학생회장단은 본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학생회장단은 본회 및 본회 자치기구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학생회장단은 후임 학생회장단으로의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차후 업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45조(권한대행)

1. 학생회장이 사고 또는 궐위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학생회장 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인준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2. 부학생회장이 사고 또는 궐위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인준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제46조(검직금지)

학생회장 및 부회장은 다음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총학생회장단
2.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3. 타 학부·학과 학생회 학생회장(단) 및 이에 준하는 입시집행체계의 장
4. 새내기학생회 회장단
5.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6. 각 자치기구 비례 대의원

#### 제47조(선거)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시행한다.

#### 제48조(탄핵)

1. 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은 학생회장단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둘 중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학생회장단 탄핵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해 총회 또는 총투표로 발의할 수 있다.
  1.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
  2.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5분의 1 이상 연서
3. 탄핵안이 발의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내부 호선한 1인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탄핵안 발의 3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탄핵안을 총회 또는 총투표로 발의한다.
4. 학생회장단 혹은 학생회장 혹은 부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탄핵안의 대상이 된 사람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이때, 운영위원 중 내부 호선된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탄핵안이 총회 또는 총투표에서 부결된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 제6장 과대표와 부과대표

##### 제49조(지위)

1. 과대표는 본회 각 학년 회원들을 대표한다.
2. 학년별 부과대표 1인은 과대표를 보좌하며 과대표가 사고 또는 궐위 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0조(구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대표단이 된다.

1. 1학년 과대표
2. 1학년 부과대표
3. 2학년 과대표
4. 2학년 부과대표
5. 3학년 과대표
6. 3학년 부과대표
7. 4학년 과대표
8. 4학년 부과대표

##### 제51조(임기)

1. 학년별 과대표와 부과대표의 임기는 당선 확정 공고 이후부터 차년도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로 한다.
2. 진급에 따른 학년 변경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과대표 부과대표가 본회 회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사퇴한 것으로 본다.

##### 제52조(소속 학년)

1. 과대표와 부과대표의 소속 학년 통상의 학년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2. 통상과 벗어난 형태의 학년 구분 사례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53조(학생회장의 겸임)

학생회장이 속한 학년의 과대표가 없을 경우에 학생회장은 그 학년도 과대표를 겸임한다.

### 제54조(선거)

1. 학년별 과대표, 부과대표 선출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2. 본회 회원 중 제5조제5항에 따라 피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은 소속 학년 과대표, 부과대표 선거에 입후보할 권리를 가진다.
3. 본회 회원 중 제5조 제5항에 따라 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은 소속 학년의 과대표, 부과대표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4. 과대표 선거는 해당 학년 과반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개표 결과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과대표 당선자로 한다. 만약 단일 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 상황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5. 부과대표 선거는 해당 학년 과반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개표 결과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과대표 당선자로 한다. 만약 단일 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 상황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6. 운영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48시간 이내에 회원에게 선거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7. 본회 회원은 당선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이를 본회 회칙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운영위원회가 당선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54조를 준용하여 재선거를 시행한다.
8.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고 선거 제반업무가 종료되었을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당선자의 당선을 확정한다.
9. 그 밖에 과대표단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 제55조(탄핵)

1. 탄핵안은 과대표와 부과대표 각각을 대상으로 발의할 수 있다.
2. 과대표 혹은 부과대표에 대한 탄핵안은 선거권을 가진 해당 학년 회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 의장은 과대표 혹은 부과대표에 대한 탄핵안 발의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과대표단 탄핵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4. 과대표단 탄핵안 발의 시 과대표단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때, 운영위원회 의결로 인준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과대표단 탄핵안이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에 과대표단은 직

무에 복귀한다.

5. 학생회장단이 과대표단을 겸직할 경우, 학생회장단 직에서 탄핵될 때에 과대표단 직도 함께 탄핵된 것으로 본다.

제56조(보궐)

1. 과대표 또는 부과대표가 사퇴하거나 탄핵되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사퇴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시행할 수 있다.

2. 과대표단의 보궐선거는 제54조에 따라 시행한다.

### 제3절 집행부

제57조(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58조(구성)

1. 집행부원은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분된다.

1. 운영위원은 당연직 집행부원이 된다.

2. 임명직 집행부원은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학생회장이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2. 집행부의 국서 체계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학생회장이 정한다.

제59조(업무 및 권한)

1. 집행부는 본회 업무 전반에 대해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다.

2. 집행부는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업무를 집행한다.

제60조(운영)

전반적인 운영은 의결기구 및 학생회장단의 방향에 따른다.

### 제4절 비상대책위원회

제61조(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집행위원회를 대체하고 본회의 최고집행 기구가 된다.

1.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

2. 학생회장단 두 명 모두가 사퇴 또는 탄핵되고, 해당 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180일이 넘지 않을 때

#### 제62조(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제6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공고하고, 공고 후 120시간 이내에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모집공고 후 240시간 이내에 비상대책위원 지원자 및 운영위원 중 비상대책위원을 선발하고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제63조(업무 및 권한)

-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집행부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행부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③ 비상대책위원회의 업무 범위 및 운영 절차가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 제64조(임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구성된 이후부터 제41조에 따른 선거기간 종료일 3일 후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제65조(위원장)

- 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제45조에 따라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운영위원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권한을 대행할 운영위원이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은 본회 회원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위원장으로 인준한다.
- ②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③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인준된 이후부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까지로 한다.

## 제4장 선거

#### 제66조(선거)

본회의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시행한다.

#### 제67조(선거권)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 제68조(피선거권)

본회의 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 제69조(선거시기)

선거는 매년 가을학기 중에 실시한다. 다만, 선거가 무산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시기를 정한다.

#### 제70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

- ① 본회의 학생회장단 선거는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밖의 제반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 ② 다만, 제1항에 따른 선거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선거를 시행할 수 있다.

#### 제71조(선거관리위원회)

- ① 제70조제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학생회장의 선거를 시행할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선관위는 운영위원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 ③ 선관위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내부호선한다.
- ④ 선관위 위원은 해당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 ⑤ 선관위는 학생회장단 선거의 제반 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의결 권한을 갖는다.

- ⑥ 선관위는 학생회장단의 당선 확정을 공고한 후에 해산한다.

#### 제72조(선거기간)

- ① 선거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일정에 따라 진행한다.
- ② 선거기간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 1. 선거시행공고일
  - 2. 후보등록기간
  - 3. 선거운동기간
  - 4. 투표일
  - 5. 개표일
- ③ 선거는 후보등록기간을 선거시행공고일 이후 72시간 이상 120시간 이내로 하며, 선거운동기간을 후보 공고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을 포함하여 7일 이상, 투표일을 48시간 이내, 개표일을 투표종료 직후로 하여 선거기간을 정한다.

#### 제73조(후보등록)

- ① 학생회장단 후보는 학생회장 후보 1인과 부학생회장 후보 1인으로 구성된다.
- ② 피선거권을 갖는 사람 중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들은 후보등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후보등록서류
  - 2. 성적증명서 등 재학기간 및 학사 경고 횟수를 밝히는 서류
  - 3.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징계 사유와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③ 후보등록서류는 후보의 이름, 사진 및 선거공약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후보의 후보등록서류를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선거권을 가진 학생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제74조(선거방법)

- ① 선거권자의 40% 이상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개표 결과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단일 후보의 경우에는 찬성 투표가 과반일 경우에 당선으로 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선거일 20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선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 의결로 정한다.

#### 제75조(재선거)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당선 후보를 확정할 수 없어 재선거를 시행한다.
  - 1. 학생회장단 선거의 후보자가 등록되지 아니하였을 때
  - 2.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 3. 운영위원회가 당선을 취소하였을 때
- ② 그 밖에 재선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 제76조(보궐선거)

- ① 학생회장단이 사퇴하거나 탄핵되었을 때에 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사퇴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남은 임기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사퇴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보궐선거는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 제77조(당선공고)

선관위는 개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대중에게 선거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78조(이의제기)

- ① 본회 회원은 학생회장단 선거의 당선공고 이후 72시간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이를 본회 회칙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당선이 취소된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75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79조(당선확정)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고 선거 제반업무가 종료되었을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당선자의 당선을 확정한다.

### 제5장 재정

#### 제80조(재원)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학생회칙」 제166조에 따른 기증기구회계 지원금, 학과 지원금, 수익 사업 수입,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81조(회계)

본회의 회계 운용은 매 학기 개강 후 첫번째 주에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인한다.

#### 제8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 및 집행 분기는 「학생회칙」 제165조를 따른다.

#### 제83조(회비)

- ① 본회의 회원은 가입 후 당해년도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금액의 학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납부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학사과정 졸업 시까지 제5조제4항에서 명시하는 학생회비 납부에 따른 권리가 보장된다.

#### 제84조(관리)

- ①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이익과 회원 전체의 권리 증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본회의 재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한다.
- ③ 각 학기의 회비는 1인당 30,000원을 넘길 수 없다.

## 제6장 회칙 개정

### 제85조(발의)

- ③ 회칙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해 발의된다.
  - 1.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2. 본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④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 2. 현행 학생회칙
  - 3. 개정 학생회칙안
  - 4. 신·구문대조표 및 해설
  - 5.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 제86조(공고)

회칙개정안이 발의되면 학생회장은 발의된 회칙개정안을 72시간 이내에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제87조(의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에 학생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제88조(공포 및 발효)

- ① 회칙개정안이 학생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면 학생회장은 이를 72시간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 1. 단, 학생회장이 1항에 정한 시간까지 공포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포할 수 있다.
- ② 개정 회칙 공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1.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2. 신·구문 대비표 및 해설
  3.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4. 회칙개정안 찬성 회원 또는 운영위원 명단
- ③ 개정된 회칙은 공포 후 5일 후에 발효된다. 단, 회칙 개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유예기간이 지정된 경우 유예기간 이전까지 전부 또는 일부 개정 전 회칙이 효력을 발한다.

## **제7장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 후 즉시 발효된다.

### **제2조(적용례)**

- ① 제1대 학생회장단 선거의 경우에는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에서 제71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제1대 학생회장단에 한하여 임기를 당선 확정 공고 이후부터 차년도 1분기 초 총학생회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 이전까지로 한다.

□ (2023년도 3분기)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 2023년도 3분기 예산안

KAIST 학부 총학생회

반도체시스템공학과 2023년도 3분기 예산안

기 구 명	반도체시스템공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반 기	하반기
기 구 장	위원장 권한대행 김민준	제출연월일	2023. 7. 22.

수 입								
재원(장)	예산 분류(관)	항목(항)	코드	전년도 결산	당해 연도 예산	비율	예산 산정 근거	
100	학생회비	수입 소계		₩0	₩0	-%		
200	본회계	기타지원금	LEAP 프로그램 지원금	201	-	₩2,000,000	-%	LEAP 프로그램 계획서 통과되었고 ₩2,000,000 지급 예정
		수입 소계		₩0	₩2,000,000	-%		
300	자치	이월금		301	-	₩0	-%	
		예금이자	예금이자	302	-	₩0	-%	
		과비	과비	303	-	₩0	-%	3분기 과비는 걸지 않음
			과비 이월금	304	-	₩0	-%	
수입 소계		₩0	₩0	-%				
수입 총계				₩0	₩2,000,000	-%		

지 출									
재원(장)	예산 분류(관)	사업명(항)	예산 과목 (세부 항목)	코드	전년도 결산	당해 연도 예산	비율	예산 산정 근거	
400	학생회비	운영비	격려금	401	-	₩0	-%		
		지출 소계		₩0	₩0	-%			
500	본회계	비정기사업비	LEAP 프로그램	기타비	501	-	₩300,000	-%	의류 브랜드 회사에 kaist sse 로고를 박아
				기타비	502	-	₩360,000	-%	단체복 구매 시 인당 ₩2,000 * 2벌 * 90명
		지출 소계		₩0	₩660,000	-%			
600	자치	운영비	집행위원회 운영	물품비	601	-	₩0	-%	
				회의비	602	-	₩0	-%	
		비정기사업비	학생회 내 친목	상품비	605	-	₩0	-%	
지출 소계		₩0	₩0	-%					
지출 총계				₩0	₩660,000	-%			

총계	전년도 결산	당해년도 예산	비율
수입	₩0	₩2,000,000	-%
지출	₩0	₩660,000	-%
잔액	₩0	₩1,340,000	-%

학생회비	전년도 결산	당해년도 예산	비율
수입	₩0	₩0	-%
지출	₩0	₩0	-%
잔액	₩0	₩0	-%

본회계	전년도 결산	당해년도 예산	비율
수입	₩0	₩2,000,000	-%
지출	₩0	₩660,000	-%
잔액	₩0	₩1,340,000	-%

자치	전년도 결산	당해년도 예산	비율
수입	₩0	₩0	-%
지출	₩0	₩0	-%
잔액	₩0	₩0	-%

○ 2023년도 3분기 사업계획서

KAIST 학부 총학생회

---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2023년도 3분기 사업계획서**

---



2023. 7. 22

기구명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직위/이름	위원장 직무대행/김민준

## 제 출 문

학부 총학생회장 귀하:

본 계획서를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의 2023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07월 22일

	담당자	기구장
서명	박태우	김민준

---

# I. 사업 개요

---

사업번호	사업명
1	과티 / 과잠 공모전

---

## Ⅱ. 사업별 계획

---

### 1 과티 / 과잠 공모전

---

#### 1. 사업 개요

- |             |                                       |
|-------------|---------------------------------------|
| 1) 사업 방식    | 공모전을 통한 디자인 선정 및 제작                   |
| 2) 사업 준비 기간 | 2023.08.28-2023.09.03                 |
| 3) 사업 일시    | 2023.09.04-2023.09.18                 |
| 4) 사업 예산    | 공모전 상품 ₩200,000 + 각 ₩6,300,000 (대리구매) |
| 5) 담당부서/담당자 | 이준현(미디어부장), 김안진(소통부장)                 |

#### 2. 사업 추진 목적

과티와 과잠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공모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기여도를 높여 학과 내 소속감을 조성한다.

#### 3. 사업 계획

##### 1) 사업 수혜 대상자

과 내 학생 중 구매 비용을 지불한 자

##### 2) 세부 사업 내용

과티와 과잠은 하나의 공모전으로 같은 디자인으로 선정한다. 공모전 안내는 과티 준비



기간에 카드 뉴스를 제작하고 발주할 사업체도 이 기간에 함께 선정한다. 9월 4일에 공모전을 시작하고 9월 8일 공모전이 끝나고 디자인을 선정하여 발표한다. 이후 과티의 경우 9월 11일 및 15일에 구글폼으로 과티와 과잠 구매 신청서를 함께 받는다. 9월 18일에 인원을 확정하여 (16-17일 추가 신청) 발주한다. 공모전 상품은 1위, 2위와 참가상 (6명)에게 차등 지급한다. 추가로 과 내에서 진행하는 LEAP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금을 확보한다. 지원금은 공모전 상품 200,000원 + 과티 / 과잠 비용 각 1,800,000원 (인당 각 2만원 학과 지원비, 나머지 개인 부담비) 이다. 과잠 / 과티 비용은 7만원보다 적을 수 있으나 상관없이 개인당 각 2만원씩 지원한다.

#### 4. 사업 예상 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2023.08.28-2023.09.03	카드 뉴스 제작 및 사업체 선정	
2023.09.04-2023.09.08	공모전 진행	과티와 과잠은 같은 디자인
2023.09.11-2023.09.15	구매 신청 기간	
2023.09.16-2023.09.17	추가 신청 기간	
2023.09.18	발주	

## Ⅲ.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운영 계획

### 1 위원 명단

#### 1. 위원 명단

##### 1)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이름	학번	소속 부서	근거 규정
----	----	-------	-------

\*학번 8자리 기재

##### 2) 집행위원회 위원 명단

이름	학번	소속 부서	직책
김동완	20210068		학생대표
고민재	20230027	기획부	
노영래	20230227	기획부	
박태우	20230302	기획부	기획부장
유준하	20230445	기획부	
권용언	20230046	소통부	
김안진	20230141	소통부	소통부장
김휘용	20220211	소통부	
김민준	20230111	총무부	
선하은	20230348	총무부	총무부장
최시형	20230770	총무부	
기건희	20230051	미디어부	
박정진	20230282	미디어부	
이준혁	20230562	미디어부	

## 2. 비고 사항

# 2 운영 계획

## 1. 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학생회를 기획부, 소통부, 총무부, 미디어부로 나누어 운영한다. 사업은 1~2 부서가 나누어서 주도하고 다른 부서에서 도움을 주는 식으로 진행한다.

## 2. 집행위원회 운영 계획

### 1) 국서/TF 구조

#### (1) 기획부

- 1 활동 요약: 학과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
- 2 국서/TF원 명단: 고민재, 노영래, 박태우, 유준하
- 3 사업명: 중간 / 기말 간식 이벤트

#### (2) 소통부

- 1 활동 요약: 학생회 행사 공지 및 소통 창구 관리
- 2 국서/TF원 명단: 권용언, 김안진, 김휘용
- 3 사업명: 파티 / 과잠 공모전

#### (3) 총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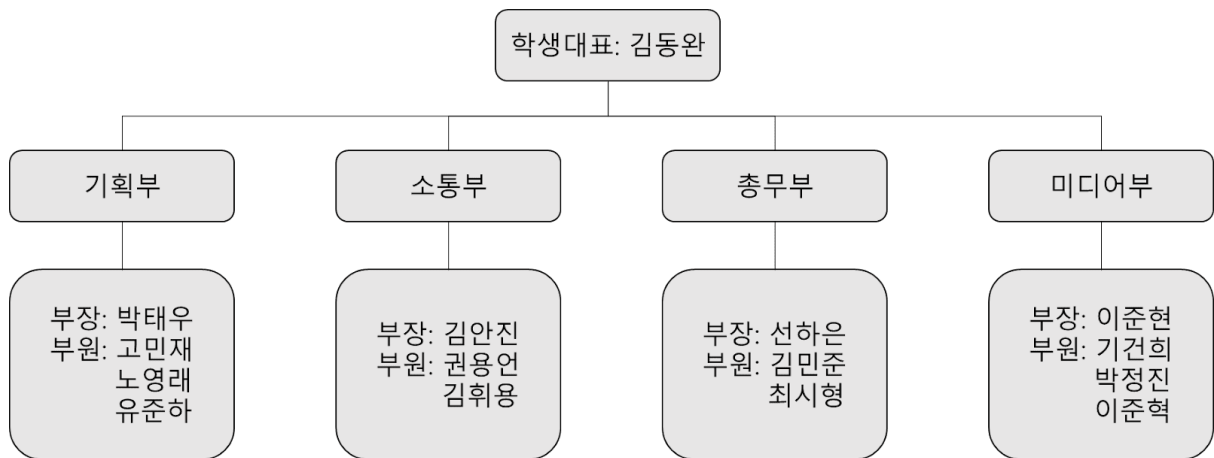
- 1 활동 요약: 각종 행사 홍보물 제작 및 출력
- 2 국서/TF원 명단: 김민준, 선하은, 최시형

3 사업명: 중간 / 기말 간식 이벤트

(4) 미디어부

- 1 활동 요약: 분기별 예산안 작성 및 집행
- 2 국서/TF원 명단: 기건희, 박정진, 이준현, 이준혁
- 3 사업명: 파티 / 과잠 공모전

2) 조직도



□ (2023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 2023년도 하반기 예산안

KAIST 학부 총학생회

반도체시스템공학과 2023년도 하반기 예산안			
기 구 명	반도체시스템공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반 기	하반기
기 구 장	위원장 권한대행 김민준	제출연월일	2023. 7. 22.

수 입							
재원(장)	예산 분류(관)	항목(항)	코드	전년도 결산	당해 연도 예산	비율	예산 산정 근거
100	학생회비	기증기구회계 지원금	101	-	₩500,000	-%	기증예산심의회의 평가 비례 A등급을 받을 경우 ₩500,000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
		기증기구회계 이월금	102	-	₩0	-%	2023년도 하반기가 SSE 첫번째 예산안임
		격려기금	103	-	₩0	-%	
	수입 소계				₩0	₩500,000	-%
	정기사업비	시험기간 간식 이벤트 지원금	202	-	₩1,500,000	-%	
		과잠 비용 지원	203	-	₩1,800,000	-%	₩20,000 * 90명 (휴학자 제외)
		과후드집업 비용 지원	204	-	₩1,800,000	-%	₩20,000 * 90명 (휴학자 제외)
	수입 소계				₩0	₩5,100,000	-%
300	자치	이월금	301	-	₩0	-%	
		예금이자	302	-	₩0	-%	
		과비	303	-	₩900,000	-%	인당 1만원 (휴학자 제외)
		과비 이월금	304	-	₩0	-%	
		과잠 공동구매	305	-	₩6,300,000	-%	₩70,000 * 90명 (휴학자 제외)
		과후드집업 공동구매	306	-	₩6,300,000	-%	₩70,000 * 90명 (휴학자 제외)
		수입 소계				₩0	₩13,500,000
수입 총계				₩0	₩19,100,000	-%	

지 출									
재원(장)	예산 분류(관)	사업명(항)	예산 과목 (세부 항목)	코드	전년도 결산	당해 연도 예산	비율	예산 산정 근거	
400	학생회비	운영비	격려금	401	-	₩0	-%		
		정기사업비	시험기간 간식 이벤트	402	-	₩2,000,000	-%	쉐렉버거+음료 ₩10,000 * 100명 * 2회	
		지출 소계				₩0	₩2,000,000	-%	
500	분회계	정기사업비	과잠 비용 지원	503	-	₩1,800,000	-%	₩20,000 * 90명 (휴학자 제외)	
		과후드집업 비용 지	기타비	504	-	₩1,800,000	-%	₩20,000 * 90명 (휴학자 제외)	
		지출 소계				₩0	₩3,600,000	-%	
600	자치	운영비	집행위원회 운영	601	-	₩300,000	-%	가위, 볼펜, 테이프, A4용지 등 사무비품 구입, 미리캔버스 Pro 유료 계정 이용료 ₩	
			회의비	602	-	₩225,000	-%	현 인원 15인, 인당 ₩15,000 * 15명	
		정기사업비	과잠 공동구매	603	-	₩6,300,000	-%	₩70,000 * 90명 (휴학자 제외)	
		과후드집업 공동구매	기타비	604	-	₩6,300,000	-%	₩70,000 * 90명 (휴학자 제외)	
		비정기사업비	학생회 내 친목	상품비	605	-	₩200,000	-%	1등 상품비: ₩100,000 (외식상품권), 2등 상품비: ₩50,000 (외식상품권) *2
			단체복 디자인 공모전	상품비	606	-	₩200,000	-%	1등 상품비: ₩100,000 (외식상품권), 2등 상품비: ₩70,000 (외식상품권), 참가상: ₩5000 * 6명
지출 소계				₩0	₩13,525,000	-%			
지출 총계				₩0	₩19,125,000	-%			

총계	전년도 결산	당해년도 예산	비율
수입	₩0	₩19,100,000	-%
지출	₩0	₩19,125,000	-%
잔액	₩0	-₩25,000	-%

학생회비	전년도 결산	당해년도 예산	비율
수입	₩0	₩500,000	-%
지출	₩0	₩2,000,000	-%
잔액	₩0	-₩1,500,000	-%

분회계	전년도 결산	당해년도 예산	비율
수입	₩0	₩5,100,000	-%
지출	₩0	₩3,600,000	-%
잔액	₩0	₩1,500,000	-%

자치	전년도 결산	당해년도 예산	비율
수입	₩0	₩13,500,000	-%
지출	₩0	₩13,525,000	-%
잔액	₩0	-₩25,000	-%

○ 2023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서

## □ (목록)

- 제2023-1회 반도체시스템공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회의록
- 제2023-2회 반도체시스템공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회의록
- 제2023-3회 반도체시스템공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회의록
- 제2023-4회 반도체시스템공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회의록
- 제2023-5회 반도체시스템공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회의록

KAIST 학부 총학생회

---

#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 2023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서

---



2023. 7. 22

기구명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생회설립준비위원회
직위/이름	위원장 권한대행/김민준

## 제 출 문

학부 총학생회장 귀하:

본 계획서를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의 2023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07월 22일

	담당자	기구장
서명	박태우	김민준



---

# I. 사업 개요

---

사업번호	사업명
1	과티 / 과잠 공모전
2	중간 / 기말 간식 이벤트

---

## Ⅱ. 사업별 계획

---

### 1 과티 / 과잠 공모전

---

#### 1. 사업 개요

- |             |                                       |
|-------------|---------------------------------------|
| 1) 사업 방식    | 공모전을 통한 디자인 선정 및 제작                   |
| 2) 사업 준비 기간 | 2023.08.28-2023.09.03                 |
| 3) 사업 일시    | 2023.09.04-2023.09.18                 |
| 4) 사업 예산    | 공모전 상품 ₩200,000 + 각 ₩6,300,000 (대리구매) |
| 5) 담당부서/담당자 | 이준현(미디어부장), 김안진(소통부장)                 |

#### 2. 사업 추진 목적

과티와 과잠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공모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기여도를 높여 학과 내 소속감을 조성한다.

#### 3. 사업 계획

##### 1) 사업 수혜 대상자

과 내 학생 중 구매 비용을 지불한 자

##### 2) 세부 사업 내용

과티와 과잠은 하나의 공모전으로 같은 디자인으로 선정한다. 공모전 안내는 과티 준비

기간에 카드 뉴스를 제작하고 발주할 사업체도 이 기간에 함께 선정한다. 9월 4일에 공모전을 시작하고 9월 8일 공모전이 끝나고 디자인을 선정하여 발표한다. 이후 과티의 경우 9월 11일 및 15일에 구글폼으로 과티와 과잠 구매 신청서를 함께 받는다. 9월 18일에 인원을 확정하여 (16-17일 추가 신청) 발주한다. 공모전 상품은 1위, 2위와 참가상 (6명)에게 차등 지급한다. 추가로 과 내에서 진행하는 LEAP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금을 확보한다. 지원금은 공모전 상품 200,000원 + 과티 / 과잠 비용 각 1,800,000원 (인당 각 2만원 학과 지원비, 나머지 개인 부담비) 이다. 과잠 / 과티 비용은 7만원보다 적을 수 있으나 상관없이 개인당 각 2만원씩 지원한다.

#### 4. 사업 예상 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2023.08.28-2023.09.03	카드 뉴스 제작 및 사업체 선정	
2023.09.04-2023.09.08	공모전 진행	과티와 과잠은 같은 디자인
2023.09.11-2023.09.15	구매 신청 기간	
2023.09.16-2023.09.17	추가 신청 기간	
2023.09.18	발주	

### 1. 사업 개요

- |             |   |
|-------------|---|
| 1) 사업 방식    | 간식 제공   |
| 2) 사업 준비 기간 | 중간: 2023.09.25-2023.10.03 / 기말: 2023.11.20-2023.11.28 |
| 3) 사업 일시    | 중간: 2023.10.04 / 기말: 2023.11.29                       |
| 4) 사업 예산    | 각 ₩2,000,000  |
| 5) 담당부서/담당자 | 박태우(기획부장), 선하은(총무부장)                                  |

### 2. 사업 추진 목적

시험 기간 학과 내 학생들을 독려하고 소속감을 증진시킨다.

### 3. 사업 계획

#### 1) 사업 수혜 대상자

학과 내 재학중인 모든 학생들

#### 2) 세부 사업 내용

중간 / 기말 이벤트 모두 시험 첫날의 21일 전(월)부터 13일 전(화)까지를 준비기간으로 두고 12일 전을 사업 실행일로 한다. 이때, 시험일은 카이스트 학사일정을 기준으로 한다. 9일의 준비 기간 중에서 첫 3일(월-수)은 간식 선정 및 업체 선정을 한다. 또한, 현수막의 경우에는 1일차에 선정, 2일차에 주문을 하여서 8-9일차에 배송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4일차에는 이벤트 장소를 확보하고 업체와 연락하여 세부 사항을 정한다. 미리 주문이

필요한 음식의 경우에는 5일차에 주문을 하여서 8일차인 월요일에 배송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9일차에는 군 휴학 등을 고려하여 명단을 작성하고 준비를 마친다. 사업 홍보는 1일차에 카드 뉴스 제작을 시작하여서 3일차에 공지한다.

이벤트 일시는 시험 2주전 수요일(첫 시험 12일전) 17시-18시로 한다.

#### 4. 사업 예상 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2023.09.25-2023.09.27	간식 선정 & 업체 선정 & 카드뉴스 제작	1일차: 현수막 선정 2일차: 현수막 주문 3일차: 카드뉴스 공지
2023.09.28	이벤트 장소 확보	
2023.09.29	음식 주문	사전 준비가 필요한 음식에 한해서 온라인 주문 (추석 주간 대비 필요)
2023.10.02-2023.10.03	음식 & 현수막 배송 완료 (예상)	
2023.10.03	참석 명단 작성	군 휴학 등을 고려
2023.11.20-2023.11.22	간식 선정 & 업체 선정 & 카드뉴스 제작	1일차: 현수막 선정 2일차: 현수막 주문 3일차: 카드뉴스 공지
2023.11.23	이벤트 장소 확보	
2023.11.24	음식 주문	사전 준비가 필요한 음식에 한해서 온라인 주문
2023.11.27-2023.11.28	음식 & 현수막 배송 완료 (예상)	
2023.11.29	참석 명단 작성	군 휴학 등을 고려

## Ⅲ.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운영 계획

### 1. 위원 명단

#### 1. 위원 명단

##### 1)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이름	학번	소속 부서	근거 규정
----	----	-------	-------

\*학번 8자리 기재

##### 2) 집행위원회 위원 명단

이름	학번	소속 부서	직책
김동완	20210068		학생대표
고민재	20230027	기획부	
노영래	20230227	기획부	
박태우	20230302	기획부	기획부장
유준하	20230445	기획부	
권용언	20230046	소통부	
김안진	20230141	소통부	소통부장
김휘용	20220211	소통부	
김민준	20230111	총무부	
선하은	20230348	총무부	총무부장
최시형	20230770	총무부	
기건희	20230051	미디어부	
박정진	20230282	미디어부	
이준혁	20230562	미디어부	
이준현	20210512	미디어부	미디어부장

## 2. 비교 사항

# 2 운영 계획

---

### 1. 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학생회를 기획부, 소통부, 총무부, 미디어부로 나누어 운영한다. 사업은 1~2 부서가 나누어서 주도하고 다른 부서에서 도움을 주는 식으로 진행한다.

### 2. 집행위원회 운영 계획

#### 1) 국서/TF 구조

##### (1) 기획부

- 1 활동 요약: 학과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
- 2 국서/TF원 명단: 고민재, 노영래, 박태우, 유준하
- 3 사업명: 중간 / 기말 간식 이벤트

##### (2) 소통부

- 1 활동 요약: 학생회 행사 공지 및 소통 창구 관리
- 2 국서/TF원 명단: 권용언, 김안진, 김휘용
- 3 사업명: 과티 / 과잠 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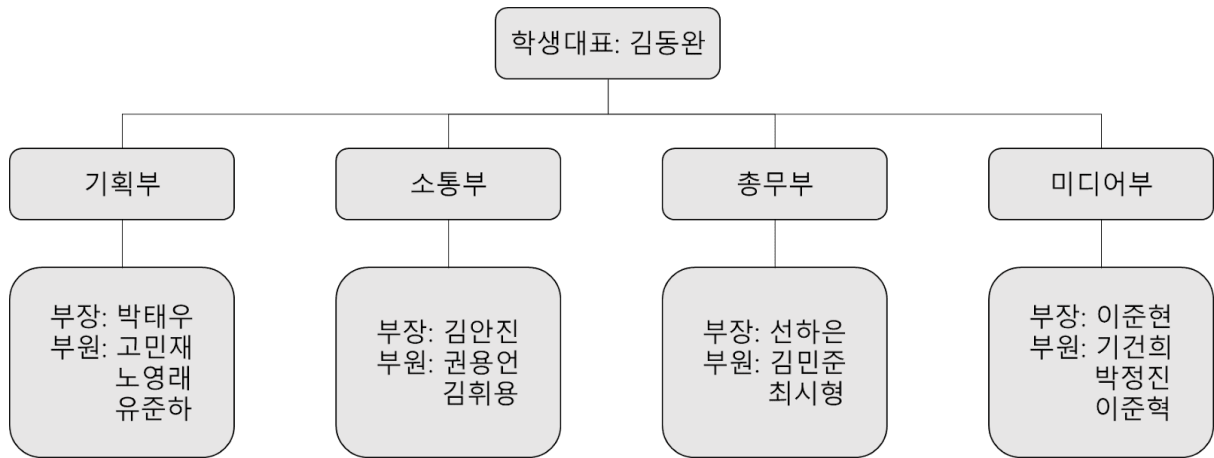
##### (3) 총무부

- 1 활동 요약: 각종 행사 홍보물 제작 및 출력
- 2 국서/TF원 명단: 김민준, 선하은, 최시형
- 3 사업명: 중간 / 기말 간식 이벤트

(4) 미디어부

- 1 활동 요약: 분기별 예산안 작성 및 집행
- 2 국서/TF원 명단: 기건희, 박정진, 이준현, 이준혁
- 3 사업명: 과티 / 과잠 공모전

2) 조직도





제2023-1회  
(임시회)

#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설립준비 위원회 회의록

제1호

운영부

---

일 시        2023. 06. 01. 20:00

장 소        장영신학생회관 세미나실1

---

의사 일정    준비위원회 운영 계획 논의 및 직제 의결

---

부의 안건

- 1.위원회 운영 및 추진일정에 대한 전반적 사항에 대한 위원장단의 보고
  2. 운영부, 기획부와 대회협력 TF 설치 및 위원 구성 의결
-

개회·정회·유회 또는 폐회의 일시

---

개회 일시 2023. 06. 01. 21:3

정회 일시 2023. 06. 01. 21:20

속회 일시 2023. 0. 0. HH:mm

폐회 일시 2023. 0. 0. HH:mm

---

- 성원(7인)
  
- 개회 시 출석 인원(7인)  
박정진, 선하은, 기건희, 박태우, 김민준, 이준혁, 한정현
  
- 청가 인원(0인)
  
  
- 결석·지각·조퇴 인원(0인)

# 보고 사항

## 1 위원회 운영 안내

- 총 인원수 13명으로 일반위원 9명 자문위원 4명을 중앙운영위원회에 인준을 받아 위원회 구성 완료  
회의가 열리려면 총 7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정기회는 기말고사 기간이 끝난 후 월요일 21시에 개최하며, 현장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합니다.
- 이번 회의는 위원장님의 불참으로 부위원장이 대리해 진행했습니다.

## 2 준비위원회 업무 안건 보고

- 앞으로 해야 할 일 목록  
여름 가을 학기 예산안 작성, 여름 가을학기 사업계획서 작성,  
학생회칙 작성 및 학과회칙 작성과 학생회 설치안 작성
- 업무추진타임라인 안내

날짜	내용
2023. 5. 4.	안건서식제공 (반도체시스템공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설치안, 반도체시스템공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인준안)
2023. 5. 11.~2023. 5. 14.	- 반도체시스템공학과 내 준비위원회 참여 인원 파악 - 중앙운영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 내 준비위원회 참여인원(자문위원) 인원 파악 및 모집
~2023. 5. 18.	- 안건제출 (반도체시스템공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설치안, 반도체시스템공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인준안)

2023. 5.29	-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설립 준비위원회 설치안을 심의함
~2023. 6. 21.	-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설립에 필요한 서류 제작 및 제출 - : 안건지(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설립 인준안),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칙(자치규칙),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사업계획서(2023년도 3분기 및 하반기),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예산안(2023년도 3분기 및 하반기) 등
2023. 6. 22.	소관 소위원회에 안건 회부
2023. 6. 26.	- 중앙운영위원회 6월 정기회의에서 준비위원회 운영 보고 -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설립에 필요한 서류 검토
2023. 6.	- 6월 말 개회 예정인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설립 인준안 의결
2023. 7.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단 선출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구성원으로 참여
202. 7.~2023. 8.	- 2023년도 하반기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에 필요한 서류 제출(타 학과·학부 학생회와 동일하게 총학생회 산하 자치기구로서 업무 수행)

---

# 안 건

---

## 심의안건 제1호 운영부, 기획부와 대회협력 TF 설치 및 위원 구성

---

제 출 연 월 일 2023. 6. 1.

안 건 제 출 자 부위원장 김민준

□ 제안이유

- 운영부와 기획부를 만들어 각각에 인원을 배정하고 업무를 나누어 진행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함.

□ 주요내용

- 회칙과 안건지를 작성하는 운영부,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는 기획부를 두고자 함. 더불어 각 부서에서 1인을 뽑아 대회협력 TF를 신설해 총학 및 다른 기관과 효율적인 업무 공조를 이루고자 함
- 기획부: 박태우, 선하은, 노영래 위원, 운영부: 기건희, 박정진, 이준혁, 김안진 위원  
대회협력 TF: 김민준, 이준혁, 박태우 위원

□ 참고사항

- 각각의 부서는 봄학기에 선발한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집행부와 공조해 업무를 하시면 됩니다.

□ 의결문안

- 운영부, 기획부와 대회협력 TF 설치 및 위원 구성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한다.
-

---

## 결 과

---

- 보고안건
- 심의안건
  - (제1호) 운영부, 기획부와 대회협력 TF 설치 및 위원 구성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
- 인준안건
- 논의안건

상기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함.

부위원장 김민준

위원 박정진

위원 박태우

김민준

박정진

박태우

제2023-1회  
(정기회)

#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설립준비 위원회 회의록

제2호

운영부

---

일 시            2023. 6. 19. 21:00

장 소            원격영상회의 및 대면 회의 병행  
(회의 참여  
링크:<https://us05web.zoom.us/j/89165718916?pwd=dXJvSFU4VVIJY0NnVkxBT3l3WlFadz09>)

---

의사 일정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 제출할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회칙안, 2023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서, 2023년도 하반기 예산안에 대해 심의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설립 진행 과정에 관해 논의

---

부의 안건        1.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회칙안  
                     2. 2023학년도 하반기 사업 계획서(안)  
                     3. 2023학년도 하반기 예산안(안)  
                     4. 학생회 설립 진행과정 논의

---



개회·정회·유회 또는 폐회의 일시

---

개회 일시 2023. 6. 19. 21:05

정회 일시 2023. 0. 0. HH:mm

속회 일시 2023. 0. 0. HH:mm

폐회 일시 2023. 6. 19. 21:34

---

- 성원(7인)
  
- 개회 시 출석 인원(#인)  
기건희, 김민준, 김안진, 선하은, 이준혁, 노영래, 한정현, 최우정, 홍의상
  
- 청가 인원(0인)
  
- 결석·지각·조퇴 인원(1인)  
오윤석-지각

---

# 보고사항

---

## 1 위원장단 보고사항

---

- 위원장님이 일신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직무복귀시까지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함.
- 위원회 규칙에 의거 부원장 다음으로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2

---

- 
-

---

# 안 건

---

---

## 보고안건 제1호 직무대행

---

제 출 연 월 일 2023. 6. 19.

안 건 제 출 자 부위원장 김민준

- 제안이유
    - 위원장님의 사고에 따른 부위원장 직무 대행
  - 주요내용
    - 위원장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이에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해 위원회 업무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 참고사항
    -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
  - 의결문안
    - 직무대행 안건을 원안대로 접수한다.
-

## 심의안건 제1호 학생회칙(안)

제 출 연 월 일 2023. 6. 8.

안 건 제 출 자 운영부 이준혁

- 제안이유
  -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학생회칙 안을 심의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별첨(1)한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회칙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 의결문안
  - 학생회칙(안) 원안대로 심의·의결한다.

제 출 연 월 일 2023. 6. 17.

안 건 제 출 자 기획부 박태우

- 제안이유
  -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2023학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서를 심의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별첨(2)한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2023학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 의결문안
  - 2023학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서(안) 원안대로 심의·의결한다.

제 출 연 월 일 2023. 6. 17.

안 건 제 출 자 운영부 선하은

- 제안이유
  -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2023학년도 하반기 예산안을 심의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별첨(3)한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2023학년도 하반기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 의결문안
  - 2023학년도 하반기 예산안(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한다.

제 출 연 월 일 2023. 6. 19.

안 건 제 출 자 부위원장 김민준

- 제안이유
  - 학생회 설립준비 과정과 앞으로의 추진사항에 대해 논의하고자합니다.
- 주요내용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 과정, 안건지 내용, 학생회 운영 등을 논의
- 논의사항
  -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집행부원들의 자격 및 선거 수행일정
- 참고사항
  -

---

## 결 과

---

- 보고안건
  - (제1호) 직무대행
    - 원안대로 접수함.
  - (제2호) 안건명
    - 원안대로 접수함.
- 심의안건
  - (제1호) 학생회칙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찬성: 9명 반대 0: 기권: 0
  - (제2호) 2023학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서(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찬성: 10명 반대 0: 기권: 0
  - (제3호) 2023학년도 하반기 예산안(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찬성: 10명 반대 0: 기권: 0
- 논의안건
  - (제1호) 안건명
    - 7월에 열리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예산안, 사업계획서, 회칙을 일부 수정해 제출
    - 수정이 필요한 서류는 수정이 완료되면 서면의결 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 초대 학생회 구성에 한해 선거 및 제반 사항을 준비위과 관장할 수 있도록 부칙 조항 필요



상기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함.

위원장 김민준  
직무대행

김민준

위원 선하은

Shun

위원 한정현

J.H.Han

## 제1장 총칙

---

### 제1조(명칭)

본회는 KAIST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

### 제2조(목적)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반도체시스템공학과(이하 “본과”) 내의 자치를 이루어 내며, 구성원들의 지성적 이해와 요구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지위)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 산하 자치기구이다.

### 제4조(회원)

1. KAIST 학부 총학생회 회원 중 주전공이 반도체시스템공학과인 자는 본회의 회원이 된다.
  1. 회원은 제5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2. 회원 중 제5조 제8항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제7항의 권리를 일부 제한당할 수 있다.
  3. 회원의 자치활동 참여는 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2.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받는다.
2. 본회의 회원은 본회 운영 전반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활동을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본회의 회원은 필요한 본회의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4.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5.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6.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저항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7. 본회의 회원을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8.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본조 제4항의 권리를 일부 제한받을 수 있다.

### 제6조(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로 구성한다.

1. 의결기구 –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운영위원회
2. 집행기구 – 학생회장단, 과대표단, 학생회 집행위원회

## 제2장 학생총회

---

### 제7조(지위)

학생총회 (이하 “총회”)라 한다)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 제8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 제9조(권한)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 제10조(소집)

1. 총회는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
  2.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
2. 총회 의장은 총회의 경우 개회 5일 이전에 본 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 제11조(의결)

총회는 본회 회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비상학생총회)

1. 학생사회의 긴급한 결정을 요하는 중대한 사안이 있을 경우 비상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비상학생총회는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본회 회원 2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
  2.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2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
3. 비상학생총회의 경우 개회 1일 이전에 이를 본 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4. 비상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참여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비상학생총회는 학생회장 탄핵 안건을 의결할 수 없다.
6. 의장이 본조 제1항을 위반하여 비상학생총회를 소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소집 결정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 제13조(의장)

1. 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2. 학생회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학생회장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경우 총회의 의장은 운영위원회 내부 호선을 통해 선출된 자로 한다.

### 제14조(공고)

총회의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 제3장 학생총투표

---

### 제15조(지위)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총투표(이하 “학생총투표”라 한다)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 이를 통한 의결 사항은 학생총회의 의결 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제16조(투표권)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 제17조(권한)

학생총투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시행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2/3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
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4.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탄핵안 발의

## 5. 기타 본회의 중대한 사안의 경우

### 제18조(형식)

학생총투표는 본회 회원의 투표의 형식으로 한다.

### 제19조(시행)

1. 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2. 학생총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학생총회 의장은 투표관리위원회를 조직한다.
3. 투표관리위원회는 학생총투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한다.
4. 학생총회 의장은 학생총투표의 시행을 시행 7일 이전에 이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 제20조(성립·의결요건)

1. 학생총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명부상 총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부정확한 목적으로 명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공고)

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 완료 시부터 3일 이내에 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율과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한다.

### 제22조(이의제기)

총투표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투표관리위원회에 선거 종료후 72시간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투표관리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심의 의결해 공고한다.

## 제 4장 운영위원회

---

### 제23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총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 제24조(운영위원)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이 된다.
  1. 학생회장
  2. 부학생회장
  3. 1학년 과대표 1인
  4. 1학년 부과대표 1인
  5. 2학년 과대표 1인
  6. 2학년 부과대표인 1인
  7. 3학년 과대표 1인
  8. 3학년 부과대표 1인
  9. 4학년 과대표 1인
2.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과대표 혹은 부과대표를 겸직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내부 합의를 거쳐 KAIST 학부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으로 인준을 받을 수 있다.
4. 운영위원회는 내부 합의를 거쳐 학생회장을 대신하여 본회의 대표자의 자격을 가지고 외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 제25조(의장)

1. 운영위원회 의장은 학생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운영위원으로 한다.
2. 학생회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학생회장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경우 부학생회장 혹은 운영위원회 내부 의결을 통해 인준된 자가 그 직을 대신한다.

### 제26조(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제반 사항을 검토, 심의, 조정한다.
2.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3. 본회 회원 4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4. 본회 및 본회 기구의 예산 및 결산안을 심의 및 의결한다.
5. 학생회비 책정에 관한 사안을 논의 및 의결한다.
6. 학생회칙 및 세칙 개정을 의결한다.
7. 학생회장 탄핵 안건을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8. 과대표, 부과대표의 탄핵 안건을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9.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단체 가입 및 탈퇴를 의결한다.
10. 본회 차원의 대외적 협의 및 활동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11.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 제27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1. 정기회는 주 1회로 한다.
2. 임시회는 의장이나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혹은 기타 긴급한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이 생겼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3. 의결 안건 및 보고 사항이 없을 경우 의장의 권한으로 정기회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28조(겸직)

겸직이 발생할 경우 재적 인원, 재석 인원, 의결권의 중복을 인정하지 않는다.

### 제29조(의결)

1. 운영위원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서면 결의의 형태로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 결의의 형태로 의결할 수 없다.
  1. 제26조 제6항
  2. 제26조 제7항
  3. 제26조 제8항
  4. 제26조 제9항
  5. 제26조 제10항

### 제30조(공고)

의장은 폐회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 제31조(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1. 본회에 배정되는 KAIST 학부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 반도체시스템공학과 부학생회장, 3학년 과대표, 2학년 과대표, 1학년 과대표, 3학년 부과대표, 2학년 부과대표, 1학년 부과대표 순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조 제1항에 따라 결정이 어려울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추천 받은 본회 회원을 대의원으로 인준할 수 있다.

## 제5장 학생회장

---

### 제32조(지위)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 제33조(임기)

학생회장의 임기는 당선 이후의 총학생회 하반기 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다음날부터 이듬해 하반기 2차 정기 전학대회까지로 한다. 단, 보궐선거 및 재선거로 당선된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 직후에 시작한다.

### 제34조(신분보장)

학생회장은 임기 만료나 총회에서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 제35조(권한대행)

학생회장이 궐위 혹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학생회장 혹은 운영위원회 내부 의결을 통해 인준된 자가 그 직무와 권한을 대신한다.

### 제36조(겸직금지)

학생회장은 다음의 직책을 겸할 수 없다.

1. 총학생회장단
2. 학부동아리연합회회장단
3. 타과 학부 학생회 학생회장
4. 새내기학생회 회장단
5.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6. 각 자치기구 비례대의원
7. 타과 학부 학생회 임시집행체계의 장

### 제37조(업무 및 권한)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본회의 대내외 활동을 관장한다.
2.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의견을 알리며,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담론을 형성할 의무를 가진다.
3. 집행부 간부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 제38조(탄핵)

1. 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의해 총회로 발의할 수 있다.
  1.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
  2.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
2. 운영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한 1인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탄핵안 발의 3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탄핵안을 총회에 상정한다.
3. 학생회장 탄핵안이 발의된 즉시 학생회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때, 운영위원 중 부학생회장 혹은 호선한 1인이 학생회장단의 권한을 대행한다. 학생회장 탄핵 안건이 총회에서 부결된 경우 학생회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 제6장 과대표와 부과대표

---

### 제39조(지위)

1. 과대표는 본회 각 학년 회원들을 대표한다.

2. 학년별 부과대표 1인은 과대표를 보좌하며 과대표의 결위 시 그 업무를 수행한다.

#### 제40조(임기)

1. 과대표와 부과대표의 임기는 당선 직후부터 이듬해 봄학기 개강 전까지다.
2. 진급에 따른 학년 변경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을 원칙으로 한다.

#### 제41조(소속 학년)

1. 과대표와 부과대표의 소속 학년은 통상의 학년 구분에 준거한다.
2. 통상과 벗어난 형태의 학년 구분 사례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42조(구분)

과대표와 부과대표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학년 과대표
2. 1학년 부과대표
3. 2학년 과대표
4. 2학년 부과대표
5. 3학년 과대표
6. 3학년 부과대표
7. 4학년 과대표
8. 4학년 부과대표

#### 제43조(학생회장의 겸임)

학생회장이 속한 학년의 과대표가 없을 경우, 학생회장은 그 학년도 과대표를 겸임한다.

#### 제44조(선출)

1. 학년별 과대표, 부과대표의 선출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2. 본회 회원 중 제5조 제5항에 따라 피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은 소속 학년 과대표, 부과대표 선거에 입후보할 권리를 가진다.
3. 본회 회원 중 제5조 제5항에 따라 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은 소속 학년의 과대표, 부과대표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4. 선거 결과, 최다 득표자가 해당 학년의 과대표로 선출되며, 나머지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가 부과대표로 선출된다.
5. 과대표, 부과대표 선출의 세부 절차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45조(보궐)

1. 과대표, 부과대표가 사퇴를 하거나 탄핵을 받아 공석이 되었을 때, 운영위원회는 사퇴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석에 대한 보궐을 진행한다.
2. 과대표의 보궐은 제4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선출한다.

#### 제46조(당선공고)

운영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48시간 이내에 대중에게 선거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 제7장 집행부

---

#### 제47조(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1. 학생회장(이하 학생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학생회장(이하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고, 학생회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고인 때에 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48조(구성)

1. 집행부원은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분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집행부원이 된다.
  2. 임명직 집행부원은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모집 대상은 해당 연도에 본과로 진입한 모든 학생이다.
2. 집행부의 국서 체계는 학생회장이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제49조(업무 및 권한)

집행부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집행부는 본회 업무 전반에 대해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다.
2.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업무를 집행한다.

## 제50조(운영)

전반적인 운영은 의결기구 및 학생회장의 방향에 따른다.

# 제8장 비상대책위원회

---

## 제51조(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집행부를 대체하며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가 된다.

## 제52조(구성)

1.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구성된다.
  1. 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될 때
  2. 학생회장이 탄핵이 가결되었을 때
  3. 사퇴 또는 유고 시 학생회장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할 운영위원이 없을 때
2. 운영위원회는 본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 후 7일 이내에 비상대책위원 모집 공고를 올려야 한다.
3. 운영위원회는 모집 공고 후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 지원자 및 운영위원 중 비상대책위원을 선발 후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제53조(업무 및 권한)

1.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행부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2.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 선거 및 재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거나 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54조(위원장)

1.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제35조에 의해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운영위원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권한을 대행할 운영위원이 없을 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인준한다.
2.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3.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하반기 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다음날부터 차기 학생회장 당선 직전까지로 한다.

# 제9장 재정

---

## 제55조(재원)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분배된 기층 예산, 학과 지원금, 수익 사업 수입,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56조(회계)

본회의 회계 운용은 매 학기 첫 번째에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승인한다.

### 제5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 및 집행 분기는 매 정규학기 개강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58조(회비)

1. 본회의 회원은 가입 후 당해년도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금액의 학생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납부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학사과정 졸업 시까지 제5조 제4항에서 명시하는 학생회비 납부에 따른 권리가 보장된다.

### 제59조(관리)

1.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이익과 회원 전체의 권리 증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본회의 재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한다.
3. 집행부에 책정되는 각 학기의 회비는 집행부원 1인당 30,000원을 넘길 수 없다.

## 제10장 선거

---

### 제60조(선거)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 제61조(선거권)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 제62조(피선거권)

본회의 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 제63조(선거시기)

본회의 선거는 매년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 중에 실시한다.

### 제64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

1. 본회는 본회의 학생회장 선거를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제반 사항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2. 단, 본조 제1항이 모종의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학생회장 선거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제65조(선거관리위원회)

1. 제58조 제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학생회장의 선거를 진행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관위는 운영위원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3. 선관위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선관위 위원은 해당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5. 선관위는 학생회장 선거의 제반 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 제66조(선거방법)

1. 학생회장 선거의 후보로 등록할 본회의 정회원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2. 선거권자의 40% 이상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20일 이내에 재선거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대안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4. 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일 20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5. 단일후보일 경우 찬성 표가 전체 투표 수의 과반수가 넘을 시 당선으로 한다.
6. 단일후보로서 찬반 투표로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본조 제3항을 준용한다.
7. 구체적인 사항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 제67조(보궐선거)

1. 학생회장이 사퇴하거나 탄핵 되었을 때, 혹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남은 임기가 180일 이상일 경우 운영위원회는 사퇴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해야 한다. 단, 남은 임기가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내부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자가 남은 임기에 그 직무를 대신한다.
2. 보궐선거는 평상의 선거와 마찬가지로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제68조(당선무효)

1. 본회의 자체적으로 진행한 선거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당선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이를 원칙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3. 당선이 취소될 경우 선관위는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9조(당선공고)

선관위는 개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대중에게 선거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 제11장 회칙 개정

---

#### 제70조(발의)

1.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본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2. 개정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회칙 개정의 목적 및 경위
  2. 현행 학생회칙
  3. 개정 학생회칙안
  4. 신구문대조표 및 해설

#### 제71조(공고)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학생회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2조(의결)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에 학생총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확정한다.

#### 제73조(공포 및 발효)

1. 가결된 회칙 개정안은 3일 이내에 개정 회칙으로서 학우 대중에게 공포되어야 한다.
2. 공포된 개정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5일 이후에 그 효력을 발한다.

별첨2

## KAIST 학부 총학생회

---

#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 2023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서

---



2023.06.17

기구명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직위/이름	기획부장/박태우

제 출 문

학부 총학생회장 귀하:

본 계획서를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의 **2023**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06월 17일**

	담당자	기구장
서명		

---

# I. 사업 개요

---

사업번호	사업명
1	과티 / 과장 공모전
2	중간 / 기말 간식 이벤트
3	
4	
5	

---

## II. 사업별 계획

### 1 과티 / 과장 공모전

#### 1. 사업 개요

- |             |  |
|-------------|--|
| 1) 사업 방식    | 공모전을 통한 디자인 선정 및 제작                              |
| 2) 사업 준비 기간 | 2023.08.28-2023.09.03                            |
| 3) 사업 일시    | 2023.09.04-2023.09.18                            |
| 4) 사업 예산    | 공모전 상품 200,000원 + 각 3,600,000원 (대리구매)            |
| 5) 담당부서/담당자 | 미디어부 / 기건희, 박정진, 이준현, 이준혁<br>소통부 / 권용언, 김안진, 김휘용 |

#### 2. 사업 추진 목적

과티와 과장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공모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기여도를 높여 학과 내 소속감을 조성한다.

#### 3. 사업 계획

##### 1) 사업 수혜 대상자

과 내 학생 중 구매 비용을 지불한 자

##### 2) 세부 사업 내용

과티와 과장은 하나의 공모전으로 같은 디자인으로 선정한다. 공모전 안내는 과티 준비 기간에 카드 뉴스를 제작하고 발주할 사업체도 이 기간에 함께 선정한다. 9월 4일에 공모전을 시작하고 9월 8일 공모전이 끝나고 디자인을 선정하여 발표한다. 이후 과티의 경우 9월 11일 및 15일에 구글폼으로 과티와

과장 구매 신청서를 함께 받는다. 9월 18일에 인원을 확정하여 (16-17일 추가 신청) 발주한다. 공모전 상품은 1위, 2위와 참가상 (6명) 에게 차등 지급한다.

#### 4. 사업 예상 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2023.08.28-2023.09.03	카드 뉴스 제작 및 사업체 선정	
2023.09.04-2023.09.08	공모전 진행	과티와 과장은 같은 디자인
2023.09.11-2023.09.15	구매 신청 기간	
2023.09.16-2023.09.17	추가 신청 기간	
2023.09.18	발주	



### 1. 사업 개요

- |             |   |
|-------------|---|
| 1) 사업 방식    | 간식 제공   |
| 2) 사업 준비 기간 | 중간: 2023.09.25-2023.10.03 / 기말: 2023.11.20-2023.11.28 |
| 3) 사업 일시    | 중간: 2023.10.04 / 기말: 2023.11.29                       |
| 4) 사업 예산    | 각 2,000,000원  |
| 5) 담당부서/담당자 | 기획부 / 고민재, 노영래, 박태우, 유준하<br>총무부 / 김민준, 선하은, 최시형       |

### 2. 사업 추진 목적

시험 기간 학과 내 학생들을 독려하고 소속감을 증진시킨다.

### 3. 사업 계획

#### 1) 사업 수혜 대상자

학과 내 재학중인 모든 학생들

#### 2) 세부 사업 내용

중간 / 기말 이벤트 모두 시험 첫날의 21일 전(월)부터 13일 전(화)까지를 준비기간으로 두고 12일 전을 사업 실행일로 한다. 이때, 시험일은 카이스트 학사일정을 기준으로 한다. 9일의 준비 기간 중에서 첫 3일(월-수)은 간식 선정 및 업체 선정을 한다. 또한, 현수막의 경우에는 1일차에 선정, 2일차에 주문을 하여서 8-9일차에 배송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4일차에는 이벤트 장소를 확보하고 업체와 연락하여 세부 사항을 정한다. 미리 주문이 필요한 음식의 경우에는 5일차에 주문을 하여서 8일차인 월요일에 배송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9일차에는 군 휴학 등을 고려하여 명단을 작성하고 준비를 마친다. 사업 홍보는 1일차에 카드 뉴스 제작을 시작하여서 3일차에 공지한다.

이벤트 일시는 시험 2주전 수요일(첫 시험 12일전) 17시-18시로 한다.

#### 4. 사업 예상 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2023.09.25-2023.09.27	간식 선정 & 업체 선정 & 카드뉴스 제작	1일차: 현수막 선정 2일차: 현수막 주문 3일차: 카드뉴스 공지
2023.09.28	이벤트 장소 확보	
2023.09.29	음식 주문	사전 준비가 필요한 음식에 한해서 온라인 주문 (추석 주간 대비 필요)
2023.10.02-2023.10.03	음식 & 현수막 배송 완료 (예상)	
2023.10.03	참석 명단 작성	군 휴학 등을 고려
2023.11.20-2023.11.22	간식 선정 & 업체 선정 & 카드뉴스 제작	1일차: 현수막 선정 2일차: 현수막 주문 3일차: 카드뉴스 공지
2023.11.23	이벤트 장소 확보	
2023.11.24	음식 주문	사전 준비가 필요한 음식에 한해서 온라인 주문
2023.11.27-2023.11.28	음식 & 현수막 배송 완료 (예상)	
2023.11.29	참석 명단 작성	군 휴학 등을 고려

### Ⅲ.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운영 계획

#### 1. 위원 명단

##### 1. 위원 명단

1)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이름	학번	소속 부서	근거 규정

\*학번 8자리 기재

2) 집행위원회 위원 명단

이름	학번	소속 부서	직책
김동완	20210068		학생대표
고민재	20230027	기획부	
노영래	20230227	기획부	
박태우	20230302	기획부	기획부장
유준하	20230445	기획부	
권용언	20230046	소통부	
김안진	20230141	소통부	소통부장
김휘용	20220211	소통부	
김민준	20230111	총무부	
선하은	20230348	총무부	총무부장
최시형	20230770	총무부	
기건희	20230051	미디어부	
박정진	20230282	미디어부	
이준혁	20230562	미디어부	
이준현	20210512	미디어부	미디어부장

2. 비고 사항

2 운영 계획

1. 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학생회를 기획부, 소통부, 총무부, 미디어부로 나누어 운영한다. 사업은 1~2 부서가 나누어서 주도하고 다른 부서에서 도움을 주는 식으로 진행한다.

## 2. 집행위원회 운영 계획

### 1) 국서/TF 구조

#### (1) 기획부

- 1 활동 요약: 학과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
- 2 국서/TF원 명단: 고민재, 노영래, 박태우, 유준하
- 3 사업명: 중간 / 기말 간식 이벤트

#### (2) 소통부

- 1 활동 요약: 학생회 행사 공지 및 소통 창구 관리
- 2 국서/TF원 명단: 권용언, 김안진, 김휘용
- 3 사업명: 과티 / 과잠 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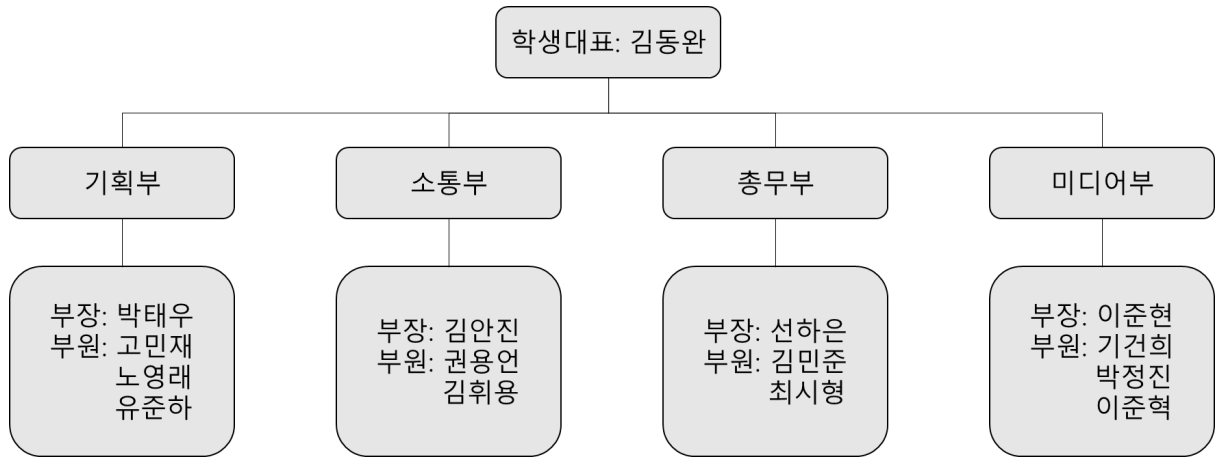
#### (3) 총무부

- 1 활동 요약: 각종 행사 홍보물 제작 및 출력
- 2 국서/TF원 명단: 김민준, 선하은, 최시형
- 3 사업명: 중간 / 기말 간식 이벤트

#### (4) 미디어부

- 1 활동 요약: 분기별 예산안 작성 및 집행
- 2 국서/TF원 명단: 기건희, 박정진, 이준현, 이준혁
- 3 사업명: 과티 / 과잠 공모전

### 2) 조직도



별첨3)

E39 단체북 디자인 공모전

A	B	C	D	E	F	G	H	I	J	K	
KAIST 학부 총학생회											
<b>반도체시스템공학과 2023년도 하반기 예산안</b>											
기구명		반도체시스템공학과				반기		하반기			
기구장		-				제출연월일		2023. 6. 00.			
<b>수입</b>											
재원(장)	예산 분류(관)	항목(항)	코드	전년도 결산	당해 연도 예산	비율	예산 산정 근거				
100	학생회비	기증기금회계	기증기금회계 지원금	101	₩0	₩0	-%	기증예산심의회의 평가 비례 A등급을 받을 경우 ₩?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 2023년도 하반기가 SSE 첫번째 예산안임			
			기증기금회계 이월금	102	₩0	₩0	-%				
			격려기금	103	₩0	₩0	-%				
수입 소계				₩0	₩0	-%					
200	분회계	-	-	-	-	-%					
수입 소계				₩0	₩0	-%					
300	자치	이월금	이월금	301	₩0	₩0	-%				
		예금이자	예금이자	302	₩0	₩0	-%				
		과비	과비	303	₩0	₩1,100,000	-%	인당 1만원			
			과비 이월금	304	₩0	₩0	-%				
		기타수익금	과장 공동구매	305	₩0	₩3,600,000	-%	₩40,000 * 90명 (균인 제외)			
			과후드집업 공동구매	306	₩0	₩3,600,000	-%	₩40,000 * 90명 (균인 제외)			
수입 소계				₩0	₩8,300,000	-%					
수입 총계				₩0	₩8,300,000	-%					
<b>지출</b>											
재원(장)	예산 분류(관)	사업명(항)	예산 과목 (세부 항목)	코드	전년도 결산	당해 연도 예산	비율	예산 산정 근거			
400	학생회비	운영비	격려금	격려금	401	₩0	₩0	-%			
		정기사업비	시험기간 간식 이벤트	상품비	402	₩0	₩2,000,000	-%	섹션버거+음료 ₩10,000 * 100명 * 2회		
		비정기사업비	-	-	-	₩0	₩0	-%			
지출 소계				₩0	₩2,000,000	-%					
500	분회계	-	-	-	-	-%					
지출 소계				₩0	₩0	-%					
600	자치	운영비	집행위원회 운영	물품비	601	₩0	₩300,000	-%	가위, 볼펜, 테이프, A4용지 등 사무비품 구입, 미리캔버스 Pro 유료 계정 이용료 ₩160,800/년		
			회의비	602	₩0	₩225,000	-%	현 인원 15인, 인당 ₩15,000 * 15명			
		정기사업비	과장 공동구매	기타비	603	₩0	₩3,600,000	-%	₩40,000 * 90명 (균인 제외)		
			과후드집업 공동구매	기타비	604	₩0	₩3,600,000	-%	₩40,000 * 90명 (균인 제외)		
		비정기사업비	학생회 내 친목	상품비	605	₩0	₩200,000	-%	1등 상품비: ₩100,000 (외식상품권), 2등 상품비: ₩50,000 (외식상품권) *2		
			단체북 디자인 공모전	상품비	606	₩0	₩200,000	-%	1등 상품비: ₩100,000 (외식상품권), 2등 상품비: ₩70,000 (외식상품권), 참가상: ₩5000 * 6명		
지출 소계				₩0	₩8,125,000	-%					
지출 총계				₩0	₩10,125,000	-%					
					총계	전년도 결산	당해년도 예산	비율			
					수입	₩0	₩8,300,000	-%			
					지출	₩0	₩10,125,000	-%			
					잔액	₩0	-₩1,825,000	-%			
					학생회비	전년도 결산	당해년도 예산	비율			
					수입	₩0	₩0	-%			
					지출	₩0	₩2,000,000	-%			
					잔액	₩0	-₩2,000,000	-%			
					분회계	전년도 결산	당해년도 예산	비율			
					수입	-	-	-%			
					지출	-	-	-%			
					잔액	-	-	-%			
					자치	전년도 결산	당해년도 예산	비율			
					수입	₩0	₩8,300,000	-%			
					지출	₩0	₩8,125,000	-%			
					잔액	₩0	₩175,000	-%			

제2023-3회  
(임시회)

#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설립준비 위원회 회의록

제3호

운영부

---

일 시      2023. 6. 19. 21:00

장 소      서면의결

---

의사 일정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 제출할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회칙안, 2023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서, 2023년도 하반기 예산안에 대해 심의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설립 진행 과정에 관해 논의

---

부의 안건      1.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회칙안  
                  2. 2023학년도 하반기 사업 계획서(안)  
                  3. 2023학년도 하반기 예산안(안)  
                  4. 학생회 설립 진행과정 논의

---

개회·정회·유회 또는 폐회의 일시

---

개회 일시 2023. 7. 5. 09:10

정회 일시 2023. 0. 0. HH:mm

속회 일시 2023. 0. 0. HH:mm

폐회 일시 2023. 7. 7. 09:30

---

- 성원(7인)
  
- 개회 시 출석 인원(7인)  
김민준, 기건희, 김동완, 김안진, 박정진, 선하은, 이준혁
  
- 청가 인원(0인)
  
- 결석·지각·조퇴 인원(0인)



---

# 보고 사항

---

## 1 위원장단 보고사항

---

- 지난번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에 일부 수정이 발생하여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서면 의결함.

## 2

---

- 
-

---

# 안 건

---

## 심의안건 제1호 학생회칙(수정안)

---

제 출 연 월 일 2023. 7. 05.

안 건 제 출 자 운영부 이준혁

- 제안이유
    -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학생회칙 안을 심의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별첨(1)한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회칙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저번 대비 부칙 및 조항 사이 번호 조정 및 문구 수정작업을 진행했습니다.
  - 의결문안
    - 학생회칙(수정안) 원안대로 심의·의결한다.
-

제 출 연 월 일 2023. 07. 05.

안 건 제 출 자 기획부 박태우

□ 제안이유

-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2023학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서를 심의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별첨(2)한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2023학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 의결문안

- 2023학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서(안) 원안대로 심의·의결한다.

심의안건 제3호 2023학년도 하반기 예산안(수정안)

제출연월일 2023. 07. 05.

안건제출자 운영부 선하은

- 제안이유
  -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2023학년도 하반기 예산안을 심의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별첨(3)한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2023학년도 하반기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항목별 금액의 일부 수정, 항목 추가가 진행됨.
- 의결문안
  - 2023학년도 하반기 예산안(수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한다.

---

## 결 과

---

○ 보고안건

○ 심의안건

(제1호) 학생회칙(수정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찬성: 7명 반대 0: 기권: 0

(제2호) 2023학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서(수정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찬성: 7명 반대 0: 기권: 0

(제3호) 2023학년도 하반기 예산안(수정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찬성: 7명 반대 0: 기권: 0

○ 논의안건

-

상기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함.

위원장  
직무대행

김민준

김민준

위원

선하은

선하은

위원

박정진

박정진

## 제1장 총칙

---

### 제1조(명칭)

본회는 KAIST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

### 제2조(목적)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반도체시스템공학과(이하 “본과”) 내의 자치를 이루어 내며, 구성원들의 지성적 이해와 요구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지위)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 산하 자치기구이다.

### 제4조(회원)

1. KAIST 학부 총학생회 회원 중 주전공이 반도체시스템공학과인 자는 본회의 회원이 된다.
  1. 회원은 제5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2. 회원 중 제5조 제8항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제5조 4항의 권리를 일부 제한당할 수 있다.
  3. 회원의 자치활동 참여는 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2.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받는다.
2. 본회의 회원은 본회 운영 전반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활동을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본회의 회원은 필요한 본회의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4.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5.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6.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저항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7. 본회의 회원을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8.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본조 제4항의 권리를 일부 제한받을 수 있다.

### 제6조(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로 구성한다.

1. 의결기구 –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운영위원회
2. 집행기구 – 학생회장단, 과대표단, 학생회 집행위원회

## 제2장 학생총회

---

### 제7조(지위)

학생총회 (이하 “총회”)라 한다)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 제8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 제9조(권한)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 제10조(소집)

1. 총회는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
  2.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
2. 총회 의장은 총회의 경우 개회 5일 이전에 본 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 제11조(의결)

총회는 본회 회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비상학생총회)

1. 학생사회의 긴급한 결정을 요하는 중대한 사안이 있을 경우 비상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비상학생총회는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본회 회원 2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
  2.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2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
3. 비상학생총회의 경우 개회 1일 이전에 이를 본 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4. 비상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참여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비상학생총회는 학생회장 탄핵 안건을 의결할 수 없다.
6. 의장이 본조 제1항을 위반하여 비상학생총회를 소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소집 결정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 제13조(의장)

1. 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2. 학생회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학생회장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경우 총회의 의장은 운영위원회 내부 호선을 통해 선출된 자로 한다.

### 제14조(공고)

총회의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 제3장 학생총투표

---

### 제15조(지위)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총투표(이하 “학생총투표”라 한다)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 이를 통한 의결 사항은 학생총회의 의결 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제16조(투표권)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 제17조(권한)

학생총투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시행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
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4.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탄핵안 발의



## 5. 기타 본회의 중대한 사안의 경우

### 제18조(형식)

학생총투표는 본회 회원의 투표의 형식으로 한다.

### 제19조(시행)

1. 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2. 학생총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학생총회 의장은 투표관리위원회를 조직한다.
3. 투표관리위원회는 학생총투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한다.
4. 학생총회 의장은 학생총투표의 시행을 시행 7일 이전에 이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 제20조(성립·의결요건)

1. 학생총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명부상 총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부정할 목적으로 명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공고)

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 완료 시부터 3일 이내에 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율과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한다.

### 제22조(이의제기)

총투표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투표관리위원회에 선거 종료후 72시간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투표관리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심의 의결해 공고한다.

## 제 4장 운영위원회

---

### 제23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총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 제24조(운영위원)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이 된다.
  1. 학생회장
  2. 부학생회장
  3. 1학년 과대표 1인
  4. 1학년 부과대표 1인
  5. 2학년 과대표 1인
  6. 2학년 부과대표인 1인
  7. 3학년 과대표 1인
  8. 3학년 부과대표 1인
  9. 4학년 과대표 1인
2.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과대표 혹은 부과대표를 겸직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내부 합의를 거쳐 KAIST 학부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으로 인준을 받을 수 있다.
4. 운영위원회는 내부 합의를 거쳐 학생회장을 대신하여 본회의 대표자의 자격을 가지고 외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 제25조(의장)

1. 운영위원회 의장은 학생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운영위원으로 한다.
2. 학생회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학생회장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경우 부학생회장 혹은 운영위원회 내부 의결을 통해 인준된 자가 그 직을 대신한다.

### 제26조(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제반 사항을 검토, 심의, 조정한다.
2.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3. 본회 회원 4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4. 본회 및 본회 기구의 예산 및 결산안을 심의 및 의결한다.
5. 학생회비 책정에 관한 사안을 논의 및 의결한다.
6. 학생회칙 및 세칙 개정을 의결한다.
7. 학생회장 탄핵 안건을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8. 과대표, 부과대표의 탄핵 안건을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9.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단체 가입 및 탈퇴를 의결한다.
10. 본회 차원의 대외적 협의 및 활동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11.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 제27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1. 정기회는 주 1회로 한다.
2. 임시회는 의장이나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혹은 기타 긴급한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이 생겼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3. 의결 안건 및 보고 사항이 없을 경우 의장의 권한으로 정기회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28조(겸직)

겸직이 발생할 경우 재적 인원, 재석 인원, 의결권의 중복을 인정하지 않는다.

### 제29조(의결)

1. 운영위원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서면 결의의 형태로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 결의의 형태로 의결할 수 없다.
  1. 제26조 제6항
  2. 제26조 제7항
  3. 제26조 제8항
  4. 제26조 제9항
  5. 제26조 제10항

### 제30조(공고)

의장은 폐회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 제31조(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1. 본회에 배정되는 KAIST 학부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 반도체시스템공학과 부학생회장, 3학년 과대표, 2학년 과대표, 1학년 과대표, 3학년 부과대표, 2학년 부과대표, 1학년 부과대표 순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조 제1항에 따라 결정이 어려울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추천 받은 본회 회원을 대의원으로 인준할 수 있다.

## 제5장 학생회장

---

### 제32조(지위)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 제33조(임기)

학생회장의 임기는 당선 이후의 총학생회 하반기 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11월) 다음날부터 이듬해 하반기 2차 정기 전학대회(이듬해 11월)까지로 한다. 단, 보궐선거 및 재선거로 당선된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 직후에 시작한다.

### 제34조(신분보장)

학생회장은 임기 만료나 총회에서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 제35조(권한대행)

학생회장이 궐위 혹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학생회장 혹은 운영위원회 내부 의결을 통해 인준된 자가 그 직무와 권한을 대신한다.

### 제36조(겸직금지)

학생회장은 다음의 직책을 겸할 수 없다.

1. 총학생회장단
2. 학부동아리연합회회장단
3. 타과 학부 학생회 학생회장
4. 새내기학생회 회장단
5.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6. 각 자치기구 비례대의원
7. 타과 학부 학생회 임시집행체계의 장

### 제37조(업무 및 권한)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본회의 대내외 활동을 관장한다.
2.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의건을 알리며,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담론을 형성할 의무를 가진다.
3. 집행부 간부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 제38조(탄핵)

1. 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의해 총회로 발의할 수 있다.
  1.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
  2.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
2. 운영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한 1인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탄핵안 발의 3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탄핵안을 총회에 상정한다.
3. 학생회장 탄핵안이 발의된 즉시 학생회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때, 운영위원 중 부학생회장 혹은 호선한 1인이 학생회장단의 권한을 대행한다. 학생회장 탄핵 안건이 총회에서 부결된 경우 학생회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 제6장 과대표와 부과대표

---

### 제39조(지위)

1. 과대표는 본회 각 학년 회원들을 대표한다.
2. 학년별 부과대표 1인은 과대표를 보좌하며 과대표의 결위 시 그 업무를 수행한다.

#### 제40조(임기)

1. 과대표와 부과대표의 임기는 당선 직후부터 이듬해 봄학기 개강 전까지다.
2. 진급에 따른 학년 변경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을 원칙으로 한다.

#### 제41조(소속 학년)

1. 과대표와 부과대표의 소속 학년은 통상의 학년 구분에 준거한다.
2. 통상과 벗어난 형태의 학년 구분 사례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42조(구분)

과대표와 부과대표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학년 과대표
2. 1학년 부과대표
3. 2학년 과대표
4. 2학년 부과대표
5. 3학년 과대표
6. 3학년 부과대표
7. 4학년 과대표
8. 4학년 부과대표

#### 제43조(학생회장의 겸임)

학생회장이 속한 학년의 과대표가 없을 경우, 학생회장은 그 학년도 과대표를 겸임한다.

#### 제44조(선출)

1. 학년별 과대표, 부과대표의 선출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2. 본회 회원 중 제5조 제5항에 따라 피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은 소속 학년 과대표, 부과대표 선거에 입후보할 권리를 가진다.
3. 본회 회원 중 제5조 제5항에 따라 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은 소속 학년의 과대표, 부과대표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4. 선거 결과, 최다 득표자가 해당 학년의 과대표로 선출되며, 나머지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가 부과대표로 선출된다.
5. 과대표, 부과대표 선출의 세부 절차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45조(보궐)

1. 과대표, 부과대표가 사퇴를 하거나 탄핵을 받아 공석이 되었을 때, 운영위원회는 사퇴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석에 대한 보궐을 진행한다.
2. 과대표의 보궐은 제4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선출한다.

#### 제46조(당선공고)

운영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48시간 이내에 대중에게 선거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 제7장 집행부

---

#### 제47조(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1. 학생회장(이하 학생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학생회장(이하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고, 학생회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고인 때에 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48조(구성)

1. 집행부원은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분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집행부원이 된다.
  2. 임명직 집행부원은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모집 대상은 해당 연도에 본과로 진입한 모든 학생이다.
2. 집행부의 국서 체계는 학생회장이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제49조(업무 및 권한)

집행부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집행부는 본회 업무 전반에 대해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다.
2.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업무를 집행한다.

#### 제50조(운영)

전반적인 운영은 의결기구 및 학생회장의 방향에 따른다.

## 제8장 비상대책위원회

---

#### 제51조(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집행부를 대체하며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가 된다.

#### 제52조(구성)

1.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구성된다.
  1. 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될 때
  2. 학생회장이 탄핵이 가결되었을 때
  3. 사퇴 또는 유고 시 학생회장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할 운영위원이 없을 때
2. 운영위원회는 본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 후 7일 이내에 비상대책위원 모집 공고를 올려야 한다.
3. 운영위원회는 모집 공고 후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 지원자 및 운영위원 중 비상대책위원을 선발 후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제53조(업무 및 권한)

1.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행부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2.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 선거 및 재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거나 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54조(위원장)

1.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제35조에 의해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운영위원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권한을 대행할 운영위원이 없을 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인준한다.
2.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3.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하반기 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다음날부터 차기 학생회장 당선 직전까지로 한다.

## 제9장 재정

---

#### 제55조(재원)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분배된 기층 예산, 학과 지원금, 수익 사업 수입, 기타 수입금으로 총당한다.

#### 제56조(회계)

본회의 회계 운용은 매 학기 첫 번째에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승인한다.

#### 제5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 및 집행 분기는 매 정규학기 개강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58조(회비)

1. 본회의 회원은 가입 후 당해년도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금액의 학생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납부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학사과정 졸업 시까지 제5조 제4항에서 명시하는 학생회비 납부에 따른 권리가 보장된다.

#### 제59조(관리)

1.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이익과 회원 전체의 권리 증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본회의 재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한다.
3. 집행부에 책정되는 각 학기의 회비는 집행부원 1인당 30,000원을 넘길 수 없다.

## 제10장 선거

---

#### 제60조(선거)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 제61조(선거권)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 제62조(피선거권)

본회의 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 제63조(선거시기)

본회의 선거는 매년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 중에 실시한다.

#### 제64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

1. 본회는 본회의 학생회장 선거를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제반 사항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2. 단, 본조 제1항이 모종의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학생회장 선거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제65조(선거관리위원회)

1. 제58조 제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학생회장의 선거를 진행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관위는 운영위원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3. 선관위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선관위 위원은 해당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5. 선관위는 학생회장 선거의 제반 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 제66조(선거방법)

1. 학생회장 선거의 후보로 등록할 본회의 정회원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2. 선거권자의 40% 이상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20일 이내에 재선거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대안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4. 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일 20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5. 단일후보일 경우 찬성 표가 전체 투표 수의 과반수가 넘을 시 당선으로 한다.
6. 단일후보로서 찬반 투표로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본조 제3항을 준용한다.
7. 구체적인 사항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 제67조(보궐선거)

1. 학생회장이 사퇴하거나 탄핵 되었을 때, 혹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남은 임기가 180일 이상일 경우 운영위원회는 사퇴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해야 한다. 단, 남은 임기가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내부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자가 남은 임기에 그 직무를 대신한다.
2. 보궐선거는 평상의 선거와 마찬가지로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제68조(당선무효)

1. 본회의 자체적으로 진행한 선거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당선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이를 원칙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3. 당선이 취소될 경우 선관위는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9조(당선공고)

선관위는 개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대중에게 선거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 제11장 회칙 개정

---

#### 제70조(발의)

1.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본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2. 개정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회칙 개정의 목적 및 경위
  2. 현행 학생회칙
  3. 개정 학생회칙안
  4. 신구문대조표 및 해설

#### 제71조(공고)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학생회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2조(의결)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에 학생총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확정한다.

#### 제73조(공포 및 발효)

1. 가결된 회칙 개정안은 3일 이내에 개정 회칙으로서 학우 대중에게 공포되어야 한다.
2. 공포된 개정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5일 이후에 그 효력을 발한다.

## 제12장 부칙

---

**제74조(초대 운영위원 선거)**

1. 초대 운영위원 구성원(각 학년 과대표, 부과대표, 부학생회장, 학생회장)에 대한 선거에 한하여 선거관리 업무를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서 인준한 위원들로 구성된 '임시 선거관리 위원회' (이하 임시 선관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75조(임시 선거관리 위원회)**

1. 임시 선관위는 준비위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1. 준비위는 임시 선관위의 선거에 관한 의결 사항에 대해 재의결 할 수 없다.
2. 임시 선관위는 준비위에서 추천한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임시 선관위 위원은 해당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4. 임시 선관위는 학생회장과 과대표단 선거의 제반 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 을 갖는다.

**제 76조(임시 선거관리 위원회의 운영)**

1. 임시 선관위의 선거 운영 및 당선인 공고에 관한 규정은 '제10장 선거'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제 77조(초대 학생회장단 및 초대 과대표단에 대한 임기 규정)**

1. 초대 학생회장단 및 과대표단 선거에 한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한다.
2.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 즉시부터 내년도 하반기 2차 정기 전체 학생대표자 회의 개최일로 한다.

**제75조(초대 운영위원 및 집행부에 대한 특례)**

1. 초대 운영위원 및 집행부의 경우 임명, 출마, 선출 과정에 있어 필요한 학생회비 납부 의무를 2023학년도 봄 및 여름학기에 한해 면제한다.
  - 1.



# KAIST 학부 총학생회

---

##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 **2023**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서

---



2023.06.17

기구명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직위/이름	기획부장/박태우

제 출 문

학부 총학생회장 귀하:

본 계획서를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의 **2023**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06월 17일**

	담당자	기구장
서명		

---

## I. 사업 개요

---

사업번호	사업명
1	과티 / 과장 공모전
2	중간 / 기말 간식 이벤트
3	
4	
5	

---

## II. 사업별 계획

### 1 과티 / 과장 공모전

#### 1. 사업 개요

- |             |  |
|-------------|--|
| 1) 사업 방식    | 공모전을 통한 디자인 선정 및 제작                              |
| 2) 사업 준비 기간 | 2023.08.28-2023.09.03                            |
| 3) 사업 일시    | 2023.09.04-2023.09.18                            |
| 4) 사업 예산    | 공모전 상품 200,000원 + 각 3,600,000원 (대리구매)            |
| 5) 담당부서/담당자 | 미디어부 / 기건희, 박정진, 이준현, 이준혁<br>소통부 / 권용언, 김안진, 김휘용 |

#### 2. 사업 추진 목적

과티와 과장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공모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기여도를 높여 학과 내 소속감을 조성한다.

#### 3. 사업 계획

##### 1) 사업 수혜 대상자

과 내 학생 중 구매 비용을 지불한 자

##### 2) 세부 사업 내용

과티와 과장은 하나의 공모전으로 같은 디자인으로 선정한다. 공모전 안내는 과티 준비 기간에 카드 뉴스를 제작하고 발주할 사업체도 이 기간에 함께 선정한다. 9월 4일에 공모전을 시작하고 9월 8일 공모전이 끝나고 디자인을 선정하여 발표한다. 이후 과티의 경우 9월 11일 및 15일에 구글폼으로 과티와

과장 구매 신청서를 함께 받는다. 9월 18일에 인원을 확정하여 (16-17일 추가 신청) 발주한다. 공모전 상품은 1위, 2위와 참가상 (6명) 에게 차등 지급한다.

#### 4. 사업 예상 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2023.08.28-2023.09.03	카드 뉴스 제작 및 사업체 선정	
2023.09.04-2023.09.08	공모전 진행	과티와 과장은 같은 디자인
2023.09.11-2023.09.15	구매 신청 기간	
2023.09.16-2023.09.17	추가 신청 기간	
2023.09.18	발주	

### 1. 사업 개요

- |             |   |
|-------------|---|
| 1) 사업 방식    | 간식 제공   |
| 2) 사업 준비 기간 | 중간: 2023.09.25-2023.10.03 / 기말: 2023.11.20-2023.11.28 |
| 3) 사업 일시    | 중간: 2023.10.04 / 기말: 2023.11.29                       |
| 4) 사업 예산    | 각 2,000,000원  |
| 5) 담당부서/담당자 | 기획부 / 고민재, 노영래, 박태우, 유준하<br>총무부 / 김민준, 선하은, 최시형       |

### 2. 사업 추진 목적

시험 기간 학과 내 학생들을 독려하고 소속감을 증진시킨다.

### 3. 사업 계획

#### 1) 사업 수혜 대상자

학과 내 재학중인 모든 학생들

#### 2) 세부 사업 내용

중간 / 기말 이벤트 모두 시험 첫날의 21일 전(월)부터 13일 전(화)까지를 준비기간으로 두고 12일 전을 사업 실행일로 한다. 이때, 시험일은 카이스트 학사일정을 기준으로 한다. 9일의 준비 기간 중에서 첫 3일(월-수)은 간식 선정 및 업체 선정을 한다. 또한, 현수막의 경우에는 1일차에 선정, 2일차에 주문을 하여서 8-9일차에 배송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4일차에는 이벤트 장소를 확보하고 업체와 연락하여 세부 사항을 정한다. 미리 주문이 필요한 음식의 경우에는 5일차에 주문을 하여서 8일차인 월요일에 배송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9일차에는 군 휴학 등을 고려하여 명단을 작성하고 준비를 마친다. 사업 홍보는 1일차에 카드 뉴스 제작을 시작하여서 3일차에 공지한다.

이벤트 일시는 시험 2주전 수요일(첫 시험 12일전) 17시-18시로 한다.

#### 4. 사업 예상 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2023.09.25-2023.09.27	간식 선정 & 업체 선정 & 카드뉴스 제작	1일차: 현수막 선정 2일차: 현수막 주문 3일차: 카드뉴스 공지
2023.09.28	이벤트 장소 확보	
2023.09.29	음식 주문	사전 준비가 필요한 음식에 한해서 온라인 주문 (추석 주간 대비 필요)
2023.10.02-2023.10.03	음식 & 현수막 배송 완료 (예상)	
2023.10.03	참석 명단 작성	군 휴학 등을 고려
2023.11.20-2023.11.22	간식 선정 & 업체 선정 & 카드뉴스 제작	1일차: 현수막 선정 2일차: 현수막 주문 3일차: 카드뉴스 공지
2023.11.23	이벤트 장소 확보	
2023.11.24	음식 주문	사전 준비가 필요한 음식에 한해서 온라인 주문
2023.11.27-2023.11.28	음식 & 현수막 배송 완료 (예상)	
2023.11.29	참석 명단 작성	군 휴학 등을 고려

### Ⅲ.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운영 계획

#### 1. 위원 명단

##### 1. 위원 명단

1)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이름	학번	소속 부서	근거 규정

\*학번 8자리 기재

2) 집행위원회 위원 명단

이름	학번	소속 부서	직책
김동완	20210068		학생대표
고민재	20230027	기획부	
노영래	20230227	기획부	
박태우	20230302	기획부	기획부장
유준하	20230445	기획부	
권용언	20230046	소통부	
김안진	20230141	소통부	소통부장
김휘용	20220211	소통부	
김민준	20230111	총무부	
선하은	20230348	총무부	총무부장
최시형	20230770	총무부	
기건희	20230051	미디어부	
박정진	20230282	미디어부	
이준혁	20230562	미디어부	
이준현	20210512	미디어부	미디어부장

2. 비고 사항

2 운영 계획

1. 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학생회를 기획부, 소통부, 총무부, 미디어부로 나누어 운영한다. 사업은 1~2 부서가 나누어서 주도하고 다른 부서에서 도움을 주는 식으로 진행한다.



## 2. 집행위원회 운영 계획

### 1) 국서/TF 구조

#### (1) 기획부

- 1 활동 요약: 학과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
- 2 국서/TF원 명단: 고민재, 노영래, 박태우, 유준하
- 3 사업명: 중간 / 기말 간식 이벤트

#### (2) 소통부

- 1 활동 요약: 학생회 행사 공지 및 소통 창구 관리
- 2 국서/TF원 명단: 권용언, 김안진, 김휘용
- 3 사업명: 과티 / 과잠 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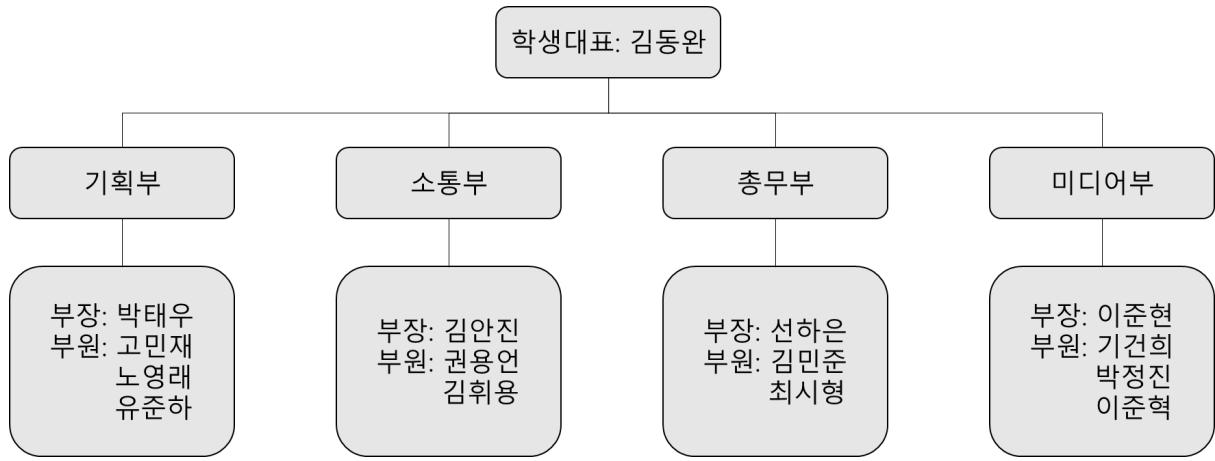
#### (3) 총무부

- 1 활동 요약: 각종 행사 홍보물 제작 및 출력
- 2 국서/TF원 명단: 김민준, 선하은, 최시형
- 3 사업명: 중간 / 기말 간식 이벤트

#### (4) 미디어부

- 1 활동 요약: 분기별 예산안 작성 및 집행
- 2 국서/TF원 명단: 기건희, 박정진, 이준현, 이준혁
- 3 사업명: 과티 / 과잠 공모전

### 2) 조직도



KAIST 학부 총학생회										
반도체시스템공학과 2023년도 하반기 예산안										
기 구 명		반도체시스템공학과			반 기		하반기			
기 구 장		학생대표 김동환			제출연월일		2023. 7. 00.			
수 입										
재원(장)	예산 분류(관)	항목(항)	코드	전년도 결산	당해 연도 예산	비율	예산 산정 근거			
100	학생회비	기증기부회계	기증기부회계 지원금	101	₩0	₩500,000	-%	기증예산심의회의 평가 비례 A등급을 받을 경우 ₩500,000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		
			기증기부회계 이월금	102	₩0	₩0	-%	2023년도 하반기가 SSE 첫번째 예산안임		
		격려기금	격려금	103	₩0	₩0	-%			
수입 소계				₩0	₩500,000	-%				
200	분회계	기타지원금	LEAP 프로그램 지원금	201	₩0	₩500,000	-%	LEAP 프로그램 계획서 통과될 경우 ₩500,000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		
			시절기간 간식 이벤트 지원금	202	₩0	₩1,500,000	-%			
		정기사업비	과장 비용 지원	203	₩0	₩6,300,000	-%	₩70,000 * 90명 (휴학자 제외)		
			과후드집업 비용 지원	204	₩0	₩1,800,000	-%	₩20,000 * 90명 (휴학자 제외)		
		수입 소계				₩0	₩10,100,000	-%		
300	자치	이월금	이월금	301	₩0	₩0	-%			
		예금이자	예금이자	302	₩0	₩0	-%			
		과비	과비	303	₩0	₩900,000	-%	인당 1만원 (휴학자 제외)		
			과비 이월금	304	₩0	₩0	-%			
		기타수익금	과장 공물구매	305	₩0	₩3,600,000	-%	₩40,000 * 90명 (휴학자 제외)		
			과후드집업 공물구매	306	₩0	₩3,600,000	-%	₩40,000 * 90명 (휴학자 제외)		
		수입 소계				₩0	₩8,100,000	-%		
수입 총계				₩0	₩18,700,000	-%				
지 출										
재원(장)	예산 분류(관)	사업명(항)	예산 과목 (세부 항목)	코드	전년도 결산	당해 연도 예산	비율	예산 산정 근거		
400	학생회비	운영비	격려금	격려금	401	₩0	-	-%		
		정기사업비	시절기간 간식 이벤트	상품비	402	₩0	₩2,000,000	-%	식약처+음료 ₩10,000 * 100명 * 2회	
		비정기사업비	-	-	-	₩0	-	-%		
지출 소계					₩0	₩2,000,000	-%			
500	분회계	비정기사업비	LEAP 프로그램	기타비	501	₩0	₩300,000	-%	의류 브랜드 회사에 kaist sse 트고글 박아달라고 부탁함 예정 회사 측에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할 경우 이 금액으로 처리	
				기타비	502	₩0	₩360,000	-%	단체복 구매 시 인당 ₩2,000 * 2벌 * 90명 지원 (과장, 과후드집업)	
		정기사업비	과장 비용 지원	기타비	503	₩0	₩6,300,000	-%	₩70,000 * 90명 (휴학자 제외)	
			과후드집업 비용 지원	기타비	504	₩0	₩1,800,000	-%	₩20,000 * 90명 (휴학자 제외)	
		지출 소계					₩0	₩8,760,000	-%	
600	자치	운영비	집행위원회 운영	음료비	601	₩0	₩300,000	-%	가위, 블렌, 데이프, A4종지를 사무비품 구입, 미리캔버스 Pro 유료 계정 이용료 ₩160,800/년	
				회의비	602	₩0	₩225,000	-%	현 인원 15인 인당 ₩15,000 * 15명	
		정기사업비	과장 공물구매	기타비	603	₩0	₩3,600,000	-%	₩40,000 * 90명 (휴학자 제외)	
			과후드집업 공물구매	기타비	604	₩0	₩3,600,000	-%	₩40,000 * 90명 (휴학자 제외)	
		비정기사업비	학생회 내 친목	상품비	605	₩0	₩200,000	-%	1등 상품비: ₩100,000 (외식상품권), 2등 상품비: ₩50,000 (외식상품권) * 2	
			단체복 디자인 공모전	상품비	606	₩0	₩200,000	-%	1등 상품비: ₩100,000 (외식상품권), 2등 상품비: ₩70,000 (외식상품권), 참가상: ₩5000 * 6명	
지출 소계					₩0	₩8,125,000	-%			
지출 총계					₩0	₩18,885,000	-%			
총계					전년도 결산	당해년도 예산	비율			
수입					₩0	₩18,700,000	-%			
지출					₩0	₩18,885,000	-%			
잔액					₩0	-₩185,000	-%			
학생회비					전년도 결산	당해년도 예산	비율			
수입					₩0	₩500,000	-%			
지출					₩0	₩2,000,000	-%			
잔액					₩0	-₩1,500,000	-%			
분회계					전년도 결산	당해년도 예산	비율			
수입					₩0	₩10,100,000	-%			
지출					₩0	₩8,760,000	-%			
잔액					₩0	₩1,340,000	-%			
자치					전년도 결산	당해년도 예산	비율			
수입					₩0	₩8,100,000	-%			
지출					₩0	₩8,125,000	-%			
잔액					₩0	-₩25,000	-%			

제2023-4회  
(임시회)

#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설립준비 위원회 회의록

제4호

운영부

---

일 시        2023. 7. 22. 13:00

장 소        장연신 학생회관 세미나실1과 온라인 플랫폼 병행

---

의사 일정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 제출할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회칙안, 2023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서, 2023년도 하반기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 심의 및 의결

---

부의 안건

1. 2023학년도 하반기 사업 계획서 (2차) 수정안
  2. 2023학년도 3분기 사업계획서
  3. 2023학년도 하반기 예산안 (2차) 수정안
  4. 2023학년도 3분기 예산안
  5. 학생회칙(수정안) 추가 수정 사항 논의 및 자구 및 체계 논의
-

개회·정회·유회 또는 폐회의 일시

---

개회 일시 2023. 7. 22. 13:35

정회 일시 2023. 0. 0. HH:mm

속회 일시 2023. 0. 0. HH:mm

폐회 일시 2023. 7. 22. 14:55

---

- 성원(7인)
  
- 개회 시 출석 인원(8인)  
김민준, 선하은, 박태우, 한정현, 노영래, 김동완, 김안진, 이준혁
  
- 청가 인원(0인)
  
- 결석·지각·조퇴 인원(0인)  
조퇴 인원-노영래 (예산안까지 의결 참여)

---

# 보고사항

---

## 1 위원장단 보고사항

---

- 향후 업무 진행 방향
- 오늘 의사일정에 올려진 안건들을 심의-의결해 최종본을 작성한 다음  
차주에 열리는 중앙운영위원회, 전체학생대표자회(7월 31일)에 인준안을 제출 의결을 받을  
계획입니다.
- 오늘 회칙 수정안, 사업계획서 수정안, 예산안 수정안을 논의 및 가능할 경우 의결하고자 합니다.

## 2

---

- 
-

---

# 안 건

---

## 심의안건 제1호 2023학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서(수정안)

---

제 출 연 월 일 2023. 07. 22.

안 건 제 출 자 기획부 박태우

- 제안이유
    -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2023학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서를 심의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별첨(1)한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2023학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총학생회 산하기구 분들이 검토해주신 검토안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의결문안
    - 2023학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서(안) 원안대로 심의·의결한다.
- 

## 심의안건 제2호 2023학년도 3분기 사업계획서

---

제 출 연 월 일 2023. 07. 22.

안 건 제 출 자 기획부 박태우

- 제안이유
    -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2023학년도 3분기 사업계획서를 심의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별첨(2)한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2023학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 의결문안
    - 2023학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서(안) 원안대로 심의·의결한다.
-

심의안건 제3호 2023학년도 하반기 예산안( 2차수정안)

제 출 연 월 일 2023. 7. 22.

안 건 제 출 자 기획부 선하은

- 제안이유
  -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2023학년도 하반기 예산안을 심의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별첨(3)한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2023학년도 하반기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총학생회에서 검토해주신 안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의결문안
  - 2023학년도 하반기 예산안(수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한다.

심의안건 제4호 2023학년도 3분기 예산안( 2차수정안)

제 출 연 월 일 2023. 7. 22.

안 건 제 출 자 기획부 선하은

- 제안이유
  -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2023학년도 3분기 예산안을 심의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별첨(4)한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2023학년도 하반기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총학생회에서 검토해주신 안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의결문안
  - 2023학년도 하반기 예산안(수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한다.



논의안건 제1호 학생회칙 수정안에 관한 논의

제 출 연 월 일 2023. 6. 19.

안 건 제 출 자 부위원장 김민준

- 제안이유
  -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학생회칙 안(수정안)에 대해 논의 해 조항충돌, 자구 이상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 학생회칙 안(수정안)에 대한 문구, 조항충돌 확인 및 총학생회 산하 기구의 검토사항을 확인하여 수정사항 논의
- 논의사항
  - 의결기구 구조 변경, 회장단, 과대표단 선출 방식 수정 등
- 참고사항
  - 한정현 위원이 지참하신 자료를 참고하여 회의를 진행함.

---

## 결 과

---

○ 보고안건

○ 심의안건

(제1호) 2023학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서(2차 수정안)

-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함 심의·의결함  
찬성: 8명 반대 0: 기권: 0  
원안에 대해 기구장 명 및 양식 수정

(제2호) 2023학년도 3분기 사업계획서(안)

-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심의·의결함  
찬성: 7명 반대 0: 기권: 1  
원안에 대해 기구장 명 및 양식 수정

(제3호) 2023학년도 하반기 예산안(2차 수정안)

- 수정안으로 심의·의결함  
찬성: 9명 반대 0: 기권: 0  
원안에 대해 기구장 명 및 양식 수정

(제4호) 2023학년도 3분기 예산안(안)

- 수정안으로 심의·의결함  
찬성: 9명 반대 0: 기권: 0

○ 논의안건

-(제1호) 학생회 회칙안(수정안)

추가적인 수정을 진행하여, 익일 서면의결하기로 결정함.  
총회 소집 요건, 선거 제도, 회장단, 과대표단의 선출 방식 등을 논의함.  
이에 따라 회장단은 러닝메이트 제도로 선출하는 것으로 논의를 모음.

-

상기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함.

위원장 김민준  
직무대행

위원 박태우

위원 선하은

김민준  
박태우  
Shun

제2023-5회  
(임시회)

#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설립준비 위원회 회의록

제5호

운영부

---

일 시        2023. 7. 23. 20:15

장 소        서면의결

---

의사 일정    학생회칙 수정안(2차) 서면의결

---

부의 안건        1. 학생회칙 수정안(2차) 서면 의결

---

개회·정회·유회 또는 폐회의 일시

---

개회 일시 2023. 7. 23. 20:15

정회 일시 2023. 0. 0. HH:mm

속회 일시 2023. 0. 0. HH:mm

폐회 일시 2023. 7. 23. 20:45

---

- 성원(7인)
  
- 개회 시 출석 인원(8인)  
김민준, 김동완, 김안진, 박정진, 선하은, 이준혁, 한정현, 노영래
  
- 청가 인원(0인)
  
- 결석·지각·조퇴 인원(0인)

---

# 보고 사항

---

## 1 위원장단 보고사항

---

- 지난번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에 일부 수정이 발생하여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서면 의결함.

## 2

---

- 
-

---

# 안 건

---

## 심의안건 제1호 학생회칙 수정안(2차)

---

제 출 연 월 일 2023. 7. 23.

안 건 제 출 자 운영부 이준혁

- 제안이유
    -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학생회칙 안을 심의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별첨(1)한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회칙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지난 회의에서 나온 의결 조건, 선거 방법 및 체계 및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 의결문안
    - 학생회칙(수정안) 원안대로 심의·의결한다.
-

---

## 결 과

---

- 보고안건
  
- 심의안건  
(제1호) 학생회칙(수정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찬성: 8명 반대 0: 기권: 0
  
- 논의안건
  -



상기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함.

위원장 김민준  
직무대행

위원 선하은

위원 박정진

김민준  
Shun  
박정진

---

심의안건 제6호

**회칙개정특임위원회  
해체안**

---

# KAIST 학부 총학생회

---

## 회칙개정특임위원회 활동보고서

---



2023. 12. 25.

기구명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직위/이름	위원장/한정현

# 목 차

## 1.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설치안

## 2. 회칙개정특임위원회 회의록

가.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예비회의 회의록

나. 제2023-1회 회칙개정특임위원회 회의록

다. 제2023-2회 회칙개정특임위원회 회의록

라. 제2023-3회 회칙개정특임위원회 회의록

마. 제2023-4회 회칙개정특임위원회 회의록

바. 제2023-5회 회칙개정특임위원회 회의록

사. 제2023-6회 회칙개정특임위원회 회의록

아. 제2023-6회 회칙개정특임위원회 발제 자료

자. 제2023-7회 회칙개정특임위원회 회의록

차. 제2023-8회 회칙개정특임위원회 회의록

카. 제2023-9회 회칙개정특임위원회 회의록

## 3.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제안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 4.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제안 의결기구운영세칙 일부개정세칙안

#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설치안

(중앙운영위원회 의장, 2023. 4. 20.)

## 1 개요

- 「학생회칙」 및 그에 부수되는 세칙과 규칙(이하 “본회 회칙”)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회칙」 제62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에 회칙개정특임위원회를 설치함.
- 회칙개정특임위원회는 그 활동을 통해 본회 회칙의 형식적 구조를 보완하고 문장을 명확하게 기술하여 본회 산하기구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규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운영 계획

- 운영 목표
  - 본회 회칙의 형식적 구조를 보완하고 문장을 명확하게 기술하여 본회 산하기구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규제를 해소하기 위함.
  - 법적 간결성·합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 쓰며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본회 회원 누구나 학생회칙 및 세칙·규칙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 업무
  - 본회 회칙의 형식적 구조 보완
  -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문장, 길고 복잡한 문장, 이중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장, 중복되어 어색한 표현 등 개선
  - 본회 회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업무 절차 개선
  - 본회 회칙에서 불명확하게 기술한 문장 개선 및 명확성 제고
  - 조문의 오탈자 수정

□ 주요 사업 계획

- 본회 회칙 개정 연혁 정리 및 표기
- 「학생회칙」 제2장 일부개정 및 국회법을 차용한 「의결기구운영세칙」 전부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확립
- 「학생회칙」 제3장 및 「(가칭)집행기구세칙」 제정을 통해 상설위원회 지위 및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 총학생회장단 및 비상대책위원장단 임기 규정 개선
- 「학생회칙」 제8장 및 「재정운용세칙」 일부개정을 통해 현행 예산 심의 제도 정립
-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을 통한 감사원 집행력 부족 문제 해소 및 회계감사 제도 개선
- 「학생회칙」 제7장 및 「선거시행세칙」 일부개정을 통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어려움 및 집행력 부족 문제 해소

□ 업무 타임라인

날짜	내용
2023. 4. 25	- 특임위원회 모집 공고
2023. 4. 25.~2023. 4. 29.	- 특임위원회 모집
2023. 4. 29.~2023. 4. 30.	- 정기 회의 일정 고정
2023. 5.	- 학생회칙 제1장 및 제2장, 의결기구운영세칙 검토 - 학생회칙 제1장 및 제2장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의결기구운영세칙 전부개정세칙안 초안 작성
2023. 6.	-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의결기구운영세칙 전부개정세칙안 제출 -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의결기구운영세칙 전부개정세칙안 발의 및 심의
2023. 7.~2023. 9.	- 학생회칙 및 세칙 규칙 검토 -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및 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초안 작성 -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및 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제출
2023. 10.	- 개정 회칙 검토 및 활동 보고서 작성

**제1조(목적)** 본 규칙은 회칙개정특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학생회칙」 및 그에 부수되는 세칙과 규칙(이하 “본회 회칙”이라 한다)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회칙」 제62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에 회칙개정특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세칙 전부개정세칙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회칙·세칙·규칙의 개정안 제출에 관한 사항
  3. 세칙 제정안, 세칙 폐지안, 규칙 제정안, 규칙 폐지안 등 세칙·규칙의 제정안 및 폐지안 제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요한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세칙 전부개정세칙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회칙·세칙·규칙의 개정안을 제출하거나 세칙 제정안, 세칙 폐지안, 규칙 제정안, 규칙 폐지안 등 세칙·규칙의 제정안 및 폐지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안건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4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중앙운영위원 3인 이상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비례 대의원 1인 이상
3. 중앙집행위원 1인 이상
4. 본회 회원 중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중앙운영위원회 인준 이후부터 위원회 해산까지로 한다.

② 보임(補任)되거나 개선(改選)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단)**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또는 재적위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의사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의결에 부의할 수 있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결과를 기록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위원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처리)** 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임사항)** 위원회는 회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예비 회의)

# 회칙개정특임위원회 회의록

중앙운영위원회 의장

---

**일시** 2023. 5. 7.(일) 21:00

**장소** 장영신학생회관 302호 학부 총학생회 회의실 및 원격영상회의  
(회의 참여 링크: <https://kaist.zoom.us/j/86532661234?pwd=M1h6SWlvU1RDMk4yYWVrRlkwV1dYUT09>)

---

**의사 일정** 보고사항 / 인준안건 제1호

---

**부의 안건** 인준안건 제1호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위원장단 인준안

---

## 개회·정회·유회 또는 폐회의 일시

---

개회 일시 2023. 5. 7. 21:12

폐회 일시 2023. 5. 7. 22:57

---

○ 성원(9인)

한정현(임시 의장) / 오윤석 / 조준한 / 박병찬 / 박재익 / 안희진 / 윤서진 / 이창섭 / 김성원

○ 개회 시 출석 인원(9인)

(대면 참석) 한정현(임시 의장) / 오윤석 / 조준한 / 박재익 / 안희진 / 이창섭 / 김성원 / (비대면 참석)  
박병찬 / 윤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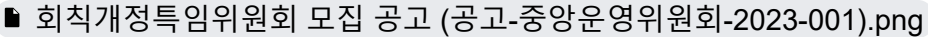
○ 청가 인원(0인)

○ 결석·지각·조퇴 인원(0인)

# 보고사항

## 1 회칙개정특임위원회 구성 보고

### ○ (모집)

- 기간: 2023. 4. 26.(수)~2023. 4. 29.(토) 23:59
- 결과: 중앙운영위원 6인,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비례 대의원 1인, 중앙집행위원 1인, 본회 회원 1인으로 총 9인이 지원하여 이들을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이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함.
-  회칙개정특임위원회 모집 공고 (공고-중앙운영위원회-2023-001).png : 별첨

### ○ (구성)

이름	학번	소속 학과	비고
오윤석	20190391	수리과학과	중앙운영위원(동아리연합회 회장)
조준한	20200620	산업및시스템공학과	본회 회원
한정현	20200692	화학과	중앙운영위원(부총학생회장)
박병찬	20210227	전산학부	중앙운영위원(전산학부 학생회장)
박재익	20210250	수리과학과	중앙운영위원(수리과학과 학생회장)
안희진	20210359	수리과학과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비례 대의원(동아리연합회 비례 대의원2)
윤서진	20210415	산업디자인학과	중앙운영위원(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20210522	신소재공학과	중앙운영위원(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김성원	20230123	새내기과정학부	중앙집행위원

\*학번 순 정렬

### ○ (정기회의 운영)

- 일시: 매주 일요일 21:00~22:00
- 장소: 장영신학생회관 302호 학부 총학생회 회의실

### ○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설치안.pdf : 별첨

- (회칙 개정 관련) ■ [별첨] 회칙의 이해\_법령의 개정 방식과 폐지 방식.pdf
- (회칙 제정 관련) ■ [별첨]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10판).pdf
- (행정 업무 관련) ■ [별첨] 2020 행정업무운영편람.pdf

# 안 건

## 인준안건 제1호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위원장단 인준안

제 출 연 월 일 2023. 5. 7.

안 건 제 출 자 임시 의장 한정현

### □ 제안이유

-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운영규칙안 제7조에 따라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위원장단을 호선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선출 절차) 선출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름. 다만, 단독 출마일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 선출됨.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후보 지원자 접수
  2. 지원자 소견 발표
  3. 투표
- (투표 방식) 기명 투표
- (회의 진행) 예비 회의까지는 임시의장이 진행하며, 차회 회의(제2023-1회 회칙개정특임위원회)부터 선출된 위원장이 진행함.

### □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설치안.pdf : 별첨

### □ 참고사항

- 관련 규정

#### 제7조(위원장단)

1.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3.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결 과

---

- 인준안건  
(제1호)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위원장단 인준안
  - 한정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조준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함.
  
- 기타 논의  
비대면 참여 여부 논의
  - 개회 예정 일시 2시간 이전까지 회칙개정특임위원회 단체 채팅방에 비대면 참여 및 사유 통지 후에 위원장단이 합리적인 사유라고 판단하는 경우 비대면 참여 허용 및 재석 인원으로 집계함.

제2023-1회  
(정기회)

# 회칙개정특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위원장 단

---

**일시** 2023. 5. 14.(일) 21:00

**장소** 장영신학생회관 302호 학부 총학생회 회의실 및 원격영상회의  
(회의 참여 링크: <https://kaist.zoom.us/j/86954586230?pwd=TzlxM3dyV0FQWVlwbTRITVF5SE9Kdz09>)

---

**의사 일정** 보고사항 / 논의안건 제1호 / 논의안건 제2호

---

**부의 안건** 논의안건 제1호 학생회칙 제1장 일부개정 논의안  
논의안건 제2호 학생회칙 제2장 일부개정 논의안

---

## 개회·정회·유회 또는 폐회의 일시

---

개회 일시 2023. 5. 14. 21:09

폐회 일시 2023. 5. 14. 23:03

---

○ 성원(9인)

한정현(위원장) / 오윤석 / 조준한 / 박병찬 / 박재익 / 안희진 / 윤서진 / 이창섭 / 김성원

○ 개회 시 출석 인원(8인)

(대면 참석) 한정현(위원장) / 오윤석 / 조준한 / 박재익 / 안희진 / 윤서진 / 김성원 / (비대면 참석)  
박병찬 / 박재익

○ 청가 인원(0인)

○ 결석·지각·조퇴 인원(1인)

이창섭(결석)




---

# 보고사항

---

## 1 예비회의 회의록 보고

---

- 제안이유
  -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전기 회의록을 보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예비 회의 회의록.pdf

---

# 안 건

---

## 논의안건 제1호 학생회칙 제1장 일부개정 논의안

---

제 출 연 월 일 2023. 5. 14.

안 건 제 출 자 위원장 한정현

□ 제안이유

-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운영규칙안 제2조에 따라 「학생회칙」 및 그에 부수되는 세칙과 규칙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검토자료: [☞ 학생회칙 제1장 총칙](#)
  - 부위원장 검토의견: [☞ 학생회칙 제1장 총칙 검토의견](#)
-

---

## 논의안건 제2호 학생회칙 제2장 일부개정 논의안

---

제 출 연 월 일 2023. 5. 14.

안 건 제 출 자 위원장 한정현

□ 제안이유

-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운영규칙안 제2조에 따라 「학생회칙」 및 그에 부수되는 세칙과 규칙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검토자료: [+ 학생회칙 제2장 의결기구](#)
  - 부위원장 검토의견: [= 학생회칙 제2장 의결기구 검토의견](#)
-

# 결 과

## ○ 논의안건

### (제1호) 논의안건 제1호 학생회칙 제1장 일부개정 논의안

- 다음과 같이 학생회칙을 일부개정하기로 논의함.
  1. 제3조제3항 중 "않은"을 "아니한"으로 한다.
  2. 제7조 본문 중 "산하기구"를 "'산하기구'라 한다"로 한다.
  3. 제9조제2항 중 "해임된"을 "사퇴한"으로 한다.
  4.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야"를 "하여야"로 , 제4항 중 "「사무처리세칙」으로"를 "세칙으로"로 한다.
  5. 제11조제3항 중 "본회"를 "본회의"로 하고,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6.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본회 산하기구는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일부만 공개할 수 있다.

1. 본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
2.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될 때
3. 계약 내용 등이 사전에 공개되었을 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 운영상의 피해가 우려될 때
4.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때. 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의 종료 이후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7. 제1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 밖에 정보공개청구 절차 등 정보공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제9조에서 규정한 겸직 금지의 범위에 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통해 개정에 대해 보류하기로 논의함.
  - 제9조에서 규정한 겸직금지 대상자에 관하여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등 임명직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타 대학 사례 확인 결과 임명직에 대한 겸직 금지를 규정한 경우는 적은 것으로 확인됨.
  - 의결기관(정책결정권)과 집행기관(정책집행권)을 분리하는 총학생회 권력 분립 이론에 따라 겸직을 금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등의 총학생회 사업 내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겸직을 금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제2호) 논의안건 제2호 학생회칙 제2장 일부개정 논의안

- 학생총회의 권한에 관하여 과거 조문 작성 당시 해석의 오류로 보아 현행 조항(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을 심의할 수 없음)을 삭제하기로 함.
- 학생총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중 전체학생총회 및 비상학생총회의 의사·의결정족수에 관하여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역사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에 이를 보류하기로 논의함.

○ 기타논의

위임 규정에 관한 개정

- 구체적인 세칙명 또는 규칙명을 언급하고 있는 위임 규정에 관하여서는 일괄적으로 조사 후 장에 상관없이 한번에 개정하여 정리하기로 논의함.

제2023-2회  
(정기회)

# 회칙개정특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위원장 단

---

**일시** 2023. 5. 21.(일) 21:00

**장소** 장영신학생회관 302호 학부 총학생회 회의실

---

**의사 일정** 보고사항 / 논의안건 제1호

---

**부의 안건** 논의안건 제1호 학생회칙 제2장 일부개정 논의안

---

## 개회·정회·유회 또는 폐회의 일시

---

개회 일시 2023. 5. 21. 21:02

정회 일시 2023. 5. 21. 22:06

속회 일시 2023. 5. 21. 22:12

폐회 일시 2023. 5. 21. 23:03

---

○ 성원(9인)

한정현(위원장) / 오윤석 / 조준한 / 박병찬 / 박재익 / 안희진 / 윤서진 / 이창섭 / 김성원

○ 개회 시 출석 인원(8인)

한정현(위원장) / 오윤석 / 조준한 / 박병찬 / 박재익 / 안희진 / 윤서진 / 김성원

○ 청가 인원(0인)

○ 결석·지각·조퇴 인원(0인)

---

# 보고사항

---

## 1 제2023-1회 회의록 보고

---

- 제안이유
  -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전기 회의록을 보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 제2023-1회 회칙개정특임위원회 회의록.pdf



---

# 안 건

---

## 논의안건 제1호 학생회칙 제2장 일부개정 논의안

---

제 출 연 월 일 2023. 5. 20.

안 건 제 출 자 위원장 한정현

□ 제안이유

-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운영규칙안 제2조에 따라 「학생회칙」 및 그에 부수되는 세칙과 규칙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검토자료: [+ 학생회칙 제2장 의결기구](#)
  - 부위원장 검토의견: [= 학생회칙 제2장 의결기구 검토의견](#)
-

# 결 과

## ○ 논의안건

### (제1호) 논의안건 제1호 학생회칙 제2장 일부개정 논의안

- 다음과 같이 학생회칙을 일부개정하기로 논의함.
  1. 제32조 중 “중앙투표관리위원회”를 “학생총회 의장”으로 한다.
  2. 제33조 제4항 중 “제29조”를 “제27조”로 한다.
  3. 제34조 제2항 중 “의결과 동등한 효력”을 “의결에 준하는 효력”으로 한다.
  4. 제44조 제4항 중 “(중앙운영위원직을 겸하는 대의원의 경우 중앙운영위원 자격도 정지)”를 “단, 해당 대의원이 중앙운영위원직을 겸하는 경우 중앙운영위원 자격도 정지한다.”로 한다.
  5. 제47조 제3항 중 “회원 전체의 명의”를 “본회의 명의”로, “소송권을 위임할 수 있다.”를 “소송권을 위임하거나 소송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로 한다.
  6. 제61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총학생회장단은 연대 단체 활동의 변동이 발생하면 정기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다음 사항은 보충 서면을 통한 검토 과정을 거쳐 차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1. 의결기구 임시의장 조항
    - 가 비상대책위원회 및 총학생회장단 권한대행 등 총학생회장단 사고 상태의 해소에 관한 조항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나 아래와 같은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며 총학생회장단 권한대행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소속 회원 수가 많은 자치기구 소속 중앙운영위원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총학생회장단 권한대행은 제#항에 따른 의장 직무대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인준한다.
  2. 제14조(위계)에 학생 총투표를 추가하는지 여부
    - 가 ‘학생총회와 학생총투표’ 등으로 정비할 수 있다.
  3. 회칙 내의 선거권과 투표권에 대한 기술방식
  4. 제44조의 징계 의결 요건 강화 여부

제2023-3회  
(정기회)

# 회칙개정특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위원장 단

---

**일시** 2023. 5. 28.(일) 21:00

**장소** 장영신학생회관 302호 학부 총학생회 회의실  
(회의 참여 링크:  
<https://kaist.zoom.us/j/86377343850?pwd=aVMxOHU5UWN6WUJBTGtwQzZpNGM1UT09>)

---

**의사 일정** 보고사항 / 논의안건 제1호 / 논의안건 제2호

---

**부의 안건** 논의안건 제1호 학생회칙 제2장 일부개정 논의안  
논의안건 제2호 의결기구운영세칙 전부개정 논의안

---

## 개회·정회·유회 또는 폐회의 일시

---

개회 일시 2023. 5. 28. 21:11

폐회 일시 2023. 5. 28. 22:47

---

○ 성원(9인)

한정현(위원장) / 오윤석 / 조준한 / 박병찬 / 박재익 / 안희진 / 윤서진 / 이창섭 / 김성원

○ 개회 시 출석 인원(7인)

(대면) 한정현(위원장) / 박병찬 / 박재익 / (비대면) 오윤석 / 조준한 / 안희진 / 윤서진

○ 청가 인원(0인)

○ 결석·지각·조퇴 인원(0인)

김성원(지각)

---

# 보고사항

---

## 1 제2023-2회 회의록 보고

---

- 제안이유
  -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전기 회의록을 보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 제2023-2회 회칙개정특임위원회 회의록.pdf

---

# 안 건

---

## 논의안건 제1호 학생회칙 제2장 일부개정 논의안

---

제 출 연 월 일 2023. 5. 28.

안 건 제 출 자 위원장 한정현

□ 제안이유

-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운영규칙안 제2조에 따라 「학생회칙」 및 그에 부수되는 세칙과 규칙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검토자료1: **+** 학생회칙 제2장 의결기구
    - 소집공고 및 결과공고 주기 논의
  - 검토자료2: **≡** 부위원장 제안(안)
    - 임시의장 조항 논의
  - 검토자료3: **≡** 안희진 위원 제안(안)
-

## 논의안건 제2호 의결기구운영세칙 전부개정 논의안

제 출 연 월 일 2023. 5. 28.

안 건 제 출 자 위원장 한정현

□ 제안이유

-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운영규칙안 제2조에 따라 「학생회칙」 및 그에 부수되는 세칙과 규칙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현행 의결기구운영세칙: [의결기구운영세칙](#)
- 개정 시 추가되어야 하는 사항: [중앙운영위원 매뉴얼](#)

□ 논의사항

# 결 과

○ 논의안건

(제1호) 학생회칙 제2장 일부개정 논의안

- 다음과 같이 학생회칙을 일부개정하기로 논의함.
  1. 제55조제4항 중 "3일 이전"을 "24시간 전"으로 한다.
  2. 제55조제4항의 단서 중 "제2항제5호의 경우 예외로 한다."를 "제2항제5호의 경우에는 소집공고 기한을 24시간 전으로 함을 예외로 한다."로 한다.
  3. 제27조 중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을 "본회 회원"으로 한다.
-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공고 단축에 관하여서는 보류하기로 논의함.
- "상위 의결기구인 하위 의결기구의 의결이 회칙에 어긋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제14조제4항의 신설에 관하여서는 보류하기로 논의함.
- 의결기구 임시의장에 관한 조항은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에 관한 조항과 추후 함께 논의하기로 함.
- 제35조 및 의결기구운영세칙 제42조 등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 정수 및 비례 대의원의석의 분배에 관하여서는 차회 회의에서 정하기로 논의함.
- 제44조 등 징계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차회 회의에서 정하기로 논의함.

(제2호) 의결기구운영세칙 전부개정 논의안

- 대리인 선임에 관하여서는 의결기구운영세칙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지만, 청가서 및 청가서 제출 기한 등은 의장이 정하는 등 의결기구운영세칙에 규정하지 아니하여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음.

○ 기타논의

업무분배

-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배하기로 논의함.

위원	담당
박재익	학생회칙 제1장 개정문,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이유
윤서진	위임 규정 개정문,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이유
이창섭	학생회칙 제2장 제1절, 2절 개정문,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이유
김성원	학생회칙 제2장 제3절 개정문,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이유
오윤석	학생회칙 제2장 제4절 개정문,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이유
박병찬	학생회칙 제2장 제5절 개정문,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이유
한정현, 조준한, 안희진	의결기구운영세칙 개정문,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이유

업무일정

- 6월 18일까지 회칙 등 개정안을 작성하고, 6월 18일 특임위 회의에서 정리하도록 함. 현재로는 6월 임시 전학대회에서 개정을 목표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 7월 초에 개최하는 전학대회에서 처리할 수도 있음.



제2023-4회  
(정기회)

# 회칙개정특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위원장 단

---

**일시** 2023. 6. 18.(일) 21:00

**장소** 장영신학생회관 302호 학부 총학생회 회의실  
(회의 참여 링크:  
<https://kaist.zoom.us/j/89435719704?pwd=bFhkV094MDk4WU4vRnFyOUR5c3EvZz09>)

---

**의사 일정** 보고사항 / 논의안건 제1호 / 기타안건 제1호

---

**부의 안건** 논의안건 제1호 의결기구운영세칙 전부개정 논의안

---

## 개회·정회·유회 또는 폐회의 일시

---

개회 일시 2023. 6. 18. 21:06

폐회 일시 2023. 6. 18. 22:39

---

- 성원(9인)  
한정현(위원장) / 오윤석 / 조준한 / 박병찬 / 박재익 / 안희진 / 윤서진 / 이창섭 / 김성원
- 개회 시 출석 인원(6인)  
(대면) 한정현(위원장) / 조준한 / 윤서진 / 김성원 / (비대면) 박재익 / 안희진
- 청가 인원(0인)
- 결석·지각·조퇴 인원(0인)  
(지각) 박병찬 / (결석) 오윤석


---

# 보고사항

---

## 1 제2023-3회 회의록 보고

---

- 제안이유
  -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전기 회의록을 보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회의록-회칙개정특임위원회-2023-003.pdf

# 안 건

## 논의안건 제1호 학생회칙 제2장 일부개정 및 의결기구운영세칙 전부개정 논의안

제 출 연 월 일 2023. 6. 18.

안 건 제 출 자 위원장 한정현

### □ 제안이유

-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운영규칙안 제2조에 따라 「학생회칙」 및 그에 부수되는 세칙과 규칙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제35조 및 의결기구운영세칙 제42조 등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 정수 및 비례 대의원의석의 분배, 제44조 등 징계에 관한 규정, 의결기구운영세칙에 반영할 대리인 선임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논의를 요청함.

### □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

- 제35조의2(대의원 정수) 대의원 정수는 50인으로 하되, 비례 대의원의석 배정 방식은 세칙으로 정한다.
- 비례 대의원의석 배정

#### 의결기구운영세칙 제42조(비례대의원의석의 배분)

1. 내부 회원 수가 본회 정회원 수의 3% 이상인 각 자치기구(이하 의석할당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기구의 인원비율에 따라 비례대의원의석을 배분한다.
2. 제1항의 인원비율은 각 의석할당기구의 정회원 수를 해당 기구의 당연직 대의원의석수로 나눈 수(이하 당연직대의원 당 정회원수라 한다)를 모든 의석할당기구의 당연직 대의원 당 정회원 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3. 비례 대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기구의 인원비율에 비례 대의원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이하 기대의석수라 한다)의 정수부분에 따라 먼저 배분하되 최대의석수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의석수만을 배분한다.
4. 제3항의 배분 이후의 잔여의석은 배분된 의석수가 최대의석수 미만인 각 의석할당기구의 기대의석수의 소수부분이 큰 순으로 각 기구에 1석씩 배분하며 모든 의석을 배분할 때까지 본 항의 과정을 반복한다.
5. 제3항과 제4항의 최대의석수는 비례대의원의석수를 의석할당기구수로 나눈 수의 정수부분에 1을 더한 수와 5석 중 큰 값으로 정한다.

### □ 징계 규정

#### 제44조(징계에 관한 사항)

1. 전학대회는 회원, 중앙운영위원, 전학대회 대의원이 회칙·세칙·규칙을 위반할 때 징계할 수 있다.
2. 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공개 경고와 사과문 게재 요구
  2. 피선거권의 박탈
  3. 선거권의 박탈
  4. 제4조제4항에 따른 본회 자치활동의 참여권 박탈

3. 중앙운영위원회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전학대회에서의 경고와 사과 요구
  2. 중앙운영위원회 출석정지
  3. 중앙운영위원 자격정지
4. 전학대회 대의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전학대회에서의 경고와 사과 요구
  2. 전학대회 출석정지
  3. 대의원 자격정지 (중앙운영위원직을 겸하는 대의원의 경우 중앙운영위원 자격도 정지)
5. 총학생회장단에게는 제2항제4호와 제3항제2호 및 제3호,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징계를 할 수 없다.
6.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조사위원회 혹은 관련 전문기구를 통해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징계 대상자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대리인 선임

(청가 및 결석)<sup>1</sup>

1. 대의원이 전학대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請假書) 또는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청가 및 결석)<sup>2</sup>

1. 중앙운영위원이 전학대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sup>1</sup> 국회법 제32조(청가 및 결석)

<sup>2</sup> 국회법 제32조(청가 및 결석). 전학대의원 청가 및 결석 규정과 동일

기타안건 제1호 학생회칙 제1장 및 제2장 일부개정 회칙안 및  
의결기구운영세칙 전부개정세칙안 검토안

제 출 연 월 일 2023. 6. 18.

안 건 제 출 자 위원장 한정현

- 제안이유
  -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운영규칙안 제2조에 따라 「학생회칙」 및 그에 부수되는 세칙과 규칙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제1장 및 제2장\)](#)
- 논의사항

---

## 결 과

---

### ○ 논의안건

(제1호) 제1호 학생회칙 제2장 일부개정 및 의결기구운영세칙 전부개정 논의안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 대의원 정수를 회칙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배분 방식은 세칙으로 위임하여 규정함.
  - 내부 회원 수가 본회 정회원 수의 3% 이상인 각 자치기구에 한하여 비례 대의원을 배분하는 현행 방식이 다수 학과의 과대 대표 및 소수 학과의 과소 대표 등 비례성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비례 대의원 배분 방식과 관련하여, 전체 회원수와 대의원 정수를 고려하여 대의원 1석당 회원수를 먼저 산정하여 각 자치기구별로 배분되는 대의원 의석수를 결정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음.
- 징계 규정
  - 현행 요건 유지와 징계 요건 강화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 추후 위원회 활동 보고 및 인수인계시 해당 논의에 대하여 더욱 깊은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청가 및 결석
  - 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를 “의장이 정한다.”로 한다.
  - 대리인의 선임을 청가 및 결석에서 세칙으로 규정하되, 현행 제도처럼 자치기구에서 자치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 ○ 기타논의

-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제1장 및 제2장\)](#) 의 내용을 검토하고 일부개정회칙안 작성 시에 있었던 의문사항들에 질의응답을 진행함
- 위임규정 중 전문기구 부분의 전문기구 조항을 검토하고 정비함
- 수정 작성한 서류에 대해서는 2023. 6. 19.(월) 23:59까지 위원장이 수합하기로 함
- 2023. 6. 22.(목) 중으로 일부개정회칙안 등 발의안 제출, 2023. 6. 26(월) 제2023-14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발의안 심의·의결, 발의안 공고 후 7일 이후 14일 이내에 전학대회 소집하여 일부개정회칙안 등을 심의·의결 예정임

제2023-5회  
(정기회)

# 회칙개정특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위원장 단

---

**일시** 2023. 6. 25.(일) 21:00

**장소** 장영신학생회관 302호 학부 총학생회 회의실  
(회의 참여 링크:  
<https://kaist.zoom.us/j/85328885085?pwd=VU9wVFJ1YkVidGIRejVxcGtJUUVJUZZ09>)

---

**의사 일정** 보고사항 / 논의안건 제1호 / 기타안건 제1호

---

**부의 안건** 논의안건 제1호 학생회칙 제3장 일부개정 논의안

---



## 개회·정회·유회 또는 폐회의 일시

---

개회 일시 2023. 6. 25. 21:08

폐회 일시 2023. 6. 25. 21:

---

- 성원(9인)  
한정현(위원장) / 오윤석 / 조준한 / 박병찬 / 박재익 / 안희진 / 윤서진 / 이창섭 / 김성원
- 개회 시 출석 인원(7인)  
(대면) 한정현(위원장) / 오윤석 / 조준한 / 윤서진 / (비대면) 박병찬 / 안희진
- 청가 인원(0인)
- 결석·지각·조퇴 인원(0인)  
(지각) / (결석) 이창섭


---

# 보고사항

---

## 1 제2023-4회 회의록 보고

---

- 제안이유
  -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전기 회의록을 보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회의록-회칙개정특임위원회-2023-004.pdf

---

# 안 건

---

## 논의안건 제1호 학생회칙 제3장 일부개정 논의안

---

제 출 연 월 일 2023. 6. 25.

안 건 제 출 자 위원장 한정현

- 제안이유
    -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운영규칙안 제2조에 따라 「학생회칙」 및 그에 부수되는 세칙과 규칙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 주요내용
    - **☞ 학생회칙 제3장 제1절~제3절 검토 자료**
    - **☞ 부위원장 의견**
  - 논의사항
-

---

## 결 과

---

○ 논의안건

(제1호) 학생회칙 제3장 일부개정 논의안

- 잔여 임기에 따라 재선거 내지 보궐선거/비상대책위원회 여부가 나뉘는데 그러한 기준을 잔여 임기가 아니라 명확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기로 논의함.
- 제78조 또한 정비가 필요함.
- 권한의 경우 행정청인 총학생회장으로 통일하고, 의무의 경우 총학생회장단으로 유지한다.
- 집행조정위원회 : 제안한 안과 같이 제81조를 개정한다.
-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 부위원장 제안으로 정리하되, 자구를 정비한다.
- 제75조의2 : 총학생회장 직무대리 / 제75조의3 : 총학생회장 권한대행 / 제75조의4 :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대리와 권한대행으로 신설하기로 논의함.

○ 기타논의

- 여름 방학 기간은 비대면 참석 여부를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비대면 회의 여부에 답장을 남기면 허용하기로 논의함.

제2023-6회  
(정기회)

# 회칙개정특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위원장 단

---

**일시** 2023. 7. 2.(일) 21:00

**장소** 장영신학생회관 302호 학부 총학생회 회의실  
(회의 참여 링크:  
<https://kaist.zoom.us/j/85363157997?pwd=VFpFZ3NzYnpXTkZDK3d1N1VKY2NMUT09>)

---

**의사 일정** 보고사항 / 논의안건 제1호

---

**부의 안건** 논의안건 제1호 학생회칙 제3장 일부개정 논의안

---

## 개회·정회·유회 또는 폐회의 일시

---

개회 일시 2023. 7. 2. 21:11

폐회 일시 2023. 7. 2. 22:28

---

- 성원(9인)  
한정현(위원장) / 오윤석 / 조준한 / 박병찬 / 박재익 / 안희진 / 윤서진 / 이창섭 / 김성원
- 개회 시 출석 인원(7인)  
(대면) 한정현(위원장) / 오윤석 / 조준한 / 윤서진 / (비대면) 박재익 / 안희진 / 박병찬
- 청가 인원(0인)
- 결석·지각·조퇴 인원(2인)  
(조퇴) 박병찬 / (결석) 이창섭 / 김성원

---

# 보고사항

---

## 1 제2023-5회 회의록 보고

---

- 제안이유
  -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전기 회의록을 보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 제2023-5회 회칙개정특임위원회 회의록.pdf

---

# 안 건

---

## 논의안건 제1호 학생회칙 제3장 일부개정 논의안

---

제 출 연 월 일 2023. 7. 2.

안 건 제 출 자 위원장 한정현

- 제안이유
    -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운영규칙안 제2조에 따라 「학생회칙」 및 그에 부수되는 세칙과 규칙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의장권 위임 관련 발제](#)
  - 논의사항
    - 의장권 위임에 관한 학생회칙 규정의 개정 여부 및 방향성
-



---

## 결 과

---

○ 논의안건

(제1호) 학생회칙 제3장 일부개정 논의안

- 의장 권한 위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부위원장의 설명이 있었음.
  1. 학생회칙 제68조제2항에 따라 총학생회장은 부총학생회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학생회칙 제71조에 따라 의장을 하나의 권한으로 간주할 경우에 제2023-8회 중앙운영위원회 심의안건 제4호 학생회칙 유권해석안의 내용은 행정법상 권한의 위임을 적용할 수 있기에 적절한 해석이 되지만, 의장 직을 권한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2. 다만, 의장(권한)의 범위는 소집공고 등 공고부터,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회의장 질서 유지·감독, 회의 진행 등 상당히 포괄적이므로 이에 대해 회칙 개정 등을 통해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한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의장을 위임 가능한 '권한'으로 볼지, 권한이 아닌 '직'으로 볼지, 위임 가능하도록 할 경우에도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하여야 할지는 차회 회의에서 정하기로 논의함.
- 총학생회의 권한 위임 및 사무 처리 위임을 위해 '(가칭)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세칙'을 제정하기로 논의함.

# 당사자 : 피고 적격

## 개념

- 처분등과 피고 사이에 관련성

→ 처분등을 하였거나 그 권한을 승계받았는지 여부

## 용어

- 처분청 : 외부적으로 그 명의로 처분을 한 행정청

- 재결청 : 외부적으로 그 명의로 재결을 한 행정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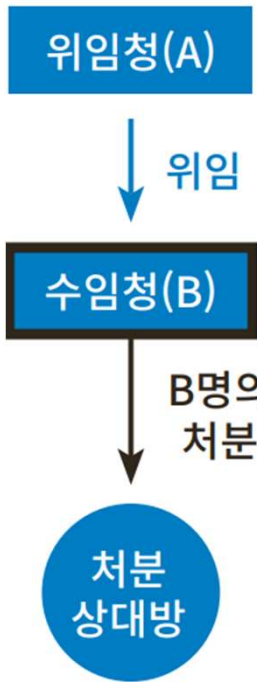
---

행정소송법 제13조(피고적격) 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처분+재결]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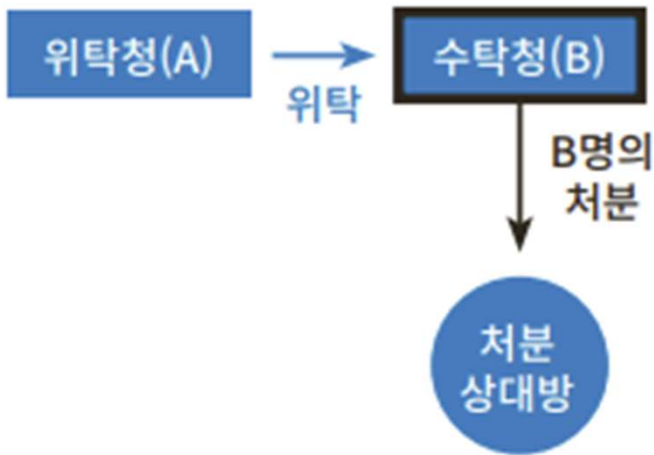
(주의) 실제 권한이 있는지는 본안에서 판단하고,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 피고 적격 : 위임, 위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A]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B]에게 맡겨 그[B]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A]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B]에게 맡겨 그[B]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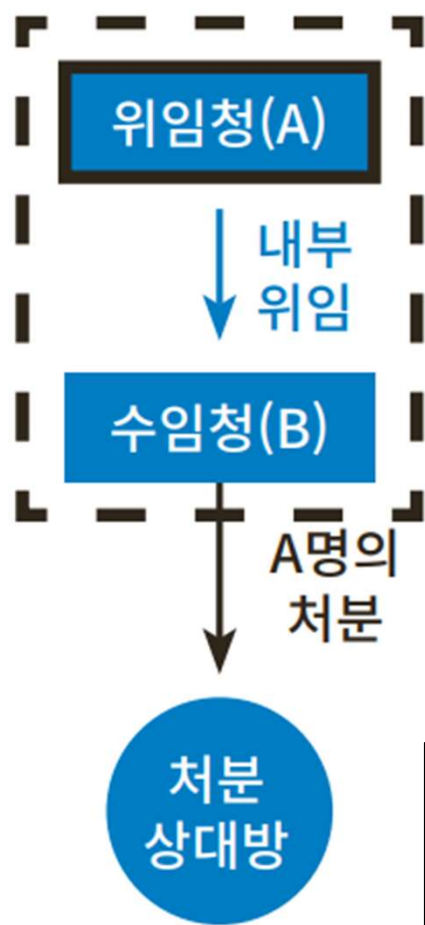


- 외부적으로 수임청, 수탁청 명의로 처분을 한다.
- 수임청, 수탁청이 피고 적격을 가진다.

# 피고 적격 : 내부 위임

## 행정권한의 내부 위임

- “사실상“ 행정청[A]의 보조기관, 담당자, 하급행정기관[B]이 처리하되,
- 외부적으로는 위임한 행정청의 명의로 처분한다.
- 외부적으로 위임청[A]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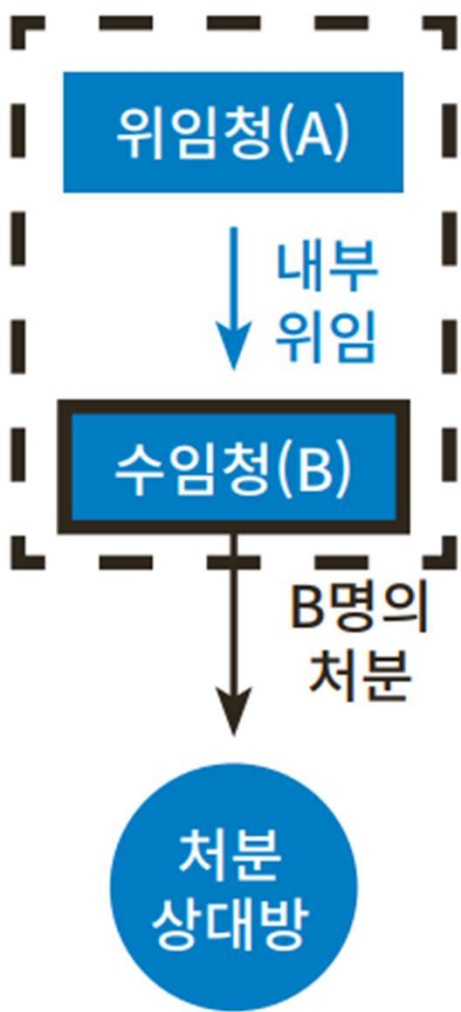
91누520: 수임관청이 내부위임에 따라 위임관청[A]의 이름으로 행한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적격(=위임관청[A])

구청장[B]이 서울특별시시장[A]의 이름으로 한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에 대하여 구청장[B]을 피고로 한 소를 각하[해야 한다.]

# 피고 적격 : 내부 위임

## 내부위임 받은 수임청의 착오 처분

- 착오로 수임청[B]가 자기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 외부적으로 수임청[B]명의로 처분을 하였으므로, 수임청이 피고 적격을 가진다.



90누5641: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A]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데 불과한 하급행정청[B]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수임청(B)]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즉,]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위임청(A)]을 피고로 할 것이 아니다.]

부산직할시장[A]의 산하기관인 부산직할시 금강공원 관리사업소장[B]이 한 공단사용료 부과처분[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가사 위 사업소장[B]이 부산직할시[A]로부터 단순히 내부위임만을 받은 경우라 하자. 그렇]더라도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위 금강공원 관리사업소장[B]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 피고 적격 : 소결

	위임	내부위임	
처분청	수임청	위임청	수임청
평가	정상	정상	착오
피고적격	처분청(=수임청)	처분청(=위임청)	처분청(=수임청)

✓외부적으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 적격을 가진다.

제2023-7회  
(정기회)

# 회칙개정특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위원장 단

---

**일시** 2023. 7. 9.(일) 21:00

**장소** 장영신학생회관 302호 학부 총학생회 회의실  
(회의 참여 링크:  
<https://kaist.zoom.us/j/83480347437?pwd=NldwYVJQMzhXWkFJdlM2RTdiVzhDQT09>)

---

**의사 일정** 보고사항 / 논의안건 제1호

---

**부의 안건** 논의안건 제1호 학생회칙 제3장 제5절 일부개정 논의안

---

## 개회·정회·유회 또는 폐회의 일시

---

개회 일시 2023. 7. 9. 21:11

폐회 일시 2023. 7. 9. 22:59

---

- 성원(9인)  
한정현(위원장) / 오윤석 / 조준한 / 박병찬 / 박재익 / 안희진 / 윤서진 / 이창섭 / 김성원
- 개회 시 출석 인원(7인)  
(대면) 한정현(위원장) / 오윤석 / 조준한 / 이창섭 (비대면) 김성원 / 안희진 / 윤서진
- 청가 인원(0인)
- 결석·지각·조퇴 인원(2인)  
(결석) 박병찬 / 박재익



---

# 보고사항

---

## 1 제2023-6회 회의록 보고

---

- 제안이유
  -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전기 회의록을 보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 제2023-6회 회칙개정특임위원회.pdf

---

# 안 건

---

## 논의안건 제1호 학생회칙 제3장 제5절 일부개정 논의안

---


제 출 연 월 일 2023. 7. 9.

안 건 제 출 자 위원장 한정현

□ 제안이유

-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운영규칙안 제2조에 따라 「학생회칙」 및 그에 부수되는 세칙과 규칙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학생회칙 제3장 제5절 검토 자료

□ 논의사항

- 학생회칙 제3장 제5절 검토에 따른 「(가칭)집행기구에 관한 세칙」 제정에 관한 논의를 요청함
-

# 결 과

○ 논의안건

(제1호) 학생회칙 제3장 제5절 일부개정 논의안

- 다음 표의 내용과 같이 학생회칙 제3장 제5절의 조항을 일부개정하기로 논의함.

현 행	개 정 제 안
<p>제89조(인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중앙운영위원회는 상설위원회 설치요청이 있을 시, 심의를 통해 상설위원회 준비 위원회를 구성한다.</u></li> <li>2. 준비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상설위원회의 설치를 준비한다.</li> <li>3. 준비위원회가 1년 이상 꾸준히 활동을 수행하였을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u>다음의 서류를 제출 받아 상설위원회 지위에 적합한지와 제출 받은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를 심의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준비위원회 위원 명부</li> <li>2. 소개서</li> <li>3. 연간 사업계획서</li> <li>4. 자치규칙</li> <li>5. 예산안</li> <li>6. 준비위원회 활동보고서 및 결산</li> <li>7.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u>1/20인</u> 이상의 연서에 의한 추천서</li> </ol> </li> <li>4. <u>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해당 상설위원회 인준안의 전학대회 상정을 의결한다. 상정이 의결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안건과 함께 전학대회에 제출한다.</u></li> <li>5. <u>전학대회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상설위원회 설치안을 의결한다.</u></li> </ol>	<p>제89조(인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중앙운영위원회는 상설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제6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u></li> <li>2. 준비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상설위원회의 설치를 준비한다.</li> <li>3. 준비위원회가 1년 이상 꾸준히 활동을 수행하였을 경우에 중앙운영위원회는 <u>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받아 상설위원회 지위에 적합한지와 제출 받은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를 심의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준비위원회 위원 명부</li> <li>2. 소개서</li> <li>3. 연간 사업계획서</li> <li>4. 자치규칙</li> <li>5. 예산안</li> <li>6. 준비위원회 활동보고서 및 결산</li> <li>7.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u>20분의 1</u> 이상의 연서에 의한 추천서</li> </ol> </li> <li>4. <u>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해당 상설위원회 인준안을 전학대회로 발의할 수 있다. 발의안이 심의·의결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안건과 함께 전학대회에 제출한다.</u></li> <li>5. <u>전학대회는 중앙운영위원회 심의·의결로 발의된 상설위원회 설치안을 심의·의결한다.</u></li> </ol>
<p>제90조(위원장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설위원회위원장단은 해당 상설위원회를 대표한다.</li> <li>2. 상설위원회위원장단은 해당 상설위원회의 자치규칙에 따라 자체호선하고 중앙운영위원회 보고 후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li> </ol>	<p>제90조(위원장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설위원회위원장단은 해당 상설위원회를 대표한다.</li> <li>2. 상설위원회위원장단은 해당 상설위원회의 자치규칙에 따라 내부호선하고 중앙운영위원회 보고 후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li> </ol>
<p>제91조(업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설위원회는 본회 상설적인 제반업무 및 의결기구와 집행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li> </ol>	<p>제91조(업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설위원회는 본회 상설적인 제반업무 및 의결기구와 집행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li> </ol>

<p>2. 상설위원회는 <u>전항에</u> 해당하는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u>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u> 운영한다.</p> <p>3. 상설위원회는 의결기구에 정기적으로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고, 예산안 및 결산안을 제출해야 한다.</p>	<p>2. 상설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u>회칙·세칙·규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u> 운영한다.</p> <p>3. 상설위원회는 의결기구에 정기적으로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고, 예산안 및 결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p>
<p>제93조(재정) 상설위원회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u>이에 관하여서는 집행조정위원회의 협의를 따른다.</u></p>	<p>제93조(재정) 상설위원회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lt;삭제&gt;</p>
<p>제94조(징계)</p> <p>1.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상설위원회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위원장단 혹은 둘 중 한 명을 대상으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9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u>게을리 한 경우</u></li> <li>2. 제92조 <u>협의를 사항에 비협조적으로 응하는 경우</u></li> <li>3. <u>회칙 및 의결기구의 의결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u></li> <li>4. 운영 상에서 본회에 현저한 해를 끼치는 경우</li> </ol> <p>2.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상설위원회에 업무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설위원회의 성격·활동이 성립 목적에 부합하지 <u>않게 된 경우</u></li> </ol> <p>3.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징계 대상 상설위원회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제94조(징계)</p> <p>1.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상설위원회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위원장단 또는 둘 중 한 명을 대상으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9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u>여러 차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u></li> <li>2. 제92조에 따른 협의 사항을 <u>이행하지 아니한 경우</u></li> <li>3. <u>회칙·세칙·규칙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 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u></li> <li>4. <u>상설위원회 운영 상에서 본회에 현저한 해를 끼치는 경우</u></li> </ol> <p>2.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상설위원회에 업무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설위원회의 성격·활동이 성립 목적에 부합하지 <u>아니하게 된 때</u></li> </ol> <p>3. <u>제1항 또는 제2항의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징계 대상 상설위원회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u></p>
<p>제95조(제명·합병)</p> <p>1. 상설위원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전학대회는 해당 상설위원회를 제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 차원에서 상설위원회가 담당하는 영역과 기능을 포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li> <li>2. 다른 기구에 편입되거나 자체적으로 해산을 공표할 때</li> </ol> <p>2. 운영상의 이유로 두 개 이상의 상설위원회를 합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전학대회는 해당 상설위원회들의 합병을 의결할 수</p>	<p>제95조(제명·합병)</p> <p>1. 상설위원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 전학대회는 해당 상설위원회를 제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 차원에서 상설위원회가 담당하는 영역과 기능을 포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li> <li>2. 다른 기구에 편입되거나 자체적으로 해산을 공표할 경우</li> </ol> <p>2. 운영상의 이유로 두 개 이상의 상설위원회를 합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전학대회는 해당</p>

<p>있다.</p> <p>3. 단, <u>상설위원회 제명·합병 안건을 전학대회에 상정할 경우,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40 인 이상의 연서를 첨부해야 한다.</u></p>	<p>상설위원회들의 합병을 의결할 수 있다.</p> <p>3. 단, <u>상설위원회 제명·합병안을 전학대회로 발의할 경우에는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40분의 1 이상의 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u></p>
<p>제96조(자치규칙)</p> <p>1. 상설위원회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한다.</p> <p>2. 상설위원회가 자치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u>보고해야</u> 한다.</p> <p>3. 상설위원회는 자치규칙을 본회 회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96조(자치규칙)</p> <p>1. 상설위원회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한다.</p> <p>2. 상설위원회가 자치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u>보고하여야</u> 한다.</p> <p>3. 상설위원회는 자치규칙을 본회 회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 상설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전문기구와 같이 각 상설위원회의 업무, 구성(선발), 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가칭)집행기구세칙'을 제정하여 규정하기로 논의함.
- 제89조제3항의 준비위원회 활동 기간에 관하여서는 현행 유지(1년), 6개월, 기한 요건을 두지 아니함 중에서 차회 회의까지 의견을 정리하여 토의한 후 정하기로 논의함.
- 상설위원회의 자치규칙에 관하여서는 세칙에 부속되는 규칙으로 정하되, 단서 조항으로 각 기구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로 논의함.
- '자치규칙' 제도 전반에 관하여는 제4장(자치기구)에서 정비하기로 논의함.

○ 기타 논의

- 의장을 위임 가능한 '권한'으로 볼지, 권한이 아닌 '직'으로 볼지, 위임 가능하도록 할 경우에도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하여야 할지 논의함.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음. 이후 가투표 결과에 따라 의장을 권한으로 보고, 위임 가능하도록 규정하기로 논의함.
  1. 부총학생회장 역시 대의성이 존재하므로, 권한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2. 실무적인 관점에서 유연한 업무 분담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위임이 가능한 권한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겠지만, 위임에 있어서 그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3. 선거 과정에 있어서 선거권자는 의장 및 관련 사무를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권한을 분담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기에 이를 회칙에서 규정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라는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4. 국회법상 겸직 제한 조항, 의장과 부의장으로 나누어 투표를 하기에 의장을 직으로 보되, 그 직책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주체로 부총학생회장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직책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의장 권한 위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가칭)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세칙'을 제정하기로 논의함. 세칙의 초안을 차회 회의까지 작성하고 차회 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함.

제2023-8회  
(정기회)

# 회칙개정특임위원회 회의록

제8호

위원장 단

---

**일시** 2023. 7. 16.(일) 21:00

**장소** 장영신학생회관 302호 학부 총학생회 회의실  
(회의 참여  
링크:<https://kaist.zoom.us/j/89640040544?pwd=K2MwWU1WSGRad3Y0U2hBLzBsUIFnZz09>)

---

**의사 일정** 보고사항 / 논의안건 제1호 / 논의안건 제2호

---

**부의 안건** 논의안건 제1호 학생회칙 제4장 일부개정 논의안  
논의안건 제2호 학생회칙 일부개정 논의안

---

## 개회·정회·유회 또는 폐회의 일시

---

개회 일시 2023. 7. 16. 21:06

폐회 일시 2023. 7. 16. 22:55

---

- 성원(9인)  
한정현(위원장) / 오윤석 / 조준한 / 박병찬 / 박재익 / 안희진 / 윤서진 / 이창섭 / 김성원
- 개회 시 출석 인원(5인)  
(대면) 한정현(위원장) / 오윤석 / 이창섭 (비대면) 조준한 / 안희진
- 청가 인원(0인)
- 결석·지각·조퇴 인원(인)  
(결석) 윤서진 / 김성원

---

# 보고사항

---

## 1 제2023-7회 회의록 보고

---

- 제안이유
  -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전기 회의록을 보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 제2023-7회 회칙개정특임위원회 회의록.pdf



---

# 안 건

---

## 논의안건 제1호 학생회칙 제4장 일부개정 논의안

---


제 출 연 월 일 2023. 7. 16.

안 건 제 출 자 위원장 한정현

□ 제안이유

-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운영규칙안 제2조에 따라 「학생회칙」 및 그에 부수되는 세칙과 규칙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학생회칙 제4장 검토 자료

□ 논의사항

- 학생회칙 제4장 검토에 따라 자치기구 준칙 제도의 존폐 여부 및 「(가칭)자치기구에 관한 세칙」 제정에 관한 논의를 요청함
-

## 논의안건 제2호 학생회칙 일부개정 논의안

제 출 연 월 일 2023. 7. 16.

안 건 제 출 자 부위원장 조준한

□ 제안이유

-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운영규칙안 제2조에 따라 「학생회칙」 및 그에 부수되는 세칙과 규칙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회칙개정안\_권한의 위임 및 위탁

□ 논의사항

-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논의를 요청함

# 결 과

## ○ 논의안건

### (제1호) 학생회칙 제4장 일부개정 논의안

- 상설위원회 준비 기간 요건을 폐지하기로 논의함.
- 자치규칙의 지위 및 상설위원회 자치규칙에 관하여 회칙·세칙·규칙 의 체계로 되어 있는 현행 회칙에 체계에 맞도록 규정하기로 논의함. 상설위원회 내부 운영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의 경우에 회칙 또는 세칙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학생회칙에 규정하기로 논의함. 자치기구는 자치기구로서 자치규칙을 자율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의 산하기구는 내부 운영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을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자치기구 회장단에게도 자치기구 의결기관으로의 보고 의무를 추가하기로 논의함. 다만, 이 건에 대하여는 차회 회의에서 보고 및 의견 공유를 진행하기로 정함.
- 학부·학과 학생회의 정회원 요건 중 복수전공 관련 요건에 관하여서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정하되, 차회 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기로 정함.

### (제2호) 학생회칙 일부개정 논의안

- 원안의 내용대로 학생회칙을 일부개정하여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기로 논의함.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한 세칙은 차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정함.

## ○ 기타논의

제3장 및 제4장 개정안 작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배하기로 함. (제출일: 2023. 7. 29. 23:59)

- 3장 개정문: 박재익
- 3장 목적 및 경위: 한정현
- 4장 개정문: 안희진
- 4장 목적 및 경위: 이창섭

제2023-9회  
(정기회)

# 회칙개정특임위원회 회의록

제9호

위원장 단

---

일 시            2023. 7. 23.(일) 21:00

장 소            장영신학생회관 302호 학부 총학생회 회의실  
(회의 참여  
링크:<https://kaist.zoom.us/j/89640040544?pwd=K2MwWU1WSGRad3Y0U2hBLzBsUIFnZz09>)

---

의사 일정        보고사항 / 논의안건 제1호 / 논의안건 제2호

---

부의 안건        논의안건 제1호 격려금 폐지 논의안

---

개회 일시 2023. 7. 23. 21:07

폐회 일시 2023. 7. 23.

---

- 성원(9인)  
한정현(위원장) / 오윤석 / 조준한 / 박병찬 / 박재익 / 안희진 / 윤서진 / 이창섭 / 김성원
- 개회 시 출석 인원(5인)  
(대면) 한정현(위원장) / 김성원 / (비대면) 박재익 / 윤서진 / 안희진
- 청가 인원(0인)
- 결석·지각·조퇴 인원(인)


---

# 보고 사항

---

## 1 제2023-8회 회의록 보고

---

- 제안이유
  -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전기 회의록을 보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제2023-8회 회칙개정특임위원회 회의록.pdf

# 안 건

## 논의안건 제1호 격려금 폐지 논의안

제 출 연 월 일 2023. 7. 23.

안 건 제 출 자 위원장 한정현

### □ 제안이유

-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운영규칙안 제2조에 따라 「학생회칙」 및 그에 부수되는 세칙과 규칙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 격려금의 분배 및 지급에 관하여 그동안의 논의를 정리하고, 격려금 제도의 방향성 및 존폐 여부에 관하여 위원회 차원의 담론을 형성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파일:안건지-중앙운영위원회-2023-006.pdf](#)
- [안건지-전체학생대표자회의-2023-003.pdf](#)

### □ 논의사항

- 격려금 제도의 존폐 여부에 관하여 논의를 요청함.

### □ 참고사항

- 관련 규정

#### 제177조(목적)

격려기금은 본회 대표자 및 산하기구 위원을 대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및 책임감 고취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기금이다.

#### 제178조(적용범위)

격려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본회 산하기구의 기구장 및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이다. 단, 해당 기구 활동에 대한 지원금이 없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한다.

1. 집행기구
2. 자치기구
3. 전문기구

#### 제179조(지급일)

1. 격려금은 전학대회에서 격려기금 분배안이 승인된 이후 20일 이내 본회 산하기구의 공금 계좌로 계좌 이체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회 산하기구는 격려금 운용 계획안에 따라 격려금 지급 대상자에게 계좌이체의 형태로 격려금을 분배한다.

#### 제180조(기금의 전용 제한)

1. 격려금은 본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격려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2. 격려금을 타 회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전학대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3. 본회 산하기구는 격려금을 격려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중앙운영위원회에 격려금 운용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



##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학생회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않은"을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준 받을"을 "인준받을"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산하기구"를 "'산하기구'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해임된"을 "사퇴한"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보존해야"를 "보존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력해야"를 "노력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무처리세칙」으로"를 "세칙으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본회"를 "본회의"로 하고, 제3항 중 "본회"를 "본회의"로 하며,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본회 산하기구는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일부만 공개할 수 있다.
  1. 본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
  2.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될 때
  3. 계약 내용 등이 사전에 공개되었을 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 운영상의 피해가 우려될 때
  4.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때. 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의 종료 이후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정보공개청구 절차 등 정보공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학생총회"를 "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상의"를 "상위"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총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회칙·세칙·규칙에 다르게 정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총학생회장으로 한다"로 하고, 제3항 중 "진행해야"를 "진행하여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세칙) 그 밖에 의결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될 경우"를 "해당할 때에"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2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제1호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의장은 전체학생총회 개회 10일 전에 학생총회의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4. 비상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단, 소집이 요건을 위반하여 이뤄지는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로 소집 결정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1.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4. 본회 회원 2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5. 제2항제1호는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한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제2호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의장은 비상학생총회 개회 1일 전에 학생총회의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전체학생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3.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2. 제1항제1호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비상학생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1.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3.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4. 본회 회원 2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4. 제2항제1호는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한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제2호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제1항 중 "1/3"을 "3분의 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10"을 "10분의 1"로, "1/8"을 "8분의 1"로 한다.

제25조 중 "대중"을 "본회 회원"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지위) 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본회 최고의 의사결정투표이다. 학생 총투표의 의결은 학생총회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7조 중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을 "본회의 회원"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형식) 학생총투표는 본회 회원의 투표의 형식으로 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권한) 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와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각 호를 각각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학생총투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단,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가 있을 때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가 있을 때
  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가 있을 때
  4.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라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이 학생총투표로 부의되었을 때
  5.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되었을 때

2. 제1항제1호의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의장은 시행 7일 전에 학생총투표의 시행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안건상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은 학생총투표에 안건을 상정한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4. 전학대회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라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이 학생총투표로 부의된 경우
5.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

제31조의 제목 "성립·의결·요건"을 "성립·의결 요건"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32조 중 "개표완료시부터"를 "개표완료 이후"로, "중앙투표관리위원회"를 "학생총회 의장"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시행"을 "시행일"로, "결정"을 "의결"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1/20"을 "20분의 1"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결정"을 "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9조"를 제27조"로, "1/8"을 "8분의 1"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개표완료시부터"를 "개표완료 이후"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전학대회"를 ""전학대회"라 한다"로, "위임 받은"을 "위임받은"으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중 “의결과 동등한 효력”을 “의결에 준하는 효력”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구성) 전학대회는 제35조에서 정한 전학대회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제35조제1항 중 “전학대회의 대의원”을 “전학대회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이라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각 학부·학과학생회장 또는 부회장이 존재하는 경우 회장단 중 1인”을 “각 학부·학과학생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대의원 임기는 전년도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 폐회 후부터 당해 연도 1분기 초 전학대회 폐회 이전까지로 하며, 그 밖에 대의원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대의원은 임기만료·탄핵·사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내기학생회 소속 대의원 임기는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4. 전학대회의 대의원은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소속 회원의 합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 단,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이 없거나 자치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
5. 중앙집행위원회는 전학대회 대의원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대의원 정수) 대의원 정수는 50인으로 하되, 비례 대의원석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 제2항 중 “표명해야”를 “표명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3항 중 “참여해야”를 “참여하여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권한) 전학대회는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의결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학대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2.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38조제1항의 “매 학기 초 및 해당 연도 말에 개회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제165조제2항에 따른 매 분기 초에 의장이 소집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의해”를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서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회일 5일 이전에 회의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를 “개회 5일 전에 전학대회의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로, “2/3”을 “3분의 2”로 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중앙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4.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4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5. 학생총회에서 안건을 위임했을 때
6. 전학대회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되었을 때
7.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또는 전문기구장 해임안이 발의되었을 때
8. 제185조에 따른 회칙 개정안 또는 제191조제3항에 따른 세칙·규칙 제정안 또는 폐지안이 발의되었을 때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안건의 상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전학대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2. 중앙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3. 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4.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4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5. 학생총회에서 안건을 위임한 경우
6. 전학대회 의장이 그 밖에 전학대회의 심의·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발의한 경우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안건의 상정 시기) 안건의 상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3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제3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집되는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단, 회칙·세칙·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2. 제39조제6호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안건발의 일자로부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소집공고가 되는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단, 회칙·세칙·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학대회는 학생총회 소집 및 학생총투표 시행을 의결할 수 있다.
2. 전학대회는 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제41조 중 "발의된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하거나"를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로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을 심의·의결하거나"로 한다.

제43조제1항을 중 "상설위원회위원장단 및 전문기구장의"를 "상설위원회 위원장·상설위원회 부위원장·전문기구장의"로, "의결"을 "심의·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결"을 "심의·의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결"을 "심의·의결"로 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4항의 "전학대회 대의원"을 "대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중앙운영위원직을 겸하는 대의원의 경우 중앙운영위원 자격도 정지)"를 "단, 해당 대의원이 중



양운영위원직을 겸하는 경우 중앙운영위원 자격도 정지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5조제1항의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하여 의결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의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하여 의결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로 하며, 같은 조제3항의 “채택한다”를 “심의·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회계”를 “재정”으로, “인상·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를 “인상·인하안을 심의·의결한다”로 한다.

제47조제2항의 “전학대회 정기회의”를 “전학대회 정기회의 및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회원 전체의 명의”를 “본회의 명의”로, “소송권을 위임할 수 있다”를 “소송권을 위임하거나 소송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출석 대의원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회칙·세칙·규칙에 다른 규정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상설위원회위원장단 및 전문기구장”을 “상설위원회 위원장·상설위원회 부위원장·전문기구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대한”을 “관한”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체학생총회 소집 및 학생총투표 시행에 관한 사항
6.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관한 사항
7. 기금의 타 회계 전용에 관한 사항

제48조제3항 중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

호를 삭제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9조에 따라 서면의결을 시행하는 안건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장은 제38조제4항의 긴급한 사항에 대해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있다.
2. 서면의결을 실시하는 사항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0조 중 "대중"을 "본회 회원"으로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구성) 중앙운영위원회는 제52조에서 정한 중앙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제52조제1항제2호의 "각 자치기구회장 혹은 회장단 중 전학대회 대의원 당연직인 사람 1인"을 "동아리연합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각 학부·학과학생회장
4. 새내기학생회장
2. 중앙운영위원 임기는 전년도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 폐회 후부터 당해 연도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 폐회 이전까지로 하며,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중앙운영위원은 임기만료 또는 탄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내기학생회 소속 중앙운영위원의 임기는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4.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제53조제2항 중 "표명해야"를 "표명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참여해야"를 "참여하

여야”로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권한) 중앙운영위원회는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의결한다.

제54조제2항 중 “탄핵 안건이 상정된 경우”를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로, “중앙운영위원 1인”을 “중앙운영위원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매 달 1회”를 “2주에 1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2.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의장이 5일 내에 소집한다.

1.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중앙운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8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4. 전학대회에서 안건을 위임했을 때
5. 그 밖에 긴급한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

3. 의장은 회의 24시간 전에 중앙운영위원회의의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제2항제5호의 경우에는 소집공고 기한을 24시간 전으로 함을 예외로 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안건의 상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1. 의장이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2. 중앙운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8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

을 발의한 경우

4. 전학대회에서 안건을 위임한 경우
5. 제5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소집과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6. 중앙운영위원이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발의한 경우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안건의 상정시기) 안건의 상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제5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집되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단, 회칙·세칙·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2. 제5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안건발의 일자로부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소집공고가 되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단, 회칙·세칙·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제57조제1항 중 "안건을 발의"를 "전학대회에 안건을 발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부 문제"를 "세부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행 및 시행일"을 "시행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서와 국장 임명동의안"을 "중앙집행위원회 국서 체계 동의안과 중앙집행위원장 및 국장 임명 동의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집행위원회를 포함한 본회 산하기구"를 "본회 산하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학생회장단 및 집행기구"를 "제67조에 따른 집행기구"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선거시행세칙"을 "세칙"으로,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를 "당선 취소를 의결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기구회장단"을 "자치기구"로, "해당 본회"를 "본회"로, "제소할 경우"를 "제기할 경우에"로, "학생회칙 및 자치규칙에 의거하여"를 "회칙·세칙·규칙 및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에 의거해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은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

제59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감사를 감사원에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제1항 중 "회칙개정안과 세칙·규칙의 제정·폐지안"을 "회칙 개정안과 세칙·규칙 제정·폐지안"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세칙·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를 "세칙·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직속"을 "산하"로, "위원회"를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다"를 "다음 각 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사안"을 각각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고, 예산안 및 결산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5. 위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해 더 이상 존속이 무용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체할 수 있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는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회칙·세칙·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세칙·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2. 제169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관한 사항
  3. 제170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재석과 재석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49조에 따른 전학대회 서면의결 실시안
2. 제64조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 서면의결을 실시하는 안건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장은 제55조제2항제4호의 긴급한 사항에 대해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
  1. 전학대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의 발의안
  2. 전학대회 서면의결 실시안
  3. 그 밖에 회칙·세칙·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사항
2. 서면의결을 실시하는 사항은 재적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재석과 재석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5조 중 "대중"을 "본회 회원"으로 한다.

제69조 중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총학생회장단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를 "전년도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 폐회 후부터 당해 연도 1분기 초 전학대회 폐회 이전까지로 한다."로 한다.

제83조제3항 중 "해당 연도 말"을 "1분기 초"로 한다.

제166조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을 학기"를 "3분기"로, "연도말"을 "1분기 초"로, "결정"을 "심의의결"로 한다.

제154조제2항 중 "『선거시행세칙』"을 "세칙"으로 한다.

제156조제1항 중 "『선거시행세칙』"을 "세칙"으로 한다.

제159조의 제목 중 "선거시행세칙"을 "세칙"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선거시행세칙』"을 "세칙"으로 한다.

제164조의 제목 중 "재정운용세칙"을 "세칙"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재정운용세칙』"을 "세칙

"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 후 5일 후에 발효된다.

제2조(경과조치) 본 회칙 시행 이전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및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본 회칙에 의하여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타 세칙의 개정) 재정운용세칙 제15조제1항 중 "전년도 말"을 "전년도 1분기 초"로, "당해년도 여름학기"를 "당해 연도 3분기 초"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하반기 제2차"를 "1분기 초"로 한다.

##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회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의 회원은 KAIST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사람으로 한다.</li> <li>2. 본회의 정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사람으로 한다.</li> <li>3. 본회의 준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하지 <u>않은</u> 사람으로 한다.</li> <li>4.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li> </ol>	<p>제3조(회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의 회원은 KAIST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사람으로 한다.</li> <li>2. 본회의 정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사람으로 한다.</li> <li>3. 본회의 준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하지 <u>아니한</u> 사람으로 한다.</li> <li>4.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받을 수 있다.</li> </ol>
<p>제7조(구성)</p> <p>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특별기구(이하 <u>산하기구</u>)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결기구: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li> <li>2. 집행기구: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상설위원회</li> <li>3. 자치기구: 학부·학과학생회, 새내기 학생회, 동아리연합회</li> <li>4. 전문기구: 감사원, 문화자치위원회, 소통국제화위원회,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li> <li>5. 특별기구</li> </ol>	<p>제7조(구성)</p> <p>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특별기구(이하 <u>"산하기구"라 한다</u>)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결기구: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li> <li>2. 집행기구: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상설위원회</li> <li>3. 자치기구: 학부·학과학생회, 새내기 학생회, 동아리연합회</li> <li>4. 전문기구: 감사원, 문화자치위원회, 소통국제화위원회,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li> <li>5. 특별기구</li> </ol>
<p>제9조(겸직 금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동시</li> </ol>	<p>제9조(겸직 금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동시</li> </ol>



<p>에 2개 이상 가질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총학생회장단</li> <li>2.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서의 국장</li> <li>3. 각 상설위원회위원장단</li> <li>4. 각 학부·학과학생회장(단)</li> <li>5. 새내기학생회장단</li> <li>6. 동아리연합회장단</li> </ol> <p>2. 제1항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갖게 되었을 때에는 마지막에 갖게 된 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에서는 <u>해임</u>된 것으로 본다</p>	<p>에 2개 이상 가질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총학생회장단</li> <li>2.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서의 국장</li> <li>3. 각 상설위원회위원장단</li> <li>4. 각 학부·학과학생회장(단)</li> <li>5. 새내기학생회장단</li> <li>6. 동아리연합회장단</li> </ol> <p>2. 제1항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갖게 되었을 때에는 마지막에 갖게 된 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에서는 <u>사퇴</u>한 것으로 본다</p>
<p>제10조(기록물 생산·수집·보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확과 신속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본회의 사무처리와 대표자의 행위는 문서로 기록하여 <u>보존</u>해야 한다.</li> <li>2. 본회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적극 <u>노력</u>해야 한다.</li> <li>3. 기록물의 생산·수집 이후에는 이를 임의로 수정·훼손·폐기할 수 없다.</li> <li>4. 그 밖에 기록물 생산·수집·보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u>사무처리세칙</u>」으로 정한다.</li> </ol>	<p>제10조(기록물 생산·수집·보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확과 신속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본회의 사무처리와 대표자의 행위는 문서로 기록하여 <u>보존</u>하여야 한다.</li> <li>2. 본회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적극 <u>노력</u>하여야 한다.</li> <li>3. 기록물의 생산·수집 이후에는 이를 임의로 수정·훼손·폐기할 수 없다.</li> <li>4. 그 밖에 기록물 생산·수집·보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u>세칙</u>으로 정한다.</li> </ol>
<p>제11조(정보공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본회</u> 산하기구 및 기구의 장은 본회가 생산·수집한 기록물이 본회 회원에게 원활히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li> <li>2. 본회의 회원과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본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는 본회의 모든 기록물에 대한 접근권이 있으며 기록물 관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기록물을 열람·활용할 수 있다.</li> <li>3. <u>본회</u> 산하기구는 본회의 회원과 학술적</li> </ol>	<p>제11조(정보공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본회의</u> 산하기구 및 기구의 장은 본회가 생산·수집한 기록물이 <u>본회의</u> 회원에게 원활히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li> <li>2. 본회의 회원과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본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는 본회의 모든 기록물에 대한 접근권이 있으며 기록물 관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기록물을 열람·활용할 수 있다.</li> <li>3. <u>본회의</u> 산하기구는 본회의 회원과 학술적</li> </ol>

<p>목적과 공익을 위해 본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u>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일부만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본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u></li> <li>2. <u>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될 때</u></li> <li>3. <u>계약 내용 등이 사전에 공개되었을 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 운영상의 피해가 우려될 때</u></li> <li>4. <u>그 밖에 정보공개청구 절차 등 정보공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무처리세칙」으로 정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lt;신 설&gt;</u></li> <li>2. <u>&lt;신 설&gt;</u></li> <li>3. <u>&lt;신 설&gt;</u></li> <li>4. <u>&lt;신 설&gt;</u></li> </ol> </li> <li>5. <u>&lt;신 설&gt;</u></li> </ol>	<p>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본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u>&lt;단서 삭제&gt;</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lt;삭 제&gt;</u></li> <li>2. <u>&lt;삭 제&gt;</u></li> <li>3. <u>&lt;삭 제&gt;</u></li> <li>4. <u>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본회 산하기구는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일부만 공개할 수 있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본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u></li> <li>2. <u>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될 때</u></li> <li>3. <u>계약 내용 등이 사전에 공개되었을 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 운영상의 피해가 우려될 때</u></li> <li>4. <u>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때. 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의 종료 이후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u></li> </ol> </li> <li>5. <u>그 밖에 정보공개청구 절차 등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u></li> </ol>
<p>제14조(위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의 의결기구인 <u>학생총회</u>,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순으로 권한이 있다.</li> <li>2.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은 하위 기구의 의사결정에 우선한다.</li> <li>3.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u>상위</u> 의결기</li> </ol>	<p>제14조(위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의 의결기구인 <u>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u>,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순으로 권한이 있다.</li> <li>2.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은 하위 기구의 의사결정에 우선한다.</li> <li>3.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u>상위</u> 의결기</li> </ol>

<p>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p>	<p>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p>
<p>제15조(의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 의결기구의 의장은 <u>총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u></li> <li>2.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li> <li>3.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u>진행해야 한다.</u></li> </ol>	<p>제15조(의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 의결기구의 의장은 <u>회칙·세칙·규칙에 다르게 정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총학생회장으로 한다.</u></li> <li>2.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li> <li>3.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u>진행하여야 한다.</u></li> </ol>
<p>제16조(세칙)</p> <p><u>의결기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결기구운영세칙」에 따른다.</u></p>	<p>제16조(세칙)</p> <p><u>그 밖에 의결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u></p>
<p>제21조(권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체학생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li> <li>2. 비상학생총회는 학생사회의 긴급한 결정을 요하는 중대한 사안을 의결한다.</li> <li>3. <u>학생총회는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을 의결할 수 없다.</u></li> </ol>	<p>제21조(권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체학생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li> <li>2. 비상학생총회는 학생사회의 긴급한 결정을 요하는 중대한 사안을 의결한다.</li> <li>3. <u>&lt;삭 제&gt;</u></li> </ol>
<p>제23조(소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체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u>해당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석 대의원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u></li> <li>2. <u>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u></li> <li>3. <u>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u></li> </ol> </li> <li>2. <u>비상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단, 소집이 요건을 위반하여 이뤄지는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로 소집 결정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중앙운영위원회 재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u></li> <li>2. <u>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요구</u></li> </ol> </li> </ol>	<p>제23조(소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체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u>해당할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u></li> <li>2. <u>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u></li> <li>3. <u>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u></li> </ol> </li> <li>2. <u>제1항제1호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li> </ol>

<p>3. <u>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u></p> <p>4. <u>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u></p> <p>3. <u>의장은 전체학생총회의 경우 개회 10일 이전, 비상학생총회의 경우 개회 1일 이전에 이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u></p> <p>4. <u>&lt;신 설&gt;</u></p> <p>5. <u>&lt;신 설&gt;</u></p> <p>6. <u>&lt;신 설&gt;</u></p>	<p>3. <u>의장은 전체학생총회 개회 10일 전에 학생총회의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u></p> <p>4. <u>비상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단, 소집이 요건을 위반하여 이뤄지는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로 소집 결정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u></li> <li>2. <u>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u></li> <li>3. <u>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u></li> <li>4. <u>본회 회원 2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u></li> </ol> <p>5. <u>제2항제1호는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한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제2호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6. <u>의장은 비상학생총회 개회 1일 전에 학생총회의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u></p>
<p><u>&lt;신 설&gt;</u></p>	<p><u>제23조의2(안건상정)</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전체학생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u></li> <li>2. <u>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u></li> <li>3. <u>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u></li> </ol> </li> </ol>

	<p style="text-align: center;"><u>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u>제1항제1호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li> <li>3. <u>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비상학생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u></li> <li>2. <u>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u></li> <li>3. <u>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u></li> <li>4. <u>본회 회원 2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u></li> </ol> </li> <li>4. <u>제2항제1호는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한 중앙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제2호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li> </ol>
<p>제24조(의사·의결정족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체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u>1/3</u>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본회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li> <li>2. 비상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u>1/10</u>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본회 회원 <u>1/8</u>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li> </ol>	<p>제24조(의사·의결정족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체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u>3분의 1</u>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본회 회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li> <li>2. 비상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u>10분의 1</u>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본회 회원 <u>8분의 1</u> 이상의 재석과 재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li> </ol>
<p>제25조(결과공고)</p> <p>학생총회의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u>대중</u>에게 공고해야 한다.</p>	<p>제25조(결과공고)</p> <p>학생총회의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u>본회 회원</u>에게 공고하여야 한다.</p>
<p>제26조(지위)</p> <p><u>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 이를 통한 의결사항은 전체 학생총회의 의결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u></p>	<p>제26조(지위)</p> <p><u>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본회 최고의 의사결정투표이다. 학생총투표의 의결은 학생총회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u></p>

<p>다.</p>	
<p>제27조(투표권)  <u>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은 학생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u></p>	<p>제27조(투표권)  <u>본회의 회원은 학생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u></p>
<p>제28조(권한)  <u>학생총투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시행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u></li> <li>2. <u>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u></li> <li>3. <u>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u></li> <li>4. <u>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의 탄핵안 발의</u></li> <li>5. <u>그 밖의 본회의 중대한 사안의 경우</u></li> </ol>	<p>제28조(형식)  <u>학생총투표는 본회 회원의 투표의 형식으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lt;삭 제&gt;</li> <li>2. &lt;삭 제&gt;</li> <li>3. &lt;삭 제&gt;</li> <li>4. &lt;삭 제&gt;</li> <li>5. &lt;삭 제&gt;</li> </ol>
<p>제29조(형식)  <u>학생총투표는 본회 회원의 투표의 형식으로 한다.</u></p>	<p>제29조(권한)  <u>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와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u></p>
<p>제30조(시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학생총투표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시행결정에 따라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단, 제28조제4호의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 중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u></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lt;신 설&gt;</li> <li>2. &lt;신 설&gt;</li> <li>3. &lt;신 설&gt;</li> <li>4. &lt;신 설&gt;</li> <li>5. &lt;신 설&gt;</li> </ol>	<p>제30조(시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학생총투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단,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u></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가 있을 때</u></li> <li>2. <u>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가 있을 때</u></li> <li>3. <u>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가 있을 때</u></li> <li>4. <u>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라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이 학생총투표로 부의되었을 때</u></li> </ol>

<p>2. <u>학생총회 의장은 학생총투표의 시행을 시행 7일 이전에 이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u></p> <p>3. <u>&lt;신 설&gt;</u></p>	<p>5. <u>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되었을 때</u></p> <p>2. <u>제1항제1호의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3. <u>의장은 시행 7일 전에 학생총투표의 시행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u></p>
<p><u>&lt;신 설&gt;</u></p>	<p><u>제30조의2(안건상정)</u>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은 학생총투표에 안건을 상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li> <li>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li> <li>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li> <li>4. 전학대회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라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이 학생총투표로 부의된 경우</li> <li>5.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li> </ol>
<p><u>제31조(성립·의결·요건)</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총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li> <li>2.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명부상 총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부정한 목적으로 명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ol>	<p><u>제31조(성립·의결 요건)</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총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li> <li>2.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명부상 총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u>&lt;단서 삭제&gt;</u></li> </ol>
<p><u>제32조(결과공고)</u></p>	<p><u>제32조(결과공고)</u></p>

<p>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u>개표완료시부터</u> 24시간 이내에 <u>중앙투표관리위원회</u>가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p>	<p>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u>개표완료 이후</u> 24시간 이내에 <u>학생총회 의장</u>이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p>
<p>제33조(정책투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책투표는 본회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정책 결정·집행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다.</li> <li>2. 정책투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u>시행 결정</u>에 따라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li> <li>2. 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li> <li>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u>1/20</u>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li> </ol> </li> <li>3. 정책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정책투표 시행일을 <u>결정</u>한다.</li> <li>4. 정책투표는 <u>제29조</u>에 따른 투표권자 <u>1/8</u> 이상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li> <li>5. 정책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u>개표완료시부터</u> 24시간 이내에 학생총회 의장이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li> </ol>	<p>제33조(정책투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책투표는 본회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정책 결정·집행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다.</li> <li>2. 정책투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u>시행일 의결</u>에 따라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li> <li>2. 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li> <li>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u>20분의 1</u>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li> </ol> </li> <li>3. 정책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정책투표 시행일을 <u>의결</u>한다.</li> <li>4. 정책투표는 <u>제27조</u>에 따른 투표권자 <u>8분의 1</u> 이상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li> <li>5. 정책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u>개표완료 이후</u> 24시간 이내에 학생총회 의장이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li> </ol>
<p>제34조(지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u>전학대회</u>)는 학생총회의 권한을 위임 받은 학생총회 아래 최고의결기구이다.</li> <li>2. 전학대회의 의결은 학생총회의 <u>의결과 동등한</u> 효력을 가진다.</li> </ol>	<p>제34조(지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u>전학대회</u>"라 한다)는 학생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학생총회 아래 최고의결기구이다.</li> <li>2. 전학대회의 의결은 학생총회의 <u>의결에 준하는</u> 효력을 가진다.</li> </ol>
<p>&lt;신 설&gt;</p>	<p>제34조의2(구성)</p> <p>전학대회는 제35조에서 정한 전학대회 대의원으로 구성된다.</p>
<p>제35조(대의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u>전학대회의 대의원</u>이 된다.</li> </ol>	<p>제35조(대의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u>전학대회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u>이 된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총학생회장단</li> <li>2. 동아리연합회장단</li> <li>3. <u>각 학부·학과학생회장 또는 부회장이 존재하는 경우 회장단 중 1인</u></li> <li>4. 새내기학생회장단</li> <li>5. 각 자치기구 소속 인원 비례 대의원</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u>대의원 임기는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대의원 임기시작 전까지로 하며, 임기만료 또는 탄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단, 새내기학생회는 예외로 두며 자치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u></li> <li>3. <u>전학대회의 대의원은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소속 회원의 합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 단,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이 없거나 자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u></li> <li>4. <u>중앙집행위원회는 전학대회 대의원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u></li> </ol> <p>5. <u>&lt;신 설&gt;</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총학생회장단</li> <li>2. 동아리연합회장단</li> <li>3. <u>각 학부·학과학생회장</u></li> <li>4. 새내기학생회장단</li> <li>5. 각 자치기구 소속 인원 비례 대의원 :</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u>대의원 임기는 전년도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 폐회 후부터 당해 연도 1분기 초 전학대회 폐회 이전까지로 하며, 그 밖에 대의원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대의원은 임기만료·탄핵·사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u></li> <li>3. <u>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내기학생회 소속 대의원 임기는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u></li> <li>4. <u>전학대회의 대의원은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소속 회원의 합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 단,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이 없거나 자치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u></li> <li>5. <u>중앙집행위원회는 전학대회 대의원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u></li> </ol>
<p><u>&lt;신 설&gt;</u></p>	<p><u>제35조의2(대의원 정수)</u>  <u>대의원 정수는 50인으로 하되, 비례 대의원석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u></p>
<p>제36조(대의원의 의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의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li> <li>2. 대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u>표명</u>해야 한다.</li> </ol>	<p>제36조(대의원의 의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의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li> <li>2. 대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u>표명</u>하여야 한다.</li> </ol>

<p>3. 대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p>	<p>3. 대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p>
<p>&lt;신설&gt;</p>	<p>제36조의2(권한)  <u>전학대회는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의결한다.</u></p>
<p>제37조(의장)  <u>전학대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경우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u></p>	<p>제37조(의장)  1. <u>전학대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u>  2. <u>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u></p>
<p>제38조(소집)  1. 전학대회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 및 해당 연도 말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전학대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의장이 14일 내에 소집한다.  1. <u>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u>  2. <u>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u>  3. <u>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1/5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u>  4. <u>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4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u>  5. <u>학생총회의 안건위임</u>  6. <u>총학생회장단 탄핵안 발의</u>  7. <u>상설위원회위원장단 또는 전문기구장 해임안 발의</u>  8. <u>회칙개정안 또는 세칙·규칙 제정안 발의</u>  3. 의장은 <u>개회일 5일 이전에 회의를 대중</u></p>	<p>제38조(소집)  1. 전학대회 정기회의는 <u>제165조제2항에 따른 매 분기 초에 의장이 소집한다.</u>  2. 전학대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의장이 14일 내에 소집한다.  1. <u>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u>  2. <u>중앙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u>  3. <u>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u>  4. <u>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4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u>  5. <u>학생총회에서 안건을 위임했을 때</u>  6. <u>전학대회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되었을 때</u>  7. <u>상설위원회 위원장단 또는 전문기구장 해임안이 발의되었을 때</u>  8. <u>제185조에 따른 회칙 개정안 또는 제191조제3항에 따른 세칙·규칙 제정안 또는 폐지안이 발의되었을 때</u>  3. 의장은 <u>개회 5일 전에 전학대회의 소집</u></p>

<p>에게 공고해야 한다. 단, 임시회의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재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p> <p>4. &lt;후략&gt;</p>	<p>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단, 임시회의의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 재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p> <p>4. &lt;후략&gt;</p>
<p>제39조(업무)</p> <p><u>전학대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중앙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안건</u></li> <li>2. <u>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u></li> <li>3. <u>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1/5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u></li> <li>4. <u>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4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u></li> <li>5. <u>학생총회에서 위임한 안건</u></li> <li>6. <u>그 밖에 전학대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u></li> </ol>	<p>제39조(안건상정)</p> <p><u>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전학대회에 안건을 상정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u></li> <li>2. <u>중앙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u></li> <li>3. <u>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u></li> <li>4. <u>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4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u></li> <li>5. <u>학생총회에서 안건을 위임한 경우</u></li> <li>6. <u>전학대회 의장이 그 밖에 전학대회의 심의·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발의한 경우</u></li> </ol>
<p>&lt;신설&gt;</p>	<p>제39조의2(안건의 상정 시기)</p> <p><u>안건의 상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제3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제3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집되는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단, 회칙·세칙·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u></li> <li>2. <u>제39조제6호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안건발의 일자로부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소집공고가 되는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단, 회칙·세칙·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u></li> </ol>
<p>제40조(학생총회·학생총투표에 관한 사항)</p> <p><u>전학대회는 학생총회 소집 및 학생총투표</u></p>	<p>제40조(학생총회·학생총투표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전학대회는 학생총회 소집 및 학생총투</u></li> </ol>

<p><u>시행을 의결할 수 있으며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u></p>	<p><u>표 시행을 의결할 수 있다.</u> 2. <u>전학대회는 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u></p>
<p>제41조(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관한 사항) 전학대회는 <u>발의된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하거나 학생총투표로 부의할 수 있다.</u></p>	<p>제41조(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관한 사항) 전학대회는 <u>대의원 과반수의 연서로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을 심의·의결하거나 학생총투표로 부의할 수 있다.</u></p>
<p>제43조(산하기구 관련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학대회는 <u>상설위원회위원장단 및 전문기구장의 인준·해임안을 의결한다.</u></li> <li>2. 전학대회는 <u>상설위원회·전문기구·특별기구의 인준·징계·제명·합병안을 의결한다.</u></li> <li>3. 전학대회는 <u>감사보고서 및 번역감독보고서 결과에 따른 산하기구의 예산삭감안을 의결할 수 있다.</u></li> </ol>	<p>제43조(산하기구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학대회는 <u>상설위원회 위원장·상설위원회 부위원장·전문기구장의 인준·해임안을 심의·의결한다.</u></li> <li>2. 전학대회는 <u>상설위원회·전문기구·특별기구의 인준·징계·제명·합병안을 심의·의결한다.</u></li> <li>3. 전학대회는 <u>감사보고서 및 번역감독보고서 결과에 따른 산하기구의 예산삭감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u></li> </ol>
<p>제44조(징계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학대회는 <u>회원, 중앙운영위원, 전학대회 대의원</u>이 회칙·세칙·규칙을 위반할 때 징계할 수 있다.</li> <li>2. 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개 경고와 사과문 게재 요구</li> <li>2. 피선거권의 박탈</li> <li>3. 선거권의 박탈</li> <li>4. 제4조제4항에 따른 본회 자치활동의 참여권 박탈</li> </ol> </li> <li>3. 중앙운영위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학대회에서의 경고와 사과 요구</li> <li>2. 중앙운영위원회 출석정지</li> <li>3. 중앙운영위원 자격정지</li> </ol> </li> <li>4. <u>전학대회 대의원</u>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학대회에서의 경고와 사과 요구</li> </ol> </li> </ol>	<p>제44조(징계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학대회는 <u>회원, 중앙운영위원, 대의원</u>이 회칙·세칙·규칙을 위반할 때 징계할 수 있다.</li> <li>2. 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개 경고와 사과문 게재 요구</li> <li>2. 피선거권의 박탈</li> <li>3. 선거권의 박탈</li> <li>4. 제4조제4항에 따른 본회 자치활동의 참여권 박탈</li> </ol> </li> <li>3. 중앙운영위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학대회에서의 경고와 사과 요구</li> <li>2. 중앙운영위원회 출석정지</li> <li>3. 중앙운영위원 자격정지</li> </ol> </li> <li>4. <u>대의원</u>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학대회에서의 경고와 사과 요구</li> </ol> </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전학대회 출석정지</li> <li>3. 대의원 자격정지 (<u>중앙운영위원직을 겸하는 대의원의 경우 중앙운영위원 자격도 정지</u>)</li> <li>5. 총학생회장단에게는 제2항제4호와 제3항제2호 및 제3호,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징계를 할 수 없다.</li> <li>6.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조사위원회 혹은 관련 전문기구를 통해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징계 대상자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li> <li>7. &lt;신 설&gt;</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전학대회 출석정지</li> <li>3. 대의원 자격정지. 단, 해당 대의원이 <u>중앙운영위원직을 겸하는 경우 중앙운영위원 자격도 정지한다.</u></li> <li>5. 총학생회장단에게는 제2항제4호와 제3항제2호 및 제3호,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징계를 할 수 없다.</li> <li>6.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조사위원회 혹은 관련 전문기구를 통해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징계 대상자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li> <li>7. <u>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u></li> </ol>
<p>제45조(재정·감사 관련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학대회는 <u>사전심의를 거친</u>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한다.</li> <li>2. 전학대회는 <u>사전심의를 거친</u>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심의·의결한다.</li> <li>3. 전학대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감사보고서를 <u>채택한다.</u></li> <li>4. 전학대회는 본회 <u>회계의</u> 분배 비율 및 학생회비의 <u>인상·인하</u>를 결정할 수 있다.</li> </ol>	<p>제45조(재정·감사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학대회는 <u>중앙운영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하여 의결한</u>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한다.</li> <li>2. 전학대회는 <u>중앙운영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하여 의결한</u>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심의·의결한다.</li> <li>3. 전학대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감사보고서를 심의·의결한다.</li> <li>4. 전학대회는 본회 <u>재정의</u> 분배 비율 및 학생회비의 <u>인상·인하</u>안을 심의·의결한다.</li> </ol>
<p>제47조(대외적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학대회는 학교 당국에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li> <li>2. 전학대회는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가입·탈퇴를 심의·의결한다. 총학생회장단은 연대 단체 활동을 전학대회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전학대회는 활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변경 및 취소를 의결할 수 있다.</li> <li>3. <u>회원 전체의 명의로</u> 소송을 진행할 필</li> </ol>	<p>제47조(대외적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학대회는 학교 당국에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li> <li>2. 전학대회는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가입·탈퇴를 심의·의결한다. 총학생회장단은 연대 단체 활동을 전학대회 정기회의 및 <u>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u>에 보고하여야 하며 전학대회는 활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변경 및 취소를 의결할 수 있다.</li> </ol>

<p>요가 있는 문제가 발생할 때, 전학대회는 총학생회장단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소송권을 위임할 수 있다.</p>	<p>3. <u>본회의 명의로</u>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발생할 때, 전학대회는 총학생회장단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소송권을 위임하거나 소송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p>
<p>제48조(의사·의결정족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학대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u>출석 대의원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u></li> <li>2. 다음 각 호의 사항은 <u>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상설위원회위원장단 및 전문기구장 해임에 대한 사항</u></li> <li>2. <u>상설위원회·전문기구·특별기구의 인준·제명·징계·합병에 대한 사항</u></li> <li>3. <u>학생회비의 인상·인하에 관한 사항</u></li> <li>4. <u>회칙 개정 및 세칙·규칙의 제정·폐지, 원규 개정안 발의에 대한 사항</u></li> <li>5. <u>&lt;신 설&gt;</u></li> <li>6. <u>&lt;신 설&gt;</u></li> <li>7. <u>&lt;신 설&gt;</u></li> </ol> </li> <li>3. 다음 각 호의 사항은 <u>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전체학생총회 소집 및 학생총투표 시행에 대한 결정</u></li> <li>2. <u>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대한 사항</u></li> <li>3. <u>&lt;신 설&gt;</u></li> </ol> </li> </ol>	<p>제48조(의사·의결정족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학대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u>회칙·세칙·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li> <li>2. 다음 각 호의 사항은 <u>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상설위원회 위원장·상설위원회 부위원장·전문기구장 해임에 관한 사항</u></li> <li>2. <u>상설위원회·전문기구·특별기구의 인준·제명·징계·합병에 관한 사항</u></li> <li>3. <u>학생회비의 인상·인하에 관한 사항</u></li> <li>4. <u>회칙 개정 및 세칙·규칙의 제정·폐지, 원규 개정안 발의에 관한 사항</u></li> <li>5. <u>전체학생총회 소집 및 학생총투표 시행에 관한 사항</u></li> <li>6. <u>제170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u></li> <li>7. <u>기금의 타 회계 전용에 관한 사항</u></li> </ol> </li> <li>3. 다음 각 호의 사항은 <u>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lt;삭 제&gt;</u></li> <li>2. <u>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대한 사항</u></li> <li>3. <u>제49조에 따라 서면의결을 실시하는 안건</u></li> </ol> </li> </ol>
<p>제49조(서면의결)</p> <p><u>제38조제4항의 긴급한 사안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있다.</u></p>	<p>제49조(서면의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의장은 제38조제4항의 긴급한 사항에 대해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있다.</u></li> <li>2. <u>서면의결을 실시하는 사항은 재적 대의</u></li> </ol>

	원 3분의 2 이상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0조(결과공고)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50조(결과 공고)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본회 회 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의2(구성) 중앙운영위원회는 제52조에서 정한 중앙운 영위원으로 구성된다.
제52조(중앙운영위원)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운 영위원이 된다. 1. 총학생회장단 2. 각 자치기구회장 혹은 회장단 중 전학대회 대의원 당연직인 사람 1 인 3. <신 설> 4. <신 설> 2. 중앙운영위원의 임기는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 임기만료 또는 탄핵 또 는 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 하지 않는다. 단, 새내기학생회는 예외 로 두며 자치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한 다. 3.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명부 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4. <신 설>	제52조(중앙운영위원)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운 영위원이 된다. 1. 총학생회장단 2. 동아리연합회장 3. 각 학부·학과학생회장 4. 새내기학생회장 2. 중앙운영위원 임기는 전년도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 폐회 후부터 당해 연도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 폐회 이전까지 로 하며,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 다. 중앙운영위원은 임기만료 또는 탄 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직 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내기학생회 소 속 중앙운영위원의 임기는 새내기학생 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4.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명부 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제53조(중앙운영위원의 의무) 1. 중앙운영위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 다. 2. 중앙운영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 반에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해 야 한다.	제53조(중앙운영위원의 의무) 1. 중앙운영위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 다. 2. 중앙운영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 반에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하 여야 한다.

<p>3. 중앙운영위원회는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p>	<p>3. 중앙운영위원회는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p>제53조의2(권한) 중앙운영위원회는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의결한다.</p>
<p>제54조(의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li> <li>2.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경우 중앙운영위원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li> </ol>	<p>제54조(의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li> <li>2.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 중앙운영위원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li> </ol>
<p>제55조(소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매 달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li> <li>2.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장의 소집요구</li> <li>2. 중앙운영위원 1/5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li> <li>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li> <li>4. 그 밖에 긴급한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이 있을 시</li> <li>5. &lt;신 설&gt;</li> </ol> </li> <li>3. 제2항에 따른 소집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7일 내에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li> </ol>	<p>제55조(소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2주에 1회 의장이 소집한다.</li> <li>2.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의장이 5일 내에 소집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li> <li>2. 중앙운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li> <li>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8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li> <li>4. 전학대회에서 안건을 위임했을 때</li> <li>5. 그 밖에 긴급한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이 있을 때</li> </ol> </li> <li>3. 의장은 회의 24시간 전에 중앙운영위원회 의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제2항제5호의 경우에는 소집 공고 기한을 24시간 전으로 함을 예외로 한다.</li> </ol>



<p>4. <u>의장은 회의 3일 이전에 회의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단, 제2항제4호의 경우 예외로 한다.</u></p>	<p>4. <u>&lt;삭 제&gt;</u></p>
<p><u>제56조(업무)</u>  <u>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u></li> <li>2. <u>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u></li> <li>3. <u>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u></li> <li>4. <u>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u></li> <li>5. <u>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u></li> <li>6. <u>&lt;신 설&gt;</u></li> </ol>	<p><u>제56조(안건상정)</u>  <u>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의장이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u></li> <li>2. <u>중앙운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u></li> <li>3. <u>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8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u></li> <li>4. <u>전학대회에서 안건을 위임한 경우</u></li> <li>5. <u>제5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소집과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u></li> <li>6. <u>중앙운영위원이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발의한 경우</u></li> </ol>
<p><u>&lt;신 설&gt;</u></p>	<p><u>제56조의2(안건의 상정시기)</u>  <u>안건의 상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제5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집되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단, 회칙·세칙·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u></li> <li>2. <u>제5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안건발의 일자로부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소집공고가 되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단, 회칙·세칙·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u></li> </ol>

<p>제57조(의결기구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u>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u></li> <li>2.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총회와 전학대회의 <u>개회</u>, 학생총투표의 시행에 관한 <u>세부 문제를</u> 논의하고 결정한다.</li> <li>3. 중앙운영위원회는 정책투표의 실시 요구에 따라 정책투표의 <u>시행 및 시행일을</u> 의결한다.</li> </ol>	<p>제57조(의결기구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u>전학대회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u></li> <li>2.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총회와 전학대회의 <u>소집</u>, 학생총투표의 시행에 관한 <u>세부 사항을</u> 논의하고 결정한다.</li> <li>3. 중앙운영위원회는 정책투표의 실시 요구에 따라 정책투표의 <u>시행일을</u> 의결한다.</li> </ol>
<p>제58조(집행기구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서와 국장 임명동의안을 의결한다.</li> <li>2.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를 포함한 <u>본회 산하기구</u>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이를 조정한다. 단,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 신속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보고하고 심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li> <li>3. 중앙운영위원회는 <u>총학생회장단 및 집행기구</u>의 결정과 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li> </ol>	<p>제58조(집행기구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 국서 체계 동의안과 중앙집행위원장 및 국장 임명 동의안을 의결한다.</li> <li>2. 중앙운영위원회는 <u>본회 산하기구</u>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이를 조정한다. 단,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 신속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보고하고 심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li> <li>3. 중앙운영위원회는 <u>제67조에 따른 집행기구</u>의 결정과 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li> </ol>
<p>제59조(선거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 일정을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li> <li>2. 중앙운영위원회는 총선거결과에 대하여 본회 회원이 이의를 제소할 경우 이를 <u>선거시행세칙에</u> 의거하여 심사하여 <u>당선을 취소</u>할 수 있다.</li> <li>3. 중앙운영위원회는 자치기구회장단 선거에 대하여 <u>해당 본회 회원</u>이 이의를 제소할 경우 이를 <u>학생회칙 및 자치규칙에</u> 의거하여 심사하여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li> <li>4. <u>전학대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u> 취소하는 취지의 의결을 할 수 없다.</li> </ol>	<p>제59조(선거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 일정을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li> <li>2. 중앙운영위원회는 총선거결과에 대하여 본회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u>세칙에</u> 의거해서 심사하여 <u>당선 취소를</u> 의결할 수 있다.</li> <li>3. 중앙운영위원회는 <u>자치기구</u> 선거에 대하여 <u>본회 회원</u>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이를 <u>회칙·세칙·규칙 및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에</u> 의거해서 심사하여 당선 취소를 의결할 수 있다.</li> <li>4. <u>&lt;삭 제&gt;</u></li> </ol>

<p>5. <u>제3항에 규정된 사항은 서면의결 형태로 의결 불가능하다.</u></p>	<p>5. <u>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은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u></p>
<p>제59조의2(재정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사전심의하여 의결한다.</li> <li>2.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사전심의하여 의결한다</li> <li>3. <u>&lt;신 설&gt;</u></li> </ol>	<p>제59조의2(재정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사전심의하여 의결한다.</li> <li>2.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사전심의하여 의결한다.</li> <li>3. <u>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감사를 감사원에 요구할 수 있다.</u></li> </ol>
<p>제60조(회칙·세칙·규칙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에 <u>회칙개정안과 세칙·규칙의 제정·폐지안을</u> 발의할 수 있다.</li> <li>2. 중앙운영위원회는 <u>세칙·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u></li> </ol>	<p>제60조(회칙·세칙·규칙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에 <u>회칙 개정안과 세칙·규칙 제정·폐지안을</u> 발의할 수 있다.</li> <li>2. 중앙운영위원회는 <u>세칙·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u></li> </ol>
<p>제62조(위원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운영위원회는 특정 기간 동안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u>직속 위원회</u>를 설치할 수 있다.</li> <li>2. 위원회의 종류는 <u>다음과 같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임위원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u>사안</u>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위원회</li> <li>2. 조사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면서 징계 또는 본회와 관련한 <u>사안</u>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 검토를 진행하는 위원회</li> <li>3. 준비위원회: 본회 차원의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u>사안</u>을 담당하는 기구의 설립을 준비하는 위원회</li> </ol> </li> <li>3. <u>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정기적인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u></li> <li>4. <u>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해 더 이상 존속이 무용할 경우,</u></li> </ol>	<p>제62조(위원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u>산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u>를 설치할 수 있다.</li> <li>2. 위원회의 종류는 <u>다음 각 호로 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임위원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u>사항</u>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위원회</li> <li>2. 조사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면서 징계 또는 본회와 관련한 <u>사항</u>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 검토를 진행하는 위원회</li> <li>3. 준비위원회: 본회 차원의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u>사항</u>을 담당하는 기구의 설립을 준비하는 위원회</li> </ol> </li> <li>3. <u>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본회의 운영 사항을 보고하고, 예산안 및 결산을 제출하여야 한다.</u></li> <li>4. <u>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운영</u></li> </ol>

<p><u>중앙운영위원회의</u> 의결에 따라 해체한다.</p> <p>5. <u>&lt;신 설&gt;</u></p>	<p><u>위원회에</u>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p> <p>5. <u>위원회가</u> 그 목적을 달성해 더 이상 존속이 무용할 경우에 <u>중앙운영위원회</u> 의결에 따라 해체할 수 있다.</p>
<p>제63조(의사·의결정족수)</p> <p><u>중앙운영위원회는 특별한 단서가 없는 사항에 대해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제63조(의사·의결정족수)</p> <p>1. <u>중앙운영위원회는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회칙·세칙·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2. <u>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1. <u>세칙·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u></p> <p>2. <u>제169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u></p> <p>3. <u>제170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u></p> <p>3. <u>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재석과 재석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1. <u>제49조에 따른 전학대회 서면의결 실시안</u></p> <p>2. <u>제64조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 서면의결을 실시하는 안건</u></p>
<p>제64조(서면의결)</p> <p><u>서면의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u></p> <p>1. <u>전학대회 심의를 필요로 하는 안건의 상정안</u></p> <p>2. <u>전학대회 서면의결 실시안</u></p>	<p>제64조(서면의결)</p> <p>1. <u>의장은 제55조제2항제4호의 긴급한 사항에 대해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u></p> <p>1. <u>전학대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의 발의안</u></p> <p>2. <u>전학대회 서면의결 실시안</u></p>

<p>3. <u>그 밖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사항</u></p>	<p>3. <u>그 밖에 회칙·세칙·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사항</u></p> <p>2. <u>서면의결을 실시하는 사항은 재적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재석과 재석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제65조(결과공고)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u>대중에게</u> 공고해야 한다.</p>	<p>제65조(결과 공고)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u>본회 회원에게</u> 공고하여야 한다.</p>
<p>제69조(임기)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u>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총학생회장단 임기시작 전까지</u>로 한다. 단, 제153조제1항의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고 익년 3월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제86조의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종료 직후부터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 시점까지로 한다.</p>	<p>제69조(임기)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u>전년도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 폐회 후부터 당해 연도 1분기 초 전학대회 폐회 이전까지</u>로 한다. 단, 제153조제1항의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고 익년 3월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제86조의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종료 직후부터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 시점까지로 한다.</p>
<p>제83조(구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운영위원회는 제82조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지체 없이 해당 사항 및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해야 한다.</li> <li>2. 모든 중앙운영위원은 공고 후 10일 내에 소속 기구에서 임명한 1인 이상을 비상대책위원으로 파견해야 한다. 단, 소속 인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학부·학과학생회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li> <li>3. 중앙운영위원회는 모집공고 후 10일 내에 모집한 본회 회원 및 소속 기구에서 파견한 위원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11월 선거무산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u>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u>에서 구성한다.</li> </ol>	<p>제83조(구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운영위원회는 제82조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지체 없이 해당 사항 및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해야 한다.</li> <li>2. 모든 중앙운영위원은 공고 후 10일 내에 소속 기구에서 임명한 1인 이상을 비상대책위원으로 파견해야 한다. 단, 소속 인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학부·학과학생회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li> <li>3. 중앙운영위원회는 모집공고 후 10일 내에 모집한 본회 회원 및 소속 기구에서 파견한 위원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11월 선거무산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u>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u>에서 구성한다.</li> </ol>
<p>제166조(회계 분류)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u>가을 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 및 연도말 정기 전학대회</u>에서 다음 반기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p>	<p>제166조(회계 분류)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u>3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 및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u>에서 다음 반기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p>

<p>비율을 결정한다. 만약, 해당 분배 비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전 반기의 분배 비율을 계속하여 적용한다. 단,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회계: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및 집행기구,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li> <li>2. 기층기구회계: 학부·학과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 재정지원</li> <li>3. 격려기금: 회칙에 따라 정해진 본회 각 기구 선출직 및 국장 활동비 지원</li> <li>4. 문화자치기금: 본회 회원의 문화 진흥을 위한 자치 사업 지원</li> </ol>	<p>율을 <u>심의·의결</u>한다. 만약, 해당 분배 비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전 반기의 분배 비율을 계속하여 적용한다. 단,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회계: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및 집행기구,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li> <li>2. 기층기구회계: 학부·학과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 재정지원</li> <li>3. 격려기금: 회칙에 따라 정해진 본회 각 기구 선출직 및 국장 활동비 지원</li> <li>4. 문화자치기금: 본회 회원의 문화 진흥을 위한 자치 사업 지원</li> </ol>
<p>제154조(선거권·피선거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li> <li>2. 본회 정회원 중 선거권을 가진 회원 중 「<u>선거시행세칙</u>」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사람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li> </ol>	<p>제154조(선거권·피선거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li> <li>2. 본회 정회원 중 선거권을 가진 회원 중 <u>세칙</u>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사람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li> </ol>
<p>제156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총학생회장단 선거 및 회칙과 「<u>선거시행세칙</u>」에 부합하는 진행을 위탁한 자치기구회장단 선거(이하 총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li> <li>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의 제반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li> <li>3.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 또는 7 또는 9인의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하고 위원장단은 내부호선한다.</li> <li>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연도 총선거 및 자치기구 회장단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li> </ol>	<p>제156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총학생회장단 선거 및 회칙과 <u>세칙</u>에 부합하는 진행을 위탁한 자치기구회장단 선거(이하 총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li> <li>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의 제반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li> <li>3.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 또는 7 또는 9인의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하고 위원장단은 내부호선한다.</li> <li>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연도 총선거 및 자치기구 회장단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li> </ol>

<p>제159조(선거시행세칙)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u>선거시행세칙</u>」으로 정한다.</p>	<p>제159조(세칙)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u>세칙</u>으로 정한다.</p>
<p>제164조(재정운용세칙)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사항은 「<u>재정운용세칙</u>」으로 정한다.</p>	<p>제164조(세칙)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사항은 <u>세칙</u>으로 정한다.</p>

#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목적 및 경위

## 1. 개정 목적 및 경위

현행 학생회칙의 자구 및 체계를 대한민국 법령 수준으로 정비하여 학생회칙의 가독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을 제안함.

전반적인 개정 경위는 다음과 같음.

첫째, 조문을 기술하는 표현, 용어를 통일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함.

가. 본딴말로 통일하여 조문을 기술함: 조문을 작성할 때에는 '준말'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본딴말'로 통일함. («않은»-> «아니한», «해야한다»-> «하여야 한다», «~해»-> «~하여»)

나. 하여야 한다, 한다, 할 수 있다를 쓰임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의무 부과, 서술, 권능 부여 등의 구분을 명확히 함

다. 본회의 회원'으로 표현 통일: 본회 회원', '본회의 회원' 등의 용어는 '본회의 회원'으로 통일하되 '본회의 회원'을 사용했을 때에 문장이 어색해지는 경우에만 '본회 회원'으로 기술함.

라. 본회에서 공고의 수신자는 본회 회원이 됨. 이에 회의 결과를 공고하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

둘째, 체계 정비를 정비함.

가. 학생회칙에서 그에 부수되는 세칙에 위임할 때에 구체적인 세칙명을 언급하지 않도록 개정함. 법령에서 위임 입법을 하는 것처럼 위임 규정명까지 기술하지 아니함.

- 1) 여러 대학의 총학생회 학생회칙에서 위임을 할 때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세칙 또는 규칙)의 이름까지 언급하여 기술하고 있음. 하지만 법령에서 위임 입법을 할 때에 구체적인 법률명을 기술하지는 아니함.
- 2) 예를 들어, 헌법에서 법률로 위임할 때 법률명을 기술하지는 않음. 헌법 제41조 <전략>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 3) 총학생회의 역할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위임한 업무·권한에 대하여 하나의 규정으로만 정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 명칭을 언급하여 기술하지 아니하고 "세칙으로 정한다."로 통일함.

나. 의결기구 부분 제2장 제2절~제5절을 지위, 구성(투표권), 형식, 권한, 소집(시행), 의사의결정족수, 결과공고로 각 의결기구 각 절의 조항 순서를 통일함.

셋째, 국회법을 차용하여 의결기구 관련 조문의 자구와 체계를 정비함

가. 소집 요건, 의사의결정족수, 결과 공고를 기술하는 법령을 참고하여 소집 요건에 관한 자구를 정비함.



- 나. 전학대회 안건의 상정 요건을 정비함으로써 전학대회 운영방식을 명확하게 함.
- 다.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던 안건의 상정시기를 규정해 안건 상정의 근거를 분명히 하고 절차를 명확히 함.

넷째,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였으며, 오탈자나 조항의 잘못된 인용을 정정함.

가. 약칭 표현을 통일함: 약칭을 사용할 때에는 '(이하 "OOO"이라 한다)'와 같이 작성함

나. 분수를 'A/B'가 아닌 'A분의 B' 형식으로 기술함.

각 장·절에 대한 개정 경위는 다음과 같음.

제1장: 어법과 기타 표현상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고, 전반적으로 조항을 체계화함. 또한,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비공개 및 일부만 공개할 수 있는 새로운 경우를 추가함.

제2장 제1절: 의결기구 전반에 필요한 통칙 내용을 정비함.

제2장 제2절: 학생총회의 소집 요건, 안건 상정 등을 정비하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학생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제2장 제3절: 학생총투표의 권한, 소집 요건, 안건 상정 등을 정비하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학생회칙 상에 규정되어 있는 의결기구 중 유일하게 투표의 형식을 가지는 학생총투표의 의미의 명확성을 도모함. 학생총투표의 효력은 학생총회와 동일하기에 이를 명확히 기술하였으며, 학생총회의 권한과 시행에 관하여서도 다른 의결기구의 조문과 그 형식을 통일함.

제2장 제4절: 학생회칙의 가독성을 높이고, 조문상 상설위원회 위원장단으로 묶여 있는 상설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다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 회칙과 모순적인 부분을 지니고 있는 부분을 수정하며, 기존에 명시되지 않았던 전학대회의 안건 상정, 안건의 상정 시기를 명시하고 법조문 체계와 분수 표기법을 통일시키기 위함.

제2장 제5절: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 요건, 안건 상정, 안건의 상정 시기, 권한 등을 정비하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중앙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의사결정 과정을 구체화하고자 함.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감사 요구 권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본회 의결기구 운영과 투명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본회 회원이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그 결과를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에 개정의 목표를 둬.

## 2. 조문별 개정 목적 및 경위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회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의 회원은 KAIST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사람으로 한다.</li> <li>2. 본회의 정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사람으로 한다.</li> <li>3. 본회의 준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하지 <u>않은</u> 사람으로 한다.</li> <li>4.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li> </ol>	<p>제3조(회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의 회원은 KAIST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사람으로 한다.</li> <li>2. 본회의 정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사람으로 한다.</li> <li>3. 본회의 준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하지 <u>아니한</u> 사람으로 한다.</li> <li>4.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받을 수 있다.</li> </ol>
<b>목적 및 경위</b>	<p><b>1. 자구 정비: 본딿말로 통일하여 조문을 기술함.</b></p> <p>가. 조문을 작성할 때에는 '준말'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본딿말'로 통일함. (「않은」 -&gt; 「아니한」, 「해야한다」 -&gt; 「하여야 한다」, 「~해」 -&gt; 「~하여」)</p>

<p>제7조(구성)</p> <p>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특별기구(이하 <u>산하기구</u>)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결기구: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li> <li>2. 집행기구: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상설위원회</li> <li>3. 자치기구: 학부·학과학생회, 새내기 학생회, 동아리연합회</li> <li>4. 전문기구: 감사원, 문화자치위원회, 소통국제화위원회,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li> <li>5. 특별기구</li> </ol>	<p>제7조(구성)</p> <p>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특별기구(이하 "<u>산하기구</u>"라 한다)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결기구: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li> <li>2. 집행기구: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상설위원회</li> <li>3. 자치기구: 학부·학과학생회, 새내기 학생회, 동아리연합회</li> <li>4. 전문기구: 감사원, 문화자치위원회, 소통국제화위원회,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li> <li>5. 특별기구</li> </ol>
<b>목적 및 경위</b>	<p><b>1. 자구 정비: 약칭 표현을 통일함.</b></p> <p>가. 약칭을 사용할 때에는 '(이하 "OOO"이라 한다)'와 같이 작성함.</p>

제9조(검직 금지)	제9조(검직 금지)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가질 수 없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학생회장단</li> <li>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서의 국장</li> <li>각 상설위원회위원장단</li> <li>각 학부·학과학생회장(단)</li> <li>새내기학생회장단</li> <li>동아리연합회장단</li> </ol> </li> <li>제1항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갖게 되었을 때에는 마지막에 갖게 된 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에서는 <u>해임</u>된 것으로 본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가질 수 없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학생회장단</li> <li>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서의 국장</li> <li>각 상설위원회위원장단</li> <li>각 학부·학과학생회장(단)</li> <li>새내기학생회장단</li> <li>동아리연합회장단</li> </ol> </li> <li>제1항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갖게 되었을 때에는 마지막에 갖게 된 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에서는 <u>사퇴</u>한 것으로 본다</li> </ol>
<b>목적 및 경위</b>	<b>1. 자구 정비: 명확한 용어 사용</b> 가. 일반적으로, 선출직에는 '해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 (주로 임명직에 사용함) 이에 '사퇴'로 기술함.

제10조(기록물 생산·수집·보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확과 신속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본회의 사무처리와 대표자의 행위는 문서로 기록하여 <u>보존해야</u> 한다.</li> <li>본회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적극 <u>노력해야</u> 한다.</li> <li>기록물의 생산·수집 이후에는 이를 임의로 수정·훼손·폐기할 수 없다.</li> <li>그 밖에 기록물 생산·수집·보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u>사무처리세칙</u>」으로 정한다.</li> </ol>	제10조(기록물 생산·수집·보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확과 신속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본회의 사무처리와 대표자의 행위는 문서로 기록하여 <u>보존하여야</u> 한다.</li> <li>본회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적극 <u>노력하여야</u> 한다.</li> <li>기록물의 생산·수집 이후에는 이를 임의로 수정·훼손·폐기할 수 없다.</li> <li>그 밖에 기록물 생산·수집·보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u>세칙</u>으로 정한다.</li> </ol>
<b>목적 및 경위</b>	<b>1. 자구 정비: 본딧말로 통일하여 조문을 기술함.</b> 가. 조문을 작성할 때에는 '준말'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본딧말'로 통일함. (「않은」 -> 「아니한」, 「해야한다」 -> 「하여야 한다」, 「~해」 -> 「~하여」) <b>2. 체계 정비: 법령에서 위임 입법을 하는 것처럼 위임 규정명까지 기술하지 않음.</b> 가. 여러 대학의 총학생회 학생회칙에서 위임을 할 때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세칙 또는 규칙)의 이름까지 언급하여 기술하고 있음. 하지만 법령에서 위임 입법을 할 때에 구체적인 법률명을 기술하지는 않음.

	<p>나. 예를 들어, 헌법에서 법률로 위임할 때 법률명을 기술하지는 않음. 헌법 제41조 &lt;전략&gt;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p> <p>다. 총학생회의 역할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위임한 업무·권한에 대하여 하나의 규정으로만 정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 명칭을 언급하여 기술하지 아니하고 “세칙으로 정한다.”로 통일함.</p>
--	--

<p>제11조(정보공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 산하기구 및 기구의 장은 본회가 생산·수집한 기록물이 본회 회원에게 원활히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li> <li>2. 본회의 회원과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본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는 본회의 모든 기록물에 대한 접근권이 있으며 기록물 관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기록물을 열람·활용할 수 있다.</li> <li>3. 본회 산하기구는 본회의 회원과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본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u>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일부만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본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u></li> <li>2. <u>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될 때</u></li> <li>3. <u>계약 내용 등이 사전에 공개되었을 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 운영상의 피해가 우려될 때</u></li> </ol> </li> <li>4. <u>그 밖에 정보공개청구 절차 등 정보공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무처리세칙」으로 정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lt;신 설&gt;</li> <li>2. &lt;신 설&gt;</li> <li>3. &lt;신 설&gt;</li> <li>4. &lt;신 설&gt;</li> </ol> </li> </ol> <p>5. &lt;신 설&gt;</p>	<p>제11조(정보공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본회의</u> 산하기구 및 기구의 장은 본회가 생산·수집한 기록물이 <u>본회의</u> 회원에게 원활히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li> <li>2. 본회의 회원과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본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는 본회의 모든 기록물에 대한 접근권이 있으며 기록물 관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기록물을 열람·활용할 수 있다.</li> <li>3. <u>본회의</u> 산하기구는 본회의 회원과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본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lt;단서 삭제&gt;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lt;삭 제&gt;</li> <li>2. &lt;삭 제&gt;</li> <li>3. &lt;삭 제&gt;</li> </ol> </li> <li>4. <u>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본회 산하기구는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일부만 공개할 수 있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본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u></li> <li>2. <u>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될 때</u></li> <li>3. <u>계약 내용 등이 사전에 공개되었을 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 운영상의 피해가 우려될 때</u></li> <li>4. <u>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때. 단, 의사결정 또는</u></li> </ol> </li> </ol>
---	---

	<p><u>내부검토의 종료 이후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u></p> <p><u>5. 그 밖에 정보공개청구 절차 등 정보공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u></p>
목적 및 경위	<p><b>1. 자구 정비: '본회의 회원'으로 표현 통일</b></p> <p>가. '본회 회원', '본회의 회원' 등의 용어는 '본회의 회원'으로 통일하되 '본회의 회원'을 사용했을 때에 문장이 어색해지는 경우에만 '본회 회원'으로 기술함.</p> <p><b>2. 체계 정비: 법령에서 위임 입법을 하는 것처럼 위임 규정명까지 기술하지 아니함.</b></p> <p>가. 여러 대학의 총학생회 학생회칙에서 위임을 할 때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세칙 또는 규칙)의 이름까지 언급하여 기술하고 있음. 하지만 법령에서 위임 입법을 할 때에 구체적인 법률명을 기술하지는 아니함.</p> <p>나. 예를 들어, 헌법에서 법률로 위임할 때 법률명을 기술하지는 않음. 헌법 제41조 &lt;전략&gt;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p> <p>다. 총학생회의 역할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위임한 업무·권한에 대하여 하나의 규정으로만 정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 명칭을 언급하여 기술하지 아니하고 "세칙으로 정한다."로 통일함.</p> <p><b>3. 정보 공개에 관한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함.</b></p> <p>가.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일부만 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때. 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의 종료 이후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p>

제14조(위계)	제14조(위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의 의결기구는 <u>학생총회</u>,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순으로 권한이 있다.</li> <li>2.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은 하위 기구의 의사결정에 우선한다.</li> <li>3.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u>상위</u>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의 의결기구에는 <u>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u>,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순으로 권한이 있다.</li> <li>2.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은 하위 기구의 의사결정에 우선한다.</li> <li>3.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u>상위</u>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li> </ol>
목적 및 경위	<p><b>1. 학생총회와 학생총투표는 동등한 권한을 갖음에도 불구하고 위계 규정에 학생총투표가 누락됨. 이에 학생총투표를 추가함.</b></p> <p><b>2. 자구 정비: 오탈자 정정</b></p> <p>가. "상의"를 "상위"로 정정함.</p>

<p>제15조(의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 의결기구의 의장은 <u>총학생회장</u>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li> <li>2.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li> <li>3.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u>진행해야</u> 한다.</li> </ol>	<p>제15조(의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 의결기구의 의장은 <u>회칙·세칙·규칙에 다르게 정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총학생회장</u>으로 한다.</li> <li>2.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li> <li>3.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u>진행하여야</u> 한다.</li> </ol>
<p>목적 및 경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구 정비: “원칙으로 한다”를 남용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예외 상황을 규정함.</li> <li>2. 자구 정비: 본딧말로 통일하여 조문을 기술함. 가. 조문을 작성할 때에는 ‘준말’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본딧말’로 통일함. (「않은」 -&gt; 「아니한」, 「해야한다」 -&gt; 「하여야 한다」, 「~해」 -&gt; 「~하여」)</li> </ol>

<p>제16조(세칙)</p> <p>의결기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u>의결기구 운영세칙</u>에 따른다.</p>	<p>제16조(세칙)</p> <p><u>그 밖에 의결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u></p>
<p>목적 및 경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체계 정비: 법령에서 위임 입법을 하는 것처럼 위임 규정명까지 기술하지 아니함. 가. 여러 대학의 총학생회 학생회칙에서 위임을 할 때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세칙 또는 규칙)의 이름까지 언급하여 기술하고 있음. 하지만 법령에서 위임 입법을 할 때에 구체적인 법률명을 기술하지는 아니함. 나. 예를 들어, 헌법에서 법률로 위임할 때 법률명을 기술하지는 않음. 헌법 제41조 &lt;전략&gt;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다. 총학생회의 역할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위임한 업무·권한에 대하여 하나의 규정으로만 정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 명칭을 언급하여 기술하지 아니하고 “세칙으로 정한다.”로 통일함.</li> </ol>

<p>제21조(권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체학생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li> <li>2. 비상학생총회는 학생사회의 긴급한 결정을 요하는 중대한 사안을 의결한다.</li> <li>3. <u>학생총회는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을 의</u></li> </ol>	<p>제21조(권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체학생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li> <li>2. 비상학생총회는 학생사회의 긴급한 결정을 요하는 중대한 <u>사항</u>을 의결한다.</li> <li>3. &lt;삭 제&gt;</li> </ol>
--	--

결할 수 없다.	
<b>목적 및 경위</b>	<b>1. 자구 정비: 용어 통일</b> 가. "사항"으로 용어를 통일함. <b>2. 현행 학생회칙에 맞게 규정을 정비함.</b> 가. 과거 회칙상으로는 학생총회의 소집을 선언했다가 무산되면 상정된 모든 안건은 그 회기 내내 다시 논의할 수 없도록 일시적으로 파기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탄핵안 논의 자체를 무산될 수 있었음. 그러나 현행 회칙에는 학생총회의 무산시 상정 안건의 논의를 금지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b>제23조(소집)</b> 1. 전체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u>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석 대의원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u> 2. <u>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u> 3. <u>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u> 2. <u>비상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단, 소집이 요건을 위반하여 이뤄지는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로 소집 결정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u> 1. <u>중앙운영위원회 재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u> 2. <u>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요구</u> 3. <u>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u> 4. <u>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u> 3. <u>의장은 전체학생총회의 경우 개회 10일 이전, 비상학생총회의 경우 개회 1일 이전에 이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u> 4. <신 설> 5. <신 설>	<b>제23조(소집)</b> 1. 전체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1. <u>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u> 2. <u>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u> 3. <u>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u> 2. <u>제1항제1호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3. <u>의장은 전체학생총회 개회 10일 전에 학생총회의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u> 4. <u>비상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단, 소집이 요건을 위반하여 이뤄지는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로 소집 결정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u> 1. <u>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u> 2. <u>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u> 3. <u>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u>
--	---

<p>6. &lt;신 설&gt;</p>	<p><u>요구가 있을 때</u></p> <p>4. <u>본회 회원 2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u></p> <p>5. <u>제2항제1호는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한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제2호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6. <u>의장은 비상학생총회 개회 1일 전에 학생총회의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u></p>
<p>목적 및 경위</p>	<p>1. <b>자구 정비:</b> 국회법 등 소집 요건을 기술하는 법령을 참고하여 소집 요건에 관한 자구를 정비함.</p> <p>2. <b>자구 정비:</b> 분수의 기술 가.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분수는 'A분의 B'로 기술함.</p>

<p>&lt;신 설&gt;</p>	<p><u>제23조의2(안건상정)</u></p> <p>1. <u>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전체 학생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u></p> <p>1. <u>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u></p> <p>2. <u>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u></p> <p>3. <u>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u></p> <p>2. <u>제1항제1호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3. <u>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비상 학생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u></p> <p>1. <u>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u></p>
--------------------	---



	<p>2. <u>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u></p> <p>3. <u>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u></p> <p>4. <u>본회 회원 2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u></p> <p>4. <u>제2항제1호는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한 중앙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제2호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목적 및 경위	1. <b>안건 상정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b>

제24조(의사의결정족수)	제24조(의사의결정족수)
<p>1. 전체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u>1/3</u>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본회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2. 비상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u>1/10</u>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본회 회원 <u>1/8</u>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1. 전체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u>3분의 1</u>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본회 회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2. 비상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u>10분의 1</u>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본회 회원 <u>8분의 1</u> 이상의 재석과 재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목적 및 경위	1. <b>자구 정비:</b> 분수의 기술 가.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분수는 'A분의 B'로 기술함.

제25조(결과공고)	제25조(결과공고)
학생총회의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u>대중</u> 에게 공고해야 한다.	학생총회의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u>본회 회원</u> 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목적 및 경위	1. <b>본회에서 공고의 수신자는 본회 회원이 됨. 이에 회의 결과를 공고하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b>

제26조(지위)	제26조(지위)
----------	----------

<p><u>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 이를 통한 의결사항은 전체 학생총회의 의결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u></p>	<p><u>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본회 최고의 의사결정투표이다. 학생총투표의 의결은 학생총회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u></p>
<p><b>목적 및 경위</b></p>	<p><b>1. 학생총투표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함.</b> 가. 학생총투표는 의결기구에 속하지만, 투표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명확히 표현하기 위함. 또한 학생총투표의 의결 사항은 학생총회와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으나, 현행 조문에는 비상학생총회가 제외되어 있기에 학생총회로 기술하여 이를 포함하고자 함.</p>

<p>제27조(투표권)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은 학생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p>	<p>제27조(투표권) 본회의 회원은 학생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p>
<p><b>목적 및 경위</b></p>	<p><b>1. 자구 정비: '본회의 회원'으로 표현 통일</b> 가. '본회 회원', '본회의 회원' 등의 용어는 '본회의 회원'으로 통일하되 '본회의 회원'을 사용했을 때에 문장이 어색해지는 경우에만 '본회 회원'으로 기술함.</p>

<p>제28조(권한) 학생총투표는 <u>다음 각 호의 경우 시행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시행 요구</u></li> <li>2. <u>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u></li> <li>3. <u>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u></li> <li>4. <u>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의 탄핵안 발의</u></li> <li>5. <u>그 밖의 본회의 중대한 사안의 경우</u></li> </ol>	<p>제28조(형식) 학생총투표는 <u>본회 회원의 투표의 형식으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lt;삭 제&gt;</li> <li>2. &lt;삭 제&gt;</li> <li>3. &lt;삭 제&gt;</li> <li>4. &lt;삭 제&gt;</li> <li>5. &lt;삭 제&gt;</li> </ol>
<p><b>목적 및 경위</b></p>	<p><b>1. 지위, 구성(투표권), 형식, 권한, 소집(시행), 의사의결정족수, 결과공고로 각 의결기구 절의 조항 순서를 통일함.</b></p> <p><b>2. 체계 정비</b> 가. 현행 학생회칙 제28조는 조항의 명칭이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총투표의 시행 요건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학생회칙 제21조 등을 참고할 때, 본 조에는 학생총투표의 형식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함.</p>

<p>제29조(형식)  <u>학생총투표는 본회 회원의 투표의 형식으로 한다.</u></p>	<p>제29조(권한)  <u>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와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u></p>
<p>목적 및  경위</p>	<p>1. 1. 지위, 구성(투표권), 형식, 권한, 소집(시행), 의사의결정족수, 결과공고로 각 의결기구 절의 조항 순서를 통일함.</p> <p>2. 체계 정비  가. 현행 학생회칙 제28조는 조항의 명칭이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총투표의 시행 요건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학생회칙 제21조 등을 참고할 때, 본조에는 학생총투표의 형식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함.  나. 이에 따라 학생회칙 제29조에는 권한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함.</p>

<p>제30조(시행)</p> <p>1. <u>학생총투표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시행결정에 따라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단, 제28조제4호의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 중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lt;신 설&gt;</li> <li>2. &lt;신 설&gt;</li> <li>3. &lt;신 설&gt;</li> <li>4. &lt;신 설&gt;</li> <li>5. &lt;신 설&gt;</li> </ol> <p>2. <u>학생총회 의장은 학생총투표의 시행을 시행 7일 이전에 이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u></p> <p>3. &lt;신 설&gt;</p>	<p>제30조(시행)</p> <p>1. <u>학생총투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단,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가 있을 때</u></li> <li>2. <u>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가 있을 때</u></li> <li>3. <u>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가 있을 때</u></li> <li>4. <u>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라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이 학생총투표로 부의되었을 때</u></li> <li>5. <u>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되었을 때</u></li> </ol> <p>2. <u>제1항제1호의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한 전체학</u></p>
--	---

	<p><u>생대표자회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3. <u>의장은 시행 7일 전에 학생총투표의 시행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u></p>
<p><b>목적 및 경위</b></p>	<p><b>1. 학생총투표의 시행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하기 위함.</b></p> <p>가. 본조의 수정은 학생총투표의 시행 요건을 명확하게 정의하는데에 있음. 현행 학생회칙은 제28조(권한)에 시행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28조의 내용을 수정하고, 이를 제30조에 기술하고자 합니다.</p>

<p><u>&lt;신 설&gt;</u></p>	<p><u>제30조의2(안건상정)</u></p> <p>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은 학생총투표에 안건을 상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li> <li>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li> <li>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li> <li>4. 전학대회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라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이 학생총투표로 부의된 경우</li> <li>5.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li> </ol>
<p><b>목적 및 경위</b></p>	<p><b>1. 안건 상정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b></p>

<p><u>제31조(성립·의결·요건)</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총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li> <li>2.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li> </ol>	<p><u>제31조(성립·의결 요건)</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총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li> <li>2.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li> </ol>
---	---

산은 명부상 총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부정한 목적으로 명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은 명부상 총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삭제>
<b>목적 및 경위</b>	<b>1. 자구 정비:</b> 조항 제목의 오기입을 정정함. <b>2. 학생총투표의 성립에 관하여 단서 조항이 불필요하여 이를 삭제함.</b>

제32조(결과공고) 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u>개표완료시부터 24시간 이내</u> 에 <u>중앙투표관리위원회</u> 가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	제32조(결과공고) 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u>개표완료 이후 24시간 이내</u> 에 <u>학생총회 의장</u> 이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
<b>목적 및 경위</b>	<b>1. 학생총투표 시행 주체(학생총회 의장)와 결과공고 주체를 통일함.</b> <b>2. 자구 정비:</b> “개표완료시부터”를 “개표완료 이후”로 통일함.

제33조(정책투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책투표는 본회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정책 결정·집행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다.</li> <li>2. 정책투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u>시행 결정</u>에 따라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li> <li>2. 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li> <li>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u>1/20</u>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li> </ol> </li> <li>3. 정책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정책투표 시행일을 결정한다.</li> <li>4. 정책투표는 <u>제29조</u>에 따른 투표권자 <u>1/8</u> 이상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li> <li>5. 정책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u>개표완료시부터 24시간 이내</u>에 학생총회 의장이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li> </ol>	제33조(정책투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책투표는 본회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정책 결정·집행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다.</li> <li>2. 정책투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u>시행일 의결</u>에 따라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li> <li>2. 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li> <li>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u>20분의 1</u>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li> </ol> </li> <li>3. 정책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정책투표 시행일을 의결한다.</li> <li>4. 정책투표는 <u>제27조</u>에 따른 투표권자 <u>8분의 1</u> 이상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li> <li>5. 정책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u>개표완료 이후 24시간 이내</u>에 학생총회 의장이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li> </ol>
---	--

<b>목적 및 경위</b>	<b>1. 자구 정비: 분수의 기술</b> 가.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분수는 'A분의 B'로 기술함. <b>2. 조항의 잘못된 인용을 정정함.</b> 가. 정책투표의 투표권은 제27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정정하여 잘못된 조항의 인용을 바로잡음.
--------------------	---

제34조(지위)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u>전학대회</u> )는 학생총회의 권한을 <u>위임 받은</u> 학생총회 아래 최고의결기구이다. 2. 전학대회의 의결은 학생총회의 <u>의결과 동등한</u> 효력을 가진다.	제34조(지위)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 <u>전학대회</u> "라 한다)는 학생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학생총회 아래 최고의결기구이다. 2. 전학대회의 의결은 학생총회의 <u>의결에 준하는</u> 효력을 가진다.
<b>목적 및 경위</b>	<b>1. 본회 의결기구의 위계를 명확하게 규정함.</b> 가. 전학대회는 학생총회 하위 의결기구로 동등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오해석을 예방하기 위해 표현을 정정함. <b>2. 자구 정비: 오타자 정정</b> 가. "위임 받은"를 "위임받은"으로 정정함.

<u>&lt;신 설&gt;</u>	제34조의2(구성) 전학대회는 제35조에서 정한 전학대회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b>목적 및 경위</b>	<b>1. 지위, 구성(투표권), 형식, 권한, 소집(시행), 의사의결정족수, 결과공고로 각 의결기구 절의 조항 순서를 통일함.</b>

제35조(대의원)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u>전학대회의 대의원</u> 이 된다. 1. 총학생회장단 2. 동아리연합회장단 3. <u>각 학부·학과학생회장 또는 부회장이 존재하는 경우 회장단 중 1인</u> 4. 새내기학생회장단 5. 각 자치기구 소속 인원 비례 대의원 2. <u>대의원 임기는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대의원 임기시</u>	제35조(대의원)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u>전학대회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u> 이 된다. 1. 총학생회장단 2. 동아리연합회장단 3. <u>각 학부·학과학생회장</u> 4. 새내기학생회장단 5. 각 자치기구 소속 인원 비례 대의원 2. <u>대의원 임기는 전년도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 폐회 후부터 당해 연도 1분기 초 전학대회 폐회 이전까지로 하며, 그 밖에 대의원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u>
---	--

<p><u>작 전까지로 하며, 임기만료 또는 탄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단, 새내기학생회는 예외로 두며 자치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u></p> <p>3. <u>전학대회의 대의원은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소속 회원의 합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 단,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이 없거나 자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u></p> <p>4. <u>중앙집행위원회는 전학대회 대의원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u></p> <p>5. &lt;신설&gt;</p>	<p><u>칙으로 정한다. 대의원은 임기만료·탄핵·사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u></p> <p>3. <u>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내기학생회 소속 대의원 임기는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u></p> <p>4. <u>전학대회의 대의원은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소속 회원의 합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 단,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이 없거나 자치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u></p> <p>5. <u>중앙집행위원회는 전학대회 대의원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u></p>
<p><b>목적 및 경위</b></p>	<p>1. 제1항을 통해 대의원 요건을 통일함. 2. 제2항을 통해 대의원 임기를 명확히 규정함. 3.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자구를 정비하여 현행 규정을 보다 명확히 기술함.</p>

<p>&lt;신설&gt;</p>	<p>제35조의2(대의원 정수) <u>대의원 정수는 50인으로 하되, 비례 대의원석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u></p>
<p><b>목적 및 경위</b></p>	<p>1. 대의원의 정수 및 비례대의원 배분 방식의 위임을 명확히 규정함.</p>

<p>제36조(대의원의 의무)</p> <p>1. 대의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p> <p>2. 대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p> <p>3. 대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u>참여해야</u> 한다.</p>	<p>제36조(대의원의 의무)</p> <p>1. 대의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p> <p>2. 대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u>표명하여야</u> 한다.</p> <p>3. 대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u>참여하여야</u> 한다.</p>
<p><b>목적 및 경위</b></p>	<p>1. 자구 정비: 본딤말로 통일하여 조문을 기술함. 가. 조문을 작성할 때에는 '준말'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본딤말'로 통일함. («않은» -&gt; «아니한», «해야한다» -&gt; «하여야 한다», «~해» -&gt; «~하여»)</p>

<u>&lt;신설&gt;</u>		제36조의2(권한) 전학대회는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의결한다.
목적 및 경위	1. 지위, 구성(투표권), 형식, 권한, 소집(시행), 의사의결정족수, 결과공고로 각 의결기구 절의 조항 순서를 통일함.	

제37조(의장) 전학대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경우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37조(의장) 1. 전학대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2.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목적 및 경위	1. 긴 문장으로 기술된 제37조 본문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구분하여 조문의 가독성을 높이고 명확하게 기술되도록 함.	

제38조(소집) 1. 전학대회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 및 해당 연도 말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전학대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의장이 14일 내에 소집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 2.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3. 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1/5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4.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4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5. 학생총회의 안건위임 6. 총학생회장단 탄핵안 발의 7. 상설위원회위원장단 또는 전문기구장 해임안 발의 8. 회칙개정안 또는 세칙·규칙 제정안 발의 3. 의장은 개최일 5일 이전에 회의를 대	제38조(소집) 1. 전학대회 정기회의는 제165조제2항에 따른 매 분기 초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전학대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의장이 14일 내에 소집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중앙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4.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4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5. 학생총회에서 안건을 위임했을 때 6. 전학대회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되었을 때 7.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또는 전문기구장 해임안이 발의되었을 때
--	--



<p><u>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단, 임시회의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재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u></p> <p>4. &lt;후략&gt;</p>	<p>8. <u>제185조에 따른 회칙 개정안 또는 제191조제3항에 따른 세칙·규칙 제정안 또는 폐지안이 발의되었을 때</u></p> <p>3. 의장은 <u>개회 5일 전에 전학대회의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단, 임시회의의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u></p> <p>4. &lt;후략&gt;</p>
<p>목적 및 경위</p>	<p><b>1. 전학대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전학대회 운영 방식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b></p>

<p><u>제39조(업무)</u> <u>전학대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중앙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안건</u></li> <li>2. <u>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u></li> <li>3. <u>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1/5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u></li> <li>4. <u>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4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u></li> <li>5. <u>학생총회에서 위임한 안건</u></li> <li>6. <u>그 밖에 전학대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u></li> </ol>	<p><u>제39조(안건의 상정)</u> <u>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전학대회에 안건을 상정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u></li> <li>2. <u>중앙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u></li> <li>3. <u>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u></li> <li>4. <u>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4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u></li> <li>5. <u>학생총회에서 안건을 위임한 경우</u></li> <li>6. <u>전학대회 의장이 그 밖에 전학대회의 심의·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발의한 경우</u></li> </ol>
<p>목적 및 경위</p>	<p><b>1. 전학대회 안건의 상정 요건을 정비함으로써 전학대회 운영방식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b></p>

<p>&lt;신설&gt;</p>	<p><u>제39조의2(안건의 상정 시기)</u> <u>안건의 상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제3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제38조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u></li> </ol>
-------------------	---

	<p><u>소집되는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단, 회칙·세칙·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u></p> <p>2. <u>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안건발의 일자로부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소집공고가 되는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단, 회칙·세칙·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u></p>
<b>목적 및 경위</b>	<b>1.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던 안건의 상정시기를 규정해 안건 상정의 근거를 분명히 하고 절차를 명확히 함.</b>

제40조(학생총회·학생총투표에 관한 사항) <u>전학대회는 학생총회 소집 및 학생총투표 시행을 의결할 수 있으며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u>	제40조(학생총회·학생총투표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전학대회는 학생총회 소집 및 학생총투표 시행을 의결할 수 있다.</u></li> <li>2. <u>전학대회는 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u></li> </ol>
<b>목적 및 경위</b>	<b>1. 긴 문장으로 기술된 제40조 본문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구분하여 조문의 가독성을 높이고 전학대회의 권한이 명확하게 기술되도록 함.</b>

제41조(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관한 사항) <u>전학대회는 발의된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하거나 학생총투표로 부의할 수 있다.</u>	제41조(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관한 사항) 전학대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로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을 심의·의결하거나 학생총투표로 부의할 수 있다.
<b>목적 및 경위</b>	<b>1. 전학대회에서는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로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만 심의·의결할 수 있으므로 자구를 정비하여 조문을 명확하게 기술함.</b>

제43조(산하기구 관련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학대회는 <u>상설위원회위원장단 및 전문기구장의 인준·해임안을 의결</u>한다.</li> <li>2. 전학대회는 <u>상설위원회·전문기구·특별기구의 인준·징계·제명·합병안을 의결</u>한다.</li> <li>3. 전학대회는 <u>감사보고서 및 번역감독보고서 결과에 따른 산하기구의 예산삭감안을 의결</u>할 수 있다.</li> </ol>	제43조(산하기구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학대회는 <u>상설위원회 위원장·상설위원회 부위원장·전문기구장의 인준·해임안을 심의·의결</u>한다.</li> <li>2. 전학대회는 <u>상설위원회·전문기구·특별기구의 인준·징계·제명·합병안을 심의·의결</u>한다.</li> <li>3. 전학대회는 <u>감사보고서 및 번역감독보고서 결과에 따른 산하기구의 예산삭감안을 심의·의결</u>할 수 있다.</li> </ol>
--	---

목적 및 경위	1. 자구를 정비하여 상설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을 인준 및 해임이 가능함을 명확하게 규정함.
------------	---

<p>제44조(징계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학대회는 회원, 중앙운영위원, <u>전학대회 대의원</u>이 회칙·세칙·규칙을 위반할 때 징계할 수 있다.</li> <li>2. 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개 경고와 사과문 게재 요구</li> <li>2. 피선거권의 박탈</li> <li>3. 선거권의 박탈</li> <li>4. 제4조제4항에 따른 본회 자치활동의 참여권 박탈</li> </ol> </li> <li>3. 중앙운영위원회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학대회에서의 경고와 사과 요구</li> <li>2. 중앙운영위원회 출석정지</li> <li>3. 중앙운영위원 자격정지</li> </ol> </li> <li>4. <u>전학대회 대의원</u>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학대회에서의 경고와 사과 요구</li> <li>2. 전학대회 출석정지</li> <li>3. 대의원 자격정지 (<u>중앙운영위원 직을 겸하는 대의원의 경우 중앙운영위원 자격도 정지</u>)</li> </ol> </li> <li>5. 총학생회장단에게는 제2항제4호와 제3항제2호 및 제3호,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징계를 할 수 없다.</li> <li>6.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조사위원회 혹은 관련 전문기구를 통해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징계 대상자에 충분한 소명의</li> </ol>	<p>제44조(징계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학대회는 회원, 중앙운영위원, <u>대의원</u>이 회칙·세칙·규칙을 위반할 때 징계할 수 있다.</li> <li>2. 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개 경고와 사과문 게재 요구</li> <li>2. 피선거권의 박탈</li> <li>3. 선거권의 박탈</li> <li>4. 제4조제4항에 따른 본회 자치활동의 참여권 박탈</li> </ol> </li> <li>3. 중앙운영위원회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학대회에서의 경고와 사과 요구</li> <li>2. 중앙운영위원회 출석정지</li> <li>3. 중앙운영위원 자격정지</li> </ol> </li> <li>4. <u>대의원</u>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학대회에서의 경고와 사과 요구</li> <li>2. 전학대회 출석정지</li> <li>3. 대의원 자격정지. 단, 해당 대의원이 <u>중앙운영위원직을 겸하는 경우 중앙운영위원 자격도 정지한다.</u></li> </ol> </li> <li>5. 총학생회장단에게는 제2항제4호와 제3항제2호 및 제3호,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징계를 할 수 없다.</li> <li>6.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조사위원회 혹은 관련 전문기구를 통해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징계 대상자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li> <li>7. <u>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u></li> </ol>
---	--

기회를 주어야 한다. 7. <신 설>	<u>세칙으로 정한다.</u>
<b>목적 및 경위</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제44조제4항제3호의 괄호를 삭제하고 단서 조항을 덧붙임.</li> <li>2. 징계안 의결 절차 등 회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세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li> </ol>

<p>제45조(재정·감사 관련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학대회는 <u>사전심의를 거친</u>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한다.</li> <li>2. 전학대회는 <u>사전심의를 거친</u>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심의·의결한다.</li> <li>3. 전학대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감사보고서를 <u>채택한다.</u></li> <li>4. 전학대회는 본회 <u>회계의</u> 분배 비율 및 학생회비의 <u>인상·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u></li> </ol>	<p>제45조(재정·감사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학대회는 <u>중앙운영위원회에서 사전심 의하여 의결한</u>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한다.</li> <li>2. 전학대회는 <u>중앙운영위원회에서 사전심 의하여 의결한</u>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심의·의결한다.</li> <li>3. 전학대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감사보고서를 <u>심의·의결한다.</u></li> <li>4. 전학대회는 본회 <u>재정의</u> 분배 비율 및 학생회비의 <u>인상·인하</u>를 심의·의결한다.</li> </ol>
<b>목적 및 경위</b>	1. 전학대회가 <u>심의·의결하는 안건을 명확히 규정함.</u>

<p>제47조(대외적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학대회는 학교 당국에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li> <li>2. 전학대회는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가입·탈퇴를 심의·의결한다. 총학생회장단은 연대 단체 활동을 <u>전학대회 정기회의에</u> 보고하여야 하며 전학대회는 활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변경 및 취소를 의결할 수 있다.</li> <li>3. <u>회원 전체의 명의로</u>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발생할 때, 전학대회는 총학생회장단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소송권을 <u>위임할 수 있다.</u></li> </ol>	<p>제47조(대외적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학대회는 학교 당국에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li> <li>2. 전학대회는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가입·탈퇴를 심의·의결한다. 총학생회장단은 연대 단체 활동을 <u>전학대회 정기회의 및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에</u> 보고하여야 하며 전학대회는 활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변경 및 취소를 의결할 수 있다.</li> <li>3. <u>본회의 명의로</u>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발생할 때, 전학대회는 총학생회장단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소송권을 <u>위임하거나 소송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u></li> </ol>
--	--

<b>목적 및 경위</b>	<p>1. 전학대회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하여 보다 더 짧은 주기의 보고를 위해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보고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함.</p> <p>2. 소송법의 요건에 맞도록 자구를 정비함.</p>
--------------------	---

<p>제48조(의사·의결정족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학대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li> <li>2.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설위원회위원장단 및 전문기구장 해임에 대한 사항</li> <li>2. 상설위원회·전문기구·특별기구의 인준·제명·징계·합병에 대한 사항</li> <li>3. 학생회비의 인상·인하에 관한 사항</li> <li>4. 회칙 개정 및 세칙·규칙의 제정·폐지, 원규 개정안 발의에 대한 사항</li> <li>5. &lt;신 설&gt;</li> <li>6. &lt;신 설&gt;</li> <li>7. &lt;신 설&gt;</li> </ol> </li> <li>3.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체학생총회 소집 및 학생총투표 시행에 대한 결정</li> <li>2.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대한 사항</li> </ol> </li> </ol>	<p>제48조(의사·의결정족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학대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회칙·세칙·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li> <li>2.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설위원회 위원장·상설위원회 부위원장·전문기구장 해임에 관한 사항</li> <li>2. 상설위원회·전문기구·특별기구의 인준·제명·징계·합병에 관한 사항</li> <li>3. 학생회비의 인상·인하에 관한 사항</li> <li>4. 회칙 개정 및 세칙·규칙의 제정·폐지, 원규 개정안 발의에 관한 사항</li> <li>5. 전체학생총회 소집 및 학생총투표 시행에 관한 사항</li> <li>6. 제170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li> <li>7. 기금의 타 회계 전용에 관한 사항</li> </ol> </li> <li>3.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lt;삭 제&gt;</li> <li>2.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대한 사항</li> <li>3. 제49조에 따라 서면의결을 실시하는 안건</li> </ol> </li> </ol>
---	---

<b>목적 및 경위</b>	<p>1. 정족수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p> <p>2. 현행 제48조제3항제1호 제23조 및 제28조와 상이한 부분을 통일함.</p>
--------------------	---

제49조(서면의결)	제49조(서면의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장은 제38조제4항의 긴급한 사항에</li> </ol>
------------	--

제38조제4항의 긴급한 사안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있다.	<p>대해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있다.</p> <p>2. 서면의결을 실시하는 사항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목적 및 경위	1. 긴 문장으로 기술된 제49조 본문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구분하여 조문의 가독성을 높이고 명확하게 기술되도록 함.

제50조(결과공고)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50조(결과 공고)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목적 및 경위	1. 본회에서 공고의 수신자는 본회 회원이 됨. 이에 회의 결과를 공고하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

<신 설>	제51조의2(구성) 중앙운영위원회는 제52조에서 정한 중앙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목적 및 경위	1. 지위, 구성(투표권), 형식, 권한, 소집(시행), 의사의결정족수, 결과공고로 각 의결기구 절의 조항 순서를 통일함.

제52조(중앙운영위원)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1. 총학생회장단 2. 각 자치기구회장 혹은 회장단 중 전학대회 대의원 당연직인 사람 1인 3. <신 설> 4. <신 설> 2. 중앙운영위원의 임기는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임기 시작 전까지로 한다. 임기만료 또는 탄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단, 새내기학생회는 예외로 두며 자치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52조(중앙운영위원)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1. 총학생회장단 2. 동아리연합회장 3. 각 학부·학과학생회장 4. 새내기학생회장 2. 중앙운영위원 임기는 전년도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 폐회 후부터 당해 연도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 폐회 이전까지로 하며,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중앙운영위원은 임기만료 또는 탄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내기학생회 소속 중앙운영위원의 임기는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	--

<p>3. <u>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u></p> <p>4. &lt;신 설&gt;</p>	<p>4. <u>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u></p>
<p><b>목적 및 경위</b></p>	<p>1. 제1항을 통해 중앙운영위원 요건을 통일함. 2. 제2항을 통해 중앙운영위원 임기를 명확히 규정함. 3.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자구를 정비하여 현행 규정을 보다 명확히 기술함.</p>

<p>제53조(중앙운영위원의 의무)</p> <p>1. 중앙운영위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p> <p>2. 중앙운영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u>표명해야</u> 한다.</p> <p>3. 중앙운영위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u>참여해야</u> 한다.</p>	<p>제53조(중앙운영위원의 의무)</p> <p>1. 중앙운영위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p> <p>2. 중앙운영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u>표명하여야</u> 한다.</p> <p>3. 중앙운영위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u>참여하여야</u> 한다.</p>
<p><b>목적 및 경위</b></p>	<p>1. 자구 정비: 본딧말로 통일하여 조문을 기술함. 가. 조문을 작성할 때에는 '준말'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본딧말'로 통일함. (「않은」 -&gt; 「아니한」, 「해야한다」 -&gt; 「하여야 한다」, 「~해」 -&gt; 「~하여」)</p>

<p>&lt;신 설&gt;</p>	<p>제53조의2(권한) 중앙운영위원회는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의결한다.</p>
<p><b>목적 및 경위</b></p>	<p>1. 지위, 구성(투표권), 형식, 권한, 소집(시행), 의사의결정족수, 결과공고로 각 의결기구 절의 조항 순서를 통일함.</p>

<p>제54조(의장)</p> <p>1.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p> <p>2.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u>탄핵안</u></p>	<p>제54조(의장)</p> <p>1.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p> <p>2.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u>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 중앙운영위원 중 중앙운영</u></p>
---	--

<u>건이 상정된 경우 중앙운영위원 1인</u> 이 그 직을 대신한다.	<u>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이</u> 그 직을 대신 한다.
<b>목적 및 경위</b>	<b>1. 자구를 정비하여 표현을 통일함.</b> <b>2. 중앙운영위원 중에서 의장 대리를 선출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b>

<p>제55조(소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u>매 달 1회</u>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li> <li>2.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u>어느 하나에 의해 의장이 소집</u>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의장의 소집요구</u></li> <li>2. <u>중앙운영위원 1/5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u></li> <li>3. <u>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u></li> <li>4. <u>그 밖에 긴급한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이 있을 시</u></li> <li>5. &lt;신설&gt;</li> </ol> </li> <li>3. 제2항에 따른 소집이 필요한 경우, <u>의장은 7일 내에 임시회의를 소집해야</u> 한다.</li> <li>4. <u>의장은 회의 3일 이전에 회의를 대중에게 공고해야</u> 한다. 단, 제2항제4호의 경우 예외로 한다.</li> </ol>	<p>제55조(소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u>2주에 1회</u>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li> <li>2.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u>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의장이 5일</u> 내에 소집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u>의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u></li> <li>B. <u>중앙운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u></li> <li>C. <u>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8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u></li> <li>D. <u>전학대회에서 안건을 위임했을 때</u></li> <li>E. <u>그 밖에 긴급한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u></li> </ol> </li> <li>3. <u>의장은 회의 24시간 전에 중앙운영위원회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u> 한다. 단, 제2항제5호의 경우에는 소집공고 기한을 24시간 전으로 함을 예외로 한다.</li> <li>4. &lt;삭 제&gt;</li> </ol>
<b>목적 및 경위</b>	<b>1. 중앙운영위원회의 활동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회의 개최 주기를 한달에서 2주로 변경함.</b> <b>2. 임시회의의 소집 요건과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회의 공고 시점을 더욱 명확히 하여 운영상의 효율을 제고함.</b>

<p>제56조(업무)</p> <p><u>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u></li> <li>2. <u>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u></li> </ol>	<p>제56조(안건상정)</p> <p><u>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의장이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u></li> </ol>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u>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u></li> <li>4. <u>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u></li> <li>5. <u>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u></li> <li>6. <u>&lt;신 설&gt;</u></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u>중앙운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u></li> <li>3. <u>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8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u></li> <li>4. <u>전학대회에서 안건을 위임한 경우</u></li> <li>5. <u>제5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소집과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u></li> <li>6. <u>중앙운영위원이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발의한 경우</u></li> </ol>
<b>목적 및 경위</b>	<b>1. 중앙운영위원회 안건의 상정 요건을 정비함으로써 중앙운영위원회 운영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함.</b>

<u>&lt;신 설&gt;</u>	<u>제56조의2(안건의 상정시기)</u> <u>안건의 상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제5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집되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단, 회칙·세칙·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u></li> <li>2. <u>제5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안건발의 일자로부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소집공고가 되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단, 회칙·세칙·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u></li> </ol>
<b>목적 및 경위</b>	<b>1.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던 안건의 상정시기를 규정해 안건 상정의 근거를 분명히 하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b>

<u>제57조(의결기구에 관한 사항)</u>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중앙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u>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u></u></li> </ol>	<u>제57조(의결기구에 관한 사항)</u>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중앙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u>전학대회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u></u></li> </ol>
--	---

<p>2.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총회와 전학대회의 <u>개회</u>, 학생총투표의 시행에 관한 <u>세부 문제</u>를 논의하고 결정한다.</p> <p>3. 중앙운영위원회는 정책투표의 실시 요구에 따라 정책투표의 <u>시행 및 시행일</u>을 의결한다.</p>	<p>2.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총회와 전학대회의 <u>소집</u>, 학생총투표의 시행에 관한 <u>세부 사항</u>을 논의하고 결정한다.</p> <p>3. 중앙운영위원회는 정책투표의 실시 요구에 따라 정책투표의 <u>시행일</u>을 의결한다.</p>
<p><b>목적 및 경위</b></p>	<p><b>1. 중앙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명확하게 정의하고, 회의 내용에 따른 의결 절차를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b></p>

<p>제58조(집행기구에 관한 사항)</p> <p>1. 중앙운영위원회는 <u>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서와 국장 임명동의안</u>을 의결한다.</p> <p>2. 중앙운영위원회는 <u>중앙집행위원회를 포함한 본회 산하기구</u>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이를 조정한다. 단,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 신속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보고하고 심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p> <p>3. 중앙운영위원회는 <u>총학생회장단 및 집행기구</u>의 결정과 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p>	<p>제58조(집행기구에 관한 사항)</p> <p>1. 중앙운영위원회는 <u>중앙집행위원회 국서 체계 동의안과 중앙집행위원장 및 국장 임명 동의안</u>을 의결한다.</p> <p>2. 중앙운영위원회는 <u>본회 산하기구</u>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이를 조정한다. 단,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 신속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보고하고 심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p> <p>3. 중앙운영위원회는 <u>제67조에 따른 집행기구</u>의 결정과 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p>
<p><b>목적 및 경위</b></p>	<p><b>1. 중앙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서 체계 동의안과 임명 동의안의 의결과정을 명확히 하며, 집행기구의 결정 및 집행사항 변경 또는 취소 가능 사항을 구체화함.</b></p>

<p>제59조(선거에 관한 사항)</p> <p>1.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 일정을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p> <p>2. 중앙운영위원회는 총선거결과에 대하여 본회 회원이 이의를 제소할 경우 이를 <u>선거시행세칙</u>에 의거하여 심사하여 <u>당선을 취소</u>할 수 있다.</p> <p>3. 중앙운영위원회는 <u>자치기구회장단</u> 선거에 대하여 <u>해당 본회 회원</u>이 이의를 제소할 경우 이를 <u>학생회칙 및 자치규칙</u>에</p>	<p>제59조(선거에 관한 사항)</p> <p>1.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 일정을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p> <p>2. 중앙운영위원회는 총선거결과에 대하여 본회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u>세칙</u>에 의거해서 심사하여 <u>당선 취소를 의결</u>할 수 있다.</p> <p>3. 중앙운영위원회는 <u>자치기구</u> 선거에 대하여 <u>본회 회원</u>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이를 <u>회칙·세칙·규칙 및 해당 자치기구</u></p>
---	---

<p><u>의거하여</u> 심사하여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p> <p>4. <u>전학대회</u>는 제3항에 따라 <u>의결된 사항</u>을 취소하는 <u>취지의 의결</u>을 할 수 없다.</p> <p>5. <u>제3항에 규정된 사항</u>은 <u>서면의결 형태</u>로 의결 불가능하다.</p>	<p><u>자치규칙에 의거해서</u> 심사하여 당선 취소를 의결할 수 있다.</p> <p>4. &lt;삭 제&gt;</p> <p>5. <u>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u>은 <u>서면 의결</u>을 실시할 수 없다.</p>
<p><b>목적 및 경위</b></p>	<p>1. 선거관리를 위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u>이의제기 및 당선 취소에 대한 절차를 구체화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함.</u></p> <p>2. <u>제14조와 충돌하는 제4항을 삭제함.</u></p>

<p>제59조의2(재정에 관한 사항)</p> <p>1.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사전심의하여 의결한다.</p> <p>2.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사전심의하여 의결한다</p> <p>3. &lt;신 설&gt;</p>	<p>제59조의2(재정에 관한 사항)</p> <p>1.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사전심의하여 의결한다.</p> <p>2.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사전심의하여 의결한다.</p> <p>3. <u>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감사를 감사원에 요구할 수 있다.</u></p>
<p><b>목적 및 경위</b></p>	<p>1. <u>중앙운영위원회가 본회 및 산하기구의 감사를 감사원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하여 투명한 재정 관리를 도모함.</u></p>

<p>제60조(회칙·세칙·규칙에 관한 사항)</p> <p>1. 중앙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에 <u>회칙개정안과 세칙·규칙의 제정·폐지안</u>을 발의할 수 있다.</p> <p>2. 중앙운영위원회는 <u>세칙·규칙</u>을 개정할 수 있다.</p>	<p>제60조(회칙·세칙·규칙에 관한 사항)</p> <p>1. 중앙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에 <u>회칙 개정안과 세칙·규칙 제정·폐지안</u>을 발의할 수 있다.</p> <p>2. 중앙운영위원회는 <u>세칙·규칙 개정안</u>을 심의·의결한다.</p>
<p><b>목적 및 경위</b></p>	<p>1. <u>세칙과 규칙 개정</u>에 대한 중앙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함.</p>

<p>제62조(위원회)</p> <p>1. 중앙운영위원회는 특정 기간 동안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u>직속 위원회</u></p>	<p>제62조(위원회)</p> <p>1.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u>산하 위원회</u>(이하 이 조에서</p>
--	--

<p>를 설치할 수 있다.</p> <p>2.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p> <p>1. 특임위원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u>사안</u>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위원회</p> <p>2. 조사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면서 징계 또는 본회와 관련한 <u>사안</u>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 검토를 진행하는 위원회</p> <p>3. 준비위원회: 본회 차원의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u>사안</u>을 담당하는 기구의 설립을 준비하는 위원회</p> <p>3. <u>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정기적인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u></p> <p>4. <u>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해 더 이상 존속이 무용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체한다.</u></p> <p>5. &lt;신 설&gt;</p>	<p><u>“위원회”라 한다</u>)를 설치할 수 있다.</p> <p>2. 위원회의 종류는 <u>다음 각 호로 한다.</u></p> <p>1. 특임위원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u>사항</u>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위원회</p> <p>2. 조사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면서 징계 또는 본회와 관련한 <u>사항</u>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 검토를 진행하는 위원회</p> <p>3. 준비위원회: 본회 차원의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u>사항</u>을 담당하는 기구의 설립을 준비하는 위원회</p> <p>3. <u>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본회의 운영 사항을 보고하고, 예산안 및 결산을 제출하여야 한다.</u></p> <p>4. <u>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u></p> <p>5. <u>위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해 더 이상 존속이 무용할 경우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체할 수 있다.</u></p>
<p>목적 및 경위</p>	<p>1. <b>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규정함.</b></p>

<p>제63조(의사·의결정족수)</p> <p><u>중앙운영위원회는 특별한 단서가 없는 사항에 대해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제63조(의사·의결정족수)</p> <p>1. <u>중앙운영위원회는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회칙·세칙·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2. <u>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1. <u>세칙·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u></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u>제169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u></li> <li>3. <u>제170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u></li> <li>3. <u>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재석과 재석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제49조에 따른 전학대회 서면의결 실시안</u></li> <li>2. <u>제64조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 서면의결을 실시하는 안건</u></li> </ul> </li> </ul>
목적 및 경위	1. 회의의 개최와 의결에 필요한 조건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회의의 운영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함.

제64조(서면의결) 서면의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	제64조(서면의결) 1. 의장은 제55조제2항제4호의 긴급한 사항에 대해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전학대회 심의를 필요로 하는 안건의 상정안</u></li> <li>2. <u>전학대회 서면의결 실시안</u></li> <li>3. <u>그 밖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사항</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전학대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의 발의안</u></li> <li>2. <u>전학대회 서면의결 실시안</u></li> <li>3. <u>그 밖에 회칙·세칙·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사항</u></li> <li>2. <u>서면의결을 실시하는 사항은 재적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재석과 재석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li> </ul>
목적 및 경위	1. 긴 문장으로 기술된 제49조 본문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구분하여 조문의 가독성을 높이고 명확하게 기술되도록 함.

제65조(결과공고)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u>대중에게</u> 공고해야 한다.	제65조(결과공고)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u>본회 회원</u> 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

<b>목적 및 경위</b>	<b>1. 본회에서 공고의 수신자는 본회 회원이 됨. 이에 회의 결과를 공고하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b>
--------------------	---

<p>제69조(임기)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u>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총학생회장단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u> 단, 제153조제1항의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고 익년 3월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제86조의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종료 직후부터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 시점까지로 한다.</p>	<p>제69조(임기)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u>전년도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 폐회 후부터 당해 연도 1분기 초 전학대회 폐회 이전까지로 한다.</u> 단, 제153조제1항의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고 익년 3월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제86조의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종료 직후부터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 시점까지로 한다.</p>
<b>목적 및 경위</b>	<b>1. 제35조의 대의원 임기 및 제52조의 중앙운영위원 임기와 표현을 통일함.</b>

<p>제83조(구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운영위원회는 제82조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지체 없이 해당 사항 및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해야 한다.</li> <li>2. 모든 중앙운영위원은 공고 후 10일 내에 소속 기구에서 임명한 1인 이상을 비상대책위원으로 파견해야 한다. 단, 소속 인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학부·학과학생회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li> <li>3. 중앙운영위원회는 모집공고 후 10일 내에 모집한 본회 회원 및 소속 기구에서 파견한 위원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11월 선거무산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u>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u>에서 구성한다.</li> </ol>	<p>제83조(구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운영위원회는 제82조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지체 없이 해당 사항 및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해야 한다.</li> <li>2. 모든 중앙운영위원은 공고 후 10일 내에 소속 기구에서 임명한 1인 이상을 비상대책위원으로 파견해야 한다. 단, 소속 인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학부·학과학생회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li> <li>3. 중앙운영위원회는 모집공고 후 10일 내에 모집한 본회 회원 및 소속 기구에서 파견한 위원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11월 선거무산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u>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u>에서 구성한다.</li> </ol>
<b>목적 및 경위</b>	<b>1. 제38조가 매 분기 초로 개정됨에 따라 표현을 통일함.</b>

<p>제154조(선거권·피선거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li> <li>2. 본회 정회원 중 선거권을 가진 회원 중 「<u>선거시행세칙</u>」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사람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li> </ol>	<p>제154조(선거권·피선거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li> <li>2. 본회 정회원 중 선거권을 가진 회원 중 <u>세칙</u>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사람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li> </ol>
<p>목적 및 경위</p>	<p><b>1. 체계 정비: 법령에서 위임 입법을 하는 것처럼 위임 규정명까지 기술하지 아니함.</b></p> <p>가. 여러 대학의 총학생회 학생회칙에서 위임을 할 때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세칙 또는 규칙)의 이름까지 언급하여 기술하고 있음. 하지만 법령에서 위임 입법을 할 때에 구체적인 법률명을 기술하지는 아니함.</p> <p>나. 예를 들어, 헌법에서 법률로 위임할 때 법률명을 기술하지는 않음. 헌법 제41조 &lt;전략&gt;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p> <p>다. 총학생회의 역할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위임한 업무·권한에 대하여 하나의 규정으로만 정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 명칭을 언급하여 기술하지 아니하고 “세칙으로 정한다.”로 통일함.</p>

<p>제156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총학생회장단 선거 및 회칙과 「<u>선거시행세칙</u>」에 부합하는 진행을 위탁한 자치기구회장단 선거(이하 총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li> <li>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의 제반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li> <li>3.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 또는 7 또는 9인의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하고 위원장단은 내부호선한다.</li> <li>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연도 총선거 및 자치기구 회장단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li> </ol>	<p>제156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총학생회장단 선거 및 회칙과 <u>세칙</u>에 부합하는 진행을 위탁한 자치기구회장단 선거(이하 총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li> <li>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의 제반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li> <li>3.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 또는 7 또는 9인의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하고 위원장단은 내부호선한다.</li> <li>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연도 총선거 및 자치기구 회장단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li> </ol>
<p>목적 및 경위</p>	<p><b>1. 체계 정비: 법령에서 위임 입법을 하는 것처럼 위임 규정명까지 기술하지 아니함.</b></p> <p>라. 여러 대학의 총학생회 학생회칙에서 위임을 할 때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세칙 또는 규칙)의 이름까지 언급하여 기술하고 있음. 하지만 법령에서 위임 입법을 할 때에 구체적인 법률명을 기술하지는 아니함.</p> <p>마. 예를 들어, 헌법에서 법률로 위임할 때 법률명을 기술하지는 않음. 헌법 제41</p>

	<p>조 &lt;전략&gt;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p> <p>바. 총학생회의 역할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위임한 업무·권한에 대하여 하나의 규정으로만 정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 명칭을 언급하여 기술하지 아니하고 “세칙으로 정한다.”로 통일함.</p>
--	--

<p>제159조(선거시행세칙)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u>선거시행세칙</u>」으로 정한다.</p>	<p>제159조(세칙)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u>세칙</u>으로 정한다.</p>
---	---

<p><b>목적 및 경위</b></p>	<p><b>1. 체계 정비: 법령에서 위임 입법을 하는 것처럼 위임 규정명까지 기술하지 아니함.</b></p> <p>사. 여러 대학의 총학생회 학생회칙에서 위임을 할 때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세칙 또는 규칙)의 이름까지 언급하여 기술하고 있음. 하지만 법령에서 위임 입법을 할 때에 구체적인 법률명을 기술하지는 아니함.</p> <p>아. 예를 들어, 헌법에서 법률로 위임할 때 법률명을 기술하지는 않음. 헌법 제41조 &lt;전략&gt;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p> <p>자. 총학생회의 역할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위임한 업무·권한에 대하여 하나의 규정으로만 정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 명칭을 언급하여 기술하지 아니하고 “세칙으로 정한다.”로 통일함.</p>
---------------------------	---

<p>제164조(재정운용세칙)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사항은 「<u>재정운용세칙</u>」으로 정한다.</p>	<p>제164조(세칙)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사항은 <u>세칙</u>으로 정한다.</p>
---	---

<p><b>목적 및 경위</b></p>	<p><b>1. 체계 정비: 법령에서 위임 입법을 하는 것처럼 위임 규정명까지 기술하지 아니함.</b></p> <p>가. 여러 대학의 총학생회 학생회칙에서 위임을 할 때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세칙 또는 규칙)의 이름까지 언급하여 기술하고 있음. 하지만 법령에서 위임 입법을 할 때에 구체적인 법률명을 기술하지는 아니함.</p> <p>나. 예를 들어, 헌법에서 법률로 위임할 때 법률명을 기술하지는 않음. 헌법 제41조 &lt;전략&gt;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p> <p>다. 총학생회의 역할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위임한 업무·권한에 대하여 하나의 규정으로만 정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 명칭을 언급하여 기술하지 아니하고 “세칙으로 정한다.”로 통일함.</p>
---------------------------	---

<p>제166조(회계 분류)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u>가을 학기</u> 초 정기 전학대회 및 <u>연도말</u>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반기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u>결정</u>한다. 만약, 해당 분배 비율</p>	<p>제166조(회계 분류)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u>3분기</u> 초 정기 전학대회 및 <u>1분기 초</u>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반기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u>심의·의결</u>한다. 만약, 해당 분배 비율</p>
--	---



<p>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전 반기의 분배 비율을 계속하여 적용한다. 단,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회계: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및 집행기구,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li> <li>2. 기층기구회계: 학부·학과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 재정지원</li> <li>3. 격려기금: 회칙에 따라 정해진 본회 각 기구 선출직 및 국장 활동비 지원</li> <li>4. 문화자치기금: 본회 회원의 문화 진흥을 위한 자치 사업 지원</li> </ol>	<p>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전 반기의 분배 비율을 계속하여 적용한다. 단,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회계: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및 집행기구,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li> <li>2. 기층기구회계: 학부·학과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 재정지원</li> <li>3. 격려기금: 회칙에 따라 정해진 본회 각 기구 선출직 및 국장 활동비 지원</li> <li>4. 문화자치기금: 본회 회원의 문화 진흥을 위한 자치 사업 지원</li> </ol>
<p><b>목적 및 경위</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8조가 매 분기 초로 개정됨에 따라 표현을 통일함.</li> <li>2. 자구를 정비하여 표현을 통일함.</li> </ol>

# 의결기구운영세칙 전부개정세칙안

의결기구운영세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본회 의결기구 권한·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의결기구 운영 및 회의 진행 방침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원칙)

본회 의결기구의 회의는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 제3조(적용범위)

1. 본 세칙은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라 한다), 중앙운영위원회 등 각종 의결기구의 회의에 적용한다.
2. 자치기구 등의 회의 진행은 본 세칙을 준용한다.

### 제4조(정의)

1. 본 세칙에서 "회의체"란 학생총회, 전학대회 등 단체의 최고의사를 포함한 중요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본 세칙에서 "회의"란 회의체의 의사 활동을 말한다.
3. 본 세칙에서 "구성원"이란 회의체에서 의결권을 가진 재적 인원을 말한다.
4. 본 세칙에서 사용하는 회의 용어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회기: 개회에서 폐회까지의 기간
  2. 개회: 회의가 진행되는 날 회의가 시작되는 것
  3. 유회: 개회 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회의를 개회할 수 없을 때에 다음 회의 일자를 정하여 공고하기로 한 후에 회의를 끝내는 것
  4. 정회: 회의 도중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속회하기 전까지 회의를 일시 중단하는 것

5. 속회: 정회했던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
6. 폐회: 당일의 회의를 끝내는 것
5. 본 세칙에서 "의결"이란 회의체에서 결정된 단체 의사를 말한다.
6. 본 세칙에서 "의결문"이란 의결 사항을 문장으로 서술한 것을 말한다.
7. 본 세칙에서 "의결권"이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8. 본 세칙에서 "발언권"이란 회의에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5조(대표자의 책임)

총학생회장단, 중앙운영위원, 전학대회 대의원 등은 본회의 각종 회의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2장 회의체

### 제1절 통칙

#### 제6조(회의의 명명법)

회의체 별 각 회의는 "제0000(해당 연도)-0회 회의체명"으로 명명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속칭할 수 있다.

1. 학생총회·학생총투표: 00(해당월).00(해당일) 학생총회·학생총투표
2. 전학대회: 0000(해당 연도) 0분기 정기·임시 전학대회 혹은 0000(해당 연도) 00(해당 월) 정기·임시 전학대회
3. 중앙운영위원회: 00(해당 월) 정기·임시 중앙운영위원회

#### 제7조(출결)

1. 출결은 출석, 지각, 조퇴, 결석으로 구분한다.
2. 출결의 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출석: 개회 선언 후 5분 내
  2. 지각: 개회 선언 후 5분 이후 15분 내
  3. 결석: 개회 선언 후 15분 이후
  4. 조퇴: 출석 혹은 지각하였으나 폐회선언 이전에 퇴장. 다만, 조퇴는 출석이나 지각과 별개로 처리한다.
  5. 지각이나 조퇴를 합하여 2회가 되었을 경우 결석 1회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3. 전학대회 대의원 및 중앙운영위원의 경우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대리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제2항의 기준을 만족한 경우 해당 대의원 또는 중앙운영위원의 출결을 인정한다.
4. 제2항의 출석 기준을 만족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은 회의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의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출결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이외의 사유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직계존속 및 6촌 이내 친인척의 경조사인 경우
2.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고의 경우
3. 국가 비상사태,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천재지변 등의 사태의 경우

#### 제8조(회의장)

회의장은 교내 또는 교내의 인접지이어야 한다.

#### 제9조(원격영상회의)

1. 의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천재지변, 학내 주요 일정·행사 등으로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의를 원격영상회의(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본 세칙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2.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개최된 회의에서의 표결은 제4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69조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4. 중앙집행위원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회의체 출석 현황 공개)

의장은 매 분기 초 직전 분기 동안 개최된 회의체에 대하여 구성원의 회의 출석 여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2절 학생총회

#### 제11조(소집일 결정)

「학생회칙」 제23조의 소집요구가 있으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개최일을 결정한다. 이 때 개최일은 소집요구에 포함된 개최 희망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할 때도 개최 희망일에서 일주일 이상의 차이가 있게 정할 수 없다.

#### 제12조(학생총회 운영 방법의 결정)

1. 학생총회 의장은 제28조에 따라 학생총회 개회 이전에 의사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순, 각 안건 별 선택지의 개수와 내용, 표결 방법 등 학생총회의 구체적 운영 방법을 결정한다. 다만, 제출된 안건의 취지에 반하는 운영 방법을 채택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비상학생총회에 따른 소집은 제1항의 의사조정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3조(중앙총회기획위원회)

1. 학생총회 소집이 결정되면 학생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총회기획위원회를 구성한다.
2. 중앙총회기획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장과 중앙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모집을 하거나 추천에 의해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3. 중앙총회기획위원회는 학생총회의 개회 성사, 선전, 홍보 등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4.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총회기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생총회 개회를 준비한다.

### 제3절 학생총투표

#### 제14조(시행일 결정)

「학생회칙」 제30조의 시행요구가 있으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개회일을 결정한다. 이 때 개회일은 시행요구에 포함된 개회 희망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할 때도 개회 희망일에서 일주일 이상의 차이가 있게 정할 수 없다.

#### 제15조(학생총투표 시행 방법의 결정)

학생총투표 의장은 제28조에 따라 학생총투표 개회 이전에 의사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순, 각 안건 별 선택지의 개수와 내용, 표결 방법 등 학생총투표의 구체적 운영 방법을 결정한다. 다만, 제출된 안건의 취지에 반하는 운영 방법을 채택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중앙투표관리위원회)

1. 학생총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학생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중앙투표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모집을 하거나 추천에 의해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3. 중앙투표관리위원회는 학생총투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을 준용한다.
4.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투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 업무를 보조한다.

### 제17조(정책투표 운영)

1. 정책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7일 이내의 정책투표 시행일을 결정한다.
2. 정책투표 시행일이 결정되면 학생총회 의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업무 보조를 통해 정책투표를 시행한다.
3. 정책투표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온라인, 모바일 투표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제18조(대의원 임기)

보임(補任)되거나 개선(改選)된 대의원 임기는 임기 시작부터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 폐회 이전까지로 한다. 임기 시작은 제20조제5항의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

#### 제19조(대의원 명단·등록 등)

1. 자치기구는 「학생회칙」 제165조제2항에 따른 매 분기 시작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비례대의원을 포함한 대의원 명단을 전학대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치기구는 소속 대의원이 탄핵·사퇴·임기만료 등으로 꺾어진 때에는, 전학대회 의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3. 자치기구는 소속 대의원이 보임(補任)되거나 개선(改選)된 때에는, 전학대회 의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 전학대회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대의원 명단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대의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보고가 접수된 후 대의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5. 제4항의 보고를 마친 후 전학대회 의장은 변경된 대의원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20조(비례대의원석 배분)

1. 정회원 수가 본회 회원 수의 3% 이상인 각 자치기구(이하 의석할당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기구의 인원비율에 따라 비례대의원의 석을 배분한다.
2. 제1항의 인원비율은 각 의석할당기구의 정회원 수를 해당 기구의 당연직대의원 의석수로 나눈 수(이하 당연직대의원 당 정회원 수라 한다)를 모든 의석할당기구의 당연직대의원 당 정회원 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3. 비례대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기구의 인원비율에 비례대의원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이하 기대의석수라 한다)의 정수부분에 따라 먼저 배분하되 최대의석수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의석수만을 배분한다.

4. 제3항의 배분 이후의 잔여의석은 배분된 의석수가 최대의석수 미만인 각 의석할 당기구의 기대의석수의 소수부분이 큰 순으로 각 기구에 1석씩 배분하며 모든 의석을 배분할 때까지 본 항의 과정을 반복한다.
5. 제3항과 제4항의 최대의석수는 비례대의원의석수를 의석할당기구수로 나눈 수의 정수부분에 1을 더한 수와 5석 중 큰 값으로 정한다.

제21조(청가 및 결석)

1. 대의원이 전학대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청가서(請暇書)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겸직 및 대리 금지)

1. 대의원은 다른 대의원 또는 중앙운영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2. 대의원은 다른 대의원 또는 중앙운영위원의 대리인 직을 겸할 수 없다.

**제5절 중앙운영위원회**

제23조(중앙운영위원 임기)

보임(補任)되거나 개선(改選)된 중앙운영위원 임기는 임기 시작부터 1분기 초 정기 전학 대회 폐회 이전까지로 한다. 임기 시작은 제24조제5항의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

제24조(중앙운영위원 명단·등록 등)

1. 자치기구는 「학생회칙」 제165조제3항에 따른 매 반기 시작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 명단을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치기구는 소속 중앙운영위원이 탄핵·사퇴·임기만료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3. 자치기구는 소속 중앙운영위원이 보임되거나 개선된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중앙운영위원 명단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다.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보고가 접수된 후 중앙운영위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5. 제4항의 보고를 마친 후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변경된 중앙운영위원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청가 및 결석)

1. 중앙운영위원이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에는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6조(겸직 및 대리 금지)

1. 중앙운영위원은 다른 대의원 또는 중앙운영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2. 대의원은 다른 대의원 또는 중앙운영위원의 대리인 직을 겸할 수 없다.

### 제5절 위원회

#### 제27조(위원회)

1. 중앙운영위원회는 산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앙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할 수 있다.
2. 중앙운영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임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임시 규정의 효력은 위원회 설치 의결의 발효 시점부터 위원회 해체 의결의 발효 시점까지로 한다.

#### 제28조(의사조정위원회)

1. 의장은 회의 개최 전 또는 회의 중에 회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결정하기 위하여 의사조정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의사조정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절 서면의결

#### 제29조(서면의결)

1. 「학생회칙」 제49조 및 제64조에 규정된 서면의결의 진행은 회의체의 한 회기로 본다.
2. 서면의결의 표결은 제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 우편으로 진행한다.
3. 서면의결 표결에 참여하는 전자 우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표결 참여자의 소속·직위·이름
  2. 찬성·반대·기권 의사와 해당 의사를 표현하는 안건의 종류 및 안건 번호

#### 제30조(기한)

1. 서면의결의 참여 기한은 2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의장은 2일 이상 5일 이하의 범위에서 서면의결 참여 기한을 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의장은 사전에 서면의결 참여 기한을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1조(의결정족수)



1. 서면의결의 의결정족수는 「학생회칙」 제48조 및 제63조를 따른다.
2. 서면의결의 의결정족수 미달은 부결로 본다.

### 제3장 회의

#### 제1절 의사일정

##### 제32조(의사정족수)

1. 본회 각 회의체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의장은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일시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3.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정회 또는 폐회를 선포한다.

##### 제33조(폐회)

1.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심의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성원점검 후 폐회를 선포한다.
2. 폐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최할 수 없다.

##### 제34조(회의의 공개)

1. 본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구성원의 동의(動議)로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본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제의나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제35조(회순)

1. 개회로부터 폐회에 이르는 회순은 각 호를 따른다.
  1. 성원보고
  2. 개회선언
  3. 의장인사
  4. 보고사항
  5. 의사일정 확정
  6. 안건심의
  7. 성원점검
  8. 폐회선언
2. 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제1항제3호를 생략할 수 있다.

#### 제36조(의사일정의 작성)

1. 의장은 회의에 부의(附議)된 안건의 목록을 그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매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2. 의장은 개회 일시 및 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적은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3.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구성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 제37조(의사일정의 변경)

1. 구성원의 동의(動議)로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안건의 대표발의자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안건심의 순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구성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제38조(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 제39조(소집공고)

1. 의장은 「학생회칙」 제23조제3항 및 제6항, 제30조제3항, 제38조제3항 및 제55조 제3항에 따라 회의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1. 회의 장소
  2. 회의 일시(日時)
  3. 전학대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경우 구성원 명단
  4. 소집 경위 및 과정
  5. 부의안건의 제목과 내용
2. 회의 준비는 의장과 중앙집행위원회가 담당하며 제5조의 대표자는 회의 준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2절 발의·회부·철회와 재심의

#### 제40조(안건 발의 또는 제출)

1. 본회 회의체 구성원은 학생회칙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2. 안건을 발의하는 경우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안건 발의 또는 제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1조(안건 상정 시기)

1. 의장은 「학생회칙」 제39조의2 및 제56조의2에 따라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 의장은 안건 상정을 연기할 수 있다.
  1. 하급 회의체 또는 의사조정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한 경우
  2. 안건을 특정 시점까지 연기하기로 의결한 경우

#### 제42조(하급 회의체 회부)

1. 의장은 안건이 발의되거나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구성원에게 배부하고 안건이 발의되거나 제출된 회의체(이하 "대상 회의체"라 한다)에 보고하며, 소관 하급 회의체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안건을 대상 회의체의 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대상 회의체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2. 의장은 안건이 어느 하급 회의체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하급 회의체를 결정한다.
3. 의장은 발의되거나 제출된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구성원이 소관 하급 회의체 재적 구성원 과반수를 차지하여 그 안건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안건을 다른 하급 회의체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4.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안건을 구성원에게 배부할 때에는 이를 전산망에 입력하여 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3조(관련 하급 회의체 회부)

1. 의장은 소관 하급 회의체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하급 회의체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하급 회의체에 그 안건을 회부하되, 소관 하급 회의체와 관련 하급 회의체를 명시하여야 한다. 안건이 소관 하급 회의체에 회부된 후 다른 하급 회의체로부터 회부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의장이 제1항에 따라 관련 하급 회의체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 하급 회의체가 소관 하급 회의체에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소관 하급 회의체는 관련 하급 회의체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제2항의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바로 안건을 회부한 상급 회의체에 보고를 할

수 있다.

4. 소관 하급 회의체는 관련 하급 회의체가 제2항에 따라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5. 소관 하급 회의체는 제2항에 따라 관련 하급 회의체가 의견을 제시한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관련 하급 회의체에 그 내용을 송부하여야 한다.

#### 제44조(동의)

1. 동의(動議)는 회의에서 구성원이 통상적으로 안을 갖출 필요 없이 발의하는 것을 말하며, 안건을 심의하거나 의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안을 하는 절차가 된다.
2. 회칙·세칙·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제출자 외 1인 이상의 재청으로 성립된다.
3. 동의가 성립되면 회의에서 심의하는 안건과는 독립된 의제로서 의결의 대상이 된다.
4. 의장은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을 경우 성립된 동의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회칙·세칙·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의안을 의결한다.

#### 제45조(동의의 종류)

1. 의사일정의 변경동의를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안건심의 순서를 변경하자는 동의를 말한다.
2. 철회동의를 의사일정 확정 이후 또는 동의의 성립 이후 안건 또는 동의를 철회하자는 동의를 말한다.
3. 회부동의를 안건을 하급 회의체 또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보고를 들은 후 심의하자는 동의를 말한다. 회부동의를 의결되면 해당 안건은 최종보고를 마치기 전까지 자동으로 기한부 연기동의 된 것으로 본다.
4. 연기동의를 현재 계류 중인 안건의 심의를 일정시점까지 또는 어떤 사유의 발생시까지 연기하자는 동의를 말한다.
5. 질의종결동의를 즉시 또는 어떤 조건의 성취 후에 현재 심의 중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자는 동의를 말한다.
6. 토론종결동의를 즉시 또는 어떤 조건의 성취 후에 현재 심의 중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이를 표결에 부치자는 동의를 말한다.
7. 그 밖에 비공개회의동의, 기명투표동의, 무기명투표동의, 산회동의, 재표결동의, 정회동의, 질문연장동의, 토론연장동의 등이 있다.

8. 의사일정의 변경동의, 비공개회의동의, 질의종결동의, 토론종결동이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제46조(안건·동의를의 철회)

1. 구성원은 그가 발의한 안건 또는 동의(動議)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 또는 동의에 대해서는 발의한 구성원 과반수가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철회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 확정 이후에 안건을 철회하거나 성립된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회의체의 동의(同意)를 받아야 한다.
3. 본회 산하기구에 의사일정 확정 이후에 제출한 안건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때에는 회의체의 동의(同意)를 받아야 한다.
4. 회의체의 동의(同意)는 제43조제2항의 철회동의(動議)에 따른다.
5. 철회된 안건은 해당 회의에서 다시 심의할 수 없다.

#### 제47조(재심의)

1. 재심의동이는 안건이 의결된 후 특별한 사정에 의해 재심의가 필요할 경우에 처음부터 다시 심의하자는 동의를 말한다.
2. 재심의동의로 재심의하는 안건은 재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8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 제3절 의사와 수정

#### 제49조(안건 심의)

1. 안건의 심의 과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안건 상정
  2.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3.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
  4.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
  5.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
  6. 안건에 대한 표결
2. 의장의 제의 또는 구성원의 동의로 의결이 있을 때에는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0조(재회부)

상급 회의체는 하급 회의체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안건을 같은 하급 회의체 또는 다른 하급 회의체에 회부할 수 있다.

#### 제51조(수정동의)

1. 수정동의는 안건 또는 동의를 대상으로 그 내용에 보완적·경쟁적·적대적 등 관련성을 지니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가하자는 동의를 말한다.
2. 수정 방식에는 삽입·삭제·대체 등 개별방식과 대안 등 포괄방식이 있다.
3. 하급 회의체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성립한다.
4. 하급 회의체는 소관 사항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 제52조(수정안의 표결 순서)

1. 같은 안건에 대하여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구성원의 수정안은 하급 회의체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구성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었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 제53조(안건의 정리)

회의체는 의안이 의결된 후 이탈자 등 서로 어긋나는 조항·자구·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하급 회의체에 위임할 수 있다.

### 제5절 발언

#### 제54조(발언권)

1. 구성원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하여 그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다.
2. 발언권을 얻은 사람은 소속·이름을 밝힌 후, 발언의 요지를 설명하고 부연설명을 한다.
3. 구성원은 본 세칙에 다르게 정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발언하고 있는 동안 발언권을 신청할 수 없다.
4. 구성원이 아닌 사람은 특별히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부여받은 때만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발언에 관하여는 구성원의 발언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언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장이 발언의 중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55조(발언의 허가)

1. 구성원은 발언을 하려면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발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은 통지를 한 구성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3.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하려면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 제56조(발언의 계속)

1. 구성원의 발언은 도중에 다른 구성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
2. 구성원이 정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 다시 그 의사(議事)가 개시되면 의장은 그 구성원에게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 제57조(보충보고)

의장은 소수의견자가 하급 회의체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보다 우선적으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58조(발언 횟수·시간)

1. 의장은 구성원의 균등한 발언을 위해 특정 구성원의 반복적인 발언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의장은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의 방법을 무제한토론진행 방식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토론 전에 구성원의 발언 횟수와 발언 시간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다.
3. 제안 설명, 질의와 정보요구 및 의사진행발언은 위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제59조(발언의 종류)

1. 신상발언이란 자신의 일신상에 관한 문제가 생긴 경우 구성원들에게 해명하는 발언이다.
2. 의사진행발언이란 안건의 병합 또는 분할, 휴회, 축조심의, 의장의 결정에 대한 항의, 의사조정위원회 소집요구 등 안건의 심의과정이나 회의진행과정 등 의사진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발언이다.
3. 구성원이 신상발언·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면 의장은 우선하여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

4.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신상발언을 우선하여 허가한다.
5. 구성원은 필요하면 다른 구성원의 발언 중에도 의장에게 신상발언·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발언 중인 구성원의 발언을 일시 중단시키고 신상발언·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구성원의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
6. 의사진행발언이 나오면 의장은 그 발언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체는 그 발언의 처리를 마쳐야 그 발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안건 심의를 계속할 수 있다.

#### 제60조(의제 외 발언 등의 금지)

1. 구성원은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 회의를 지연시키려는 발언, 회의체나 본회 회원의 신용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의 경우, 의장은 발언을 즉시 중단시키고 구성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61조(발언 원칙)

1. 구성원의 발언 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장이 정한다. 다만,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및 보충발언은 5분을, 구성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발언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2. 구성원이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3. 질의는 일문일답(一問一答)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제62조(토론의 통지)

1.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구성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 등을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가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 제63조(의장의 토론 참가)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 제64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1. 질의나 토론이 끝났을 때에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2. 의장의 제의 또는 구성원의 동의로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구성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동의를 할 수 없다.
3.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제6절 표결

### 제65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회칙·세칙·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6조(의결권)

1. 구성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다.
2. 본회 각 회의체에서는 구성원이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그 밖에 의결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7조(표결의 선포)

1.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2.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 제68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1.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구성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2. 구성원은 표결에 대하여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 제69조(표결 방법)

1.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거수표결로, 거수표결이 어려운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구성원의 동의(動議)로 의결이 있거나 재적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투표·호명투표(呼名投票)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3. 의장은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4. 제1항 본문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우 재석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정당한 투표권자임을 확인한 후 투표한다. 의장의 제의 또는 구성원의 동의로 의결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5. 표결할 때에는 반드시 찬성부터 계산하고, 그 다음에 반대를 물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기권을 물어서 계산한다. 다만, 전자투표를 시행하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찬성, 반대, 기권수의 합이 재석 인원 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장은 재석인원 및 찬성, 반대, 기권수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 제70조(감표위원)

의장은 표결을 시행함에 있어 구성원 및 서기 중에서 1명 또는 수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여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제71조(표결의 생략)

의장은 재석 구성원 전원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안건에 대해 표결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 제72조(표결 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 제73조(의결 발효시점)

의결은 의장이 가결을 선포하는 시점부터 발효된다.

#### 제74조(자유투표)

본회 회의 구성원은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 제4장 회의록

#### 제75조(서기)

1. 본회 각 회의체는 한 명 이상의 서기를 둔다.
2. 서기는 의사·의결정족수를 파악하고 의사를 기록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3. 서기는 중앙집행위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총학생회장은 서기를 관리·감독

한다.

#### 제76조(회의록)

1. 본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 장소
  2. 개회, 정회, 속회, 유회 및 폐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개회 당시 출석 구성원의 수 및 이름
  5. 전학대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의 경우 구성원의 지각·조퇴·결석 및 대리인 선임 사항
  6. 전학대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의 경우 구성원의 이동(異動)
  7. 전학대회의 경우 의석의 배정과 변동
  8. 안건의 발의·제출·회부·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의 제목과 그 내용
  10. 의장의 보고
  11. 중앙운영위원회의 경우 산하위원회의 보고서
  12. 의사
  13. 표결 수
  14. 기명투표·전자투표·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투표자의 의사(찬성·반대·기권)와 이름
  15. 구성원의 발언보충서
  16. 서면질문과 답변서
  17. 그 밖에 의장 또는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각 회의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 녹음·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을 보조할 수 있다.
3. 회의록은 제75조에 따라 지정된 서기가 작성한다.
4. 회의록은 의장 및 2인 이상의 구성원이 서명하여 보관한다.

#### 제77조(참고문서의 게재)

구성원이 그 발언에 참고가 되는 간단한 문서(시청각 자료를 포함한다) 등을 회의록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78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1. 발언한 구성원은 회의록이 공고된 이후 3일 이내에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2. 회의에서 발언한 참관인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3. 속기로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적는다.
4. 구성원이 회의록에 적힌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중앙운영위원회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제79조(결과공고)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제76조의 회의록과 회의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제76조제1항제13호의 안건 별 표결결과만 우선 공고할 수 있다.

### 제5장 질서와 경호

#### 제80조(회의의 질서 유지)

1. 구성원 또는 참관인이 회의장에서 본 세칙 또는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구성원 또는 참관인에 대해서는 의장은 해당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3. 의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폐회를 선포할 수 있다.

#### 제81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구성원은 회의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2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구성원 및 참관인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중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3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구성원 및 참관인은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4조(의장석 점거 금지)

구성원 및 참관인은 의장석을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5조(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장 보칙

### 제86조(회의 진행)

회의 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87조(안건 작성·제출)

안건 작성·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공포 후 5일 후에 발효된다.

### 제2조(경과조치)

1. 본 세칙 시행 이전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및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본 세칙에 의하여 의결된 것으로 본다.
2. 본 세칙 시행 이전의 청가는 본 세칙에 따라 허가 및 승인된 것으로 본다.
3. 본 세칙 시행 이전의 사유서의 승인은 본 세칙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본다.

## 의결기구운영세칙 전부개정세칙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p> <p>본 세칙은 본회의 의결기구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과 의결기구 운영 방침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장 총칙</b></p> <p>제1조(목적)</p> <p>본 세칙은 본회 의결기구 권한·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의결기구 운영 및 회의 진행 방침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원칙)</p> <p>본회 의결기구의 회의는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p>	<p>제2조(원칙)</p> <p>본회 의결기구의 회의는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p>
<p>제3조(적용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 세칙은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학대회, 중앙운영위원회 등 각종 의결기구의 회의에 적용한다.</li> <li>2. 자치기구 등의 회의 진행은 이 세칙을 준용한다.</li> </ol>	<p>제3조(적용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 세칙은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 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라 한다), 중앙운영위원회 등 각종 의결기구의 회의에 적용한다.</li> <li>2. 자치기구 등의 회의 진행은 본 세칙을 준용한다.</li> </ol>
<p>제4조(정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 세칙에서 "회의체"란 학생총회, 전학대회 등 단체의 최고의사를 포함한 중요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을 말한다.</li> <li>2. 본 세칙에서 "회의"란 회의체의 의사 활동을 말한다.</li> <li>3. 본 세칙에서 "구성원"이란 회의체에서 의결권을 가진 재적인원을 말한다.</li> <li>4. 본 세칙에서 "의결"이란 회의체에서 결정된 단체 의사를 말한다.</li> <li>5. 본 세칙에서 "의결문"이란 의결 사항을 문장으로 서술한 것을 말한다.</li> <li>6. 본 세칙에서 "의결권"이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li> </ol>	<p>제4조(정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 세칙에서 "회의체"란 학생총회, 전학대회 등 단체의 최고의사를 포함한 중요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을 말한다.</li> <li>2. 본 세칙에서 "회의"란 회의체의 의사 활동을 말한다.</li> <li>3. 본 세칙에서 "구성원"이란 회의체에서 의결권을 가진 재적 인원을 말한다.</li> <li>4. 본 세칙에서 사용하는 회의 용어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기: 개회에서 폐회까지의 기간</li> <li>2. 개회: 회의가 진행되는 날 회의가 시작되는 것</li> <li>3. 유회: 개회 전 의사정족수를 충족</li> </ol> </li> </ol>

<p>7. 본 세칙에서 "발언권"이란 발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p>	<p>하지 못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 다음 회의 일자를 정하여 공고하기로 한 후에 회의를 끝내는 것</p> <p>4. 정회: 회의 도중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속회하기 전까지 회의를 일시 중단하는 것</p> <p>5. 속회: 정회했던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p> <p>6. 폐회: 당일의 회의를 끝내는 것</p> <p>5. 본 세칙에서 "의결"이란 회의체에서 결정된 단체 의사를 말한다.</p> <p>6. 본 세칙에서 "의결문"이란 의결 사항을 문장으로 서술한 것을 말한다.</p> <p>7. 본 세칙에서 "의결권"이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p> <p>8. 본 세칙에서 "발언권"이란 회의에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p>
<p>제5조(대표자의 책임) 총학생회장단, 중앙운영위원회, 전학대회 대의원 등은 본회의 각종 회의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p>	<p>제5조(대표자의 책임) 총학생회장단, 중앙운영위원회, 전학대회 대의원 등은 본회의 각종 회의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p>
<p>제6조(회의의 명명법)</p> <p>1. 회의체 별 각 회의는 기본적으로 "0000(해당 연도) 제0차 회의체명"이라 명명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속칭할 수 있다.</p> <p>1. 학생총회·학생총투표: 00(해당 월).00(해당일). 학생총회·학생총투표</p> <p>2. 전학대회: 0000(해당 연도) 상·하반기 정기·임시 전학대회 혹은 0000(해당 연도) 00(해당 월) 정기·임시 전학대회</p> <p>3. 중앙운영위원회: 00(해당 월) 정기·임시 중앙운영위원회</p> <p>2. 회의 명명 시 차수는 총학생회장단 임기시작일부터 개시하여 다음 총학생회장단 임기 전까지 누적하는 것을</p>	<p><b>제2장 회의체</b></p> <p><b>제1절 통칙</b></p> <p>제6조(회의의 명명법) 회의체 별 각 회의는 "제0000(해당 연도)-0회 회의체명"으로 명명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속칭할 수 있다.</p> <p>1. 학생총회·학생총투표: 00(해당월).00(해당일) 학생총회·학생총투표</p> <p>2. 전학대회: 0000(해당 연도) 0분기 정기·임시 전학대회 혹은 0000(해당 연도) 00(해당 월) 정기·임시 전학대회</p> <p>3. 중앙운영위원회: 00(해당 월) 정기·임시 중앙운영위원회</p>

<p>원칙으로 한다.</p>	
<p>제2장 회의 진행의 원칙</p> <p>제7조(공개 원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구성원 과반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본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개 회의가 가능하다.</li> <li>2. 본회 회원은 본회 회의의 방청권을 갖는다. 단,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수를 제한하거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li> <li>3. 본회 회의의 결과와 회의록은 공개한다.</li> </ol>	<p>제7조(출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출결은 출석, 지각, 조퇴, 결석으로 구분한다.</li> <li>2. 출결의 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출석: 개회 선언 후 5분 내</li> <li>2. 지각: 개회 선언 후 5분 이후 15분 내</li> <li>3. 결석: 개회 선언 후 15분 이후</li> <li>4. 조퇴: 출석 혹은 지각하였으나 폐회선언 이전에 퇴장. 다만, 조퇴는 출석이나 지각과 별개로 처리한다.</li> <li>5. 지각이나 조퇴를 합하여 2회가 되었을 경우 결석 1회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li> </ol> </li> <li>3. 전학대회 대의원 및 중앙운영위원의 경우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대리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제2항의 기준을 만족한 경우 해당 대의원 또는 중앙운영위원의 출결을 인정한다.</li> <li>4. 제2항의 출석 기준을 만족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은 회의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의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출결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이외의 사유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계존속 및 6촌 이내 친인척의 경조사인 경우</li> <li>2.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고의 경우</li> <li>3. 국가 비상사태,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천재지변 등의 사태의 경우</li> </ol> </li> </ol>
<p>제8조(정족수의 원칙)</p> <p>본회 회의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 출석을 의사정족수로 하고, 재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한다. 단, 회칙, 세칙, 규칙에 의해</p>	<p>제8조(회의장)</p> <p>회의장은 교내 또는 교내의 인접지이어야 한다.</p>



<p>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은 그에 따른다.</p>	
<p>제9조(일의제의 원칙)  본회 회의에는 한 번에 한 가지 의제만을 상정하여 다루고, 두 가지 이상의 안건을 동시에 상정하지 아니한다.</p>	<p>제9조(원격영상회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천재지변, 학내 주요 일정·행사 등으로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의를 원격영상회의(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본 세칙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li> <li>2.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li> <li>3. 제1항에 따라 개최된 회의에서의 표결은 제4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69조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li> <li>4. 중앙집행위원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li> <li>5.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li> </ol>
<p>제9조의2(일사부재의)  본회 회의에서 한번 가결되거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기할 수 없다.</p>	<p>제10조(회의체 출석 현황 공개)  의장은 매 분기 초 직전 분기 동안 개최된 회의체에 대하여 구성원의 회의 출석 여부를 공개하여야 한다.</p>
<p>제10조(토론 자유의 원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 회원은 본회 회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다. 단, 의장은 필요할 때 토론의 자유를 유보할 수 있고, 회의 구성원에게 토론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li> <li>2. 회원은 발언 횟수와 시간의 제한 하에 의장의 발언 허가가 있어야 발언</li> </ol>	<p><b>제2절 학생총회</b></p> <p>제11조(소집일 결정)  「학생회칙」 제23조의 소집요구가 있으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개최일을 결정한다. 이 때 개최일은 소집요구에 포함된 개최 희망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할 때도 개최 희망일에서 일주일 이상의 차이가 있게 정할</p>

할 수 있다.	수 없다.
<p>제10조의2(투표 자유의 원칙) 본회 회의 구성원은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여 판단하여 투표해야 한다. 투표권의 행사는 투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긴다.</p>	<p>제12조(학생총회 운영 방법의 결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총회 의장은 제28조에 따라 학생총회 개회 이전에 의사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순, 각 안건 별 선택지의 개수와 내용, 표결 방법 등 학생총회의 구체적 운영 방법을 결정한다. 다만, 제출된 안건의 취지에 반하는 운영 방법을 채택하여서는 아니 된다.</li> <li>2. 비상학생총회에 따른 소집은 제1항의 의사조정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li> </ol>
<p>제11조(다수결의 원칙) 표결에 의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함을 원칙으로 한다.</p>	<p>제13조(중앙총회기획위원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총회 소집이 결정되면 학생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총회기획위원회를 구성한다.</li> <li>2. 중앙총회기획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장과 중앙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모집을 하거나 추천에 의해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li> <li>3. 중앙총회기획위원회는 학생총회의 개회 성사, 선전, 홍보 등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li> <li>4.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총회기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생총회 개회를 준비한다.</li> </ol>
<p>제12조(소수 의견 존중의 원칙) 다수의 의견이 폭력적으로 지배되지 않도록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p>	<p><b>제3절 학생총투표</b></p> <p>제14조(시행일 결정) 「학생회칙」 제30조의 시행요구가 있으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개회일을 결정한다. 이 때 개회일은 시행요구에 포함된 개회 희망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할 때도 개회 희망일에서 일주일 이상의 차이가 있게 정할 수 없다.</p>
<p>제3장 의사 진행 제1절 회의의 구성 제13조(의결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성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다.</li> <li>2. 본회 각 회의체에서는 구성원이 대리</li> </ol>	<p>제15조(학생총투표 시행 방법의 결정) 학생총투표 의장은 제28조에 따라 학생총투표 개회 이전에 의사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순, 각 안건 별 선택지의 개수와 내용, 표결 방법 등 학생총투표의 구체적 운영 방법을 결정한다.</p>

<p>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p> <p>3. 의결권 부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의진행규칙」에 따른다.</p>	<p>다. 다만, 제출된 안건의 취지에 반하는 운영 방법을 채택하여서는 아니 된다.</p>
<p><b>제14조(의장)</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 각 회의체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li> <li>2.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는 동안 토론에 참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직권상정한 안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li> <li>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경우 해당 안건이 제25조에 따라 심의될 때까지 의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li> </ol>	<p><b>제16조(중앙투표관리위원회)</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총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학생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li> <li>2. 중앙투표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모집을 하거나 추천에 의해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li> <li>3. 중앙투표관리위원회는 학생총투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을 준용한다.</li> <li>4.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투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 업무를 보조한다.</li> </ol>
<p><b>제15조(서기)</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 각 회의체는 서기를 두어 의사·의결정족수를 파악하고 의사를 기록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li> <li>2. 서기는 중앙집행위원 중 한 명 이상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총학생회장은 서기를 관리·감독한다.</li> </ol>	<p><b>제17조(정책투표 운영)</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책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7일 이내의 정책투표 시행일을 결정한다.</li> <li>2. 정책투표 시행일이 결정되면 학생총회 의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업무보조를 통해 정책투표를 시행한다.</li> <li>3. 정책투표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온라인, 모바일 투표방법을 원칙으로 한다.</li> </ol>
<p><b>제16조(소집)</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장은 「학생회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회의 소집 사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구성원에게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의 장소</li> <li>2. 회의 일시</li> <li>3. 구성원 명단 (전학대회, 중앙운영위원회의 경우에 한한다.)</li> </ol> </li> </ol>	<p><b>제4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b></p> <p><b>제18조(대의원 임기)</b></p> <p>보임(補任)되거나 개선(改選)된 대의원 임기는 임기 시작부터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 폐회 이전까지로 한다. 임기 시작은 제20조제5항의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p>

<p>4. 소집 경위 및 과정 5. 부의안건의 제목과 내용</p> <p>2. 회의장은 교내 또는 교내의 인접지여야 한다.</p> <p>3. 회의의 개회 준비는 의장과 중앙집행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5조의 대표자는 회의 개회 준비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p> <p>4.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소집 당시 대면 회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화상원격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p>	
<p>제17조(의사정족수)</p> <p>본회 각 회의체는 회의장에 재적 구성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의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수가 재석하고 있어야 의사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p>	<p>제19조(대의원 명단·등록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치기구는 「학생회칙」 제165조제2항에 따른 매 분기 시작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비례대의원을 포함한 대의원 명단을 전학대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li> <li>2. 자치기구는 소속 대의원이 탄핵·사퇴·임기만료 등으로 꺾이된 때에는, 전학대회 의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li> <li>3. 자치기구는 소속 대의원이 보임(補任)되거나 개선(改選)된 때에는, 전학대회 의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li> <li>4. 전학대회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대의원 명단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대의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보고가 접수된 후 대의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li> <li>5. 제4항의 보고를 마친 후 전학대회 의장은 변경된 대의원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li> </ol>
<p>제18조(회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회로부터 폐회에 이르는 회순은 각 호의 의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원보고</li> <li>2. 개회선언</li> <li>3. 의장인사</li> </ol> </li> </ol>	<p>제20조(비례대의원석 배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회원 수가 본회 회원 수의 3% 이상인 각 자치기구(이하 의석할당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기구의 인원비율에 따라 비례대의원의 석을 배분한다.</li> <li>2. 제1항의 인원비율은 각 의석할당기구</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보고사항</li> <li>5. 안건심의 순서 확정</li> <li>6. 안건심의</li> <li>7. 성원점검</li> <li>8. 폐회선언</li> </ol> <p>2. 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1항제 3호를 생략할 수 있다.</p>	<p>의 정회원 수를 해당 기구의 당연직 대의원의석수로 나눈 수(이하 당연직 대의원 당 정회원 수라 한다)를 모든 의석할당기구의 당연직대의원 당 정회원 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비례대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기구의 인원비율에 비례대의원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이하 기대의석수라 한다)의 정수부분에 따라 먼저 배분하되 최대의석수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의석수만을 배분한다.</li> <li>4. 제3항의 배분 이후의 잔여의석은 배분된 의석수가 최대의석수 미만인 각 의석할당기구의 기대의석수의 소수부분이 큰 순으로 각 기구에 1석씩 배분하며 모든 의석을 배분할 때까지 본 항의 과정을 반복한다.</li> <li>5. 제3항과 제4항의 최대의석수는 비례대의원의석수를 의석할당기구수로 나눈 수의 정수부분에 1을 더한 수와 5석 중 큰 값으로 정한다.</li> </ol>
<p>제19조(회의 용어의 정의) 본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회: 회의가 진행되는 날 회의가 시작되는 것</li> <li>2. 유회: 개회 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회의를 개회할 수 없을 때 다음 회의 일자를 정하여 공고하기로 한 후 회의를 끝내는 것</li> <li>3. 휴회: 회의 도중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속회하기 전까지 회의를 일시 중단하는 것</li> <li>4. 폐회: 당일의 회의를 끝내는 것.</li> <li>5. 회기: 개회에서 폐회까지의 기간</li> <li>6. 속회: 휴회했던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li> </ol>	<p>제21조(청가 및 결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의원이 전학대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청가서(請假書)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li> <li>2. 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li> </ol>
<p>제20조(회의의 폐회·유회·휴회)</p>	<p>제22조(겸직 및 대리 금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폐회는 모든 안건의 심의가 끝났을 때 의장이 성원점검 후 선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li> <li>2. 의장은 공고한 회의 시작 시각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의사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할 때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li> <li>3. 의장은 회의 중 의사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할 때 회의의 폐회 또는 휴회를 선포한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의원은 다른 대의원 또는 중앙운영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li> <li>2. 대의원은 다른 대의원 또는 중앙운영위원의 대리인 직을 겸할 수 없다.</li> </ol>
<p>제21조(의사조정위원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장은 회의 개최 전 또는 회의 중에 회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결정하기 위하여 의사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li> <li>2. 의사조정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으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li> </ol>	<p><b>제5절 중앙운영위원회</b></p> <p>제23조(중앙운영위원 임기)</p> <p>보임(補任)되거나 개선(改選)된 중앙운영위원 임기는 임기 시작부터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 폐회 이전까지로 한다. 임기 시작은 제24조 제5항의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p>
<p>제2절 안건</p> <p>제22조(안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건이란 회의체에서 심의해야 할 대상을 말한다.</li> <li>2. 처리된 안건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재의 또한 안건의 하나로 본다.</li> <li>3. 안건의 제출은 「학생회칙」 및 「회의진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이루어져야 한다.</li> </ol>	<p>제24조(중앙운영위원 명단·등록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치기구는 「학생회칙」 제165조제3항에 따른 매 반기 시작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 명단을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li> <li>2. 자치기구는 소속 중앙운영위원이 탄핵·사퇴·임기만료 등으로 꺾어진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li> <li>3. 자치기구는 소속 중앙운영위원이 보임되거나 개선된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li> <li>4.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중앙운영위원 명단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다.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보고가 접수된 후 중앙운영위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li> <li>5. 제4항의 보고를 마친 후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변경된 중앙운영위원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li> </ol>

<p>제22조의2(안건의 철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건의 제출자는 제18조제5호의 안건 심의 순서가 확정되기 전까지 안건을 철회할 수 있으며, 확정된 이후로는 회의체의 허가를 얻어야 이를 철회할 수 있다.</li> <li>2. 제1항에서 회의체의 허가는 구성원 한 명의 동의 제출과 다른 구성원 한 명의 재청으로 성립되고, 이의가 없을 경우 의장은 제출한 동의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재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철회안을 의결한다</li> <li>3. 공동 발의 안건의 경우 공동 발의자 과반의 동의에 의하여 철회할 수 있다.</li> <li>4. 철회된 안건은 해당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 없다.</li> </ol>	<p>제25조(청가 및 결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운영위원이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li> <li>2. 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li> </ol>
<p>제23조(안건의 심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일 심의할 안건이 2개 이상이면 의장은 회순에 따라 안건을 하나씩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li> <li>2. 의장은 상황에 따라 회순을 변경하여 상정할 수도 있고, 복수의 안건을 병합하여 상정하거나 하나의 안건을 분할하여 상정할 수도 있다. 단, 의결요건이 다른 안건을 병합하여 표결하기 위해서는 더 가중된 의결요건을 따라야 한다.</li> </ol>	<p>제26조(겸직 및 대리 금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운영위원은 다른 대의원 또는 중앙운영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li> <li>2. 대의원은 다른 대의원 또는 중앙운영위원의 대리인 직을 겸할 수 없다.</li> </ol>
<p>제24조(토론)</p> <p>모든 안건은 토론의 대상이 된다.</p>	<p><b>제5절 위원회</b></p> <p>제27조(위원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운영위원회는 산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앙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할 수 있다.</li> <li>2. 중앙운영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임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임시 규정의 효력은 위원회 설치 의결의 발효 시점부터 위원회 해체 의결의</li> </ol>

	발효 시점까지로 한다.
<p>제25조(안건의 심의과정)</p> <p>안건의 심의 순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건 상정</li> <li>2.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li> <li>3.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li> <li>4.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li> <li>5. 안건에 대한 논의종결</li> <li>6. 안건에 대한 표결</li> </ol>	<p>제28조(의사조정위원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장은 회의 개최 전 또는 회의 중에 회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결정하기 위하여 의사조정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li> <li>2. 의사조정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li> </ol>
<p>제25조의2(안건 상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회칙」 및 세칙에 따라 회의체에 안건을 제출한 경우, 의장은 안건 제출 일자로부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소집되는 동일한 회의체에 안건을 상정한다.</li> <li>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의장은 안건의 상정을 연기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하급 회의체 또는 의사조정위원회로 안건을 위임한 경우</li> <li>2. 안건을 특정 시점까지 연기하기로 연기 동의 또는 의결한 경우</li> </ol> </li> <li>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의장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소집되는 동일한 회의체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사조정위원회에서 회의체로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한 경우</li> <li>2. 특정 시점까지 연기하기로 연기 동의 또는 의결된 안건의 특정 시점이 끝난 경우</li> </ol> </li> </ol>	<p><b>제6절 서면의결</b></p> <p>제29조(서면의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회칙」 제49조 및 제64조에 규정된 서면의결의 진행은 회의체의 한 회기로 본다.</li> <li>2. 서면의결의 표결은 제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 우편으로 진행한다.</li> <li>3. 서면의결 표결에 참여하는 전자 우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표결 참여자의 소속·직위·이름</li> <li>2. 찬성·반대·기권 의사와 해당 의사를 표현하는 안건의 종류 및 안건 번호</li> </ol> </li> </ol>
<p>제26조(토론종결·재심의·수정·회부·연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재심의·수정·회부·연기는 구성원 한 명의 동의 제출과 다른 구성원 한 명의 재청으로 성립되고, 이의가 없을 경우 의장은 제출한 동의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재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의안을 의결한다.</li> </ol>	<p>제30조(기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면의결의 참여 기한은 2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의장은 2일 이상 5일 이하의 범위에서 서면의결 참여 기한을 정할 수 있다.</li> <li>2. 제1항의 경우 의장은 사전에 서면의결 참여 기한을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토론종결동의를 즉시 또는 어떤 조건의 성취 뒤에 현재 심의중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이를 표결에 부치는 것으로 동의 제출 사전에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양측 각 두명씩의 토론이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li> <li>3. 재심의동의를 안건이 이미 통과되고 나서 특별한 사정에 의해 재논의가 필요할 때 처음부터 다시 심의하자는 것으로 회의가 일단 폐회하면 재심의 동의를 제출할 수 없다. 재심의안은 재석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li> <li>4. 수정동의를 안건을 대상으로 그 내용에 보완적 등 관련성을 지니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li> <li>5. 회부동의를 안건을 하급 회의체 또는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먼저 들은 후 심의하거나 안건의 처리를 위임하는 것으로 안건을 회부하면 자동으로 기한부 연기된 것으로 본다.</li> <li>6. 연기동의를 현재 계류 중인 안건의 심의를 일정시점까지 연기하자는 것이다.</li> </ol>	
<p>제3절 발언 제27조(발언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성원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하여 그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다.</li> <li>2. 발언권을 얻은 사람은 성명·소속을 밝힌 후, 발언의 요지를 설명하고 부연 설명을 한다.</li> <li>3. 구성원은 본 세칙에 다르게 정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발언하고 있는 동안 발언권을 신청할 수 없다.</li> <li>4. 구성원이 아닌 사람은 특별히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부여 받은 때만 발언할 수 있다.</li> </ol>	<p>제31조(의결정족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면의결의 의결정족수는 「학생회칙」 제48조 및 제63조를 따른다.</li> <li>2. 서면의결의 의결정족수 미달은 부결로 본다.</li> </ol>

<p>5. 제1항부터 제4항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언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장이 발언의 중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제28조(발언 횟수와 시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장은 구성원의 균등한 발언을 위해 특정 구성원의 반복적인 발언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li> <li>2. 의장은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의 방법을 무제한토론진행 방식으로 결정하지 않는 한, 토론 전에 구성원의 발언 횟수와 발언 시간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다.</li> <li>3. 제안 설명, 질의와 정보요구 및 의사 진행발언은 위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li> </ol>	<p><b>제3장 회의</b></p> <p><b>제1절 의사일정</b></p> <p>제32조(의사정족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 각 회의체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li> <li>2. 의장은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일시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li> <li>3.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정회 또는 폐회를 선포한다.</li> </ol>
<p>제29조(신상발언·의사진행발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상발언이란 자신의 일신상에 관한 문제가 생긴 경우 구성원들에게 해명하는 발언이다.</li> <li>2. 의사진행발언이란 안건의 병합 또는 분할, 휴회, 축조심의, 의장의 결정에 대한 항의, 의사조정위원회 소집요구 등 회의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의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하는 발언이다.</li> <li>3. 회원이 신상발언·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면 의장은 우선하여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li> <li>4. 회원은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발언 중에도 의장에게 신상발언·의사진행발언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의장은 당시 발언 중인 사람의 발언을 일시 중단시키고 회원에게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li> <li>5. 의사진행발언이 나오면 의장은 그 발언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li> </ol>	<p>제33조(폐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심의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성원점검 후 폐회를 선포한다.</li> <li>2. 폐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회할 수 없다.</li> </ol>

<p>회의체는 그 발언의 처리를 마쳐야 그 발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안건 심의를 계속할 수 있다.</p>	
<p>제30조(의제 이외의 발언 등) 회원은 의제 이외의 발언, 회의를 지연시키려는 발언, 회의체나 회원의 신용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이때 의장은 발언을 즉시 중단 시키고 회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제34조(회의의 공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구성원의 동의(動議)로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본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li> <li>2.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제의나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li> </ol>
<p>제4절 표결 제31조(표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건의 표결은 의장의 표결개시선언으로 시작된다.</li> <li>2. 의장은 표결개시선언을 함에 있어서 어떤 안건이 그 대상인지 밝혀야 한다.</li> </ol>	<p>제35조(회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회로부터 폐회에 이르는 회순은 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원보고</li> <li>2. 개회선언</li> <li>3. 의장인사</li> <li>4. 보고사항</li> <li>5. 의사일정 확정</li> <li>6. 안건심의</li> <li>7. 성원점검</li> <li>8. 폐회선언</li> </ol> </li> <li>2. 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제1항제3호를 생략할 수 있다.</li> </ol>
<p>제32조(표결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재석 구성원의 동의로 의결이 있거나 재석 구성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li> <li>2. 의장은 재석한 구성원 전원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 대해 표결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li> <li>3. 표결에는 회의장에 재석한 구성원만 참가할 수 있다. 재석인원에 변동이</li> </ol>	<p>제36조(의사일정의 작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장은 회의에 부의(附議)된 안건의 목록을 그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매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li> <li>2. 의장은 개회 일시 및 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적은 의사일정을 작성한다.</li> <li>3.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구성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li> </ol>

<p>있으면 의장은 의결정족수를 재확인한다.</p> <p>4. 표결할 때는 반드시 찬성부터 계산하고, 그 다음에 반대를 물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기권을 물어서 계산한다. 단, 전자투표를 시행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계산합이 재석인원에 맞지 않는 경우 의장은 재석인원 및 찬성, 반대, 기권수를 재확인한다.</p> <p>5. 구성원은 투표 내용을 번복할 수 없다.</p>	
<p>제33조(감표위원)</p> <p>의장은 표결을 시행함에 있어 구성원 및 서기 중에서 1명 또는 수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여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p>	<p>제37조(의사일정의 변경)</p> <p>1. 구성원의 동의(動議)로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안건의 대표발의자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안건심의 순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p> <p>2. 제1항의 경우 구성원의 동의에는 이 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p>
<p>제34조(표결결과선포)</p> <p>표결이 종료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집계하여 선포한다.</p>	<p>제38조(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p> <p>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p>
<p>제5절 회의록·결과공고</p> <p>제35조(회의록)</p> <p>1. 본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의 장소</li> <li>2. 개회·휴회·유회 또는 폐회의 일시</li> <li>3. 개회 당시의 출석 인원 명단</li> <li>4. 구성원이 제5조에 해당할 때, 구성원의 지각·조퇴·결석·대리선임 사항</li> <li>5. 부의안건의 제목과 내용</li> <li>6. 의사</li> <li>7. 각 구성원의 표결 사항을 기재한 표결결과</li> </ol>	<p>제39조(소집공고)</p> <p>1. 의장은 「학생회칙」 제23조제3항 및 제6항, 제30조제3항, 제38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에 따라 회의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의 장소</li> <li>2. 회의 일시(日時)</li> <li>3. 전학대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경우 구성원 명단</li> <li>4. 소집 경위 및 과정</li> <li>5. 부의안건의 제목과 내용</li> </ol> <p>2. 회의 준비는 의장과 중앙집행위원회</p>

<p>8. 그 밖에 의장 또는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2. 각 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녹음, 녹화 이외의 방법으로 기록을 보조할 수 있다.</p> <p>3. 회의록은 제15조에 따라 서기로 지정된 중앙집행위원이 작성한다.</p> <p>4.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리세칙」으로 정한다.</p>	<p>가 담당하며 제5조의 대표자는 회의 준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p>
<p>제36조(결과공고)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제35조의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제35조제7호의 안건 별 표결결과만 우선 공고할 수 있다.</p>	<p><b>제2절 발의·회부·철회와 재심의</b></p> <p>제40조(안건 발의 또는 제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 회의체 구성원은 학생회칙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li> <li>2. 안건을 발의하는 경우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li> <li>3. 그 밖의 안건 발의 또는 제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li> </ol>
<p>제4장 회의체 운영</p> <p>제1절 학생총회·학생총투표</p> <p>제37조(소집일 결정) 「학생회칙」 제23조 혹은 제28조의 소집·시행 요구가 있으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개회일을 결정한다. 이 때 개회일은 소집·시행 요구에 포함된 개회 희망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할 때도 개회 희망일에서 일주일 이상의 차이가 있게 정할 수 없다.</p>	<p>제41조(안건 상정 시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장은 「학생회칙」 제39조의2 및 제56조의2에 따라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 의장은 안건 상정을 연기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하급 회의체 또는 의사조정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한 경우</li> <li>2. 안건을 특정 시점까지 연기하기로 의결한 경우</li> </ol> </li> </ol>
<p>제38조(학생총회 운영 방법의 결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총회 의장은 제21조에 따라 학생총회 개회 이전에 의사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순, 각 안건 별 선택지의 개수와 내용, 표결 방법 등 학생총회의 구체적 운영 방법을 결정한다. 단, 제출된 안건의 취지에 반하는 운영 방법을 채택하여서는 아니 된다.</li> </ol>	<p>제42조(하급 회의체 회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장은 안건이 발의되거나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구성원에게 배부하고 안건이 발의되거나 제출된 회의체(이하 "대상 회의체"라 한다)에 보고하며, 소관 하급 회의체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안건을 대상 회의</li> </ol>

<p>2. 비상학생총회에 따른 소집은 제1항의 의사조정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p>	<p>체의 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대상 회의체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p> <p>2. 의장은 안건이 어느 하급 회의체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하급 회의체를 결정한다.</p> <p>3. 의장은 발의되거나 제출된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구성원이 소관 하급 회의체 재적 구성원 과반수를 차지하여 그 안건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안건을 다른 하급 회의체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p> <p>4.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안건을 구성원에게 배부할 때에는 이를 전산망에 입력하여 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39조(중앙총회기획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총회 소집이 결정되면 학생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총회기획단을 구성한다.</li> <li>2. 중앙총회기획단은 중앙집행위원장과 중앙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모집을 하거나 추천에 의해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li> <li>3. 중앙총회기획단은 학생총회의 개회 성사, 선전, 홍보 등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li> <li>4.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총회기획단의 결정에 따라 학생총회 개회를 준비한다.</li> </ol>	<p>제43조(관련 하급 회의체 회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장은 소관 하급 회의체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하급 회의체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하급 회의체에 그 안건을 회부하되, 소관 하급 회의체와 관련 하급 회의체를 명시하여야 한다. 안건이 소관 하급 회의체에 회부된 후 다른 하급 회의체로부터 회부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li> <li>2. 의장이 제1항에 따라 관련 하급 회의체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 하급 회의체가 소관 하급 회의체에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li> <li>3. 소관 하급 회의체는 관련 하급 회의체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제2항의 기간</li> </ol>

	<p>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바로 안건을 회부한 상급 회의체에 보고를 할 수 있다.</p> <p>4. 소관 하급 회의체는 관련 하급 회의체가 제2항에 따라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p> <p>5. 소관 하급 회의체는 제2항에 따라 관련 하급 회의체가 의견을 제시한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관련 하급 회의체에 그 내용을 송부하여야 한다.</p>
<p>제40조(중앙투표관리위원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총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학생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li> <li>2. 중앙투표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모집을 하거나 추천에 의해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li> <li>3. 중앙투표관리위원회는 학생총투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을 준용한다.</li> <li>4.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투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 업무를 보조한다.</li> </ol>	<p>제44조(동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의(動議)는 회의에서 구성원이 통상적으로 안을 갖출 필요 없이 발의하는 것을 말하며, 안건을 심의하거나 의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안을 하는 절차가 된다.</li> <li>2. 회칙·세칙·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제출자 외 1인 이상의 재청으로 성립된다.</li> <li>3. 동의를 성립되면 회의에서 심의하는 안건과는 독립된 의제로서 의결의 대상이 된다.</li> <li>4. 의장은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을 경우 성립된 동의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회칙·세칙·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의안을 의결한다.</li> </ol>
<p>제41조(정책투표 운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책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7일 이내의 정책투표 시행일을 결정한다.</li> <li>2. 정책투표 시행일이 결정되면 학생총회 의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업무보조를 통해 정책투표를 시행한다.</li> <li>3. 정책투표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온라인, 모바일 투표방법을 원칙으로 한</li> </ol>	<p>제45조(동의의 종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사일정의 변경동의를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안건심의 순서를 변경하자는 동의를 말한다.</li> <li>2. 철회동의를 의사일정 확정 이후 또는 동의를 성립 이후 안건 또는 동의를 철회하자는 동의를 말한다.</li> <li>3. 회부동의를 안건을 하급 회의체 또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보고를 들</li> </ol>

<p>다.</p>	<p>은 후 심의하자는 동의를 말한다. 회부동의가 의결되면 해당 안건은 최종 보고를 마치기 전까지 자동으로 기한부 연기동의 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연기동의를 현재 계류 중인 안건의 심의를 일정시점까지 또는 어떤 사유의 발생 시까지 연기하자는 동의를 말한다.</li> <li>5. 질의종결동이는 즉시 또는 어떤 조건의 성취 후에 현재 심의 중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자는 동의를 말한다.</li> <li>6. 토론종결동이는 즉시 또는 어떤 조건의 성취 후에 현재 심의 중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이를 표결에 부치자는 동의를 말한다.</li> <li>7. 그 밖에 비공개회의동의, 기명투표동의, 무기명투표동의, 산회동의, 재표결동의, 정회동의, 질문연장동의, 토론연장동의 등이 있다.</li> <li>8. 의사일정의 변경동의, 비공개회의동의, 질의종결동의, 토론종결동이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li> </ol>
<p>제2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중앙운영위원회 제42조(비례대의원의석의 배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내부 회원 수가 본회 회원 수의 3% 이상인 각 자치기구(이하 의석할당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기구의 인원비율에 따라 비례대의원의 석을 배분한다.</li> <li>2. 제1항의 인원비율은 각 의석할당기구의 회원 수를 해당 기구의 당연직대의원의석수로 나눈 수(이하 당연직대의원 당 회원수라 한다)를 모든 의석할당기구의 당연직대의원 당 회원 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li> <li>3. 비례대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기구의 인원비율에 비례대의원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이하 기대의석수라 한</li> </ol>	<p>제46조(안건·동의를 철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성원은 그가 발의한 안건 또는 동의(動議)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 또는 동의에 대해서는 발의한 구성원 과반수가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철회할 수 있다.</li> <li>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 확정 이후에 안건을 철회하거나 성립된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회의체의 동의(同意)를 받아야 한다.</li> <li>3. 본회 산하기구에 의사일정 확정 이후에 제출한 안건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때에는 회의체의 동의(同意)를 받아야 한다.</li> <li>4. 회의체의 동의(同意)는 제43조제2항의</li> </ol>



<p>다)의 정수부분에 따라 먼저 배분하되 최대의석수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의 석수만을 배분한다.</p> <p>4. 제3항의 배분 이후의 잔여의석은 배분된 의석수가 최대의석수 미만인 각 의석할당기구의 기대의석수의 소수부분이 큰 순으로 각 기구에 1석씩 배분하며 모든 의석을 배분할 때까지 본 항의 과정을 반복한다.</p> <p>5. 제3항과 제4항의 최대의석수는 비례대의원의석수를 의석할당기구수로 나눈 수의 정수부분에 1을 더한 수와 5석 중 큰 값으로 정한다.</p>	<p>철회동의(動議)에 따른다.</p> <p>5. 철회된 안건은 해당 회의에서 다시 심의할 수 없다.</p>
<p>제43조(대의원 명단)</p> <p>1. 자치기구는 봄 학기 개강 후 7일 이내에 비례대의원을 포함한 대의원의 명단을 전학대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2. 전학대회 의장은 봄학기 개강 후 10일 이내에 대의원 명단을 공고한다.</p>	<p>제47조(재심의)</p> <p>1. 재심의동의를 안건이 의결된 후 특별한 사정에 의해 재심의가 필요할 경우에 처음부터 다시 심의하자는 동의를 말한다.</p> <p>2. 재심의동의로 재심의하는 안건은 재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44조(중앙운영위원 명단)</p> <p>1. 자치기구는 봄 학기 개강 후 7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의 명단을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2.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봄학기 개강 후 10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 명단을 공고한다.</p>	<p>제48조(일사부재의)</p> <p>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p>
<p>제45조(겸직 및 대리 금지)</p> <p>1. 전학대회 대의원 및 중앙운영위원은 다른 전학대회 대의원 혹은 중앙운영위원의 직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한다.</p> <p>2. 전학대회 대의원 및 중앙운영위원은 다른 전학대회 대의원 혹은 중앙운영위원의 대리참석을 금지한다.</p>	<p><b>제3절 의사와 수정</b></p> <p>제49조(안건 심의)</p> <p>1. 안건의 심의 과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건 상정</li> <li>2.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li> <li>3.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li> <li>4.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li> <li>5.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li> <li>6. 안건에 대한 표결</li> </ol>

	<p>2. 의장의 제의 또는 구성원의 동의로 의결이 있을 때에는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5장 보칙 제46조(회의진행규칙) 회의 진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회의진행규칙이라 한다.</p>	<p>제50조(재회부) 상급 회의체는 하급 회의체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안건을 같은 하급 회의체 또는 다른 하급 회의체에 회부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제51조(수정동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정동의는 안건 또는 동의를 대상으로 그 내용에 보완적·경쟁적·적대적 등 관련성을 지니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가하자는 동의를 말한다.</li> <li>2. 수정 방식에는 삽입·삭제·대체 등 개별 방식과 대안 등 포괄방식이 있다.</li> <li>3. 하급 회의체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성립한다.</li> <li>4. 하급 회의체는 소관 사항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li> </ol>
<p>&lt;신 설&gt;</p>	<p>제52조(수정안의 표결 순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같은 안건에 대하여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li> <li>2. 구성원의 수정안은 하급 회의체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li> <li>3. 구성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li> </ol> </li> <li>2.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었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li> </ol>
<p>&lt;신 설&gt;</p>	<p>제53조(안건의 정리) 회의체는 의안이 의결된 후 이탈자 등 서로 어긋나는 조항·자구·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p>

	<p>대한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하급 회의체에 위임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b>제5절 발언</b></p> <p>제54조(발언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성원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하여 그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다.</li> <li>2. 발언권을 얻은 사람은 소속·이름을 밝힌 후, 발언의 요지를 설명하고 부연 설명을 한다.</li> <li>3. 구성원은 본 세칙에 다르게 정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발언하고 있는 동안 발언권을 신청할 수 없다.</li> <li>4. 구성원이 아닌 사람은 특별히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부여받은 때만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발언에 관하여는 구성원의 발언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li> <li>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언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장이 발언의 중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li> </ol>
<p>&lt;신 설&gt;</p>	<p>제55조(발언의 허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성원은 발언을 하려면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li> <li>2. 발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은 통지를 한 구성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li> <li>3.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하려면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li> </ol>
<p>&lt;신 설&gt;</p>	<p>제56조(발언의 계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성원의 발언은 도중에 다른 구성원</li> </ol>

	<p>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p> <p>2. 구성원이 정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 다시 그 의사(議事)가 개시되면 의장은 그 구성원에게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p>
<신 설>	<p>제57조(보충보고)</p> <p>의장은 소수의견자가 하급 회의체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보다 우선적으로 발언하게 할 수 있다.</p>
<신 설>	<p>제58조(발언 횟수·시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장은 구성원의 균등한 발언을 위해 특정 구성원의 반복적인 발언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li> <li>2. 의장은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의 방법을 무제한토론진행 방식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토론 전에 구성원의 발언 횟수와 발언 시간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다.</li> <li>3. 제안 설명, 질의와 정보요구 및 의사진행발언은 위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li> </ol>
<신 설>	<p>제59조(발언의 종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상발언이란 자신의 일신상에 관한 문제가 생긴 경우 구성원들에게 해명하는 발언이다.</li> <li>2. 의사진행발언이란 안건의 병합 또는 분할, 휴회, 축조심의, 의장의 결정에 대한 항의, 의사조정위원회 소집요구 등 안건의 심의과정이나 회의진행과정 등 의사진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발언이다.</li> <li>3. 구성원이 신상발언·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면 의장은 우선하여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li> <li>4.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신상발언을 우선하여 허가한다.</li> <li>5. 구성원은 필요하면 다른 구성원의 발언 중에도 의장에게 신상발언·의사진</li> </ol>

	<p>행발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발언 중인 구성원의 발언을 일시 중단시키고 신상발언·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구성원의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p> <p>6. 의사진행발언이 나오면 의장은 그 발언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체는 그 발언의 처리를 마쳐야 그 발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안건 심의를 계속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제60조(의제 외 발언 등의 금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성원은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 회의를 지연시키려는 발언, 회의체나 본회 회원의 신용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li> <li>2. 제1항의 경우, 의장은 발언을 즉시 중단시키고 구성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li> </ol>
<p>&lt;신 설&gt;</p>	<p>제61조(발언 원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성원의 발언 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장이 정한다. 다만,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및 보충발언은 5분을, 구성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발언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li> <li>2. 구성원이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li> <li>3. 질의는 일문일답(一問一答)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 질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li> </ol>
<p>&lt;신 설&gt;</p>	<p>제62조(토론의 통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구성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li> <li>2.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 등을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가 교대</li> </ol>

	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신 설>	제63조(의장의 토론 참가)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신 설>	제64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1. 질의나 토론이 끝났을 때에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2. 의장의 제의 또는 구성원의 동의로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구성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동의를 할 수 없다. 3.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신 설>	<b>제6절 표결</b>  제65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회칙·세칙·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66조(의결권) 1. 구성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다. 2. 본회 각 회의체에서는 구성원이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그 밖에 의결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67조(표결의 선포) 1.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2.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신 설>	제68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1.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구성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p>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p> <p>2. 구성원은 표결에 대하여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p>
<p>&lt;신 설&gt;</p>	<p>제69조(표결 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거수표결로, 거수표결이 어려운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li> <li>2.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구성원의 동의(動議)로 의결이 있거나 재적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투표·호명투표(呼名投票)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li> <li>3. 의장은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li> <li>4. 제1항 본문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우 재적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정당한 투표권자임을 확인한 후 투표한다. 의장의 제의 또는 구성원의 동의로 의결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li> <li>5. 표결할 때에는 반드시 찬성부터 계산하고, 그 다음에 반대를 물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기권을 물어서 계산한다. 다만, 전자투표를 시행하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li> <li>6. 찬성, 반대, 기권수의 합이 재석 인원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장은 재석인원 및 찬성, 반대, 기권수를 다시</li> </ol>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제70조(감표위원) 의장은 표결을 시행함에 있어 구성원 및 서기 중에서 1명 또는 수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여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 설>	제71조(표결의 생략) 의장은 재석 구성원 전원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안건에 대해 표결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신 설>	제72조(표결 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신 설>	제73조(의결 발효시점) 의결은 의장이 가결을 선포하는 시점부터 발효된다.
<신 설>	제74조(자유투표) 본회 회의 구성원은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신 설>	<b>제4장 회의록</b>  제75조(서기) 1. 본회 각 회의체는 한 명 이상의 서기를 둔다. 2. 서기는 의사·의결정족수를 파악하고 의사를 기록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3. 서기는 중앙집행위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총학생회장은 서기를 관리·감독한다.
<신 설>	제76조(회의록) 1. 본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 장소 2. 개회, 정회, 속회, 유회 및 폐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개회 당시 출석 구성원의 수 및 이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5. 전학대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의 경우 구성원의 지각·조퇴·결석 및 대리인 선임 사항</li> <li>6. 전학대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의 경우 구성원의 이동(異動)</li> <li>7. 전학대회의 경우 의석의 배정과 변동</li> <li>8. 안건의 발의·제출·회부·철회에 관한 사항</li> <li>9. 부의안건의 제목과 그 내용</li> <li>10. 의장의 보고</li> <li>11. 중앙운영위원회의 경우 산하위원회의 보고서</li> <li>12. 의사</li> <li>13. 표결 수</li> <li>14. 기명투표·전자투표·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투표자의 의사(찬성·반대·기권)와 이름</li> <li>15. 구성원의 발언보충서</li> <li>16. 서면질문과 답변서</li> <li>17. 그 밖에 의장 또는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각 회의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 녹음·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을 보조할 수 있다.</li> <li>3. 회의록은 제75조에 따라 지정된 서기가 작성한다.</li> <li>4. 회의록은 의장 및 2인 이상의 구성원이 서명하여 보관한다.</li> </ol>
<p>&lt;신 설&gt;</p>	<p>제77조(참고문서의 게재)  구성원이 그 발언에 참고가 되는 간단한 문서(시청각 자료를 포함한다) 등을 회의록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lt;신 설&gt;</p>	<p>제78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발언한 구성원은 회의록이 공고된 이후 3일 이내에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li> <li>2. 회의에서 발언한 참관인의 경우에도</li> </ol>

	<p>제1항과 같다.</p> <p>3. 속기로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적는다.</p> <p>4. 구성원이 회의록에 적힌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중앙운영위원회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p>
<신 설>	<p>제79조(결과공고)</p> <p>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제76조의 회의록과 회의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제76조제1항제13호의 안건 별 표결 결과만 우선 공고할 수 있다.</p>
<신 설>	<p><b>제5장 질서와 경호</b></p> <p>제80조(회의의 질서 유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성원 또는 참관인이 회의장에서 본 세칙 또는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li> <li>2.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구성원 또는 참관인에 대해서는 의장은 해당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li> <li>3. 의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폐회를 선포할 수 있다.</li> </ol>
<신 설>	<p>제81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p> <p>구성원은 회의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신 설>	<p>제82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p> <p>구성원 및 참관인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중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p>
<신 설>	<p>제83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p>

	구성원 및 참관인은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84조(의장석 점거 금지) 구성원 및 참관인은 의장석을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85조(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7장 보칙 제86조(회의 진행) 회의 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87조(안건 작성·제출) 안건 작성·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의결기구운영세칙 전부개정세칙안 개정 목적 및 경위

## 1. 개정 목적 및 경위

**학생회칙에서 위임한 내용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대의원 임기, 중앙운영위원 임기, 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의 소집 및 시행에 관한 규정 등 학생회칙에서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세칙으로 위임한 내용을 의결기구운영세칙에서 세부적으로 기술해 규정함.

**「국회법」을 차용하여 본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더욱 민주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 과정으로 혁신하기 위함.**

안건의 발의, 회부, 철회, 동의(動議)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법」을 차용해 규정하여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 2. 조문별 비교

현 행	개 정 안
<b>제1장 총칙</b>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본회의 의결기구 회의의 진행에 관한 사항과 의결기구 운영 방침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b>제1장 총칙</b>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본회 의결기구 권한·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의결기구 운영 및 회의 진행 방침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본회 의결기구의 회의는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제2조(원칙) 본회 의결기구의 회의는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 세칙은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학대회, 중앙운영위원회 등 각종 의결기구의 회의에 적용한다.</li> <li>2. 자치기구 등의 회의 진행은 이 세칙을 준용한다.</li> </ol>	제3조(적용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 세칙은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라 한다), 중앙운영위원회 등 각종 의결기구의 회의에 적용한다.</li> <li>2. 자치기구 등의 회의 진행은 본 세칙을 준용한다.</li> </ol>

<p>제4조(정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 세칙에서 "회의체"란 학생총회, 전학대회 등 단체의 최고의사를 포함한 중요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을 말한다.</li> <li>2. 본 세칙에서 "회의"란 회의체의 의사 활동을 말한다.</li> <li>3. 본 세칙에서 "구성원"이란 회의체에서 의결권을 가진 재적인원을 말한다.</li> <li>4. 본 세칙에서 "의결"이란 회의체에서 결정된 단체 의사를 말한다.</li> <li>5. 본 세칙에서 "의결문"이란 의결 사항을 문장으로 서술한 것을 말한다.</li> <li>6. 본 세칙에서 "의결권"이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li> <li>7. 본 세칙에서 "발언권"이란 발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li> </ol>	<p>제4조(정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 세칙에서 "회의체"란 학생총회, 전학대회 등 단체의 최고의사를 포함한 중요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을 말한다.</li> <li>2. 본 세칙에서 "회의"란 회의체의 의사 활동을 말한다.</li> <li>3. 본 세칙에서 "구성원"이란 회의체에서 의결권을 가진 재적 인원을 말한다.</li> <li>4. 본 세칙에서 사용하는 회의 용어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기: 개회에서 폐회까지의 기간</li> <li>2. 개회: 회의가 진행되는 날 회의가 시작되는 것</li> <li>3. 유회: 개회 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회의를 개회할 수 없을 때에 다음 회의 일자를 정하여 공고하기로 한 후에 회의를 끝내는 것</li> <li>4. 정회: 회의 도중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속회하기 전까지 회의를 일시 중단하는 것</li> <li>5. 속회: 정회했던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li> <li>6. 폐회: 당일의 회의를 끝내는 것</li> </ol> </li> <li>5. 본 세칙에서 "의결"이란 회의체에서 결정된 단체 의사를 말한다.</li> <li>6. 본 세칙에서 "의결문"이란 의결 사항을 문장으로 서술한 것을 말한다.</li> <li>7. 본 세칙에서 "의결권"이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li> <li>8. 본 세칙에서 "발언권"이란 회의에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li> </ol>
<p>제5조(대표자의 책임)</p> <p>총학생회장단, 중앙운영위원, 전학대회 대의원 등은 본회의 각종 회의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p>	<p>제5조(대표자의 책임)</p> <p>총학생회장단, 중앙운영위원, 전학대회 대의원 등은 본회의 각종 회의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p>
<p>제6조(회의의 명명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의체 별 각 회의는 기본적으로 "0000(해당 연도) 제0차 회의체명"이</li> </ol>	<p><b>제2장 회의체</b></p> <p><b>제1절 통칙</b></p>

<p>라 명명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속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총회·학생총투표: 00(해당월).00(해당일). 학생총회·학생총투표</li> <li>2. 전학대회: 0000(해당 연도) 상·하반기 정기·임시 전학대회 혹은 0000(해당 연도) 00(해당 월) 정기·임시 전학대회</li> <li>3. 중앙운영위원회: 00(해당 월) 정기·임시 중앙운영위원회</li> </ol> <p>2. 회의 명명 시 차수는 총학생회장단 임기시작일부터 개시하여 다음 총학생회장단 임기 전까지 누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제6조(회의의 명명법)</p> <p>회의체 별 각 회의는 “제0000(해당 연도)-0회 회의체명”으로 명명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속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총회·학생총투표: 00(해당월).00(해당일) 학생총회·학생총투표</li> <li>2. 전학대회: 0000(해당 연도) 0분기 정기·임시 전학대회 혹은 0000(해당 연도) 00(해당 월) 정기·임시 전학대회</li> <li>3. 중앙운영위원회: 00(해당 월) 정기·임시 중앙운영위원회</li> </ol>
<p>제2장 회의 진행의 원칙</p> <p>제7조(공개 원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구성원 과반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본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개 회의가 가능하다.</li> <li>2. 본회 회원은 본회 회의의 방청권을 갖는다. 단,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수를 제한하거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li> <li>3. 본회 회의의 결과와 회의록은 공개한다.</li> </ol>	<p>제7조(출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출결은 출석, 지각, 조퇴, 결석으로 구분한다.</li> <li>2. 출결의 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출석: 개회 선언 후 5분 내</li> <li>2. 지각: 개회 선언 후 5분 이후 15분 내</li> <li>3. 결석: 개회 선언 후 15분 이후</li> <li>4. 조퇴: 출석 혹은 지각하였으나 폐회선언 이전에 퇴장. 다만, 조퇴는 출석이나 지각과 별개로 처리한다.</li> <li>5. 지각이나 조퇴를 합하여 2회가 되었을 경우 결석 1회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li> </ol> </li> <li>3. 전학대회 대의원 및 중앙운영위원의 경우 제21조(청가 및 결석) 및 제25조(청가 및 결석)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대리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제2항의 기준을 만족한 경우 해당 대의원 또는 중앙운영위원의 출결을 인정한다.</li> <li>4. 제2항의 출석 기준을 만족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은 회의</li> </ol>

	<p>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의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출결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이외의 사유는 인정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계존속 및 6촌 이내 친인척의 경조사인 경우</li> <li>2.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고의 경우</li> <li>3. 국가 비상사태,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천재지변 등의 사태의 경우</li> </ol>
<p>제8조(정족수의 원칙)  본회 회의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 출석을 의사정족수로 하고, 재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한다. 단, 회칙, 세칙, 규칙에 의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은 그에 따른다.</p>	<p>제8조(회의장)  회의장은 교내 또는 교내의 인접지이어야 한다.</p>
<p>제9조(일의제의 원칙)  본회 회의에는 한 번에 한 가지 의제만을 상정하여 다루고, 두 가지 이상의 안건을 동시에 상정하지 아니한다.</p>	<p>제9조(원격영상회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의 확산, 천재지변, 학내 주요 일정·행사 등으로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의를 원격영상회의(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본 세칙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li> <li>2.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li> <li>3. 제1항에 따라 개최된 회의에서의 표결은 제4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69조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li> <li>4. 중앙집행위원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여</li> </ol> </p>

	<p>야 한다.</p> <p>5.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9조의2(일사부재의)</p> <p>본회 회의에서 한번 가결되거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기할 수 없다.</p>	<p>제10조(회의체 출석 현황 공개)</p> <p>의장은 매 분기 초 직전 분기 동안 개최된 회의체에 대하여 구성원의 회의 출석 여부를 공개하여야 한다.</p>
<p>제10조(토론 자유의 원칙)</p> <p>1. 본회 회원은 본회 회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다. 단, 의장은 필요할 때 토론의 자유를 유보할 수 있고, 회의 구성원에게 토론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p> <p>2. 회원은 발언 횟수와 시간의 제한 하에 의장의 발언 허가가 있어야 발언할 수 있다.</p>	<p><b>제2절 학생총회</b></p> <p>제11조(소집일 결정)</p> <p>「학생회칙」 제23조의 소집요구가 있으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개최일을 결정한다. 이 때 개최일은 소집요구에 포함된 개최 희망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할 때도 개최 희망일에서 일주일 이상의 차이가 있게 정할 수 없다.</p>
<p>제10조의2(투표 자유의 원칙)</p> <p>본회 회의 구성원은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여 판단하여 투표해야 한다. 투표권의 행사는 투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긴다.</p>	<p>제12조(학생총회 운영 방법의 결정)</p> <p>1. 학생총회 의장은 제28조에 따라 학생총회 개최 이전에 의사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순, 각 안건 별 선택지의 개수와 내용, 표결 방법 등 학생총회의 구체적 운영 방법을 결정한다. 다만, 제출된 안건의 취지에 반하는 운영 방법을 채택하여서는 아니 된다.</p> <p>2. 비상학생총회에 따른 소집은 제1항의 의사조정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11조(다수결의 원칙)</p> <p>표결에 의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함을 원칙으로 한다.</p>	<p>제13조(중앙총회기획위원회)</p> <p>1. 학생총회 소집이 결정되면 학생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총회기획위원회를 구성한다.</p> <p>2. 중앙총회기획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장과 중앙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모집을 하거나 추천에 의해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p> <p>3. 중앙총회기획위원회는 학생총회의 개최 성사, 선전, 홍보 등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p> <p>4.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총회기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생총회 개최를</p>



	준비한다.
제12조(소수 의견 존중의 원칙) 다수의 의견이 폭력적으로 지배되지 않도록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b>제3절 학생총투표</b>  제14조(시행일 결정) 「학생회칙」 제30조의 시행요구가 있으면 중앙 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개회일을 결정한다. 이 때 개회일은 시행요구에 포함된 개회 희망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할 때도 개회 희망일에서 일주일 이상의 차이가 있게 정할 수 없다.
제3장 의사 진행 제1절 회의의 구성 제13조(의결권) 1. 구성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다. 2. 본회 각 회의체에서는 구성원이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의결권 부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의진행규칙」에 따른다.	제15조(학생총투표 시행 방법의 결정) 학생총투표 의장은 제28조에 따라 학생총투표 개회 이전에 의사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순, 각 안건 별 선택지의 개수와 내용, 표결 방법 등 학생총투표의 구체적 운영 방법을 결정한다. 다만, 제출된 안건의 취지에 반하는 운영 방법을 채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장) 1. 본회 각 회의체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는 동안 토론에 참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직권상정한 안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경우 해당 안건이 제25조에 따라 심의될 때까지 의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16조(중앙투표관리위원회) 1. 학생총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학생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중앙투표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모집을 하거나 추천에 의해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3. 중앙투표관리위원회는 학생총투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을 준용한다. 4.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투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 업무를 보조한다.
제15조(서기) 1. 본회 각 회의체는 서기를 두어 의사·의결정족수를 파악하고 의사를 기록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 2. 서기는 중앙집행위원 중 한 명 이상	<b>제17조(정책투표 운영)</b> 1. 정책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7일 이내의 정책투표 시행일을 결정한다.

<p>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총학생회장은 서기를 관리·감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정책투표 시행일이 결정되면 학생총회 의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업무 보조를 통해 정책투표를 시행한다.</li> <li>3. 정책투표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온라인, 모바일 투표방법을 원칙으로 한다.</li> </ol>
<p>제16조(소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장은 「학생회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회의 소집 사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구성원에게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의 장소</li> <li>2. 회의 일시</li> <li>3. 구성원 명단 (전학대회, 중앙운영위원회의 경우에 한한다.)</li> <li>4. 소집 경위 및 과정</li> <li>5. 부의안건의 제목과 내용</li> </ol> </li> <li>2. 회의장은 교내 또는 교내의 인접지역야 한다.</li> <li>3. 회의의 개최 준비는 의장과 중앙집행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5조의 대표자는 회의 개최 준비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li> <li>4.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소집 당시 대면 회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화상원격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li> </ol>	<p><b>제4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b></p> <p>제18조(대의원 임기)</p> <p>보임(補任)되거나 개선(改選)된 대의원 임기는 임기 시작부터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 폐회 이전까지로 한다. 임기 시작은 제20조제5항의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p>
<p>제17조(의사정족수)</p> <p>본회 각 회의체는 회의장에 재적 구성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의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수가 재석하고 있어야 의사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p>	<p>제19조(대의원 명단·등록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치기구는 「학생회칙」 제165조제2항에 따른 매 분기 시작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비례대의원을 포함한 대의원 명단을 전학대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li> <li>2. 자치기구는 소속 대의원이 탄핵·사퇴·임기만료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전학대회 의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li> <li>3. 자치기구는 소속 대의원이 보임(補任)되거나 개선(改選)된 때에는, 전학대회 의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전학대회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대의원 명단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대의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보고가 접수된 후 대의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li> <li>5. 제4항의 보고를 마친 후 전학대회 의장은 변경된 대의원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li> </ol>
<p>제18조(회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회로부터 폐회에 이르는 회순은 각 호의 의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원보고</li> <li>2. 개회선언</li> <li>3. 의장인사</li> <li>4. 보고사항</li> <li>5. 안건심의 순서 확정</li> <li>6. 안건심의</li> <li>7. 성원점검</li> <li>8. 폐회선언</li> </ol> </li> <li>2. 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1항제3호를 생략할 수 있다.</li> </ol>	<p>제20조(비례대의원석 배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회원 수가 본회 회원 수의 3% 이상인 각 자치기구(이하 의석할당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기구의 인원비율에 따라 비례대의원의 석을 배분한다.</li> <li>2. 제1항의 인원비율은 각 의석할당기구의 정회원 수를 해당 기구의 당연직 대의원의석수로 나눈 수(이하 당연직 대의원 당 정회원 수라 한다)를 모든 의석할당기구의 당연직대의원 당 정회원 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li> <li>3. 비례대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기구의 인원비율에 비례대의원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이하 기대의석수라 한다)의 정수부분에 따라 먼저 배분하되 최대의석수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의석수만을 배분한다.</li> <li>4. 제3항의 배분 이후의 잔여의석은 배분된 의석수가 최대의석수 미만인 각 의석할당기구의 기대의석수의 소수부분이 큰 순으로 각 기구에 1석씩 배분하며 모든 의석을 배분할 때까지 본 항의 과정을 반복한다.</li> <li>5. 제3항과 제4항의 최대의석수는 비례대의원의석수를 의석할당기구수로 나눈 수의 정수부분에 1을 더한 수와 5석 중 큰 값으로 정한다.</li> </ol>
<p>제19조(회의 용어의 정의)</p> <p>본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p>제21조(청가 및 결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의원이 전학대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회: 회의가 진행되는 날 회의가 시작되는 것</li> <li>2. 유회: 개회 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때 다음 회의 일자를 정하여 공고하기로 한 후 회의를 끝내는 것</li> <li>3. 휴회: 회의 도중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속회하기 전까지 회의를 일시 중단하는 것</li> <li>4. 폐회: 당일의 회의를 끝내는 것.</li> <li>5. 회기: 개회에서 폐회까지의 기간</li> <li>6. 속회: 휴회했던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li> </ol>	<p>청가서(請假書)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li> </ol>
<p>제20조(회의의 폐회·유회·휴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폐회는 모든 안건의 심의가 끝났을 때 의장이 성원점검 후 선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li> <li>2. 의장은 공고한 회의 시작 시각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의사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할 때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li> <li>3. 의장은 회의 중 의사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할 때 회의의 폐회 또는 휴회를 선포한다.</li> </ol>	<p>제22조(겸직 및 대리 금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의원은 다른 대의원 또는 중앙운영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li> <li>2. 대의원은 다른 대의원 또는 중앙운영위원의 대리인 직을 겸할 수 없다.</li> </ol>
<p>제21조(의사조정위원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장은 회의 개회 전 또는 회의 중에 회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결정하기 위하여 의사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li> <li>2. 의사조정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으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li> </ol>	<p><b>제5절 중앙운영위원회</b></p> <p>제23조(중앙운영위원 임기)</p> <p>보임(補任)되거나 개선(改選)된 중앙운영위원 임기는 임기 시작부터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 폐회 이전까지로 한다. 임기 시작은 제24조 제5항의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p>
<p>제2절 안건</p> <p>제22조(안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건이란 회의체에서 심의해야 할 대상을 말한다.</li> <li>2. 처리된 안건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재의 또한 안건의 하나로 본다.</li> <li>3. 안건의 제출은 「학생회칙」 및 「회의</li> </ol>	<p>제24조(중앙운영위원 명단·등록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치기구는 「학생회칙」 제165조제3항에 따른 매 반기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 명단을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li> <li>2. 자치기구는 소속 중앙운영위원이 탄핵·사퇴·임기만료 등으로 꺾어진 때에</li> </ol>

<p>진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이루어져야 한다.</p>	<p>는,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자치기구는 소속 중앙운영위원이 보임되거나 개선된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li> <li>4.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중앙운영위원 명단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다.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보고가 접수된 후 중앙운영위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li> <li>5. 제4항의 보고를 마친 후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변경된 중앙운영위원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li> </ol>
<p>제22조의2(안건의 철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건의 제출자는 제18조제5호의 안건심의 순서가 확정되기 전까지 안건을 철회할 수 있으며, 확정된 이후로는 회의체의 허가를 얻어야 이를 철회할 수 있다.</li> <li>2. 제1항에서 회의체의 허가는 구성원 한 명의 동의 제출과 다른 구성원 한 명의 재청으로 성립되고, 이의가 없을 경우 의장은 제출한 동의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재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철회안을 의결한다</li> <li>3. 공동 발의 안건의 경우 공동 발의자 과반의 동의에 의하여 철회할 수 있다.</li> <li>4. 철회된 안건은 해당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 없다.</li> </ol>	<p>제25조(청가 및 결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운영위원이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li> <li>2. 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li> </ol>
<p>제23조(안건의 심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일 심의할 안건이 2개 이상이면 의장은 회순에 따라 안건을 하나씩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li> <li>2. 의장은 상황에 따라 회순을 변경하여 상정할 수도 있고, 복수의 안건을 병</li> </ol>	<p>제26조(겸직 및 대리 금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운영위원은 다른 대의원 또는 중앙운영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li> <li>2. 대의원은 다른 대의원 또는 중앙운영위원의 대리인 직을 겸할 수 없다.</li> </ol>

<p>합하여 상정하거나 하나의 안건을 분할하여 상정할 수도 있다. 단, 의결요건이 다른 안건을 병합하여 표결하기 위해서는 더 가중된 의결요건을 따라야 한다.</p>	
<p>제24조(토론) 모든 안건은 토론의 대상이 된다.</p>	<p><b>제5절 위원회</b></p> <p>제27조(위원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운영위원회는 산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앙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할 수 있다.</li> <li>2. 중앙운영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임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임시 규정의 효력은 위원회 설치 의결의 발효 시점부터 위원회 해체 의결의 발효 시점까지로 한다.</li> </ol>
<p>제25조(안건의 심의과정) 안건의 심의 순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건 상정</li> <li>2.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li> <li>3.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li> <li>4.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li> <li>5. 안건에 대한 논의종결</li> <li>6. 안건에 대한 표결</li> </ol>	<p>제28조(의사조정위원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장은 회의 개최 전 또는 회의 중에 회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결정하기 위하여 의사조정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li> <li>2. 의사조정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li> </ol>
<p>제25조의2(안건 상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회칙」 및 세칙에 따라 회의체에 안건을 제출한 경우, 의장은 안건 제출 일자로부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소집되는 동일한 회의체에 안건을 상정한다.</li> <li>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의장은 안건의 상정을 연기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하급 회의체 또는 의사조정위원회로 안건을 위임한 경우</li> <li>2. 안건을 특정 시점까지 연기하기로 연기 동의 또는 의결한 경우</li> </ol> </li> <li>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의장은 가장</li> </ol>	<p><b>제6절 서면의결</b></p> <p>제29조(서면의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회칙」 제49조 및 제64조에 규정된 서면의결의 진행은 회의체의 한 회기로 본다.</li> <li>2. 서면의결의 표결은 제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 우편으로 진행한다.</li> <li>3. 서면의결 표결에 참여하는 전자 우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표결 참여자의 소속·직위·이름</li> <li>2. 찬성·반대·기권 의사와 해당 의사를 표현하는 안건의 종류 및 안건 번호</li> </ol> </li> </ol>

<p>빠른 시일 내에 소집되는 동일한 회의체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사조정위원회에서 회의체로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한 경우</li> <li>2. 특정 시점까지 연기하기로 연기동의 또는 의결된 안건의 특정 시점이 끝난 경우</li> </ol>	
<p>제26조(토론종결·재심의·수정·회부·연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재심의·수정·회부·연기는 구성원 한 명의 동의 제출과 다른 구성원 한 명의 재청으로 성립되고, 이의가 없을 경우 의장은 제출한 동의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재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의안을 의결한다.</li> <li>2. 토론종결동의를 즉시 또는 어떤 조건의 성취 뒤에 현재 심의중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이를 표결에 부치는 것으로 동의 제출 사전에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양측 각 두명씩의 토론이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li> <li>3. 재심의동의를 안건이 이미 통과되나서 특별한 사정에 의해 재논의가 필요할 때 처음부터 다시 심의하자는 것으로 회의가 일단 폐회하면 재심의 동의를 제출할 수 없다. 재심의안은 재석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li> <li>4. 수정동의를 안건을 대상으로 그 내용에 보완적 등 관련성을 지니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li> <li>5. 회부동의를 안건을 하급 회의체 또는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먼저 들은 후 심의하거나 안건의 처리를 위임하는 것으로 안건을 회부하면 자동으로 기한부 연기된 것으로 본다.</li> <li>6. 연기동의를 현재 계류 중인 안건의 심의를 일정시점까지 연기하자는 것</li> </ol>	<p>제30조(기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면의결의 참여 기한은 2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의장은 2일 이상 5일 이하의 범위에서 서면의결 참여 기한을 정할 수 있다.</li> <li>2. 제1항의 경우 의장은 사전에 서면의결 참여 기한을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li> </ol>

<p>이다.</p>	
<p>제3절 발언 제27조(발언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성원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하여 그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다.</li> <li>2. 발언권을 얻은 사람은 성명·소속을 밝힌 후, 발언의 요지를 설명하고 부연 설명을 한다.</li> <li>3. 구성원은 본 세칙에 다르게 정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발언하고 있는 동안 발언권을 신청할 수 없다.</li> <li>4. 구성원이 아닌 사람은 특별히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부여 받은 때만 발언할 수 있다.</li> <li>5. 제1항부터 제4항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언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장이 발언의 중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li> </ol>	<p>제31조(의결정족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면의결의 의결정족수는 「학생회칙」 제48조 및 제63조를 따른다.</li> <li>2. 서면의결의 의결정족수 미달은 부결로 본다.</li> </ol>
<p>제28조(발언 횟수와 시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장은 구성원의 균등한 발언을 위해 특정 구성원의 반복적인 발언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li> <li>2. 의장은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의 방법을 무제한토론진행 방식으로 결정하지 않는 한, 토론 전에 구성원의 발언 횟수와 발언 시간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다.</li> <li>3. 제안 설명, 질의와 정보요구 및 의사진행발언은 위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li> </ol>	<p><b>제3장 회의</b></p> <p><b>제1절 의사일정</b></p> <p>제32조(의사정족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 각 회의체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li> <li>2. 의장은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일시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li> <li>3.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정회 또는 폐회를 선포한다.</li> </ol>
<p>제29조(신상발언·의사진행발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상발언이란 자신의 일신상에 관한 문제가 생긴 경우 구성원들에게 해명하는 발언이다.</li> <li>2. 의사진행발언이란 안건의 병합 또는 분할, 휴회, 축조심의, 의장의 결정에</li> </ol>	<p>제33조(폐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심의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성원점검 후 폐회를 선포한다.</li> <li>2. 폐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최할 수 없다.</li> </ol>



<p>대한 항의, 의사조정위원회 소집요구 등 회의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의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선하기 위해 하는 발언이다.</p> <p>3. 회원이 신상발언·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면 의장은 우선하여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p> <p>4. 회원은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발언 중에도 의장에게 신상발언·의사진행발언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의장은 당시 발언 중인 사람의 발언을 일시 중단시키고 회원에게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p> <p>5. 의사진행발언이 나오면 의장은 그 발언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체는 그 발언의 처리를 마쳐야 그 발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안건 심의를 계속할 수 있다.</p>	
<p>제30조(의제 이외의 발언 등) 회원은 의제 이외의 발언, 회의를 지연시키려는 발언, 회의체나 회원의 신용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이 때 의장은 발언을 즉시 중단 시키고 회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제34조(회의의 공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구성원의 동의(動議)로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본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li> <li>2.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제의나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li> </ol>
<p>제4절 표결 제31조(표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건의 표결은 의장의 표결개시선언으로 시작된다.</li> <li>2. 의장은 표결개시선언을 함에 있어서 어떤 안건이 그 대상인지 밝혀야 한다.</li> </ol>	<p>제35조(회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회로부터 폐회에 이르는 회순은 각호를 따른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원보고</li> <li>2. 개회선언</li> <li>3. 의장인사</li> <li>4. 보고사항</li> <li>5. 의사일정 확정</li> <li>6. 안건심의</li> <li>7. 성원점검</li> <li>8. 폐회선언</li> </ol> </li> <li>2. 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li> </ol>

<p>제32조(표결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재석 구성원의 동의로 의결이 있거나 재석 구성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li> <li>2. 의장은 재석한 구성원 전원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 대해 표결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li> <li>3. 표결에는 회의장에 재석한 구성원만 참가할 수 있다. 재석인원에 변동이 있으면 의장은 의결정족수를 재확인한다.</li> <li>4. 표결할 때는 반드시 찬성부터 계산하고, 그 다음에 반대를 물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기권을 물어서 계산한다. 단, 전자투표를 시행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계산합이 재석인원에 맞지 않는 경우 의장은 재석인원 및 찬성, 반대, 기권수를 재확인한다.</li> <li>5. 구성원은 투표 내용을 반복할 수 없다.</li> </ol>	<p>제1항제3호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36조(의사일정의 작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장은 회의에 부의(附議)된 안건의 목록을 그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매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li> <li>2. 의장은 개회 일시 및 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적은 의사일정을 작성한다.</li> <li>3.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구성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li> </ol>
<p>제33조(감표위원)</p> <p>의장은 표결을 시행함에 있어 구성원 및 서기 중에서 1명 또는 수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여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p>	<p>제37조(의사일정의 변경)</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성원의 동의(動議)로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안건의 대표발의자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안건심의 순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li> <li>2. 제1항의 경우 구성원의 동의에는 이 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li> </ol>
<p>제34조(표결결과선포)</p> <p>표결이 종료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집계하여 선포한다.</p>	<p>제38조(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p> <p>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였을</p>

<p>제5절 회의록·결과공고</p> <p>제35조(회의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의 장소</li> <li>2. 개회·휴회·유회 또는 폐회의 일시</li> <li>3. 개회 당시의 출석 인원 명단</li> <li>4. 구성원이 제5조에 해당할 때, 구성원의 지각·조퇴·결석·대리선임 사항</li> <li>5. 부의안건의 제목과 내용</li> <li>6. 의사</li> <li>7. 각 구성원의 표결 사항을 기재한 표결결과</li> <li>8. 그 밖에 의장 또는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li> <li>2. 각 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녹음, 녹화 이외의 방법으로 기록을 보조할 수 있다.</li> <li>3. 회의록은 제15조에 따라 서기로 지정된 중앙집행위원이 작성한다.</li> <li>4.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리세칙」으로 정한다.</li> </ol>	<p>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p> <p>제39조(소집공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장은 「학생회칙」 제23조제3항 및 제6항, 제30조제3항, 제38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에 따라 회의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의 장소</li> <li>2. 회의 일시(日時)</li> <li>3. 전학대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경우 구성원 명단</li> <li>4. 소집 경위 및 과정</li> <li>5. 부의안건의 제목과 내용</li> </ol> </li> <li>2. 회의 준비는 의장과 중앙집행위원회가 담당하며 제5조의 대표자는 회의 준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li> </ol>
<p>제36조(결과공고)</p> <p>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제35조의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제35조제7호의 안건 별 표결결과만 우선 공고할 수 있다.</p>	<p><b>제2절 발의·회부·철회와 재심의</b></p> <p>제40조(안건 발의 또는 제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 회의체 구성원은 학생회칙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li> <li>2. 안건을 발의하는 경우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li> <li>3. 그 밖의 안건 발의 또는 제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li> </ol>
<p>제4장 회의체 운영</p> <p>제1절 학생총회·학생총투표</p> <p>제37조(소집일 결정)</p>	<p>제41조(안건 상정 시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장은 「학생회칙」 제39조의2 및 제56조의2에 따라 안건을 상정한다. 다</li> </ol>

<p>「학생회칙」 제23조 혹은 제28조의 소집·시행 요구가 있으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개최일을 결정한다. 이 때 개최일은 소집·시행 요구에 포함된 개회 희망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할 때도 개회 희망일에서 일주일 이상의 차이가 있게 정할 수 없다.</p>	<p>만,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 의장은 안건 상정을 연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하급 회의체 또는 의사조정위원회 회로 안건을 회부한 경우</li> <li>2. 안건을 특정 시점까지 연기하기로 의결한 경우</li> </ol>
<p>제38조(학생총회 운영 방법의 결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총회 의장은 제21조에 따라 학생총회 개회 이전에 의사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순, 각 안건 별 선택지의 개수와 내용, 표결 방법 등 학생총회의 구체적 운영 방법을 결정한다. 단, 제출된 안건의 취지에 반하는 운영 방법을 채택하여서는 아니 된다.</li> <li>2. 비상학생총회에 따른 소집은 제1항의 의사조정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li> </ol>	<p>제42조(하급 회의체 회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장은 안건이 발의되거나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구성원에게 배부하고 안건이 발의되거나 제출된 회의체(이하 "대상 회의체"라 한다)에 보고하며, 소관 하급 회의체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안건을 대상 회의체의 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대상 회의체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li> <li>2. 의장은 안건이 어느 하급 회의체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하급 회의체를 결정한다.</li> <li>3. 의장은 발의되거나 제출된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구성원이 소관 하급 회의체 재적 구성원 과반수를 차지하여 그 안건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안건을 다른 하급 회의체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li> <li>4.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안건을 구성원에게 배부할 때에는 이를 전산망에 입력하여 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li> </ol>
<p>제39조(중앙총회기획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총회 소집이 결정되면 학생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총회기획단을 구성한다.</li> </ol>	<p>제43조(관련 하급 회의체 회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장은 소관 하급 회의체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하급 회의체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중앙총회기획단은 중앙집행위원장과 중앙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모집을 하거나 추천에 의해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li> <li>3. 중앙총회기획단은 학생총회의 개회 성사, 선전, 홍보 등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li> <li>4.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총회기획단의 결정에 따라 학생총회 개회를 준비한다.</li> </ol>	<p>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하급 회의체에 그 안건을 회부하되, 소관 하급 회의체와 관련 하급 회의체를 명시하여야 한다. 안건이 소관 하급 회의체에 회부된 후 다른 하급 회의체로부터 회부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의장이 제1항에 따라 관련 하급 회의체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 하급 회의체가 소관 하급 회의체에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li> <li>3. 소관 하급 회의체는 관련 하급 회의체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제2항의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바로 안건을 회부한 상급 회의체에 보고를 할 수 있다.</li> <li>4. 소관 하급 회의체는 관련 하급 회의체가 제2항에 따라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li> <li>5. 소관 하급 회의체는 제2항에 따라 관련 하급 회의체가 의견을 제시한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관련 하급 회의체에 그 내용을 송부하여야 한다.</li> </ol>
<p>제40조(중앙투표관리위원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총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학생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li> <li>2. 중앙투표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모집을 하거나 추천에 의해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li> <li>3. 중앙투표관리위원회는 학생총투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을 준용한다.</li> </ol>	<p>제44조(동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의(動議)는 회의에서 구성원이 통상적으로 안을 갖출 필요 없이 발의하는 것을 말하며, 안건을 심의하거나 의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안을 하는 절차가 된다.</li> <li>2. 회칙·세칙·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제출자 외 1인 이상의 재청으로 성립된다.</li> <li>3. 동의를 성립되면 회의에서 심의하는 안건과는 독립된 의제로서 의결의 대상이 된다.</li> </ol>

<p>4.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투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 업무를 보조한다.</p>	<p>4. 의장은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을 경우 성립된 동의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회칙·세칙·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의안을 의결한다.</p>
<p>제41조(정책투표 운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책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7일 이내의 정책투표 시행일을 결정한다.</li> <li>2. 정책투표 시행일이 결정되면 학생총회 의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업무보조를 통해 정책투표를 시행한다.</li> <li>3. 정책투표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온라인, 모바일 투표방법을 원칙으로 한다.</li> </ol>	<p>제45조(동의의 종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사일정의 변경동의를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안건심의 순서를 변경하자는 동의를 말한다.</li> <li>2. 철회동의를 의사일정 확정 이후 또는 동의의 성립 이후 안건 또는 동의를 철회하자는 동의를 말한다.</li> <li>3. 회부동의를 안건을 하급 회의체 또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보고를 들은 후 심의하자는 동의를 말한다. 회부동이가 의결되면 해당 안건은 최종보고를 마치기 전까지 자동으로 기한부 연기동의 된 것으로 본다.</li> <li>4. 연기동이는 현재 계류 중인 안건의 심의를 일정시점까지 또는 어떤 사유의 발생 시까지 연기하자는 동의를 말한다.</li> <li>5. 질의종결동이는 즉시 또는 어떤 조건의 성취 후에 현재 심의 중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자는 동의를 말한다.</li> <li>6. 토론종결동이는 즉시 또는 어떤 조건의 성취 후에 현재 심의 중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이를 표결에 부치자는 동의를 말한다.</li> <li>7. 그 밖에 비공개회의동의, 기명투표동의, 무기명투표동의, 산회동의, 재표결동의, 정회동의, 질문연장동의, 토론연장동의 등이 있다.</li> <li>8. 의사일정의 변경동의, 비공개회의동의, 질의종결동의, 토론종결동이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li> </ol>
<p>제2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중앙운영위원회</p>	<p>제46조(안건·동의의 철회)</p>

<p>제42조(비례대의원의석의 배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내부 회원 수가 본회 회원 수의 3% 이상인 각 자치기구(이하 의석할당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기구의 인원비율에 따라 비례대의원의 석을 배분한다.</li> <li>2. 제1항의 인원비율은 각 의석할당기구의 회원 수를 해당 기구의 당연직대의원의석수로 나눈 수(이하 당연직대의원 당 회원수라 한다)를 모든 의석할당기구의 당연직대의원 당 회원 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li> <li>3. 비례대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기구의 인원비율에 비례대의원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이하 기대의석수라 한다)의 정수부분에 따라 먼저 배분하되 최대의석수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의석수만을 배분한다.</li> <li>4. 제3항의 배분 이후의 잔여의석은 배분된 의석수가 최대의석수 미만인 각 의석할당기구의 기대의석수의 소수부분이 큰 순으로 각 기구에 1석씩 배분하며 모든 의석을 배분할 때까지 본 항의 과정을 반복한다.</li> <li>5. 제3항과 제4항의 최대의석수는 비례대의원의석수를 의석할당기구수로 나눈 수의 정수부분에 1을 더한 수와 5석 중 큰 값으로 정한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성원은 그가 발의한 안건 또는 동의(動議)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 또는 동의에 대해서는 발의한 구성원 과반수가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철회할 수 있다.</li> <li>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 확정 이후에 안건을 철회하거나 성립된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회의체의 동의(同意)를 받아야 한다.</li> <li>3. 본회 산하기구에 의사일정 확정 이후에 제출한 안건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때에는 회의체의 동의(同意)를 받아야 한다.</li> <li>4. 회의체의 동의(同意)는 제43조제2항의 철회동의(動議)에 따른다.</li> <li>5. 철회된 안건은 해당 회의에서 다시 심의할 수 없다.</li> </ol>
<p>제43조(대의원 명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치기구는 봄 학기 개강 후 7일 이내에 비례대의원을 포함한 대의원의 명단을 전학대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li> <li>2. 전학대회 의장은 봄학기 개강 후 10일 이내에 대의원 명단을 공고한다.</li> </ol>	<p>제47조(재심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심의동의를 안건이 의결된 후 특별한 사정에 의해 재심의가 필요할 경우에 처음부터 다시 심의하자는 동의를 말한다.</li> <li>2. 재심의동의로 재심의하는 안건은 재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li> </ol>
<p>제44조(중앙운영위원 명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치기구는 봄 학기 개강 후 7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의 명단을 중앙운</li> </ol>	<p>제48조(일사부재의)</p> <p>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p>

<p>영위원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2.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봄학기 개강 후 10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 명단을 공고한다.</p>	
<p>제45조(겸직 및 대리 금지)</p> <p>1. 전학대회 대의원 및 중앙운영위원은 다른 전학대회 대의원 혹은 중앙운영위원의 직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한다.</p> <p>2. 전학대회 대의원 및 중앙운영위원은 다른 전학대회 대의원 혹은 중앙운영위원의 대리참석을 금지한다.</p>	<p><b>제3절 의사와 수정</b></p> <p>제49조(안건 심의)</p> <p>1. 안건의 심의 과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건 상정</li> <li>2.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li> <li>3.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li> <li>4.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li> <li>5.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li> <li>6. 안건에 대한 표결</li> </ol> <p>2. 의장의 제의 또는 구성원의 동의로 의결이 있을 때에는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5장 보칙</p> <p>제46조(회의진행규칙)</p> <p>회의 진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회의진행규칙이라 한다.</p>	<p>제50조(재회부)</p> <p>상급 회의체는 하급 회의체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안건을 같은 하급 회의체 또는 다른 하급 회의체에 회부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제51조(수정동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정동의를 안건 또는 동의를 대상으로 그 내용에 보완적·경쟁적·적대적 등 관련성을 지니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가하자는 동의를 말한다.</li> <li>2. 수정 방식에는 삽입·삭제·대체 등 개별방식과 대안 등 포괄방식이 있다.</li> <li>3. 하급 회의체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성립한다.</li> <li>4. 하급 회의체는 소관 사항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li> </ol>
<p>&lt;신 설&gt;</p>	<p>제52조(수정안의 표결 순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같은 안건에 대하여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다음</li> </ol>



	<p>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li> <li>2. 구성원의 수정안은 하급 회의체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li> <li>3. 구성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li> </ol> <p>2.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었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p>
<p>&lt;신 설&gt;</p>	<p>제53조(안건의 정리)</p> <p>회의체는 의안이 의결된 후 오탈자 등 서로 어긋나는 조항·자구·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하급 회의체에 위임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b>제5절 발언</b></p> <p>제54조(발언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성원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하여 그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다.</li> <li>2. 발언권을 얻은 사람은 소속·이름을 밝힌 후, 발언의 요지를 설명하고 부연 설명을 한다.</li> <li>3. 구성원은 본 세칙에 다르게 정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발언하고 있는 동안 발언권을 신청할 수 없다.</li> <li>4. 구성원이 아닌 사람은 특별히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부여받은 때만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발언에 관하여는 구성원의 발언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li> <li>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언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장이 발언의 중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li> </ol>
<p>&lt;신 설&gt;</p>	<p>제55조(발언의 허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성원은 발언을 하려면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li> <li>2. 발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은 통지를 한 구성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li> <li>3.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하려면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li> </ol>
<p>&lt;신 설&gt;</p>	<p>제56조(발언의 계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성원의 발언은 도중에 다른 구성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li> <li>2. 구성원이 정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 다시 그 의사(議事)가 개시되면 의장은 그 구성원에게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li> </ol>
<p>&lt;신 설&gt;</p>	<p>제57조(보충보고)</p> <p>의장은 소수의견자가 하급 회의체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보다 우선적으로 발언하게 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제58조(발언 횟수·시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장은 구성원의 균등한 발언을 위해 특정 구성원의 반복적인 발언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li> <li>2. 의장은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의 방법을 무제한토론진행 방식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토론 전에 구성원의 발언 횟수와 발언 시간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다.</li> <li>3. 제안 설명, 질의와 정보요구 및 의사진행발언은 위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li> </ol>
<p>&lt;신 설&gt;</p>	<p>제59조(발언의 종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상발언이란 자신의 일신상에 관한</li> </ol>

	<p>문제가 생긴 경우 구성원들에게 해명하는 발언이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의사진행발언이란 안건의 병합 또는 분할, 휴회, 축조심의, 의장의 결정에 대한 항의, 의사조정위원회 소집요구 등 안건의 심의과정이나 회의진행과정 등 의사진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발언이다.</li> <li>3. 구성원이 신상발언·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면 의장은 우선하여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li> <li>4.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신상발언을 우선하여 허가한다.</li> <li>5. 구성원은 필요하면 다른 구성원의 발언 중에도 의장에게 신상발언·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발언 중인 구성원의 발언을 일시 중단시키고 신상발언·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구성원의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li> <li>6. 의사진행발언이 나오면 의장은 그 발언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체는 그 발언의 처리를 마쳐야 그 발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안건 심의를 계속할 수 있다.</li> </ol>
<p>&lt;신 설&gt;</p>	<p>제60조(의제 외 발언 등의 금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성원은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 회의를 지연시키려는 발언, 회의체나 본회 회원의 신용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li> <li>2. 제1항의 경우, 의장은 발언을 즉시 중단시키고 구성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li> </ol>
<p>&lt;신 설&gt;</p>	<p>제61조(발언 원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성원의 발언 시간은 15분을 초과하</li> </ol>

	<p>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장이 정한다.</p> <p>다만,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및 보충발언은 5분을, 구성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발언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구성원이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li> <li>3. 질의는 일문일답(一問一答)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li> </ol>
<신 설>	<p>제62조(토론의 통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구성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li> <li>2.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 등을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가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li> </ol>
<신 설>	<p>제63조(의장의 토론 참가)</p> <p>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p>
<신 설>	<p>제64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질의나 토론이 끝났을 때에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li> <li>2. 의장의 제의 또는 구성원의 동의로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구성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동의를 할 수 없다.</li> <li>3.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li> </ol>
<신 설>	<p><b>제6절 표결</b></p> <p>제65조(의결정족수)</p> <p>의사는 회칙·세칙·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신 설>	<p>제66조(의결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성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다.</li> <li>2. 본회 각 회의체에서는 구성원이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li> <li>3. 그 밖에 의결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li> </ol>
<신 설>	제67조(표결의 선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li> <li>2.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li> </ol>
<신 설>	제68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구성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li> <li>2. 구성원은 표결에 대하여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li> </ol>
<신 설>	제69조(표결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거수표결로, 거수표결이 어려운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li> <li>2.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구성원의 동의(動議)로 의결이 있거나 재적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투표·호명투표(呼名投票)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li> <li>3. 의장은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li> <li>4. 제1항 본문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우</li> </ol>

	<p>재적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정당한 투표권자임을 확인한 후 투표한다. 의장의 제의 또는 구성원의 동의로 의결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5. 표결할 때에는 반드시 찬성부터 계산하고, 그 다음에 반대를 물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기권을 물어서 계산한다. 다만, 전자투표를 시행하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6. 찬성, 반대, 기권수의 합이 재석 인원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장은 재석인원 및 찬성, 반대, 기권수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p>
<신 설>	<p>제70조(감표위원)</p> <p>의장은 표결을 시행함에 있어 구성원 및 서기 중에서 1명 또는 수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여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p>
<신 설>	<p>제71조(표결의 생략)</p> <p>의장은 재석 구성원 전원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안건에 대해 표결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p>
<신 설>	<p>제72조(표결 결과 선포)</p> <p>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p>
<신 설>	<p>제73조(의결 발효시점)</p> <p>의결은 의장이 가결을 선포하는 시점부터 발효된다.</p>
<신 설>	<p>제74조(자유투표)</p> <p>본회 회의 구성원은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p>
<신 설>	<p><b>제4장 회의록</b></p> <p>제75조(서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 각 회의체는 한 명 이상의 서기를 둔다.</li> <li>2. 서기는 의사·의결정족수를 파악하고 의사를 기록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li> <li>3. 서기는 중앙집행위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총학생회장은 서기를 관리·감독한다.</li> </ol>
<p>&lt;신 설&gt;</p>	<p>제76조(회의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의 장소</li> <li>2. 개회, 정회, 속회, 유회 및 폐회의 일시</li> <li>3. 의사일정</li> <li>4. 개회 당시 출석 구성원의 수 및 이름</li> <li>5. 전학대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의 경우 구성원의 지각·조퇴·결석 및 대리인 선임 사항</li> <li>6. 전학대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의 경우 구성원의 이동(異動)</li> <li>7. 전학대회의 경우 의석의 배정과 변동</li> <li>8. 안건의 발의·제출·회부·철회에 관한 사항</li> <li>9. 부의안건의 제목과 그 내용</li> <li>10. 의장의 보고</li> <li>11. 중앙운영위원회의 경우 산하위원회 보고서</li> <li>12. 의사</li> <li>13. 표결 수</li> <li>14. 기명투표·전자투표·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투표자의 의사(찬성·반대·기권)와 이름</li> <li>15. 구성원의 발언보충서</li> <li>16. 서면질문과 답변서</li> <li>17. 그 밖에 의장 또는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li> <li>2. 각 회의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li> </ol>

	<p>녹음·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을 보조할 수 있다.</p> <p>3. 회의록은 제75조에 따라 지정된 서기가 작성한다.</p> <p>4. 회의록은 의장 및 2인 이상의 구성원이 서명하여 보관한다.</p>
<신 설>	<p>제77조(참고문서의 게재)</p> <p>구성원이 그 발언에 참고가 되는 간단한 문서(시청각 자료를 포함한다) 등을 회의록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신 설>	<p>제78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p> <p>1. 발언한 구성원은 회의록이 공고된 이후 3일 이내에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p> <p>2. 회의에서 발언한 참관인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p> <p>3. 속기로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적는다.</p> <p>4. 구성원이 회의록에 적힌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중앙운영위원회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p>
<신 설>	<p>제79조(결과공고)</p> <p>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제76조의 회의록과 회의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제76조제1항제13호의 안건 별 표결결과만 우선 공고할 수 있다.</p>
<신 설>	<p><b>제5장 질서와 경호</b></p> <p>제80조(회의의 질서 유지)</p> <p>1. 구성원 또는 참관인이 회의장에서 본 세칙 또는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p> <p>2.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구</p>



	<p>성원 또는 참관인에 대해서는 의장은 해당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p> <p>3. 의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폐회를 선포할 수 있다.</p>
<신 설>	제81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구성원은 회의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82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구성원 및 참관인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중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83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구성원 및 참관인은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84조(의장석 점거 금지) 구성원 및 참관인은 의장석을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85조(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7장 보칙 제86조(회의 진행) 회의 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87조(안건 작성·제출) 안건 작성·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